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2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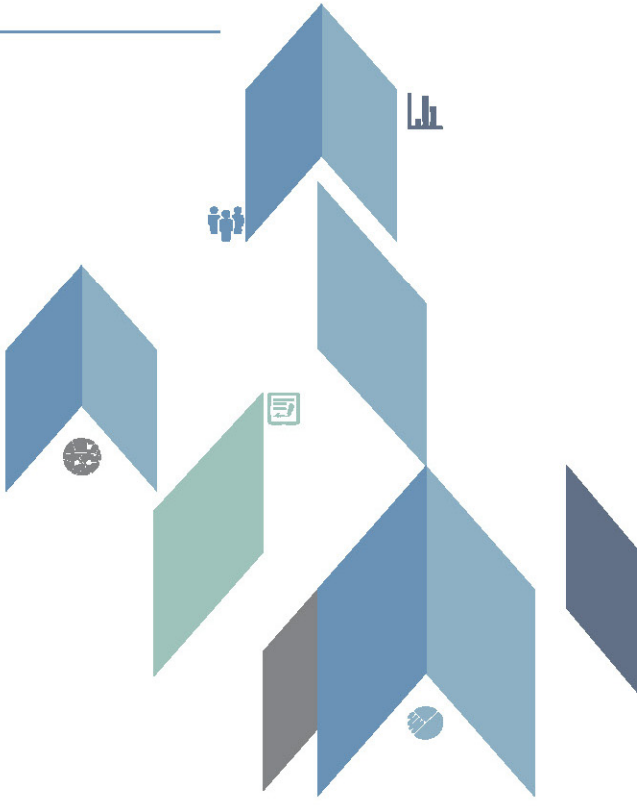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Family Database) 지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Indicators for Families and Children: Focusing on OECD Family Database Indicators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2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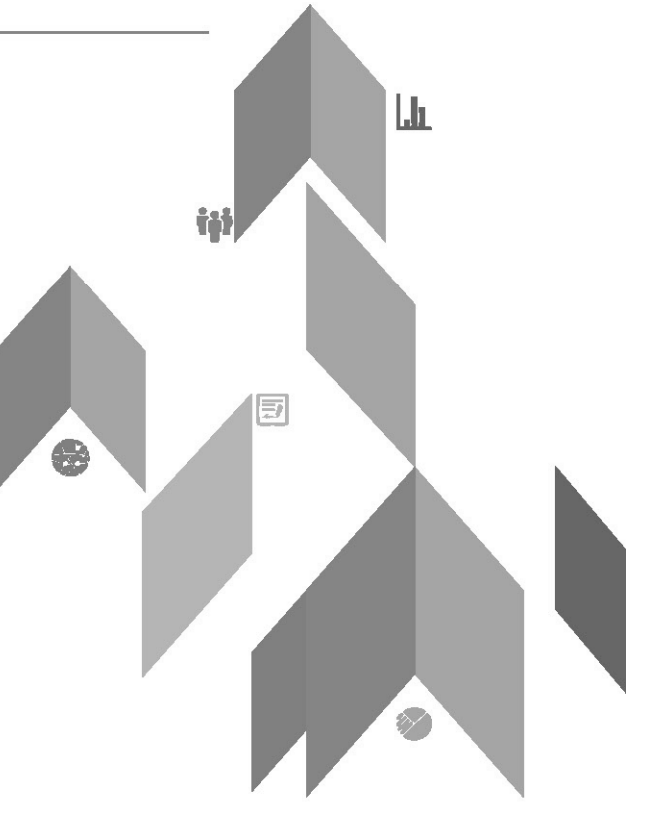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Family Database) 지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Indicators for Families and Children: Focusing on OECD Family Database Indicators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를 중심으로”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3-24-01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저 자		김은지·이상정·유해미·박미진·최진희·성경·김수정·김나영·유민상·박미선·김수진·변수정·이주연·박신아·조숙인·김영민·오수미		
주관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김은지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박미진 부연구위원 최진희 연구원 성경 연구원 김수정 교수(동아대학교) 김나영 부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오수미 연구조사원
협력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이상정 부연구위원	김수진 연구위원 변수정 연구위원 이주연 부연구위원 박신아 연구원	
	육아정책 연구소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조숙인 연구위원 김영민 연구원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를 중심으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0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 유 경

국문 요약

본 연구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족·아동지표 산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족변동 및 저출산 대응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OECD Family Database의 한국 자료를 검토하여 보고 여부와 적절성, 현재 생산 가능성에 따라 '적절', '개선필요', '누락', '자료없음', '해당없음'으로 구분하고, 이후 자료 생산 방안과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영역별 한국의 보고 지표는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표 259개 중 118개, 약 45.6%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고는 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지표가 31개로 약 12.0%였다. 보고되지 않고 있는 지표 중에서 생산이 가능한 지표는 65개로 약 25.1%였으며, 자료가 전혀 없어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지표는 42개로 약 16.2%였다. 그 외 한국 자료가 해당되지 않는 지표가 3개로 약 1.2%였다.

영역별로는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영역과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영역의 지표가 보고되는 비율이 다소 높았고, 특히 자녀관련 휴가 지표(Child-related leave, PF2)와 가족·아동 정책총괄 지표(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PF1)의 보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검토 결과 이 두 지표의 경우 '개선필요' 지표의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는 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개선필요' 지표로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 보육실태조사의 연령 기준 변경, OECD SOCX와 Tax-benefit 모델의 분류체계 재검토,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한 일부 오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수치 조정 등의 내용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자료는 있지만 보고되고 있지 않은 '누락' 지표들은 인구주택총조사,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통계청 출산통계, 인구동향조사와 같은 보고자료에 기반한 대규모 통계로부터, 지역별 고용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의 통계청이 수행하는 통계, 그 외 주거실태조사, 여성폭력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일가정양립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 분야별로 담당 부처가 생산하는 통계들까지 다양한 통계에서 누락된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고가 단기간 내에 불가능한 '자료없음' 지표들은 몇가지 공통적으로 자료 부재를 가져오는 항목들이 발견되었다. OECD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너쉽 항목으로서 혼인관계 밖의 '동거' 변수와 '이주배경' 변수가 한국의 자료에서는 부재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짐으로써 많은 지표의 누락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통계적 보완이 상당히 이루어

졌으나 ‘출산휴가’ 관련 지표, 비공식돌봄과 초등방과후 돌봄에 대한 지표는 충실하지 않아 국제비교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상자녀 수’, 취학 연령 아동의 건강행동설문조사(HBSC), 국제읽기능력평가(PIRLS) 등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조사의 모듈이나 문항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 비교가 어려운 항목도 있었으며, ‘가족 풍요도’나 ‘물질적 결핍’과 같이 한국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지표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국책 연구기관들과 담당부처의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가족·아동 통계지표, 국제비교지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respond to family fluctuations and low birth rates by preparing production measures for family and child indicators that can be internationally compared. Specifically, Korean data of the OECD Family Database are reviewed and classified into 'appropriate', 'improvement needed', 'omission', 'data not available', or 'not applicable' according to reporting, appropriateness, and current production possibility, and subsequent data production plans and system construction plans are sugges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Korea's reporting indicators by area of the OECD Family Database was found to be about half. Out of 259 total indicators, 118 indicators, or about 45.6%, were found to be adequate, and 31 indicators that are being reported but need improvement were about 12.0%. Among the unreported indicators, 65 indicators that could be produced were about 25.1%, and the number of indicators that needed to be created because there was no data at all was 42 indicators, which was about 16.2%. There were 3 other indicators that did not apply to Korean data, which was about 1.2%.

By area, the rates of reporting indicators in the areas o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PF) and child outcomes(CO) were rather high, especially child-related leave(PF2), and the reporting rate of 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PF1) was high. As a result of the review of this study, in the case of these two indicators, the level of the 'needs to improve' indicator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dicators that are being reported but need improvement includ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change in age standard for National Child Care Actual Conditions Survey, reexamination of OECD SOCX and tax-benefit model classification system, and some of laws, systems, and policies. It was found that improvements were needed in the contents such as errors and numerical adjustments of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onversely, 'missing' indicators that have data but are not reported are as follows: From large-scale statistics based on report data (e.g.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Child and Household Statistics Register, Statistics Korea Birth Statistics, and Population Trend Survey) and statistics conducted by the Statistics Korea (e.g.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ocial Surveys,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etc.) to statistics by sector produced by each ministry in charge (e.g. Korea Housing Survey, Survey of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on the Status of Sole-Parent Families, Work-Family Balance Survey, Comprehensive Survey on Youth,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National Survey of Early Childcare,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etc.). It was confirmed that missing indicators in the above statistics can be supplemented.

Lastly, in the 'no data' indicators, which are impossible to report in a short period of time due to the lack of current data, several common items that lead to the absence of data were found. As partnership items that are important in the OECD, 'cohabitation' variables outside of marriage and 'migration background' variables are either absent or treated as insignificant in Korean data,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many indicators are omitted. On the one hand, statistical supplementation was made considerably, but indicators related to 'maternity leave', informal care, and after-school care were not substantial, lowering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some items that were difficult to compare as there were no modules or items in internationally used surveys, such as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the Health Behavior Survey of School-age Children Study(HBSC), and the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PIRLS), which did not exist in Korea. Inappropriate indicators in the light of Korean context such as 'family affluence' and 'material deprivation' were also identifi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establish governance for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ministries in charge of producing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for stable and continuous production of the OECD Family Database.

Keyword: Family and child statistical indicators, international comparative indicators, OECD Family Database

정책 제안

1)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제출되고 있는 통계 중 개선이 필요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인구주택총조사의 가족 유형 집계시 한국 자료는 연령기준이 없다. OECD와 같이 25세 이하로 자녀 연령을 고려한 자료 집계도 필요하다.
-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한 모성 고용률 집계시 한국자료는 0~17세 아동, 15~54세의 여성으로 보고하고 있어, OECD와 같이 0~14세 아동, 15~64세 여성으로 집계한 자표가 필요하다.
- 보육서비스이용률은 현재 보육연령(어린이집 반 편성 연령) 기준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아동의 실제 만나이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가 필요하다.
- OECD SOCX의 급여 분류시 가족급여 분류를 OECD 기준에 맞추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OECD Tax-benefit 모델 또한 새로 도입된 각종 수당제도에 대한 적절한 분류가 필요하다.
- 휴가 일수 산정 및 자격기준, 대리모 규정 등에 대한 일부 오류 지표를 개선하여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 아동의 당뇨 및 천식 유병률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삭제된 당뇨 문항을 복구하고, 제출한 자료 중 서울 수치로 제한된 자료들은 전국 수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제출되고 있지 않은 통계 중 상당수가 기존 통계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 가구 유형 및 무자녀, 파트너십 중 기혼 통계, 아동장애 출현율 등의 지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집계가 가능하여 집계가 필요하다.
- 아동가구의 거주형태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자료로, 아동의 주거환경은 주거실태조사로, 출산율 관련 누락지표는 출생 통계로, 부모 고용 관련 정보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또는 지역별 고용조사로 집계가 가능하여 집계가 필요하다.
-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여성폭력실태조사, 가족친화제도 관련 내용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또는 근로환경조사, 한부모가족 관련 내용은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관련 세부 지표는 보육실태조사, 아동 연령별 과체중, 정기흡연자 등의 자료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의 통계를 통해 집계가 가능하여 통계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3) 다음의 항목들은 한국사회에도 중요하게 부각될 측면으로 선제적인 통계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 혼인관계 밖의 '동거' 변수와 '이주배경' 변수는 한국사회의 다양성 확대와 격차 해소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로서 적절한 통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동거 문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등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항목에 이주배경 변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육아휴직' 지표의 경우 고용보험의 범위를 넘어선 통계까지 상당히 보완되었지만 '출산휴가' 관련 지표는 아직 제한적이므로 고용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출산휴가 관련 통계 지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 아동돌봄과 관련된 실태조사는 미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보육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공식돌봄과 초등방과후 돌봄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통합적 아동돌봄 실태조사가 고안될 필요가 있다.
- 그 외 '이상자녀 수', 취학 연령 아동의 건강행동설문조사(HBSC), 국제읽기능력평가(PIRLS) 등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조사의 모듈에 맞는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

4)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한국자료 제공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국책 연구기관들과 담당부처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정부위원회, 통계청, 가족아동정책을 관할하는 부처 등 다양한 담당부처 지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와 함께, 국책 연구기관들과 관련 부처 담당자들의 넓은 협의체 운영과 지속적 교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장기적으로는 가족, 아동, 청소년 정책 및 전달체계를 총괄하는 부서의 역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가. 연구 배경 ····· 3
나. 연구 필요성 ····· 4
다. 연구 목적 ····· 5
2. 선행연구 현황 ····· 5
3. 연구내용 및 방법 ····· 7
가. 연구 내용 ····· 7
나. 연구 추진 체계 ····· 7
다. 지표 점검 기준 ····· 8

제2절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특성과 구조 ····· 11
1.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특성과 구조 ····· 11
2. 한국 자료 현황과 자료 작성 체계 ····· 15

제2장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한국 지표 검토

제1절 가족구조 지표 ····· 21
1. 가족구조 지표의 구성 ····· 21
2. 한국의 가족구조 지표 ····· 22
가. 가족과 아동 ····· 22
나. 출산력 지표 ····· 34
다.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 ····· 44
3. 소결: 한국의 가족구조 지표 생산 방안 ····· 52
가. 개선필요 ····· 53
나. 누락 ····· 53
다. 자료없음 ····· 55

CONTENTS

제2절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 57
1.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의 구성 ····· 57
2. 한국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 58
가. 아동 및 가족유형별 취업 현황 ····· 58
나.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 72
3. 소결: 한국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생산 방안 ····· 91
가. 개선필요 ····· 92
나. 누락 ····· 93
다. 자료없음 ····· 95

제3절 가족·아동정책 지표(1):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지표 ····· 97
1.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지표의 구성 ····· 97
2. 한국의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휴가 지표 ····· 98
가.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 ····· 98
나. 자녀관련 휴가정책 ····· 131
3. 소결: 한국의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지표 생산 방안 ····· 151
가. 개선필요 ····· 152
나. 누락 ····· 154
다. 자료없음 ····· 155

제4절 가족·아동정책 지표(2): 아동돌봄서비스 ····· 157
1. 아동돌봄서비스 정책 지표의 구성 ····· 157
2. 한국의 아동돌봄서비스 지표 ····· 158
가. 영유아 공보육·교육 ····· 158
나. 아동돌봄체계 ····· 176
3. 소결: 한국의 아동돌봄서비스 지표 생산 방안 ····· 186
가. 개선필요 ····· 187
나. 누락 ····· 188
다. 자료없음 ····· 189

제5절 아동성과 지표 ····· 193
1. 아동성과 지표의 구성 ····· 193
2. 한국의 아동성과 지표 ····· 194
가. 아동건강 ····· 194
나. 아동빈곤 ····· 212
다. 교육·문해력 ····· 219
라. 사회참여 ····· 233

3. 소결: 한국의 아동성과 지표 생산방안 ····· 240
가. 개선필요 ····· 240
나. 누락 ····· 240
다. 자료없음 ····· 242

제3장 요약 및 지표 생산체계 제안

제1절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요약 ····· 249
1.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총괄 ····· 249
2. 영역별 지표 검토 결과 ····· 252
가. 가족 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 252
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 258
다.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 262
라.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 271
3. 지표개선 방식별 지표 검토 결과 ····· 280

제2절 국제비교지표 산출 거버넌스 체계(안) 및 향후 과제 ····· 293
1.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 거버넌스 체계(안) ····· 293
가. 국책 연구기관 거버넌스 ····· 294
나. 담당 부처 및 관계부처 담당자 연석회의 ····· 294
2. 향후 과제 ····· 296

■ **참고문헌** ····· 297

■ **부록** ····· 303
부록. '적절' 지표 ····· 303

표 차례

〈표 Ⅰ-1〉 선행연구 검토 ····· 6
〈표 Ⅰ-2〉 '적절' 및 '개선필요' 판단 기준 ····· 10
〈표 Ⅰ-3〉 '누락' 및 '자료없음' 판단 기준 ····· 10
〈표 Ⅰ-4〉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분류와 지표 ····· 13
〈표 Ⅰ-5〉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와 한국 보고 지표 수 ····· 16
〈표 Ⅱ-1〉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지표 ····· 22
〈표 Ⅱ-2〉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제공 항목 ····· 25
〈표 Ⅱ-3〉 아동가구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세부 ····· 29
〈표 Ⅱ-4〉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 30
〈표 Ⅱ-5〉 주요 실태조사별 아동·청소년가구 주거 지표 생성 관련 문항 비교 ····· 31
〈표 Ⅱ-6〉 가족과 아동(Families and Children) 지표 ····· 33
〈표 Ⅱ-7〉 이상 자녀수 항목 조사 변경 내용 ····· 37
〈표 Ⅱ-8〉 출산력 지표(Fertility indicators) ····· 43
〈표 Ⅱ-9〉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지표 ····· 51
〈표 Ⅱ-10〉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개선필요 지표 ····· 53
〈표 Ⅱ-11〉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누락 지표 ····· 54
〈표 Ⅱ-12〉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자료없음 지표 ····· 55
〈표 Ⅱ-13〉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지표 ····· 57
〈표 Ⅱ-14〉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제공 항목 ····· 61
〈표 Ⅱ-15〉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제공 항목 ····· 64
〈표 Ⅱ-16〉 아동가구통계등록부,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비교 ····· 67
〈표 Ⅱ-17〉 아동 및 가족 유형별 취업 현황(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지표 ····· 70
〈표 Ⅱ-18〉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사회통합 실태조사, 사회조사 비교 ····· 89
〈표 Ⅱ-19〉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지표 ····· 89
〈표 Ⅱ-20〉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개선필요 지표 ····· 93
〈표 Ⅱ-21〉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누락 지표 ····· 93
〈표 Ⅱ-22〉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자료없음 지표 ····· 96
〈표 Ⅱ-23〉 가족·아동정책(PF ,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지표: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 ····· 97
〈표 Ⅱ-24〉 SOCX 가족급여에 포함된 한국 급여 목록 ····· 100
〈표 Ⅱ-25〉 가족현금급여 유형 및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family benefits, by type, 2018) ····· 104
〈표 Ⅱ-26〉 가족 현금급여 하위지표(PF1.3 B, PF1.3 C)의 비교기준 모델가족과 급여수준 ····· 107
〈표 Ⅱ-27〉 가족유형별 조세-복지급여체계의 형평성(neutrality) 지표의 비교준거 및 산식 ····· 109

〈표 Ⅱ-28〉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제도 특징(Key characteristics of Child Support Regimes) ····· 111
〈표 Ⅱ-29〉 연령집단별 공적 가족급여및교육 지출 비율 보고 방식 ····· 114
〈표 Ⅱ-30〉 아동연령별 공적 지출(PF1.6) 하위지표 ····· 115
〈표 Ⅱ-31〉 세대간 연대(PF1.7) 하위지표 ····· 116
〈표 Ⅱ-32〉 OECD 손자녀 돌봄자 비율 측정 문항 및 한국 대안 문항 ····· 122
〈표 Ⅱ-33〉 법적 성년 연령(PF 1.8) 하위지표 지표설명 및 자료원 ····· 122
〈표 Ⅱ-34〉 한국의 법적 성년연령의 법적 근거 ····· 124
〈표 Ⅱ-35〉 가족·아동 정책총괄(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지표 ····· 129
〈표 Ⅱ-36〉 PF2.2 자녀관련 휴가제도 이용 현황 하위지표별 자료원 ····· 138
〈표 Ⅱ-37〉 PF2.3 취업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휴가 관련 한국의 법령 및 휴가일수 ····· 139
〈표 Ⅱ-38〉 한국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2020년 1월 기준) ····· 140
〈표 Ⅱ-39〉 PF2.4 자녀관련 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 ····· 144
〈표 Ⅱ-40〉 자녀관련 휴가유형별 휴가기간(시계열 자료 1970년~2022년) ····· 146
〈표 Ⅱ-41〉 동성(same-sex) 부모,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2022년 4월 기준) ····· 148
〈표 Ⅱ-42〉 자녀관련 휴가(Child-related leave) 지표 ····· 150
〈표 Ⅱ-43〉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총괄 및 휴가 부문 개선필요 지표 ·· 152
〈표 Ⅱ-44〉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총괄 및 휴가 부문 누락 지표 ····· 154
〈표 Ⅱ-45〉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총괄 및 휴가 부문 자료없음 지표 ·· 155
〈표 Ⅱ-46〉 가족·아동정책 지표(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아동돌봄서비스 ····· 158
〈표 Ⅱ-47〉 '2021 보육통계' 보고 항목 및 OECD 지표 관련 자료 ····· 161
〈표 Ⅱ-48〉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시간(2021) ····· 165
〈표 Ⅱ-49〉 '2022 교육통계' 보고 항목 및 OECD 지표 관련 세부 항목 ····· 168
〈표 Ⅱ-50〉 제 특성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2021) ····· 169
〈표 Ⅱ-51〉 혈연 양육지원자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2021) ····· 170
〈표 Ⅱ-52〉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보고' 조사 항목 및 OECD 지표 관련 세부 항목 ····· 172
〈표 Ⅱ-53〉 아동돌봄서비스 분야 한국 자료의 생산 및 관리 현황_개요 ····· 174
〈표 Ⅱ-54〉 영유아 공보육·교육(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지표 ····· 175
〈표 Ⅱ-55〉 아동돌봄체계 부문_'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체계' 지표의 한국 자료(2016) ····· 178
〈표 Ⅱ-56〉 한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체계(2023) ····· 178
〈표 Ⅱ-57〉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제도 비교(2022) ····· 180
〈표 Ⅱ-58〉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유형별 자료 수집 및 보고 현황(2022) ····· 185
〈표 Ⅱ-59〉 아동돌봄서비스 부문 아동돌봄체계(Typology of childcare systems) 지표 ····· 186
〈표 Ⅱ-60〉 아동돌봄체계 부문_'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체계' 지표의 한국 자료 개선(안) ····· 188
〈표 Ⅱ-61〉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아동돌봄서비스 부문 개선필요 지표 ·· 188
〈표 Ⅱ-62〉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아동돌봄서비스 부문 누락 지표 ····· 189
〈표 Ⅱ-63〉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아동돌봄서비스 부문 자료없음 지표 ·· 191

CONTENTS

〈표 Ⅱ-64〉 아동성과(CO,Child Outcomes) 지표 ····· 194
〈표 Ⅱ-65〉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제시된 장애아동 출현율 보고방식 ····· 206
〈표 Ⅱ-66〉 한국의 장애아동 출현율 관련 자료 ····· 207
〈표 Ⅱ-67〉 아동 건강(Child Health) 지표 ····· 210
〈표 Ⅱ-68〉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제시된 아동빈곤 지표 산출용 국가별 소득자료 출처 ··· 213
〈표 Ⅱ-69〉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기준 물질적 결핍의 항목별 보유 여부 ····· 217
〈표 Ⅱ-70〉 아동빈곤(Child Poverty) 지표 ····· 219
〈표 Ⅱ-71〉 교육·문해력(Education/Literacy) 지표 ····· 231
〈표 Ⅱ-72〉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지표 ····· 239
〈표 Ⅱ-73〉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개선필요 지표 ····· 240
〈표 Ⅱ-74〉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누락 지표 ····· 241
〈표 Ⅱ-75〉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자료없음 지표 ····· 244
〈표 Ⅲ-1〉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영역별 지표 총괄 ····· 251
〈표 Ⅲ-2〉 가족과 아동(Families and Children) 지표 ····· 253
〈표 Ⅲ-3〉 출산력 지표(Fertility indicators) ····· 254
〈표 Ⅲ-4〉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지표 ····· 256
〈표 Ⅲ-5〉 아동 및 가족 유형별 고용 상태(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지표 ····· 258
〈표 Ⅲ-6〉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지표 ····· 260
〈표 Ⅲ-7〉 가족·아동정책 총괄(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지표 ····· 263
〈표 Ⅲ-8〉 자녀관련 휴가(Child-related leave) 지표 ····· 267
〈표 Ⅲ-9〉 영유아 공보육·교육(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지표 ····· 269
〈표 Ⅲ-10〉 아동돌봄체계(Typology of childcare systems) 지표 ····· 271
〈표 Ⅲ-11〉 아동건강(Child Health) 지표 ····· 272
〈표 Ⅲ-12〉 아동빈곤(Child Poverty) 지표 ····· 275
〈표 Ⅲ-13〉 교육·문해력(Education/Literacy) 지표 ····· 276
〈표 Ⅲ-14〉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지표 ····· 279
〈표 Ⅲ-15〉 '개선필요' 지표 ····· 280
〈표 Ⅲ-16〉 '누락' 지표 ····· 283
〈표 Ⅲ-17〉 '자료없음' 지표 ····· 288
〈표 Ⅲ-18〉 가족·아동정책 담당 부처 해외사례 ····· 296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참여 기관 ····· 8
[그림 Ⅰ-2] 지표 검토 기준 ····· 9
[그림 Ⅰ-3]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주요 영역 ····· 12
[그림 Ⅱ-1] 국내 연령별 독립 침실 기준 ····· 30
[그림 Ⅱ-2] EU 연령별 독립 침실 기준 ····· 30
[그림 Ⅱ-3]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질문 항목 ····· 41
[그림 Ⅱ-4]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질문 항목 ····· 48
[그림 Ⅱ-5]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폭력 피해 경험 질문 항목 ····· 50
[그림 Ⅱ-6] 지역별 고용조사 설문지 ····· 76
[그림 Ⅱ-7]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설문지 ····· 79
[그림 Ⅱ-8]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설문지 ····· 81
[그림 Ⅱ-9] 근로환경조사 설문지 ····· 82
[그림 Ⅱ-10]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설문지 ····· 86
[그림 Ⅱ-11]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 87
[그림 Ⅱ-12] 사회조사 설문지 ····· 88
[그림 Ⅱ-13] OECD 초기재원 및 최종재원 산출 개념도 ····· 102
[그림 Ⅱ-14] 초기재원 및 최종재원 공교육비 비율 산출식 ····· 102
[그림 Ⅱ-15] 연령집단별 급여유형별 공적 가족급여 및 교육 지출 추이(OECD 평균) ····· 113
[그림 Ⅱ-16] 연령별 순이전비율 ····· 118
[그림 Ⅱ-17] PF1.7 "노인들은 사적 세대간 이전에서 "받는자(taker)"이기보다 "주는자(giver)"일 가능성이 높다" ·· 119
[그림 Ⅱ-18] 현금이전, (가족관계별) 이전한 현금과 이전받은 현금의 비율(Transfers of money,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 120
[그림 Ⅱ-19] 시간이전, (가족관계별) 이전한 시간과 이전받은 시간의 비율(Transfers of time, per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 120
[그림 Ⅱ-20] 보육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163
[그림 Ⅱ-21]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2021)의 월평균 가구소득액 질문 문항 ····· 164
[그림 Ⅱ-2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인적사항 조사항목(통계청, 2023) ····· 227
[그림 Ⅲ-1]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총괄 ····· 249
[그림 Ⅲ-2]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영역별 지표 총괄 ····· 250
[그림 Ⅲ-3]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 거버넌스 체계(안) ····· 293

01

서론

제1절 연구배경·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한국사회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저출생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미 출산율이 낮은 상태에서 더 낮은 상태로 진입하는 2015년 이후의 출산율 변동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가족변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변동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도달하지 않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가족 변동의 이면에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일에 대한 청년 세대의 생애전망 변화가 놓여있다.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질임금의 제약으로 한 명의 노동자가 모든 가구원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세대의 생애전망은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별에 따른 일과 가족돌봄의 역할 분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족변동의 중심에 있는 청년세대들은 남녀 모두 개인생활과 일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은지 외, 2019, 2020). 즉 노동시장의 변동은 가족변동의 이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사회에서도 가족정책의 지출 수준이 크게 증가해 왔으며, 정책의 구성도 다부처의 다양한 사업이 각기 확대되어 다층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가족정책은 아동에 대한 수당, 아동돌봄에 대한 각종 유급휴가, 영유아 및 초등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세 종류의 가족정책이 모두 갖추어지면서 가족정책의 외형이 완성된 상황이다. 물론 정책 내부의 내실화는 여전히 남겨진 숙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출생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 개개인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건강, 경제적 안정성, 교육, 사회참여 등의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웰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저출생 시대에 가족구조,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가족정책, 아동의 웰빙 등이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을 진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개별 사업 단위로 자료가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족·아동과 관련된 국제비교지표가 산출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연구 필요성

비교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한국사회 가족변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진단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가족변화는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 많은 국가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여성 고용이 출산·양육기에 감소하는 M자 곡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현상이 존재한다. 한편 한국의 아동빈곤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면서, 반대로 한부모가족 빈곤율은 국제적 기준보다 훨씬 높아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웰빙의 수준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조사와 통계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족·아동지표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이 수집하는 통계의 범위와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상세한데도, 이에 대한 가공과 공표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아 국제비교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예컨대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미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의 고용상태와 정책이용 현황이 체계적으로 집계,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고용통계와 정책이용 통계는 여전히 가구주나 성인 개인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아동을 기준으로 한 통계가 집계, 공표되고 있지 않다.

최근 통계청에서 각종 통계등록부 자료가 구축되어 아동을 기준으로 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환경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집계, 공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가족·아동지표를 체계화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재 가장 폭넓게 활용 가능한 국제비교 자료는 'OECD 국제비교 통계(OECD Family Database)'이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는 한국 사회가 정책적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복지국가들의 가족정책 통계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많은 비교사회정책 연구와 각종 정책 근거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료이다. 가족정책과 관련된 많은 비교연구들이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고 유형화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정책자료로서 한국의 정책 확장 필요성을 제기할 때에도 해당 자료가 가장 많이 인용, 활용된다. 예컨대 가족·아동정책 기본계획 중 가장 큰 범위의 기본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여러 근거

자료로 이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기본계획인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준하는 통계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서는 한국의 지표가 다수 누락되거나 비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자료가 없거나, 집계방식이 아동을 기준으로 집계되지 않았거나, 집계되었더라도 관리체계가 부재한 등의 다양한 이유에 근거한다. 이에 한국 지표를 생산 및 업데이트하고 지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와 학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단일 연구기관의 연구가 아니라, 여러 국책 연구기관들과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협동과제의 형태로 추진된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는 다양한 차원의 자료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개별 연구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통계 생산 기관에서 공식성을 담보하여 생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국책연구기관과 협동과제의 형태로 공식적인 국제 가족통계를 산출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어 진행하였다.

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족·아동지표 산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족변동 및 저출산 대응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등 국제비교 데이터베이스에 제공가능한 한국 지표를 추가·갱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료생산과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아동중심통계 조성'을 주요 과제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존 통계조사 집계를 아동중심으로 전환하되, 해외의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와 같은 가족통계항목을 제공하는 것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과업을 실행하고, 이 과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현황

본 연구 이전에도 가족 및 아동 국제비교지표를 체계화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였다. 우선 신윤정 외(2012)는 한국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처음으로 체계적인 한국자료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국책연구기관의 협력체계가 구성되지 않아 국제비교지표의 지속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김혜영 외(2015)는 통계청의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연구의 일환으로 가족과 가구 영역 통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주요 통계항목의 프레임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OECD famiy database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검토되었으나 지속적 생산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유민상 외(2020)에서는 아동·청소년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통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방안이 다차원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연구를 통해 가족·아동 통계의 국제비교지표 산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윤정 외(2021)는 가장 최근의 한국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자료를 작성한 근거가 되는 연구로, 중국, 몽골,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국가들의 전문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2022~2023년 시점에서 체계적으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구조를 점검하고 이에 공식 대응하는 한국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이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가 가족·아동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보다 본격적으로 국제비교 가능한 가족·아동 통계지표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일부 연구자의 자료 분석과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관련되는 공식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 및 관련 부처인 통계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지속적인 협의구조를 통해 지표를 생산한다. 또한 일회성 지표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지표 생산 구조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표 Ⅰ-1〉 선행연구 검토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신윤정 외(2012)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Family Database) 한국 자료 구축 및 제공	- 문헌연구 - 2차 자료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한국 자료 보완, 업데이트 - 핵심 지표 시계열 자료 구축
	2	김혜영 외(2015) 가족·가구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 해외 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학술대회	-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 가족·가구 통계 작성현황 분석 - 가족·가구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3	유민상 외(20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 - 국가승인통계 담당자 협의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포럼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마련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보고서 작성
	4	신윤정 외(2021) 2020-21년도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 아태지역 전문가 자료 수집	- 한국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 중국, 몽골,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가족 및 아동 비교분석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	김은지 외(2022)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	- 문헌연구 - 자료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 산출방안 마련 -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분석을 통한 한국의 가족·아동 현황 점검 -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의 지속적 생산체계 마련

3.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 산출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는 가장 방대한 양의 국제비교 가족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가족구조,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가족·아동 정책, 아동 성과로 구성된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한국의 자료가 다수 누락되어 있거나 비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는 지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정기적·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지표를 생산하거나 가장 관련성이 높은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표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지표에 대한 점검은 영역별로 다섯 절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는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영역은 복잡한 정책적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여, 두 개의 절로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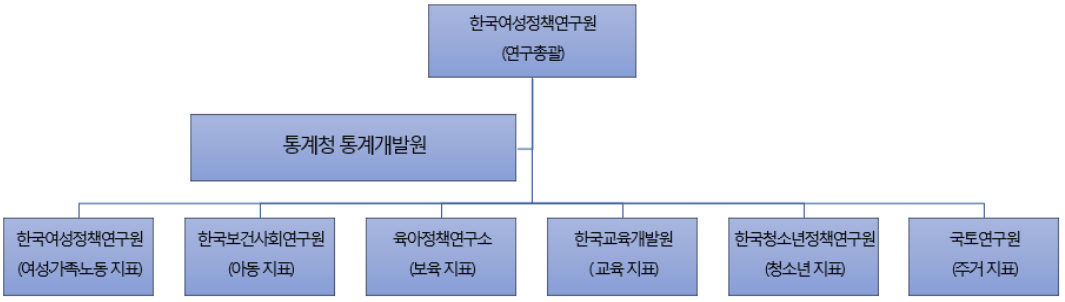
이에 덧붙여 마지막 부분에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의 지속적 생산체계를 제안하였다. 현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업데이트는 체계적인 컨트롤타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생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여러 부처(통계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와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지표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 추진 체계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총괄기관으로 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가

기관 단위로 참여하며,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인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체 연구를 총괄하면서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지표를 검토하였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아동 지표의 경우 아동정책을 지원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관참여의 형태로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생산하는 'OECD 사회복지지출(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통계, '가족과 출산 조사' 등의 별도 자료들의 내용을 공유하고 가족 관련 지표의 기본자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영유아 보육·교육 및 아동돌봄체계 관련 지표의 경우 정책의 복잡성 때문에 국제비교통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황으로, 체계적인 통계의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영유아 보육·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기관참여의 형태로 참여하여 관련통계를 체계적으로 재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 지표, 청소년 지표, 주거 지표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연구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거버넌스 구조 구축을 위해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협의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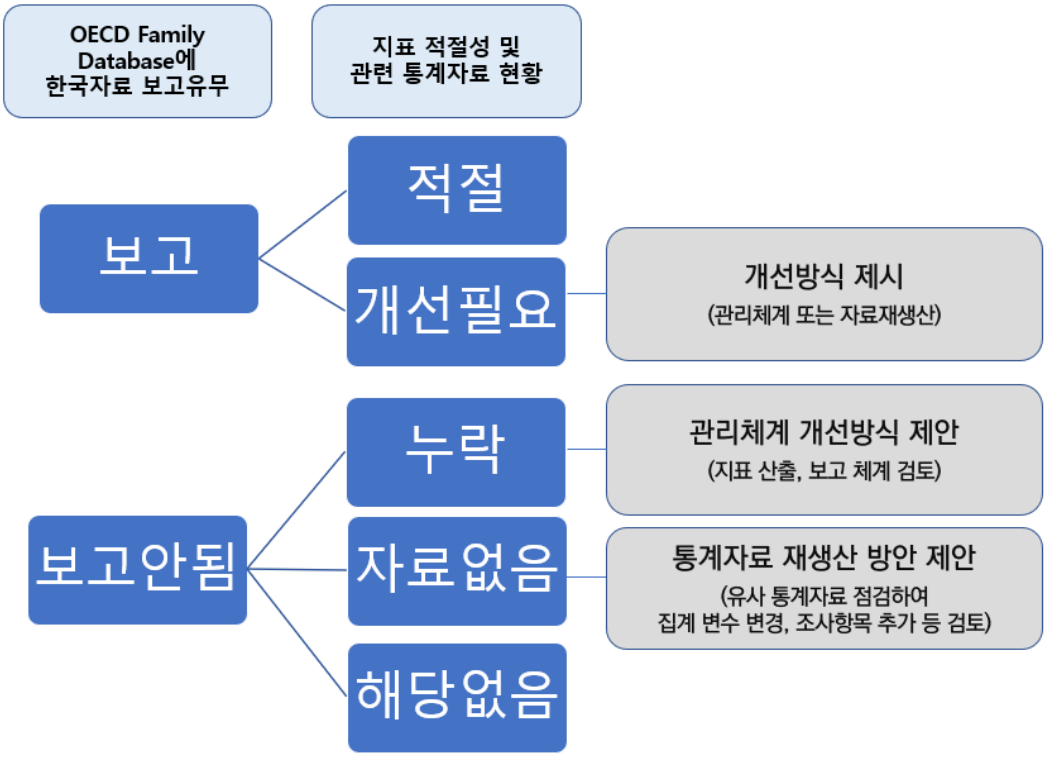
[그림 Ⅰ-1] 연구 참여 기관



다. 지표 점검 기준

각 지표는 다음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2023년 1월 현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한국 자료 보고 여부를 1차 기준으로 하고, 보고된 자료의 경우에는 더 이상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 '적절',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필요'로 구분하였다. 보고되지 않은 경우 현재 있는 자료로 바로 생산이 가능한 경우 '누락'으로, 현재 있는 자료로 생산이 불가능하여 자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사례는 많지 않지만 한국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 않은 상태가 적절한 경우 '해당없음'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Ⅰ-2] 지표 검토 기준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한국의 자료가 보고되고 있는 경우, 적절히 보고되고 있는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점검하였다. 우선,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상에 있는 정의(definition)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통계는 일관성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유럽이 아닌 국가들은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한국 자료를 검토할 때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상의 정의를 기준으로 하되, 가능한 유럽 기준에 맞추어 비교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자료가 공식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료인지를 확인하였다. 해당 자료가 공식 담당기관(통계청, 관련 정책 부처, 관련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공식적 통계인가를 확인하고, 통계자료인 경우 통계청 승인을 받거나 법률로 조사가 정해진 자료 등 공식 자료로서 횡적 대표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생산가능한 자료인가를 검토하였다. 연구기관들이 생산하고 있는 패널 자료의 경우 통계청 승인 자료인 경우가 많지만, 자료의 성격상 횡적 대표성보다는 패널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횡적 대표성 있는 자료로 대체가 권고된다. '개선필요'의 경우, 관리체계 개선 또는 통계자료 재생산 방안이 제안될 예정이다.

〈표 Ⅰ-2〉 '적절' 및 '개선필요' 판단 기준

항목	내용
정의 부합	-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상에 있는 정의(definition)에 부합하는가 ※ 일부의 자료 시차(time-lag)는 수용 가능
자료의 공식성 및 지속가능성	- 공식 담당기관(통계청, 관련 정책 부처, 관련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공식적 통계인가 - 통계자료인 경우 통계청 승인을 받거나 법률로 조사가 정해진 자료 등 공식 자료로서 횡적 대표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생산가능한 자료인가 (패널 자료의 경우 횡적 대표성 있는 자료로 대체가 권고됨)

한편 한국자료가 보고되고 있지 않은 경우, '누락'과 '자료없음'은 다음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미 공식적이며 횡적 대표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생산가능한 통계가 있으며, 해당 통계를 통해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정의에 맞는 통계를 바로 생산가능할 경우 '누락'으로 집계하였다. '누락'에 해당하는 사례는 이미 공식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인데 보고되지 않은 통계, 생산할 수 있으나 집계 기준의 차이 등으로 생산하지 않고 있는 통계 등이 해당된다. 이 자료들의 경우에는 자료의 재생산 방안은 검토되지 않으며 적절한 지표 산출과 보고체계 등 관리체계 개선방식이 제안될 예정이다.

한편 '누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자료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없음'으로 분류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기존 자료에 해당 항목은 있으나 집계기준 변수가 OECD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집계기준 변수를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생산하지 않아 조사문항의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완전히 새로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계자료 재생산 방안이 제안될 예정이다.

〈표 Ⅰ-3〉 '누락' 및 '자료없음' 판단 기준

항목	내용
자료의 공식성 및 지속가능성	- 공식 담당기관(통계청, 관련 정책 부처, 관련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공식적 통계 있음 - 통계자료인 경우 통계청 승인을 받거나 법률로 조사가 정해진 자료 등 공식 자료로서 횡적 대표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생산가능한 자료 있음 (패널 자료의 경우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횡적 대표성 있는 자료로 대체가 권고됨)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 생산가능성	- 위의 공식적 자료를 통해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상에 있는 정의(definition)에 부합하는 집계 자료를 조사항목의 변형 없이 생산 가능한가 ※ 일부의 자료 시차(time-lag)는 수용 가능

제2절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특성과 구조

1.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특성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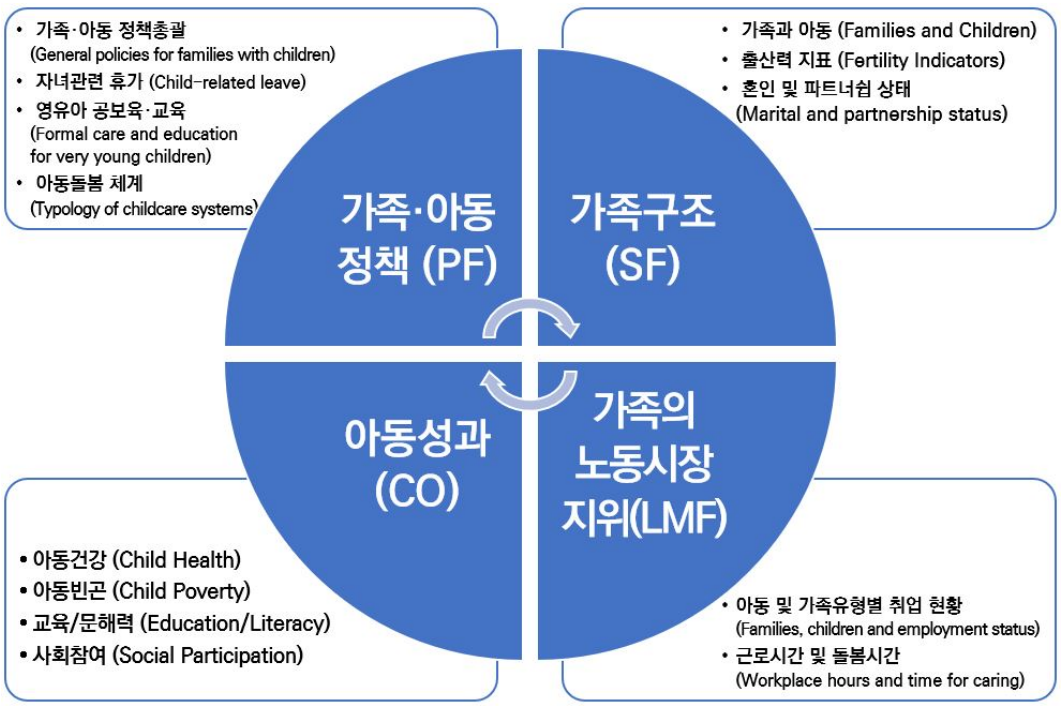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는 다음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영역이다.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들로 가족의 형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가족구조), 가족 변동의 중요한 배경요인인 아동이 있는 가구의 노동시장 상황을 살펴보며(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의 구성과 수준을 확인하고(가족·아동정책), 아동의 웰빙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한다(아동성과).

자료를 구축한 OECD 팀의 Adema et al(2009: 438)에 따르면, 각 영역의 내용과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영역은 가족의 구조와 형성에 대한 포괄적 지표들로서, 가족이 어떻게 보이는가, 아동은 어디에 사는가, 출산율 경향은 어떤가, 아동이 있는 성인들 간 파트너쉽의 일반적 형태는 어떠한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둘째,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영역은 일가족양립 이슈를 다루는데, 가구내 아동의 존재가 부모의 노동시장 성과와 돌봄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젠더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셋째,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영역은 가족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영역은 생애 초기의 여러 시점에서 아동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노인가구원의 돌봄과 관련된 지표는 다루지 않고 있으나, 확장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네 개 영역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가족의 변동과 새로운 정책 니즈(needs)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논의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가족구조(SF)' 지표로서, 가족의 형성과 유지·확대, 가족의 변동·전환,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행위 측면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지표는 가족구조와 노동시장 영역 간의 정합도와 격차, 시간 자원의 배분과 개인적 만족도를 다루고 있다. 한편 '가족·아동정책(PF)'은 가족구조와 노동시장 영역 간의

부정합성에 대한 정책 영역의 개입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가족의 소득 지원, 자녀 양육 관련 휴가와 서비스, 교육과 돌봄에서의 공적 지원체계의 구조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지표는 OECD가 최근 반성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아동 관련 지표로, 아동과 청소년의 관점에서 건강과 빈곤, 교육과 사회참여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네 개 영역은 가장 기본적으로 관측되는 가족의 형태 지표로부터 출발하여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를 다루는 지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다루는 지표로 확장되어 아동성과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추가적으로 발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네개 영역은 선형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각 영역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다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정책적 개입은 가족의 노동시장참여를 원활히 함으로써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다시 아동성과에서의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1)]

[그림 Ⅰ-3]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주요 영역



출처: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를 근거로 연구진 작성

1) 본 내용은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황정미 객원연구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최은영 교수의 자문의견에 근거한 것이다. 지면을 빌어 귀중한 자문의견을 주신 자문자들께 감사드린다.

〈표 Ⅰ-4〉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분류와 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표
가족 구조 (SF, Structure of Families)	가족과 아동 (Families and Children)	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Family size and composition) 1.2 가족에서의 아동(Children in Families) 1.3 아동의 거주 형태(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1.5 아동의 주거 여건(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출산력 지표 (Fertility Indicators)	2.1 출산율(Fertility rates) 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2.4 혼인 외 출생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2.5 무자녀(Childlessness)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 (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3.1 혼인율과 이혼율(Marriage and divorce rates) 3.2 가족 해체와 아동(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3.3 동거율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비율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3.4 가정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LMF,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아동 및 가족유형별 취업 현황 (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1.2 모성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1.4 생애주기별 고용률(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2.1 성별 주당 근로시간 (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2.4 가족친화제도(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2.5 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 (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2.6 출퇴근에 보낸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 (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가족·아동 정책 (PF, Public policies for	가족·아동 정책총괄 (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1.1 공적 가족급여 지출(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1.2 공교육 지출(Public spending on education) 1.3 가족 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1.4 조세-복지급여 체계의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체계(Child support (maintenance) systems) 1.6 아동 연령별 공적 지출(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대분류	중분류	지표
families and children)		1.7 세대간 연대(Intergenerational solidarity) 1.8 법적 성년 연령 (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1.9 아동보호 특성(Aspects of child protection)
	자녀관련 휴가 (Child-related leave)	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 특징(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2.2 자녀관련 휴가 사용 현황(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2.3 취업 부모 추가휴가(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parents) 2.4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2.5 자녀관련 휴가 급여 추이(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2.6 동성부모와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Same-sex and adoptive parental leave entitlements)
	영유아 공보육·교육 (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3.3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3.4 보육료 지원(Childcare support)
	아동돌봄 체계 (Typology of childcare systems)	4.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4.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4.3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Out-of-school-hours care)
아동 성과 (CO, Child Outcomes)	아동 건강 (Child Health)	1.1 영아사망(Infant mortality) 1.2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1.3 저체중 출생(Low birth weight) 1.4 백신 접종률(Vaccination rates) 1.5 모유수유율(Breastfeeding rates) 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 당뇨와 천식 유병률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1.7 11,13,15세의 성별 과체중과 비만(Overweight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1.8 11,13,15세 성별 정기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1.9 아동 장애(Child Disability)
	아동 빈곤 (Child Poverty)	2.1 가구유형별 소득불평등과 소득지위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2.2 아동 빈곤(Child poverty) 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교육/ 문해력 (Education/ Literacy)	3.1 성별에 따른 교육이수(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3.2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3.4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3.5 청년 니트(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NEET) 3.6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 (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대분류	중분류	지표
	사회 참여 (Social Particitpation)	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4.2 생애 첫 투표 참여율(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4.3 청소년의 약물 남용 (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4.4 십대 자살(Teenage suicides)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영역 구성은 그 자체로 몇 가지 함의를 지닌다. 우선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지표가 가족과의 연관성 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일가족 양립은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어 있지만, 가족변동과 노동시장 변동 간의 교차는 여전히 부분적인 이슈로만 다루어진다. 예컨대 저출생과 관련된 논의에서 노동시장 참여 관련 내용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며, 반대로 노동시장 관련 통계치를 생산할 때 가족과 관련된 지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저출생과 아동발달/아동빈곤의 문제가 노동시장 참여 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잘 인지되어 있으며, 교차성에 대한 지표가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다.

다음으로 모든 통계에서 아동을 기준으로 한 통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가구주를 기준으로 한 통계가 표준적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서구 국가들에서는 아동을 기준으로 한 통계가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가구주 중심의 하향식 통계가 아니라 아동 중심의 상향식 통계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에 기반한 통계의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관련 통계, 소득 및 복지행정통계의 경우에도 아동을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여 저출생 시대에 맞는 국제비교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2. 한국 자료 현황과 자료 작성 체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영역별 한국의 보고지표 수는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소수점은 일부 보고되는 지표를 0.5점으로 처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약 절반의 지표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영역 중에서는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영역과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영역의 지표가 보고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특히 자녀관련 휴가 지표(Child-related leave, PF2)와 가족·아동 정책총괄 지표(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PF1)의 보고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지표와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지표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지표 보고 비율이 낮다. 특히 가족과 아동 지표(Families

and Children, SF1),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지표(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LMF2)가 보고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보다 상세한 지표의 보고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표 Ⅰ-5〉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와 한국 보고 지표 수

대분류	중분류	지표	전체 세부지표 수	한국보고 세부지표 수
가족 구조 (SF, Structure of Families)	가족과 아동 (Families and Children)	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Family size and composition) 1.2 가족에서의 아동(Children in Families) 1.3 아동의 거주 형태 (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1.5 아동의 주거 여건(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18	7
	출산력 지표 (Fertility Indicators)	2.1 출산율(Fertility rates) 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2.4 혼인 외 출생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2.5 무자녀(Childlessness)	20	9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 (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3.1 혼인율과 이혼율(Marriage and divorce rates) 3.2 가족 해체와 아동(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3.3 동거율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비율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3.4 가정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14	8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LMF,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아동 및 가족유형별 취업 현황 (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1.2 모성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 (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1.4 생애주기별 고용률(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26	13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Workplace hours and time	2.1 성별 주당 근로시간 (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28	11

대분류	중분류	지표	전체 세부지표 수	한국보고 세부지표 수
	for caring)	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2.4 가족친화제도(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2.5 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 (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2.6 출퇴근에 보낸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 (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가족·아동 정책 (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가족·아동 정책총괄 (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1.1 공적 가족급여 지출(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1.2 공교육 지출(Public spending on education) 1.3 가족 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1.4 조세-복지급여 체계의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체계 (Child support(maintenance) systems) 1.6 아동 연령별 공적 지출(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1.7 세대간 연대(Intergenerational solidarity) 1.8 법적 성년 연령 (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1.9 아동보호 특성(Aspects of child protection)	34	27
	자녀관련 휴가 (Child-related leave)	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 특징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2.2 자녀관련 휴가 사용 현황 (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2.3 취업 부모 추가휴가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parents) 2.4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2.5 자녀관련 휴가 급여 추이 (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2.6 동성부모와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Same-sex and adoptive parental leave entitlements)	23	21
	영유아 공보육·교육 (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3.3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3.4 보육료 지원(Childcare support)	15	8
	아동돌봄 체계 (Typology of childcare systems)	4.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4.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4.3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Out-of-school-hours care)	8	4

대분류	중분류	지표	전체 세부지표 수	한국보고 세부지표 수
아동 성과 (CO, Child Outcomes)	아동 건강 (Child Health)	1.1 영아사망(Infant mortality) 1.2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1.3 저체중 출생(Low birth weight) 1.4 백신 접종률(Vaccination rates) 1.5 모유수유율(Breastfeeding rates) 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 당뇨와 천식 유병률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1.7 11,13,15세의 성별 과체중과 비만 (Overweight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1.8 11,13,15세 성별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1.9 아동 장애(Child Disability)	26	13.5
	아동 빈곤 (Child Poverty)	2.1 가구유형별 소득불평등과 소득지위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2.2 아동 빈곤(Child poverty) 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 (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9	6
	교육/ 문해력 (Education/ Literacy)	3.1 성별에 따른 교육이수(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3.2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3.4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3.5 청년 니트 (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NEET) 3.6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 (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25	14.5
	사회 참여 (Social Particitpation)	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4.2 생애 첫 투표 참여율(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4.3 청소년의 약물 남용 (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4.4 십대 자살(Teenage suicides)	13	7
계			259	149

02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한국 지표 검토

제1절 가족구조 지표

1. 가족구조 지표의 구성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지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족구조 지표는 가족과 아동(Families and Children), 출산력 지표(Fertility indicators),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에 대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조 지표는 가족의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들로,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Family size and composition), 가족 내의 아동(Children in Families), 아동의 거주 형태(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아동의 주거 여건(Living conditions of children)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아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구학적 지표들과 가족상황에 대한 지표들이다.

다음으로 출산력 지표는 출산율(Fertility rates),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혼인 외 출생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무자녀(Childlessness)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출산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 및 출산 상황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 지표는 혼인율과 이혼율, 가족 해체와 아동, 동거율과 다른 유형의 파트너쉽, 가정 폭력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너쉽과 관련하여 제도혼과 해체, 제도혼 외의 동거, 가족 내 폭력 관련 지표들이 포함된다.

〈표 Ⅱ-1〉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표
가족 구조 (SF, Structure of Families)	가족과 아동 (Families and Children)	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Family size and composition) 1.2 가족에서의 아동(Children in Families) 1.3 아동의 거주 형태(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1.5 아동의 주거 여건(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출산력 지표 (Fertility Indicators)	2.1 출산율(Fertility rates) 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2.4 혼인 외 출생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2.5 무자녀(Childlessness)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 (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3.1 혼인율과 이혼율(Marriage and divorce rates) 3.2 가족 해체와 아동(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3.3 동거율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비율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3.4 가정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2. 한국의 가족구조 지표

가. 가족과 아동

가족과 아동(Families and Children) 지표는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Family size and composition), SF1.2 가족에서의 아동(Children in Families), SF1.3 아동의 거주 형태(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SF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SF1.5 아동의 주거 여건(Living conditions of children)으로 구성된다.

1)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Family size and composition)

SF1.1은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가구 유형(Types of household),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 등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가구는 요양시설, 군대 등의 시설 가구를 제외한 사적 가구(private households)를 의미한다[2]. 따라서 가구 유형(household types)은 사적 가구 내 성인의

수 및 성인 간 관계, 자녀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정의되는데,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OECD Family Database, 2023[3]).

'부부 가구(couple households)'는 결혼, 시민 동반자, 등록된 파트너십, 동거 등으로 두 명의 파트너가 있는 성인 가구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부부 가구에 동성혼을 포함하며, 부부 가구에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한부모 가구(single-parent households)'는 가구 내 성인이 1명이며 최소한 1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를 뜻하며, '1인 가구(single person households)'는 1명의 성인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타 가구'에는 여러 명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동거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가족 단위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확대 가족 등이 해당된다.

자녀는 국가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5세 이하의 의존적인 자녀를 의미하고, 생물학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도 포함된다.

(1) SF1.1.1.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한국은 가구유형별 가구원수(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2015) 지표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2010) 원자료를 활용하였는데, OECD 정의에 부합하도록 자녀 연령 기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OECD는 자녀의 연령을 25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나, 한국은 연령에 상관없이 '미혼인 자녀'로 정의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며,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최신 자료로 수치를 업데이트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2) SF1.1.2. 가구유형(Types of household, 2011)

가구유형(Types of household, 2011) 지표의 경우에도 위의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와 마찬가지로 인구주택총조사(2010) 원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인해 개선이 요구된다.

(3) SF1.1.3. 자녀수에 따른 가구유형(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 2015)

자녀수에 따른 가구유형(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 2015) 지표는 현재 누락되어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자료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

2) 참고로,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일반가구(ordinary household)'에 대해 가구규모와 가구유형을 조사함. 일반가구는 OECD의 사적 가구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함. 군대나 요양시설을 시설가구(집단가구)로 제외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혈연 관계에 있지 않은 6인 이상의 가구는 일반가구에서 제외함.

3) OECD Family Database(SF1.1)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2) SF1.2 가족에서의 아동(Children in Families)

SF1.2는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아동의 거주 형태 변화(Trends i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동거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추이(Trends in children living with cohabiting parents) 등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아동의 거주 형태는 부모의 존재 여부 및 혼인 상태에 따라 구분되며, 아동의 연령은 0~17세로 정의된다. 구체적인 OECD 기준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OECD Family Database, 2023[4]).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living with two parents)'은 기본적으로 두 명의 성인과 함께 살며, 두 성인은 부모로 보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생물학적인 부모와 양부모를 포괄한다.

'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living with a single parent)'은 한 명의 성인과 함께 살며, 그 성인은 생물학적이든 양부모이든 '부모'로 보고되어야 한다. 이 가구 유형에는 다른 성인(조부모, 친척, 친족이 아닌 성인)이 함께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이 중에서 '부모'로 지칭되는 성인은 오직 한 명이어야 한다.

'기타 유형(others)'에는 다양한 사례가 포괄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모'로 간주되는 성인이 한 명도 없는 가구에 아동이 거주해야 한다. 이 유형에는 아동이 조부모와 함께 살거나, 다른 친척, 혹은 비친족 성인과 함께 사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1) SF1.2.1.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지표에 대해 한국은 현재 모두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데, 통계청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통계등록부,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인구동향(출생)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를 연계한 후, 총 19종의 관련 자료로 DB를 구축한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는 다음의 항목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5]. 아래의 변수 중 아동의 연령 및 동거인의 정보를 결합하면 부모 및 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의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2) SF.1.2.2. 아동의 거주 형태 변화(Trends i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아동의 거주 형태 변화(Trends i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지표 역시 한국은 현재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데, 통계청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

4) OECD Family Database(SF1.2)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5) 출처: 통계청(2021.8)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이용자 안내서

(3) SF.1.2.3. 동거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추이(Trends in children living with cohabiting parents)

동거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추이(Trends in children living with cohabiting parents) 지표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고가 되지 않고 있으며, 통계청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보고 가능하다.

〈표 Ⅱ-2〉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제공 항목

No	항목명	속성	길이	항목설명
1	기준년도	문자	4	
2	아동_개인대체식별번호	문자	10	
3	아동_성별	문자	1	1:남성, 2:여성
4	아동_만연령	숫자	3	
16	가구유형코드	문자	7	1:일반가구, 2:집단가구, 3:외국인가구, 4:집단시설가구, 9:특별조사구
18	동거인	문자	1	1:아동의 부, 2: 아동의 모, 3:아동의 조부모, 4:아동의 형제자매, 5:기타친인척, 6:기타동거인

출처: 통계청(2021).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이용자 안내서

3) SF.1.3 아동의 거주 형태(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SF1.3은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age), 상대소득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relative income poverty status), 모의 학력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mother's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유소년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 등 네 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이 지표들은 앞선 SF.1.2의 정보에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정보를 결합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존재 여부 및 혼인 상태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는데, 아동의 연령을 0~5세, 6~11세, 12~17세 등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상대소득빈곤 상태는 가구 가처분 소득(예: 세후 소득, 가구규모 균등화 조정)이 빈곤선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분류된다. 빈곤선은 국가별로 중위 가처분 소득(median disposable income)의 50% 수준으로 정의된다(OECD Family Database, 2023[6]).

6) OECD Family Database(SF1.3)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1) SF.1.3.1.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age)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age) 지표에 대해 한국은 현재 자료가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면 상당 부분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SF.1.3.2. 상대소득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relative income poverty status)

상대소득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relative income poverty status)도 한국의 자료가 현재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인 정보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면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도 가구소득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상대소득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3) SF.1.3.3. 모의 학력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mother's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모의 학력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mother's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지표는 현재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면 보고 가능하다.

(4) SF.1.3.4. 유소년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

유소년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 지표는 현재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면 업데이트 할 수 있다.

4) SF.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SF1.4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Child and young adult population),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Age distribution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아동 인구 추이(Trends in the child population), 유소년 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Estimated (1950-2015) and projected (2016-2050) youth dependency ratios) 등 다섯 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유소년 부양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OECD Family Database, 2023[7]).

(근로 연령층 100명 당 아동·청소년 인구수)
= (20세 이하의 인구수) / (20~64세의 인구수) * 100

여기서 유소년 부양비는 아동·청소년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간주되는데, 이와 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인구를 근로 연령층인 20~64세로 보았다.

(1) SF.1.4.1.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Child and young adult population)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Child and young adult population) 지표는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7) 원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모두 적절히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2) SF.1.4.2.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Age distribution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Age distribution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지표 역시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7)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도 적절히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3) SF.1.4.3. 아동 인구 추이(Trends in the child population)

아동 인구 추이(Trends in the child population) 지표도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7)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적절히 업데이트 된 것으로 확인된다.

(4) SF.1.4.4. 유소년 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

유소년 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 지표도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7)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SF.1.4.5.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Estimated (1950–2015) and projected (2016–2050) youth dependency ratios)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Estimated (1950-2015) and projected (2016-2050) youth dependency ratios) 지표 역시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적절히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

7) OECD Family Database(SF1.4)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5) SF.1.5 아동의 주거 여건(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SF1.5는 아동의 주거 여건에 대한 것으로 다음의 세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과밀가구 아동 비율이고 두 번째는 기초 생활시설이 결여된 아동가구 비율, 세 번째는 환경적 문제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가구 비율이다.

첫 번째 과밀가구 아동 비율에서는 과밀(overcrowed)의 정의가 중요하다. Eurostat 기준으로 과밀은 가구구성과 연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 방의 개수가 없는 경우를 과밀 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인이 방 하나를 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커플이 방 하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18세 이상 또는 1인가구가 방 하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12~17세의 동성이 방 하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앞선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12~17세의 싱글 1인당 방 하나, 12세 미만 아동 두명이 방 하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과밀에 해당한다. 즉, 12세 미만 아동은 2인이 방 하나, 12~17세의 동성은 방 하나, 이성은 각자의 독립된 방, 그리고 18세 이상은 독립된 방 하나, 단 커플인 경우는 2인 1실이 기준이다.

두 번째 기초 시설이 부족한 아동가구 비율은 가구 내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조, 샤워시설이 없거나 실내에서 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또는 둘 다 부족한 가구의 아동(0~17세) 비율을 의미한다. 즉 실외에 설치된 경우나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유하는 경우, 수세식이 아닌 경우가 기초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 번째 환경문제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비율인데 이는 해당 지역에 환경문제가 있다고 자체보고(self-reported)한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0~17세)의 비율이다. 이때 지역에 환경 문제가 있다고 자체 보고한 가구라는 것은 가구 응답자나 가구를 대표하는 이가 이웃이나 거리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오염, 오물 또는 기타 환경 문제를 보고한 경우이다.

(1) SF.1.5.1. 과밀가구 아동 비율(Children in overcrowded households, 2017)

OECD 가족구조 지표 SF1.5에 해당하는 내용은 한국 자료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료없음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보고 되지 않고 있으면서 현재의 지표 산출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보고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사 통계를 검토하면 지표를 보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다.

첫 번째 지표인 과밀가구 아동 비율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와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 두개가 있다. 후자인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만 0~18세인 아동청소년이 포함되고 양육자가 양부모, 한부모, 조손 등으로 구분되며 방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빈곤가구를 과표집하는 조사 특성과 표본수가 저소득 1,500, 일반 2,500가구에 불과하고 조사주기가 5년에 한번인 한계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 이에 비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조사가 되고 표본수가 6만가구 이상(2021년 조사는 5만가구 이상)인 점 등이 강점이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는 특수가구 조사로 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가구 구성형태, 주 보호자와의 관계, 아동가구원 주거밀도, 위생상태가 추가되었다. 가구구성 형태는 주 양육자에 따라서 양부모, 한부모, 조부모, 기타 친인척, 그리고 아동만으로 구성된 경우인 5가지로 나누어진다. 주거밀도는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침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여 혼자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몇 명이 함께 사용하는지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지표 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상태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를 보면, 아동 및 청소년 가구원 침실 독립 사용여부가 확인된다. 혼자 사용하는 경우 75.6%, 아닌 경우 24.4%로 나타난다(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453). 문제는 이 수치를 그대로 OECD 가족구조 지표 SF1.5의 첫 번째 과밀 지표로 보고할 수 있는지이다. 이유는 OECD에서 정의한 과밀과 국내의 기준에서 연령기준이 다르고 또한 현재 주거실태조사에서 자료 산출 방식에서는 연령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OECD는 12세를 기준으로 이성인 경우 독립된 침실을 사용하는지가 과밀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국내 최저주거기준에서는 이보다 엄격한 8세를 기준으로 이성이 독립된 침실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준을 적용하던 OECD 기준을 적용하던 현재 주거실태에서 특수조사로 추가조사되어 산출된 자료를 가지고는 과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혼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24.4%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최저주거기준의 가구원수와 면적, 방수 기준을 적용한 기준미달가구 비율과의 큰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2020년 기준 아동이 포함된 가구 전체에서 침실기준 미달은 0.6%에 불과하다. 즉, 현재 통계보고서에서 혼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조사된 24.4% 중 8세 또는 12세 이상이면서 이성인 아동·청소년이 함께 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과밀로 볼 수있기 때문이다.

〈표 Ⅱ-3〉 아동가구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세부

(단위: %)

구분		최저주거 기준미달	면적 기준미달	시설 기준미달	침실 기준미달
일반가구 전체		4.6	3.3	2.8	0.2
아동 포함 가구		2.7	2.5	0.2	0.6
	양부모가구	2.5	2.2	0.1	.
	한부모가구	6.0	5.3	0.8	1.9
	조손가구	2.5	2.3	0.6	1.4
	기타가구	11.5	11.5	9.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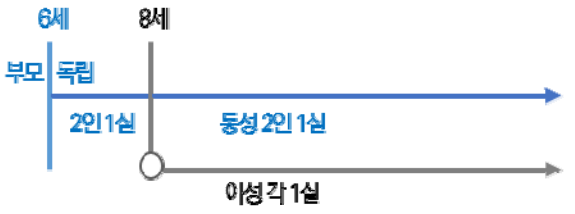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2020.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표 Ⅱ-4〉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수(인)	표준 가구구성주[1)]	실(방) 구성주[2)]	총주거면적(㎡)
1	1인가구	1K	14
2	부부	1DK	26
3	부부+자녀1	2DK	36
4	부부+자녀2	3DK	43
5	부부+자녀3	3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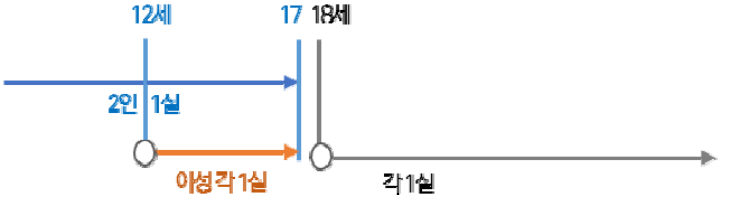
주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주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 가능한 방의 수
출처: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최저주거기준

[그림 Ⅱ-1] 국내 연령별 독립 침실 기준



출처: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Ⅱ-2] EU 연령별 독립 침실 기준



출처: EU 과밀기준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SF.1.5.2. 기초 생활시설이 결여된 아동가구 비율(Children in households that lack basic facilities, 2017)

두 번째 지표인 기초생활시설 미달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한국

자료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 첫 번째 지표와 마찬가지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다른 여타의 조사는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기초 생활시설에 대한 질문문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표 Ⅱ-5〉 주요 실태조사별 아동·청소년가구 주거 지표 생성 관련 문항 비교

	주거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조사대상	일반가구	빈곤가구 과표집	청소년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표본수	±6만가구(2017년~)	저소득1,500; 일반 2,500	가구 5,027; 청소년 7,170
아동청소년	모든 가구원 연령	만0~18세	만9~24세
조사주기	매년	5년(2008, 2013, 2018)	3년(2017, 2020)
양육자	21년부터 추가조사에서 구분*	양부모; 한부모·조손	양부모; 한부모; 조손; 기타
점유형태	o	o	o
주택유형	o	o	o
방수	o	o	x
지상여부	o	x	o
면적	o	x	x
부엌	o	x	x
화장실	o	x	x
목욕시설	o	x	x

*주: 양부모; 한부모; 조손; 기타 친인척; 아동가구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 각 실태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1년부터 시작된 아동 및 청소년가구 추가조사 문항을 통해서는 기초시설 미달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주거실태조사가 기초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이 가구원수별 면적, 방수, 시설 설치 및 단독 사용 여부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최저주거기준 중 시설 미달 비율을 분석하여 보고하면 OECD 기준과 부합한다.

(3) SF.1.5.3. 환경적 문제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가구 비율(Children living in area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2017)

세 번째는 이웃이나 거리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오염, 오물 또는 기타

환경 문제를 보고한 경우이다. 주거실태조사 설문항목에 소음, 방범, 위생상태 등에 대한 불량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 여러항목을 집계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21년부터 시작된 추가조사에서 마지막 설문항목이 주택 내 위생상태에 대한 질문이다. "귀 가구는 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미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주택 내 벌레, 곰팡이 등 위생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예로 답한 경우를 보고할 수 있다. 2021년도 통계보고서에서 주택의 위생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답한 경우는 2.4%이다. 문제는 OECD 기준과의 정합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주거부문 세가지 지표의 정의와 현황을 통해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한국 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 주거부문은 OECD 기준과 정의에 부합하는 자료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공식적인 기관에서 조사하고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자료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횡적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고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재 보고 수준은 "누락"으로 판정하지만, 자료의 공식성과 지속가능성, 횡적 대표성을 검토하면 향후 보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사는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21년도 특수가구 추가조사로 아동 및 청소년 가구 조사 항목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SF1.5의 첫 번째 지표는 과밀아동가구 비율이다. 현재 주거실태 특수가구 추가조사로 질문하는 항목은 국내의 최저주거기준이나 OECD 정의 모두 부합하는 방식의 질문이 아니므로, 질문 내용에 아동의 연령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OECD 기준을 준용한다면 12세 이상 이성 자녀가 독립된 방을 사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국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한다면 8세 이상 이성 자녀가 독립된 방을 사용하는지를 설문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는 경우 쉽게 보고가 가능하다.

두 번째 지표인 기초생활시설 미달의 경우는 이미 주거실태조사에서 자세하게 최저주거기준 시설에 대한 미달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사를 추가할 필요는 없으나 아동 및 청소년가구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에 추가하거나 계산하여 추가로 보고해야할 것이다.

세 번째 지표인 환경적 문제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조사항목을 추가하거나 현재 항목을 재가공하여 보고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즉, 아동 및 청소년가구 추가질문의 마지막 항목이 위생상태인데, 이는 주택 내부의 위생상태를 문의하고 있다. 따라서 항목을 추가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생활하는데 환경적 문제(오염, 소음, 환경문제)가 있는 곳에 거주하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조사항목 중 환경과 관련된 질문이 여러개 있긴 하다. 주택의 내부 소음(층간소음), 외부 소음(차량 경적, 공사장 소음 등)에 대한 불량 정도를 문의하는 것과 함께 주거환경 만족도에서 자동차 경적, 집주변 소음정도에 대한 만족도 항목과 대기오염 정도에 대한 만족도 항목이 있다. 그러나 이를

모두 병합하여 환경적 문제가 있는 곳에 거주하는 아동 비율을 OECD에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면, 주거실태조사 특수가구 조사(아동 및 청소년가구)의 제일 마지막에 추가적인 질문을 한 개 더 생성하여 보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6) 가족과 아동 지표 요약

가족과 아동 지표 중 SF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는 적절히 보고되고 있으나, 그 외의 지표들은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 지표 중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 및 가구 유형은 자녀의 연령이 OECD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SF1.2과 SF1.3의 지표들도 대부분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통해 적절히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SF1.5의 지표들은 현재로서는 자료가 부재하지만, 주거실태조사의 일부 문항을 개선하거나, 신규 문항을 추가함으로서 향후 업데이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6〉 가족과 아동(Families and Children)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 (Family size and composition)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2015)	O	개선필요: 자녀연령 25세 이하로
		가구 유형(Types of household, 2011)	O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 2015)	X	누락: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SF1.2	가족에서의 아동 (Children in Families)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18)	X	누락: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활용
		아동의 거주 형태 변화(Trends i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05 to 2018)	X	
		동거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추이(Trends in children living with cohabiting parents, 2007 and 2018)	X	
SF1.3	아동의 거주 형태 (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age)	X	누락: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활용
		상대소득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relative income poverty status)	X	누락: 가계금융복지조사 활용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모의 학력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mother's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X	누락: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활용
		유소년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 2013-14)	X	
SF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Child and young adult population, 2015)	O	적절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Age distribution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2015)	O	적절
		아동 인구 추이(Trends in the child population, selected OECD countries)	O	적절
		유소년 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 1990 and 2015)	O	적절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Estimated (1950-2015) and projected (2016-2050) youth dependency ratios, selected OECD countries)	O	적절
SF1.5	아동의 주거 여건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과밀거주 아동(Children in overcrowded households, 2017)	X	누락: 주거실태 조사 활용
		기초생활시설 부족 아동(Children in households that lack basic facilities, 2017)	X	
		환경 문제 있는 지역 거주 아동(Children living in area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2017)	X	

나. 출산력 지표

출산력 지표(Fertility indicators)는 SF2.1 출산율(Fertility rates), SF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SF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SF2.4 혼외출산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SF2.5 무자녀(Childlessness)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 SF 2.1 출산율(Fertility rates)

출산율 지표는 합계출산율과 코호트완결출산율, 출산 순위별 출생 분포로 구성되어 있다.

(1) SF 2.1.1.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출산율 지표 중 합계출산율은 현재 1970년, 1995년, 2020년의 TFR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제지표에 부합하게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다.

(2) SF 2.1.2. 코호트완결출산율(Completed cohort fertility)

코호트완결출산율은 전체 재생산 기간(reproductive lives) 동안 특정 코호트에 속하는 여성이 출산한 평균 자녀 수로 정의되어 있고, 1950년, 1960년, 1970년생(또는 가능한 가장 최근) 여성 코호트에 대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한국 자료는 OECD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인구주택총조사나 가족과 출산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조사)와 같이 출산 이력(지금까지 출산한 자녀 수)을 조사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 지표는 Human Fertiliy Databse[8]의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Human Fertiliy Databse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국가 중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OECD 지표에 한국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SF 2.1.3.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1980 and 2020): 첫째아 출생 비율, 셋째아 또는 그 이상 출생 비율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는 1980년과 2020년 각 년도의 출생아 중 첫째아의 비율 그래프와 셋째아 또는 그 이상 출생아의 비율 그래프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 OECD 자료에 한국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계청의 인구동태(출생, 사망)의 출산순위별 출생[9]에 1981년부터 통계자료가 있어 이를 활용해 지표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OECD에서 제시한 이 지표는 자료 출처가 Eurostat Database로 유럽 국가의 자료만 포함하고 있어 한국뿐 아니라 유럽 이외의 여러 국가 또한 이 지표에서 제외되어 있다.

(4) SF 2.1.4.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2020): 출생순위별 출생 비율

출산율의 마지막 지표인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는 2020년 전체 출생아 (100 퍼센트) 중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또는 그 이상 순위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 구성비를 보여준다. 이 지표에서 한국 통계는 제외되어 있다. 이 또한 앞서 살펴 본 통계청의 인구동태(출생, 사망)의 출산순위별 출생[3] 자료를 활용해 지표 산출이 가능할 수 있다. 이 지표 역시 SF 2.1.3와 동일한 출처의 자료를 활용해 유럽 국가의 통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지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8) Human Fertility Database. Data by country. https://www.humanfertility.org/
9) KOSIS 홈페이지. 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vw_cd=MT_ZTITLE&list_id=A2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 SF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이 지표는 이상 자녀 수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OECD는 이상 자녀 수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ideal general number of children)'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와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 사이의 차이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규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SF.2.2.1.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OECD의 이상 자녀 수 지표 중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는 남성 그래프와 여성 그래프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상 자녀 수 지표를 OECD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표에서 'OECD 22 평균'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데이터가 가능한 OECD 국가의 평균(average across OECD countries with available data)'으로 정리해 놓았고 어느 국가의 데이터가 포함되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OECD Family Database). 그러나 현재 한국의 데이터 상황을 검토해 보면, OECD 22개국 자료 중 한국은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와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몇 명의 자녀가 있으면 이상적인가'로 질문하지만, 이 지표에서 의미하는 바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로 Eurobarometer 조사에서 이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를 질문하여 유럽 국가는 활용 가능한 자료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표의 출처 또한 Eurobarometer이고 OECD 22개 국가 평균과 함께 EU의 평균도 제시하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

한국에서 2018년까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행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해당 질문 항목이 있다: "귀하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이 조사는 15~49세 기혼 여성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OECD에서 제시한 15~64세의 이상 자녀 수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해 산출하기에는 연령과 성별 측면에서 부족한 자료이다. 또한 2018년 조사 이후 개편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 항목이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아 이 지표에 대한 자료를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2) SF.2.2.2.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ideal general number of children, 2011)

OECD 지표 중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지표는 15~64세 여성의 이상 자녀 수이다. 이 또한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 자료 제시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 자료의 포함 여부는 불분명하다.

한국은 이 자료 산출을 위해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OECD와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OECD 지표에서 제시하는 연령과 「가족과 출산 조사」의 대상 연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과 출산 조사」 항목 중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가 2021년에 「가족과 출산 조사」로 개편이 되면서 조사 대상에 기혼 여성뿐 아니라 미혼 여성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과 출산 조사」의 대상 연령이 19~49세로 한정되어 있어서 OECD에서 제시하는 15~64세의 여성의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지표와 동일한 지표 산출을 어렵다.

〈표 Ⅱ-7〉 이상 자녀수 항목 조사 변경 내용

조사명	이상 자녀 수 조사 항목	조사 대상	대상 연령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귀하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싶으십니까? ①이상자녀수: 총___명 ②잘 모르겠다	기혼 여성	15~49세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이상자녀수: 총___명 ②잘 모르겠다	미혼/기혼 남녀	19~49세

자료: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외(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은 이상 자녀 수를 OECD에 보고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KOSIS에서 '이상자녀수'에 대한 통계[10]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활용한 자료로, 해당 조사의 대상인 19~49세 응답자의 이상적인 자녀의 수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3) SF.2.2.3. 최종적인 가족 규모(Mean ultimately intended family size)

최종적인 가족 규모는 25~39세 여성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로 이미 출산한 자녀 수와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를 더해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이 지표 또한 앞의 이상 자녀 수와 동일하게 유럽 국가를 제외한 국가는 OECD 22개국의 평균으로 제시되어 있어 한국 자료의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0) KOSIS 홈페이지. 이상자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AH038&conn_path=I2

한국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항목 중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입니까?” 응답과 현재 자녀 수 자료를 활용해 지표 산출이 가능해 보인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대상은 19~49세로 OECD의 최종적인 가족 규모 지표의 연령 기준인 25~39세 여성을 포함하고 있어 이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이렇게 기혼 여성뿐 아니라 미혼 여성까지 포함해 해당 연령의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2021년도에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OECD와 동일한 지표 산출은 2021년 자료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SF.2.2.4. 교육정도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level of education)

이어지는 지표인 교육정도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5) SF.2.2.5. 취업여부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working status)

교육정도별 이상 자녀 수 지표와 마찬가지로 취업여부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자료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6) SF.2.2.6.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사이 격차(Differences between general and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와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의 격차는 두 가지 지표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있어야 산출이 가능하다. 또한 이 OECD 지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산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현재까지는 연령대와 성별을 모두 포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구분해 조사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OECD 산출 지표와 동일한 지표를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 지표 또한 유럽 국가 중심 지표로 Eurobaromter 2011 자료를 활용하였고, 그 외의 국가는 OECD 22 평균 수치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검토 결과 자료 불충분으로 자료 제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여러 전국 조사 중 하나의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 자녀 수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이다.

3) SF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에서는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청소년 출산율 등을 주요 지표로 다루고 있다.

(1) SF2.3.1.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Mean age of women at birth)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지표는 KOSIS에 제공된 인구동향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해 OECD에 제출하고 있다. 다만, OECD는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을 1970년, 2000년, 2020년 또는 그 이후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2000년과 2020년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출산시 모의 연령 자료를 KOSIS에서 찾아보면 1993년도부터 있는 것으로 확인[11]되어, 1970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자료는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SF2.3.2.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Mean age of women at first birth)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지표는 2000년과 2020년 또는 최근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KOSIS 자료를 활용해 OECD에 제출하고 있다. 그래프에는 한국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엑셀 자료에는 한국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프에 대한 설명에서도 한국의 첫째아 출산이 모의 평균 연령이 4년 사이에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료 출처에도 한국의 KOSIS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 이 지표에 대해 한국의 적절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SF2.3.3. OECD 국가의 출산시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율

OECD 국가의 출산시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율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OECD 국가 전체의 평균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2000년 이후의 자료를 보고하고 있어 적절한 자료가 OECD 국가 평균 지표 산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SF2.3.4. 청소년 출산율(Adolescent fertility rate)

한국의 청소년 출산율(Adolescent fertility rate)도 KOSIS 자료를 활용하여 OECD에 제출하고 있다. 이 지표에 대해 OECD는 1970년, 1995년, 2020년 또는 그 이후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은 2020년 자료만 제시하고 있다. 이는 KOSIS에서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 15~19세' 자료가 2000년도부터 확인[12]되어 1970년과 1995년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11) KOSIS 홈페이지. 시도/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0&vw_cd=MT_ZTITLE&list_id=A2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12) KOSIS 홈페이지. 시군구/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5) SF2.3.5. 연령별 출산 프로파일(Age-fertility profiles)

연령별 출산 프로파일에서는 15~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5세 단위로 구분하여 국가마다 1970년, 1995년, 2020년 또는 그 이후에 대한 수치를 제시한다. 앞서 확인했듯이 한국은 1970년 자료가 없는 관계로 1970년은 보고하지 않고, 1995년과 2020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 SF2.4 혼인 외 출생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1) SF2.4.1. 혼인 외 출생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보고된 한국의 혼인 외의 출생 비율은 출생아의 부모가 서로 법적으로 혼인한 사이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현재 보고하는 지표는 KOSIS의 시도/법적 혼인 상태별 출생자료[13]의 혼인 외의 자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2) SF2.4.2. 혼인 외 출생 비율 추이(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ver time)

OECD의 혼인 외 출생 비율 추이는 1970년, 1995년, 2020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혼인 외 출생에 대한 자료는 KOSIS에 1981년부터 제시되어 있어서 1970년 혼인 외 출생 비율은 보고하지 않고 있다.

5) SF2.5 무자녀(Childlessness)

무자녀 지표는 40-44세 무자녀 여성, 최종 무자녀, 최종 무자녀와 완결 출산율로 이루어져 있다.

(1) SF2.5.1. 40-44세 무자녀 여성(Childless women at age 40-44, mid- 1990s and 2010(or latest available year))

40-44세 무자녀 여성 지표는 40-44세 여성 중 출산을 하지 않은 비율을 1990년대 중반과 2010년(또는 최근)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 지표에 대한 자료를 OECD에 보고하고 있는데, 1990년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Census, 센서스) 결과를 이용한 자료이다.

다만,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센서스의 출산 자녀 수 질문 항목의 응답 대상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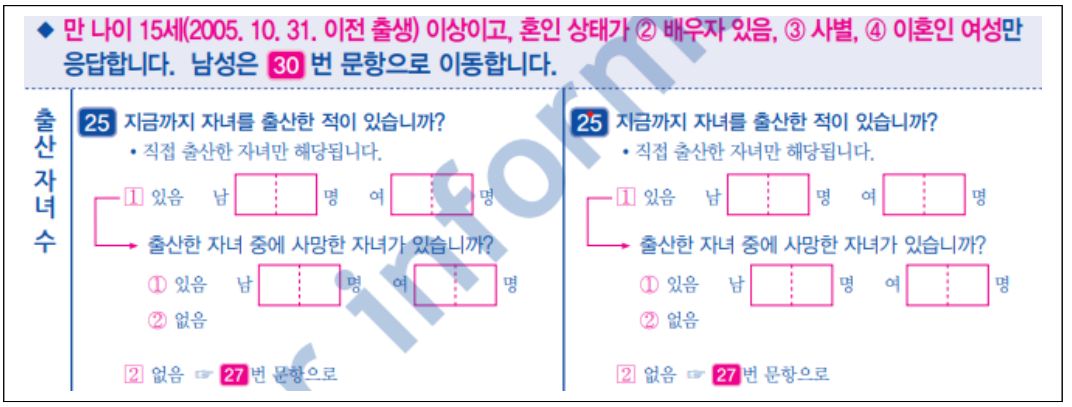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vw_cd=MT_ZTITLE&list_id=A2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13) KOSIS 홈페이지. 시도/법적혼인상태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6&vw_cd=MT_ZTITLE&list_id=A2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혼인 상태가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인 여성만 응답’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OECD에 제시한 자료가 기혼 여성(현재 혼인 상태가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인 여성)의 무자녀 비율로 보인다. 그러나 OECD에서 활용하는 지표에는 혼인 상태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해당 연령 여성의 무자녀 비율을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미혼이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질문 구조를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다양한 변화 속에서 혼인 기준에 따른 구분으로 무자녀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판단이 생기면, 출산 경험에 대한 질문 시 혼인 상태에 대한 기준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Ⅱ-3]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질문 항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자료실〉조사관련자료〉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국문조사표〉일반조사표. https://www.census.go.kr/dat/srd/srdDetail.do

(2) SF2.5.2. 최종 무자녀(Definitive childlessness)

OECD의 최종 무자녀 지표는 출생연도가 1930년부터 1970년 사이인 여성의 출생연도를 5년 간격으로 구분한 코호트별 최종 무자녀 여성의 비율인데, 이에 대한 한국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코호트별 무자녀 비율은 센서스 조사의 출산 자녀 수 자료를 활용해 산출 가능해 보이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이 자료 활용 시 미혼 여성이 제외된 수치를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3) SF2.5.3. 최종 무자녀 비율과 완결출산율(Definitive childlessness and completed fertility rates)

최종 무자녀 비율과 완결출산율은 1970년 출생 여성의 최종 무자녀 비율과 완결출산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지표의 자료는 출처에 표시되어 있는 Human Fertiliy Databse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표 검토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Human Fertiliy Databse의 프로젝트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14] 이 지표에 한국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완결 출산율과 무자녀 비율(결혼 상태 구분의 한계가 있지만)은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면 이 지표에 한국의 자료가 포함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6) 출산력 지표 요약

출산력 지표는 전반적으로 행정 통계로 산출되는 출생/출산에 대해서는 적절히 보고되고 있거나 보완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상 자녀 수와 같이 견해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SF2.1 출산율에 관한 지표는 통계청 연령별 출산율과 통계청 출산순위별 출생 자료를 활용해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출산율 자료는 모두 제공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지표에서는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조사를 통해 산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는 조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질문 항목을 추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대상 연령이 19~49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OECD 지표가 15~64세에 대한 자료라는 점에서 연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제적 비교를 위해 OECD 지표에 적절한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조사」 또는 「가족실태조사」 등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사 중 조사 대상 연령 범위가 더욱 포괄적인 조사에서 이상 자녀 수에 대한 문항을 신설하여 조사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은 모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혼인 외 출생 비율 역시 자료가 없는 연도를 제외하고는 국제 지표에 적절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무자녀 지표에 대해서는 여성의 결혼 상태와 관계 없는 무자녀 비율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 Human Fertility Database. Data by country. https://www.humanfertility.org/

〈표 II-8〉 출산력 지표(Fertility indicators)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SF2.1	출산율 (Fertility rates)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20)	O	적절
		코호트완결출산율 (Completed cohort fertility for women born in 1950, 1960 and 1970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인구주택총조사, 가족과 출산 조사 등 활용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첫째아, 셋째아 또는 그 이상 출생 비율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1980 and 2020 -Proportion of births that are first and third or higher births)	X	누락: 통계청 출산순위별 출생 활용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출생순위별 출생 비율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2020 -Proportion of birth by the rank of the birth)	X	누락: 통계청 출산순위별 출생 활용
SF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X	자료없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Ideal general number of children, 2011)	X	자료없음
		최종적인 가족 규모 (Mean ultimately intended family size, 2011)	X	자료없음: 2011년 누락: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활용
		교육정도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level of education, 2011)	X	자료없음
		취업여부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working status, 2011)	X	자료없음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사이 격차 (Differences between general and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X	자료없음
SF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Mean age of women at birth, 1970,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2000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Mean age of women at first birth,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OECD 국가의 출산시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율 (Average OECD fertility rate by mother's age at childbirth)	O	적절
		청소년 출산율 (Adolescent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5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연령별 출산 프로파일 (Age-fertility profiles, 1970, 1995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5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SF2.4	혼인 외 출생 비율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혼인 외 출생 비율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	적절
		혼인 외 출생 비율 추이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ver time)	O	적절: 1995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SF2.5	무자녀 (Childlessness)	40-44세 무자녀 여성 (Childless women at age 40-44, mid-1990s and 2010 (or latest available year))	O	개선필요: 미혼과 기혼의 구분없이 해당 연령 여성의 무자녀 비율 산출
		최종 무자녀 (Definitive childlessness)	X	누락: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최종 무자녀와 완결 출산율 (Definitive childlessness and completed fertility rates)	X	누락: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다.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지표는 SF3.1 혼인율과 이혼율(Marriage and divorce rates), SF3.2 가족 해체와 아동(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SF3.3 동거율과 다른 유형의 파트너쉽(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SF3.4 가정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으로 구성된다.

1) SF3.1 혼인율과 이혼율(Marriage and divorce rates)

혼인율과 이혼율에 관한 SF3.1 지표는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동성혼에 대한 기초 현황(Basic statistics on same-sex marriages), 조이혼률(Crude divorce rate),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Distribution of marrying persons by previous marital status) 등 다섯 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1) SF3.1.1.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1,000명당 특정 년도에 발생한 혼인건수로 정의되는데, 한국의 경우, 인구동향조사(2019)를 활용하고 있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SF3.1.2.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지표도 인구동향조사(2019)를 활용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SF3.1.3. 동성혼에 대한 기초 현황(Basic statistics on same-sex marriages)

동성혼에 대한 기초 현황(Basic statistics on same-sex marriages) 지표는 현재 부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동성혼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표는 '적절(해당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4) SF3.1.4. 조이혼률(Crude divorce rate)

조이혼률(Crude divorce rate) 지표 역시 인구동향조사(2019)를 활용하고 있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SF3.1.5.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Distribution of marrying persons by previous marital status)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Distribution of marrying persons by previous marital status) 지표는 현재 누락되어 있는데, 인구동향조사를 활용하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2) SF3.2 가족 해체와 아동(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SF3.2는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duration of the marriage),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number of children involved),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and non-parent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등 네 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에서 '자녀'는 이혼 신청서 제출 당시 양 쪽 중 어느 부모이든지 의존하고 있는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정의되며, 이전의 어떤 파트너십에서의 아동 역시 포함된다. 또한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에서 '부모'와 '비부모(non-parent)'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World Value Survey에서 '자녀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최소한 1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부모'로 간주하며, 자녀를 가진 적이 없다고 응답한 자를 '비부모'로 분류한다(OECD Family Database, 2023[15]).

(1) SF3.2.1.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duration of the marriage)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duration of the marriage) 지표는 UN Demographic Yearbook(2018) 자료를 활용하였고, 한국의 경우 모두 적절히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2) SF3.2.2.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number of children involved)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number of children involved) 지표 역시 UN Demographic Yearbook(2018)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적절히 업데이트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SF3.2.3.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and non-parent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and non-parent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지표는 World Values Survey(2010)를 활용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모두 적절히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4) SF3.2.4.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지표도 World Values Survey(2010)를 활용하였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15) OECD Family Database(SF3.2)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3) SF3.3 동거율 및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확산 비율(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이 지표는 동거 비율 및 결혼 또는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이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이다. 한국에는 현재 결혼 이외의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제도가 없고, 동거 관계는 인구센서스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1) SF3.3.1.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11)

파트너십과 동거는 20세 이상 개인의 파트너십 상태를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 지표를 생성하고 있다: 1) 결혼하거나 파트너십 제도에 등록한 파트너와 함께 사는 비율(living with a partner married or in a civil or registered partnership), 2) 동거 비율(living with a partner cohabiting), 3) 파트너와 살지 않는 비율(not living with a partner). 이에 대한 OECD 지표에서 한국 자료는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한국은 동반자 등록제도가 없고, 인구주택총조사(Census, 센서스)에서 동거 관계를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 결과 '자료없음'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 지표에서 첫 번째 분류가 '결혼하거나 파트너십 제도에 등록한 파트너와 함께 사는 비율'이기 때문에 한국은 20세 이상 중 결혼한 상대와 함께 사는 비율을 제공하고 각주에 한국의 자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마다 파트너십 제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표의 각주에는 여러 국가마다의 자료가 어떠한 파트너십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e)에서 뉴질랜드는 '결혼하거나 파트너십 제도에 등록한 파트너'는 '법적 혼인인 경우만'을 포함한다는(For New Aealand, 'Married or in a cibil or registered partnership' includeds those that are legally married only.) 내용를 각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지표의 자료 중 첫 번째 집단에 해당하는 '결혼하거나 파트너십 제도에 등록한 파트너와 함께 사는 비율'에 한국도 각주를 활용해 '결혼하거나(married)'에 해당하는 비율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비율'을 나타내는 세 번째 집단에 대한 자료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SF3.3.2. 교육수준별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 and cohabitation by level of education, 2011)

교육수준별 파트너십과 동거 지표도 위에서 검토한 파트너십과 동거 지표에 대한 검토 결과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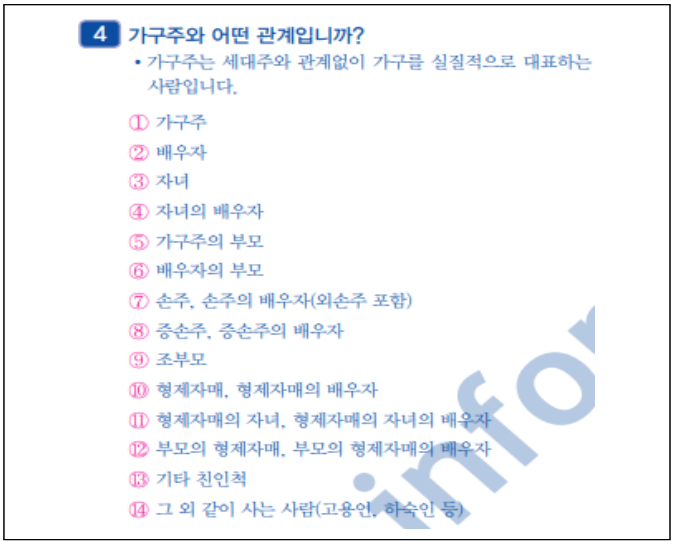
(3) SF3.3.3. 부부(커플) 가구의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 유무(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for couple households, 2011)

마지막 지표는 부부(커플) 가구의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 유무로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자녀 유무에 대한 지표이다. 즉,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로 분류되는 1) 결혼하거나 파트너십 제도에 등록한 파트너와 함께 사는 가구(married or in a civil or registered partnership households), 2) 동거 가구(cohabiting households)에 대해 자녀가 있는 비율과 없는 비율을 제시한다.

한국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거 가구를 구분해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재하다. 여기에서도 앞의 지표 검토 결과와 같이 결혼한 가구에서 자녀 유무의 비율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혼인신고 이외에 파트너십 등록제도는 없기 때문에 파트너십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동거에 대한 자료는 생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센서스는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 관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동거 관계의 경우는 가구주와의 관계 선택지 중 '배우자' 또는 '그 외 같이 사는 사람'을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는 혼인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 외 같이 사는 사람은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센서스 조사에서 세분화 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동거 가구에 대한 통계를 생산한다면 OECD 지표에 부합하는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Ⅱ-4]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질문 항목


4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가구주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주, 손주의 배우자(외손주 포함)
⑧ 증손주, 증손주의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⑫ 부모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⑬ 기타 친인척
⑭ 그 외 같이 사는 사람(고용인, 하숙인 등)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자료실〉조사관련자료〉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국문조사표〉일반조사표. https://www.census.go.kr/dat/srd/srdDetail.do

4) SF3.4 가정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SF3.4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과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Attitudes among women towards partner violence) 지표로 구성된다.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신체적, 성적 폭력에 대해 자기 보고한(self-reported) 평생 유병률로 집계된다. 또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는 15~49세 여성이 다양한 사유(예: 만약 아내가 음식을 태우거나, 남편과 말다툼을 하거나,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밖에 나가거나, 자녀를 방임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비율로 측정되었다. 해당 지표는 OECD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에서 추출되었는데, 이는 World Value Survey와 UNICEF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된 것이다.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는 개발도상국에서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OECD Family Database, 2023[16]).

(1) SF3.4.1. 파트너에 의한 폭력(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한국의 경우, 파트너에 의한 폭력(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지표는 여성폭력실태조사로 업데이트 가능하므로 '누락'으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문항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지금까지 누군가에 의해 신체적 폭력 행위를 경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당시 배우자(헤어진 배우자 포함)에 의해 폭력을 경험한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16) OECD Family Database(SF3.4)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그림 Ⅱ-5]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폭력 피해 경험 질문 항목

7 귀하는 **지금까지** 누군가에 의해 다음의 **신체적 폭력**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항 목		1 있다	2 없다
① 몸을 다치게 하려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Q7_1		
② 칼 등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Q7_2		
③ 밀치거나 힘껏 떠미는 행위	Q7_3		
④ 머리카락을 움켜잡거나, 당기는 행위	Q7_4		
⑤ 뺨을 때리는 행위	Q7_5		
⑥ 주먹이나 물건으로 때리는 행위	Q7_6		
⑦ 발로 차거나, 물거나, 끌고 다니는 행위	Q7_7		
⑧ 목을 조르거나, 숨이 막히게 하는 행위	Q7_8		
⑨ 화상을 입히는 행위	Q7_9		
⑩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Q7_10		

8 위의 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응답하신 항목이 있습니까? Q8

① 예 ☞ **8-1**로 이동 ② 아니오 ☞ **9**로 이동

8-1 귀하에게 위의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피해 당시의 관계를 기준으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가해자		1 남성	2 여성	3 잘 모름
① 당시 배우자(사실혼 포함)	Q8_1_1	4. 확인필요		
② 피해 이전 헤어진 배우자(사실혼 포함)	Q8_1_2			
③ 배우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 친척	Q8_1_3			
④ 피해 당시 사귀고 있던 사람	Q8_1_4			
⑤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서는 헤어졌던 사람	Q8_1_5			
⑥ 친구	Q8_1_6			
⑦ 학교나 직장 구성원	Q8_1_7			
⑧ 업무상 접하는 사람(거래처, 고객 등)	Q8_1_8			
⑨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	Q8_1_9			
⑩ 전혀 모르는 사람	Q8_1_10			
⑪ 기타 (적어주세요 :)	Q8_1_11			

출처: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2) SF.3.4.2.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Attitudes among women towards partner violence)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Attitudes among women towards partner violence) 지표는 OECD(2019)의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를 활용하고 있으며, 적절히 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5)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 지표 요약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 지표 중 SF3.2 가족 해체와 아동 지표 4개와 SF3.1 혼인율과 이혼율 중 조혼인율,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 조이혼율 등은 적절히 보고되고 있으나, 그 외의 지표들은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SF3.1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 지표는 인구동향조사를 활용하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또한 SF3.4 파트너에 의한 폭력 지표 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를 활용하면 한국 자료 생산이 가능하므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Ⅱ-9〉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SF3.1	혼인율과 이혼율 (Marriage and divorce rates)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1970, 1995, 2019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1990,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동성혼에 대한 기초 현황(Basic statistics on same-sex marriages in OECD countries)	X	해당없음
		조이혼률(Crude divorce rate, 1970, 1995, 2019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Distribution of marrying persons by previous marital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인구동향조사 활용
SF3.2	가족 해체와 아동(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duration of the marriage, 2017 or latest)	O	적절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number of children involved, 2017 or latest)	O	적절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and non-parents (16+ year-old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16+ year-old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various years)	O	적절
SF3.3	동거율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비율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11	X	누락: 기혼(married)에 해당하는 자료 제시 가능
			X	자료없음: 동거, 파트너 없음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교육수준별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 and cohabitation by level of education, 2011	X	누락: 기혼(married)에 해당하는 자료 제시 가능
			X	자료없음: 동거, 파트너 없음
		부부(커플) 가구의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 유무 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for couple households, 2011	X	누락: 기혼(married) 가구의 자녀 유무 자료 제시 가능
			X	자료없음: 동거 가구
SF3.4	가정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파트너에 의한 폭력(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X	누락: 여성폭력 실태조사 활용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Attitudes among women towards partner violence)	O	적절

3. 소결: 한국의 가족구조 지표 생산 방안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서 첫 번째 영역인 가족구조(Structure of Families) 지표는 가족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지표로, 아동과 관련된 인구학적 정보와 가족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구조는 가족과 아동(Families and Children), 출산력 지표(Fertility Indicators),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등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과 아동에서 SF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 지표들(아동과 청소년의 인구,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 아동 인구 추이, 유소년 부양비,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은 모두 적절히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출산력 지표 중 합계출산율, SF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 지표들(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OECD 국가의 출산시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율, 청소년 출산율, 연령별 출산 프로파일), SF2.4 혼인 외 출생 비율 지표들(혼인 외 출생 비율, 혼인 외 출생 비율 추이), 40-44세 무자녀 여성 등의 지표는 OECD 기준에 부합하게 보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에서는 조혼인율,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 조이혼률 지표는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SF3.2 가족 해체와 아동 지표들(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과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 지표도 적절히 보고되었다.

가. 개선필요

한편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지표들도 발견되었다.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 지표 중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와 가구 유형 지표가 현재 인구주택총조사(2010) 자료로 보고가 되었는데, OECD 정의에 부합하도록 자녀 연령 기준을 25세 이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최신 자료(2015년)로 수치를 업데이트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표 Ⅱ-10〉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개선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 (Family size and composition)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 (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2015	자녀연령 25세 이하로 수정
		가구 유형(Types of household), 2011	

나. 누락

다음으로 가족구조 지표 중 누락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에서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 지표는 현재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될 필요가 있다. SF1.2 가족에서의 아동 지표들(아동의 거주 형태, 아동의 거주 형태 변화, 동거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추이)과 SF1.3 아동의 거주 형태 지표들(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 모의 학력별 아동의 거주 형태, 유소년의 거주 형태)도 현재 누락되어 있으나, 아동가구통계 등록부를 통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아동의 거주 형태 지표 중 상대소득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면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SF1.5 아동의 주거 여건 지표들(과밀거주 아동, 기초생활시설 부족 아동, 환경 문제 있는 지역 거주 아동) 역시 현재 누락되어 있지만,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면 추후 한국 자료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F2.1 출산율 지표들(코호트완결출산율,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은 통계청의 연령별 출산율 및 출산순위별 출생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SF2.5 무자녀 지표 중 최종 무자녀 지표는 인구주택총조사 활용하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또한 SF3.1 혼인율과 이혼율 지표 중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는 인구동향조사 활용하면 생산이 가능하며, SF3.4 가정 폭력 지표 중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Ⅱ-11〉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누락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 (Family size and composition)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SF1.2	가족에서의 아동 (Children in Families)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18)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활용
		아동의 거주 형태 변화(Trends i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05 to 2018)	
		동거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추이(Trends in children living with cohabiting parents, 2007 and 2018)	
SF1.3	아동의 거주 형태 (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age)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활용
		상대소득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relative income poverty status)	가계금융복지조사 활용
		모의 학력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mother's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활용
		유소년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 2013-14)	
SF1.5	아동의 주거 여건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과밀거주 아동(Children in overcrowded households, 2017)	주거실태조사 활용
		기초생활시설 부족 아동(Children in households that lack basic facilities, 2017)	
		환경 문제 있는 지역 거주 아동(Children living in area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2017)	
SF2.1	출산율 (Fertility rates)	코호트완결출산율(Completed cohort fertility for women born) in 1950, 1960 and 1970 or latest available	인구주택 총조사, 가족과 출산 조사 등 활용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1980 and 2020	통계청 출산순위별 출생 활용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2020	통계청 출산순위별 출생 활용
SF2.5	무자녀 Childlessness	최종 무자녀(Definitive childlessness)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최종 무자녀와 완결 출산율(Definitive childlessness and completed fertility rates)	Human Fertility Databse 사용으로 누락
SF3.1	혼인율과 이혼율 (Marriage and divorce rates)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Distribution of marrying persons by previous marital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인구동향조사 활용
SF3.4	가정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파트너에 의한 폭력(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여성폭력실태조사 활용

다. 자료없음

마지막으로 가족구조 지표 중 자료가 없는 경우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F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지표들(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최종적인 가족 규모, 교육정도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취업여부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사이 격차)도 현재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상황이나, 일부 지표의 경우 가족과 출산조사 등을 활용하여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F3.3 동거율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비율 지표들(파트너십과 동거, 교육수준별 파트너십과 동거, 파트너십 상태와 부부가구의 자녀)도 현재는 자료가 없는 사례로 분류가 되었으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거 관련한 문항을 추가한다면 OECD 지표 기준에 부합하게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12〉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자료없음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SF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Ideal general number of children, 2011	
		최종적인 가족 규모 Mean ultimately intended family size, 2011	자료없음: 2011년 향후 가능: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활용
		교육정도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level of education, 2011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취업여부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working status, 2011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사이 격차 Differences between general and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SF3.3	동거율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비율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11	인구주택총조사
		교육수준별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 and cohabitation by level of education, 2011	인구주택총조사
		파트너십 상태와 부부가구의 자녀 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for couple households, 2011	인구주택총조사

제2절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1.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의 구성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지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는 아동 및 가족 유형별 고용상태(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등 두 가지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즉 아동이 있는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하여 고용상태와 시간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아동 및 가족 유형별 취업 현황' 영역에서는 부모 고용 형태에 따른 아동 현황, 모성 고용률,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률, 생애주기별 고용률,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변수들은 아동이 있는 가족, 특히 여성(모)의 노동시장 참여와 젠더 격차에 대한 내용이 포괄된다. 한편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영역에서는 성별 주당 근로 시간,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가족친화제도, 일·돌봄·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 출퇴근에 보낸 시간,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제시된다. 즉 이 영역에서는 주로 시간 차원에서 일·가족양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특히 아동의 연령과 가구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분포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표 Ⅱ-13〉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표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LMF,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아동 및 가족 유형별 취업 현황 (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1.2 모성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1.4 생애주기별 고용률(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대분류	중분류	지표
	근로 시간 및 돌봄 시간 (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2.1 성별 주당 근로시간 (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2.4 가족친화제도(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2.5 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 (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2.6 출퇴근에 보낸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 (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2. 한국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가. 아동 및 가족유형별 취업 현황

아동 및 가족 유형별 취업 현황(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지표는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LMF1.2 모성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LMF1.4 생애주기별 고용률(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LMF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로 구성된다.

1)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LMF1.1은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모든 성인이 미취업인 가구의 자녀(Children in jobless households, 2008, 2013 and 2018), 부부 가구 부모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couple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한부모가구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등 네 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여기서 활용되는 아동의 연령은 0~14세로 규정된다. 이 지표들은 아동의 관점에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아동 중에 특정 가구 혹은 특정 고용 형태의 가구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비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부모의 고용 형태 및 가구에 대한 정보는 LMF2.2와

LMF2.3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OECD Family Database, 2023[17]).

'모든 가구의 아동(Children in all households)'은 모든 유형의 가구에 있는 아동을 의미하며, 그 외의 누구든 그 가구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가구의 아동에서 가능한 고용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일함-모든 성인이 일함(Working - all adults working)'의 의미는 가구 내에 있는 모든 성인이 최소한 시간제 고용으로라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일함-최소 한 명의 성인이 일함(Working - at least one adult working, at least one adult not working)'은 최소한 한 명의 성인이 최소 시간제 고용으로라도 일을 하고 있으며, 최소한 한 명의 성인이 유급 노동에 임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무직-모든 성인이 일하지 않음(Jobless - all adults not working)'은 가구 내에 있는 모든 성인이 유급 노동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부부 가구의 아동(Children in couple households)'은 하나의 성인 커플(기혼 혹은 동거)과 함께 거주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커플 중 한 명이 아동의 부모이지만, 성인은 다른 친척(예: 손위의 형제자매나 조부모 혹은 비친족 보호자 등)이 될 수도 있다. 두 커플 이상의 가구나 커플이 아닌 성인 가구는 복합 가구(complex households)로 분류된다. 부부 가구의 아동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고용 형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일함-두 성인이 전일제로 일함(Working - two adults working full-time)'은 두 성인이 모두 전일제 유급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이다. '일함-전일제 및 시간제로 일함(Working - one adult working full-time, one adult part-time)'은 한 성인이 전일제로 일하고, 다른 성인이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일컫는다. '일함-한 명의 성인이 전일제로 일함(Working - one adult full-time, one adult not working)'은 한 명의 성인이 전일제 고용에 있고, 다른 성인은 유급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함-기타(Working - other)'는 위에서 언급한 유형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경우의 고용 형태를 포괄한다. 예컨대, 둘 다 시간제로 일하는 맞벌이 가구, 한 명이 시간제로 일하는 홑벌이 가구, 고용 형태 정보가 누락된 가구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미취업(Jobless - two adults not working)' 유형은 두 성인이 모드 유급 노동에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한부모 가구의 아동(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은 오직 한 명의 성인과 함께 사는 아동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한 명의 성인이 아동의 부모이지만, 그 성인은 다른 친척(예: 손위의 형제자매나 조부모 혹은 비친족 보호자 등)이 될 수도 있다. 이 유형에서는 '일함-전일제로 일함(Working - adult working full-time)', '일함-시간제로 일함(Working - adult working part-time)', '일함-정보 없음(Working - no information on hours)', '미취업

17) OECD Family Database(LMF1.1)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Jobless - adult not working)' 등 네 가지의 고용 형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일함(working)' 및 '고용(employment)'에 대한 정의는 ILO의 가이드라인을 차용한다. 즉, 특정한 조사 기간(reference period)에 최소 1시간 이상 유급 노동(paid employment)에 종사했거나, 자영업(self-employed)을 한 경우에 '고용됨(employed)'으로 분류한다. 또한 전일제와 시간제 고용의 구분은 OECD의 30시간 정의를 따른다. 다시 말하면, 주된 직장에서 평상시의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간제 고용으로 분류하고, 30시간 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일제로 구분한다.

(1) LMF1.1.1.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한국의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지표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지표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므로 '누락'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인구통계등록부,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인구동향(출생)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를 연계한 후, 총 19종의 관련 자료로 DB를 구축한 자료이다. 아동의 관점(child's perspective)에서 가구의 형태를 다양하게 살펴보는 LMF1.1 파트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국내 유일한 자료로 판단된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는 총 62개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아래의 변수들을 결합하면 부모의 고용 형태별 자녀의 비중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일부 항목은 '일함-기타' 혹은 '일함-정보없음'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도 포괄한다면, 더욱 상세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LMF1.1.2. 모든 성인이 미취업인 가구의 자녀(Children in jobless households, 2008, 2013 and 2018)

모든 성인이 미취업인 가구의 자녀(Children in jobless households, 2008, 2013 and 2018) 지표는 부모가 아닌 동거 성인의 취업 상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통해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LMF1.1.3. 부부 가구 부모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couple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부부 가구 부모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couple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지표 역시 아동가구통계등록부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LMF1.1.4. 한부모가구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한부모가구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지표도 마찬가지로 아동가구통계등록부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므로 '누락'으로 확인된다.

〈표 Ⅱ-14〉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제공 항목

No	항목명	속성	길이	항목설명
1	기준년도	문자	4	
2	아동_개인대체식별번호	문자	10	
4	아동_만연령	숫자	3	
7	부_개인대체식별번호	문자	10	
8	모_개인대체식별번호	문자	10	
16	가구유형코드	문자	7	1:일반가구, 2:집단가구, 3:외국인가구, 4:집단시설가구, 9:특별조사구
18	동거인	문자	1	1:아동의 부, 2: 아동의 모, 3:아동의 조부모, 4:아동의 형제자매, 5:기타친인척, 6:기타동거인
23	한부모 가구여부	문자	1	Y:한부모가구
24	다문화 부모여부	문자	1	Y:다문화부모
25	부_양육유형	문자	1	1:양육, 2:이혼, 3:사별/불명, 4:친인척동거, 5:남남동거, 6:집단시설거주
26	모_양육유형	문자	3	1:양육, 2:이혼, 3:사별/불명, 4:친인척동거, 5:남남동거, 6:집단시설거주
30	부_경제활동 형태	문자	10	1.일용외 임금근로자 2.일용근로자 3.자영업자
37	모_경제활동 형태	문자	2	1.일용외 임금근로자 2.일용근로자 3.자영업자
44	부모_맞벌이여부	문자	2	1:맞벌이, 2:외벌이, 3:기타

출처: 통계청(2021).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이용자 안내서

2) LMF1.2 모성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LMF1.2는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유자녀 여부별 모의 고용률 추이(Trends in maternal employment rates, 2006 to 2019), 막내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자녀 수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학력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0-2세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women with children aged 0-2, by maternity/parental leave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등 여섯 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모성 고용률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척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상세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OECD Family Database, 2023[18]).

첫 번째는 '시간제/전일제 고용 지위에 따른 최소 1명의 아동(0~14세)이 있는 여성(15~64세)의 고용률'이다. 여기서 '아동'은 0~14세 사이에 있는 가구 내 동거하는 모든 생물학적 자녀 혹은 입양한 자녀 모두를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여성이 같은 가구 내에 동거하지 않는다면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지표에서는 제외한다. 단, 몇 개의 예외적인 국가가 있는데, 캐나다, 한국, 미국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 0~17세까지 포함되었다. 또한 호주와 일본에서는 여성의 연령이 15~64세가 아닌, 15세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며, 한국은 15~54세로 보고되었다.

두 번째는 '막내 자녀 연령에 따른 최소 1명의 아동(0~14세)이 있는 여성(15~64세)의 고용률'이다. 막내 자녀 연령 범주는 대개 0~2세, 3~5세, 6~14세로 분류된다. 하지만 예외적인 국가들이 존재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일례로 한국은 0~6세, 7~12세, 13~17세로 분류되었다.

세 번째는 '가구 내 자녀 수에 따른 최소 1명의 아동(0~14세)이 있는 여성(15~64세)의 고용률'이다. 자녀 수는 1명, 2명, 3명 이상으로 분류된다.

네 번째는 '학력 수준에 따른 최소 1명의 아동(0~14세)이 있는 여성(15~64세)의 고용률'이다. 학력 수준은 ISCED 2011년 분류 체계에 따라 3개의 서열 변수로 구분되었다. '저학력'은 ISCED의 0~2(유아교육, 초등교육, 하위 중등교육) 수준인 경우로 정의된다. '중간 학력'은 ISCED의 3~4(상위 중등교육, 중고등교육, 고등교육) 수준으로, '고학력'은 ISCED의 5~8(단기 고등교육,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수준으로 분류된다.

(1) LMF1.2.1.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한국은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지표를 지역별 고용조사(Korean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2019년 자료를 통해 보고하고 있다. 대체로 비교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개선이 요구된다. 예컨대, OECD 기준에서 아동의 연령은 0~14세로 정의되고, 모의 연령은 15~64세로 한정하여

18) OECD Family Database(LMF1.2)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파악하고 있지만, 한국은 0~17세의 아동과 15~54세 여성의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국제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아래 표의 변수 리스트를 결합한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한다면, 자녀와 모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기준에 부합하게 추출할 수 있다. 단,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버전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는 근로시간 정보를 불포함하고 있으므로, '일함-정보없음'의 분류로 보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 LMF1.2.2. 유자녀 여부별 모의 고용률 추이(Trends in maternal employment rates, 2006 to 2019)

한편 유자녀 여부별 모의 고용률 추이(Trends in maternal employment rates, 2006 to 2019) 지표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도 추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3) LMF1.2.3. 막내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막내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지표는 지역별 고용조사(Korean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2019년 자료를 통해 보고되고 있는데, 위에 언급하였듯이 세부적인 개선 필요성은 존재한다.

(4) LMF1.2.4. 자녀 수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자녀 수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지표 역시 지역별 고용조사(2019년) 자료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연령 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LMF1.2.5. 학력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학력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지표는 현재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도 추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모의 학력 정보와 출산휴가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자료도 함께 연계가 된다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을 기준으로 분류된 자료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한다면 학력별 모의 고용률 지표를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다.

(6) LMF1.2.6. 0-2세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women with children aged 0-2, by maternity/parental leave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0-2세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women with children aged 0-2, by maternity/parental leave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지표는 현재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도 출산휴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추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표 Ⅱ-15〉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제공 항목

No	항목명	속성	길이	항목설명
1	기준년도	문자	4	
2	아동_개인대체식별번호	문자	10	
4	아동_만연령	숫자	3	
8	모_개인대체식별번호	문자	10	
16	가구유형코드	문자	7	1:일반가구, 2:집단가구, 3:외국인가구, 4:집단시설가구, 9:특별조사구
26	모_양육유형	문자	3	1:양육, 2:이혼, 3:사별/불명, 4:친인척동거, 5:남남동거, 6:집단시설거주
37	모_경제활동 형태	문자	2	1.일용외 임금근로자 2.일용근로자 3.자영업자

출처: 통계청(2021).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이용자 안내서

3)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LMF1.3은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19 or latest available),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변화(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05, 2012 and 2019 or latest available),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학력별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파트너 취업여부별 유배우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by partner's employment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등 네 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이 지표에서는 크게 두 개의 정보에 대해 주로 살펴본다(OECD Family Database, 2023[19]).

19) OECD Family Database(LMF1.3)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첫째는 '최소 1명의 자녀(0~14세)를 둔 파트너가 있는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이다. '파트너가 있는 여성(partnered women)'이란 동일한 가구 내에 배우자 혹은 동거하는 파트너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녀'는 생물학적이든 입양한 경우든 상관없이 동일한 가구 내에 함께 거주하는 0~14세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을 포괄한다. 자녀와 여성이 동일한 가구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지표에서는 제외한다.

둘째는 '최소 1명의 자녀(0~14세)를 둔 한부모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이다. '한부모 여성(single women)'이란 동일한 가구 내에 배우자 혹은 동거하는 파트너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자녀에 대한 정의는 위와 동일하다.

위의 두 경우는 모두 다른 성인(예: 손위의 형제자매나 조부모 혹은 비친족 보호자 등)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여성의 파트너십은 오직 배우자의 존재 여부에 근거하여 분류된다.

(1) LMF1.3.1.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19 or latest available)

한국의 경우 LMF1.3 지표 네 가지 모두 현재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면 업데이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19 or latest available) 지표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2) LMF1.3.2.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변화(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05, 2012 and 2019 or latest available)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변화(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05, 2012 and 2019 or latest available) 지표 역시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3) LMF1.3.3.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학력별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학력별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지표는 현재 보고되고 있지 않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도 모의 학력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해당 지표 생산이 불가능하다. 아동을 기준으로 성인의 정보를 추적하고, 모집단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지만, 한부모 가구 관련하여 가장 대표성 있는 데이터인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가공한다면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학력별 모의 고용률 지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LMF1.3.4. 파트너 취업여부별 유배우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by partner's employment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파트너 취업여부별 유배우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by partner's employment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지표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4) LMF1.4 생애주기별 고용률(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LMF1.4는 성별 연령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2018)과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and education, 2018) 지표로 구성된다. 이 지표들은 5세 단위별 인구 대비 고용률 자료에 기반하여 20~65세 남녀의 연령-고용 프로파일을 제시한다. 이때 고용(employment)은 ILO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특정 조사 기간에 유급 노동에 종사하였거나 자영업을 하는 모든 개인을 고용되었다고 분류한다. 생애주기별 고용의 패턴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남녀의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학력 수준은 ISCED 2011년 분류 체계에 따라 '저학력'(ISCED의 0~2), '중간 학력'(ISCED의 3~4), '고학력'(ISCED의 5~8) 등으로 구분된다(OECD Family Database, 2023[20]).

(1) LMF1.4.1. 성별 연령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2018)

한국의 성별 연령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2018)은 OECD Employment Database 자료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2) LMF1.4.2.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and education, 2018)

반면,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and education, 2018)은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지역별 고용조사로 업데이트 가능하여, '누락'으로 분류되었다.

20) OECD Family Database(LMF1.4)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표 Ⅱ-16〉 아동가구통계등록부,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비교

구분	아동가구통계등록부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 목적	기존의 가구주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가구 현황 및 양육 부모의 사회경제적 정보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조사 대상	총 19개의 자료를 연계한 행정 DB	전국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조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표본수	해당 모집단	3만 6천 가구(1,791개 조사구)	11,556개 조사구의 231,120 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
장점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의 정보를 연계한 유일한 자료이며, 모집단 정보를 그대로 제시함	경제활동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수록함	맞벌이 가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한계점	부모의 학력, 노동시간 정보 및 출산휴가 정보 누락됨	가구주 중심의 조사	아동을 기준으로 조사되지 않음
제공되는 시계열	2015년 이후부터 매년	1963년 이후부터 매년(월별)	2008년 이후부터 매년(반기)

출처: 각 실태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LMF1.5는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젠더 격차(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젠더 격차 추이(Trends in the 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selected countries, 1975-2021),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Gender gap in earnings by levels of education) 등 세 지표로 구성된다.

젠더 임금 격차는 크게 두 개의 자료를 통해 파악된다(OECD Family Database, 2023[21]).

첫째, '전일제 근로자의 중위소득 젠더 격차'이다. 남성의 중위소득(median earnings) 수준 대비 여성의 중위소득을 통해 파악된다. 이때 격차는 소득 격차를 일부 설명할 수도 있는 관측된 젠더 차이 특성들이 조정되지 않은(unadjusted) 값이다. 하지만 전일제 근로자들만을 비교함으로써 근로시간이나 시간제 근로 등 소득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은 통제되었다.

둘째, '학력별 전일제 만년 기준 연간 평균소득 젠더 격차'이다. 남성의 평균 연간 소득(mean average annual earnings) 대비 여성의 연간 평균 소득 비율을 통해 파악된다. 여기서도 소득 격차는 조정되지 않은(unadjusted) 값이나, 전일제(full-time)로 만년(full-year) 일을 한 근로자

21) OECD Family Database(LMF1.5)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만을 비교함으로써, 일부 특성은 통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LMF1.5.1.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젠더 격차(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한국의 경우,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젠더 격차(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지표는 OECD Employment Database(2018) 자료를 통해 추출되었는데, 모두 적절히 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2) LMF1.5.2.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젠더 격차 추이(Trends in the 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selected countries, 1975-2021)

반면, 1970년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젠더 격차 추이(Trends in the 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selected countries, 1975-2021)에 대한 자료는 구득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지표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는 6개(호주, 핀란드, 일본, 스웨덴, 미국, 영국) 국가에 불과하여, 한국 자료를 추가로 생산하여 보고해야 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적절(해당없음)'으로 분류하였다.

(3) LMF1.5.3.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Gender gap in earnings by levels of education)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Gender gap in earnings by levels of education) 지표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9) 자료를 통해 추출되었으며, 적절히 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6) LMF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LMF1.6은 고용률의 젠더 격차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고용률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젠더 차이 감소 추이(Declining trends on 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시간제 고용에서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part-time employment), 시간제 고용의 변화(Change in part-time employment), 학력별 고용률의 젠더 격차(Gender gap in employment rates by educational attainment),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중(Women's share of managerial employment), 임시 고용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emporary employment) 등으로 구성된다. 이 파트는 주요하게 7개의 지표들로 구성되는데, 앞의 다섯 개는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에 초점을 두는 반면, 뒤의 두 개 지표는 어떠한 유형의 직장에 남녀가 종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관리자(managers)'는 대체로 ISCO08 분류로 집계되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ISCO88 분류를 따르기도 하였다. 또한 여기서 '임시 고용(temporary employment)'은 계약기간이 정해졌거나(fixed-term) 임시 계약(temporary contract) 하에 일하는 경우로 정의된다(OECD Family Database, 2023[22]).

(1) LMF1.6.1. 고용률의 젠더 격차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한국의 LMF1.6 지표 7개는 ILO STAT Database(2018)와 OECD Employment Database (2018)를 활용하여 보고되고 있는데, 모두 OECD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LMF1.6.2. 고용률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젠더 차이 감소 추이(Declining trends on 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고용률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젠더 차이 감소 추이(Declining trends on 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지표는 OECD Employment Database(2018)를 활용하여 보고되고 있으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LMF1.6.3. 시간제 고용에서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part-time employment)

시간제 고용에서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part-time employment) 지표 역시 OECD Employment Database(2018)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LMF1.6.4. 시간제 고용의 변화(Change in part-time employment)

시간제 고용의 변화(Change in part-time employment) 지표도 OECD Employment Database (2018)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LMF1.6.5. 학력별 고용률의 젠더 격차(Gender gap in employment rates by educational attainment)

학력별 고용률의 젠더 격차(Gender gap in employment rates by educational attainment) 지표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9)를 활용하여 보고되고 있으며, 한국 자료 역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22) OECD Family Database(LMF1.6)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6) LMF1.6.6.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중(Women's share of managerial employment)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중(Women's share of managerial employment) 지표는 ILO STAT Database(2018)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LMF1.6.7.임시 고용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emporary employment)

임시 고용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emporary employment) 지표는 OECD Employment Database(2018)를 활용하여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OECD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아동 및 가족 유형별 고용 상태 지표 요약

아동 및 가족 유형별 취업 현황 중 OECD Employment Database 등을 활용한 지표들은 적절히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지표들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선이 필요하거나 누락되어 있는 지표 중 대부분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거나,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등 통계청 승인 자료를 통해 보완이 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표 Ⅱ-17〉 아동 및 가족 유형별 취업 현황(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누락: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활용
		모든 성인이 미취업인 가구의 자녀(Children in jobless households, 2008, 2013 and 2018)	X	자료없음
		부부가구 부모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couple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누락: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활용
		한부모가구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LMF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개선필요 (연령 기준 수정)
		유자녀 여부별 모의 고용률 추이(Trends in maternal employment rates, 2006 to 2019)	X	자료없음
		막내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개선필요 (연령 기준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자녀 수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수정)
		학력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지역별 고용조사 활용
		0-2세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women with children aged 0-2, by maternity/parental leave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자료없음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 (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19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활용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변화(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05, 2012 and 2019 or latest available)	X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학력별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한부모 가족실태조사 활용
		파트너 취업여부별 유배우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by partner's employment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활용
LMF1.4	생애주기별 고용률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성별 연령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2018)	O	적절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and education, 2018)	X	누락: 경제활동 인구조사 혹은 지역별고용조사 활용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젠더 격차(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O	적절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젠더 격차 추이(Trends in the 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selected countries, 1975-2021)	X	해당없음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Gender gap in earnings by levels of education)	O	적절
LMF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고용률의 젠더 격차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O	적절
		고용률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젠더 차이 감소 추이(Declining trends on 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O	적절
		시간제 고용에서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part-time employment)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시간제 고용의 변화(Change in part-time employment)	O	적절
		학력별 고용률의 젠더 격차(Gender gap in employment rates by educational attainment)	O	적절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중(Women's share of managerial employment)	O	적절
		임시 고용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emporary employment)	O	적절

나.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지표는 LMF2.1 성별 주당 근로시간(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LMF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LMF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LMF2.4 가족친화제도(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LMF2.5 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LMF2.6 출퇴근에 보낸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LMF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로 구성된다.

1) LMF2.1 성별 주당 근로시간(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LMF2.1은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Distribution of the employed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and gender, 2021 or latest available)과 취업자 중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변화(Percentage point change in the proportion of the employed working 40 hours or more, by gender, 2005 to 2021)를 주요 지표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당 근로시간은 다섯 개(1~19시간, 20~29시간, 30~34시간, 35~39시간, 40시간 이상)의 범주로 구분한다. 대부분의 국가 자료에서 주당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으로 상정하며, 모든 연령의 취업자(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포괄한다. 주당 근로시간의 정의 안에는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근무시간은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이거나 이례적인 초과 근무(irregular or unusual overtime)는 제외된다. 미국의 자료는 종속 근로자(dependent employment)만 포함되어 있는 반면,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자료는 주된 직장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의 근로시간(usual weekly working hours in all jobs)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자료에는 모든 직장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actual weekly working hours in all jobs) 정보가 추출되었다(OECD Family Database, 2023[23]).

(1) LMF2.1.1.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Distribution of the employed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and gender, 2021 or latest available)

한국의 경우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Distribution of the employed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and gender, 2021 or latest available) 지표가 OECD Employment Database(2018)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되었는데, OECD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LMF2.1.2. 취업자 중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변화(Percentage point change in the proportion of the employed working 40 hours or more, by gender, 2005 to 2021)

취업자 중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변화(Percentage point change in the proportion of the employed working 40 hours or more, by gender, 2005 to 2021) 지표 역시 OECD Employment Database(2018) 자료를 통해 보고되었으며,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LMF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LMF2.2는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9 or nearest year available),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 변화(Changes in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0 to 2019),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자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adults in couples with children, by gender, 2019),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23) OECD Family Database(LMF2.1)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등 8개 지표로 구성된다.

이 지표들은 0~14세 아동이 최소 1명이라도 있는 부부 가구의 유급 노동시간 분포와 고용 형태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데, 취업 부모의 근로 형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조합(①둘 다 전일제로 근무, ②한 명은 전일제, 한 명은 시간제로 근무, ③한 명은 전일제, 한 명은 미취업, ④둘 다 미취업, ⑤기타)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기타'에는 네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조합이 가능한데, 예컨대, 둘 다 모두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한 명만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usual weekly working hour)'은 다음의 4가지(① 1~29시간, ②30~39시간, ③40~44시간, ④45시간 이상) 범주로 구분된다(OECD Family Database, 2023[24]).

(1) LMF2.2.1.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9 or nearest year available)

한국의 경우, LMF2.2 지표 8개는 모두 자료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아동을 기준(child's perspective)으로 부모의 고용 정보를 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자료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인데, 현재로서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생산하기엔 한계가 따른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승인한 대표성 있는 조사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부모의 고용 형태에 대한 정보와 가구원 정보 및 근로시간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지역별 고용조사가 존재한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조사의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조사되고 있다. 하단 그림의 예시와 같이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취업여부, 근로시간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LMF2.2의 모든 지표를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LMF2.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 변화(Changes in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0 to 2019)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 변화(Changes in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24) OECD Family Database(LMF2.2)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children, 2010 to 2019) 지표는 현재 자료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지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LMF2.2.3.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지표 역시 현재 자료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지표 생산이 가능하다.

(4) LMF2.2.4.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자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adults in couples with children, by gender, 2019)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자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adults in couples with children, by gender, 2019) 지표도 현재 자료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업데이트 할 수 있다.

(5) LMF2.2.5.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지표도 현재 누락된 상황이나,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자료 생산이 가능하다.

(6) LMF2.2.6.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지표도 현재 누락된 상황이나,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7) LMF2.2.7.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지표도 현재

누락된 상황이나,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8) LMF2.2.8.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지표도 현재 누락된 상황이나,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림 Ⅱ-6] 지역별 고용조사 설문지


2 가구주와의 관계
1 가구주 2 배우자 3 미혼자녀 4 기혼자녀(배우자) 5 손자녀(배우자) 6 부모(장인, 장모) 7 조부모 8 미혼형제 · 자매 9 기타
3 성별
1 남 자 2 여 자
4 생년월일
년 월 일

※ 조사기준일 현재(2021. 10. 15.) 이 가구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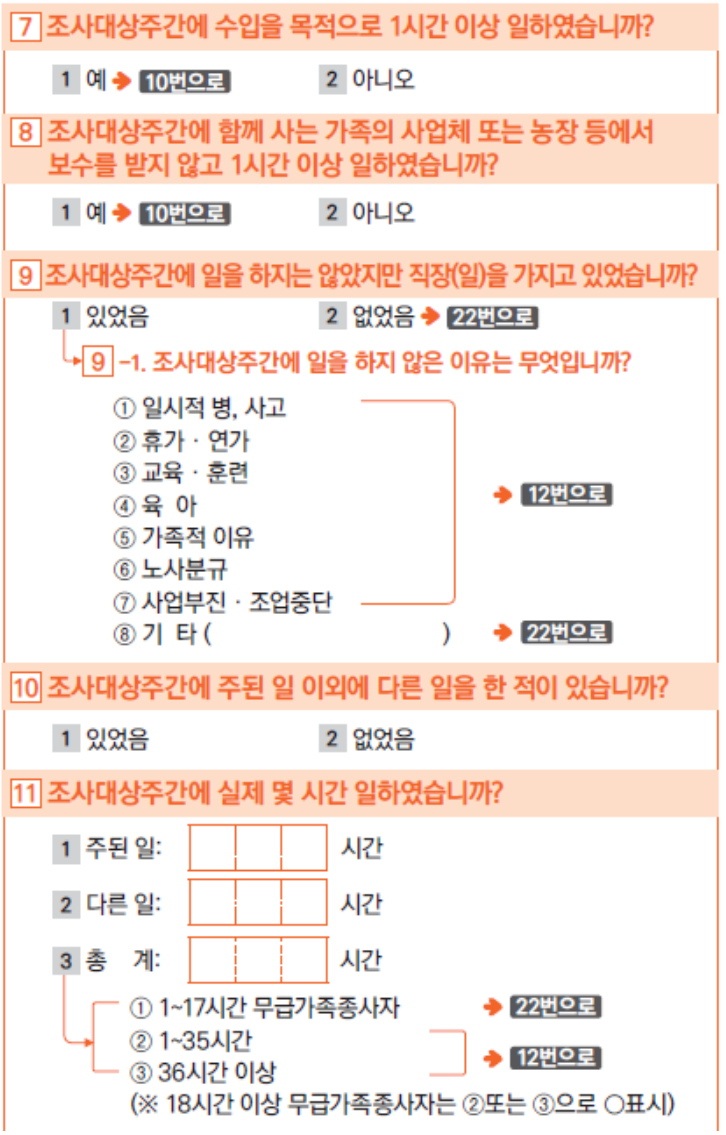
가 구 원 명 부

번호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1]	성 별	생 년 월 일	조사대상여부[2]		교육정도[3] 학력	교육정도[3] 수학여부	비 고
1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2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3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4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5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6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7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8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1) 가구주와의 관계 : 1 가구주 2 배우자 3 미혼자녀 4 기혼자녀(배우자) 5 손자녀(배우자) 6 부모(장인, 장모) 7 조부모 8 미혼형제·자매 9 기타

2) 조사대상여부 ① 조사대상 : 만 15세 이상인 가구원(2006. 10. 15. 기준)
② 제 외 자 : 만 15세 미만 가구원, 영외거주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3) 교육정도(※제외자 중 만 15세 미만 가구원만 기재) : 학력(0 안 받았음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이상),
수학여부(A졸업 B재학 C중퇴 D휴학 E수료)를 조합하여 기재 〈예시〉 초등학교 3학년 재학 ➡ 1B



출처: 통계청(2021). 지역별 고용조사 설문지

3) LMF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LMF2.3은 한부모 가구의 고용 지위(Employment status of single parent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취업 한부모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single parents, 2019)로 구성된다.

이 지표들은 0~14세 아동이 최소 1명이라도 있는 한부모 가구의 유급 노동시간 분포와 고용 형태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데, 근로 형태는 다음의 네 가지 조합(①전일제로 근무, ②시간제로 근무, ③일함-근로시간 정보 부재, ④미취업)으로 구분된다. '주당 근로시간(usual weekly working hour)'은 다음의 4가지(①1~29시간, ②30~39시간, ③40~44시간, ④45시간 이상) 범주로 분류된다(OECD Family Database, 2023[25]).

(1) LMF2.3.1. 한부모 가구의 고용 지위(Employment status of single parent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한국의 경우, 한부모 가구의 고용 지위(Employment status of single parent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지표는 자료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아동에 대한 가장 정확한 모집단 정보를 보여주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활용에 제약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2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통계청 승인 조사들 중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고려할 수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LMF2.2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며, 대표본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기초자료 작성 및 정책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조사의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3년을 주기로 조사된다. 다음과 같이 가구주와의 관계(문2-1), 연령(문2-2), 취업여부(문25-1), 근로시간(문27)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LMF2.3의 모든 지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LMF2.3.2. 취업 한부모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single parents, 2019)

취업 한부모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single parents, 2019) 지표 역시 현재 자료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지역별 고용조사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

25) OECD Family Database(LMF2.3)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그림 Ⅱ-7]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설문지

문2) 귀댁에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 본인과의 관계, 연령, 성별, 장애여부, 취업여부, 교육정도를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취업여부(문2-5)는 최근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또는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를 취업으로 포함

번호	문2-1) 본인과의 관계	문2-2) 연령	문2-3) 성별	문2-4) 장애 여부	문2-5) 취업 여부	문2-6) 교육정도	
						학력	졸업 여부
1	1	만 세					
2		만 세					
3		만 세					
4		만 세					
5		만 세					
6		만 세					
7		만 세					
8		만 세					
9		만 세					
10		만 세					

문25-1)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까? 또는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까?
그럼, 한부모가족이 된 당시와 한부모가족이 되기 1년 전에는 어떠했는지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문27) 귀하 직장(사업체)의 실제 근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24시간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주업 : □□시 부터 ~ □□시 까지

② 부업 : □□시 부터 ~ □□시 까지 98. 해당없음

출처: 여성가족부(20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설문지

4) LMF2.4 가족친화제도(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LMF2.4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보급률(Incidence of employer-provided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3),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재택근무 근로자(Employees working from home, 2015) 등 네 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제도는 가족의 일생활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는 특히 세금/급여 혜택, 부모휴가, 보육서비스 등의 공적 지원(public supports)에 접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더욱 그러하다. 모든 부모가 가족친화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의 차이도 상당하다. 또한 가족친화제도에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부모가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도 존재한다. OECD(2007)는 가족친화제도를 일과 가족 생활의 조화를 촉진할 수 있는 모든 제도로 간주이며, 가족친화 기업은 보충적인 법적 요건(complement statutory requirements)을 마련한다고 정의한다. 가족친화제도의 예시로 추가적인 법적 휴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OSH-돌봄, 노인돌봄지원, 유연근무 등이 있다. 여기서의 초점은 근로시간의 유연성(예: 원격근무, 재택근무, 비표준시간대 근무 등)에 있고, 이는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OECD Family Database, 2023[26]).

(1) LMF2.4.1.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보급률(Incidence of employer-provided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3)

LMF2.4는 European Company Survey(2013)와 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2015)를 기반으로 자료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지역이 아닌 한국의 자료는 모두 누락 되어 있다. 한편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보급률(Incidence of employer-provided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3) 지표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통해 업데이트 할 수 있다. 통계청 승인 조사로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실태를 파악하고,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조사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으로 D2 변수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는 전국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27].

---

26) OECD Family Database(LMF2.4)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27) 최근 유연근무제도 관련한 문항이 국가승인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도 추가되었음. 추후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Ⅱ-8]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설문지

D2. 귀사의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도를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도 유형	도입여부	2018년 활용실적
근로시간	1. 시간선택제 육아, 학업, 가족돌봄, 퇴직 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짧은 시간 근무하면서 전일제와 차별 없는 근무(고용)형태	① 예 ② 아니오	( ) 명
	2. 시차출퇴근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조절하여 러시아워를 피하고 유연한 시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예) 8시 출근 17시 퇴근, 10시 출근 19시 퇴근 등	① 예 ② 아니오	( ) 명
	3. 선택근무제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자율출퇴근제'를 의미	① 예 ② 아니오	( ) 명
	4. 재량근무제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① 예 ② 아니오	( ) 명
근로장소	5. 원격근무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① 예 ② 아니오	( ) 명
	6. 재택근무제 주거지(자택)에서 근무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① 예 ② 아니오	( )명

(2) LMF2.4.2.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지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매 3년마다 조사하고 있는 근로환경조사를 통해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근로환경조사(EWCS)를 벤치마킹한 한국의 '근로환경조사'는 통계청 승인 조사이며, 근로환경 중 건강위험요인실태를 파악하여 작업관련성 질환 건강 위험이 높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며 근로환경 변화 추이를 밝혀 안전보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조사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근로환경조사는 유럽의 조사 결과와 비교 가능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문36과 문 30의 E(내 집) 변수를 활용하면 한국 자료도 OECD 기준에 부합하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LMF2.4.3.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지표 지표 역시 현재 누락되어 있으나, 근로환경조사를 통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4) LMF2.4.4. 재택근무 근로자(Employees working from home, 2015)

재택근무 근로자(Employees working from home, 2015) 지표는 현재 누락되어 있으나,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면 OECD 기준에 부합하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Ⅱ-9] 근로환경조사 설문지

Q36. 귀하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조정됩니까?

보기 카드 Q36

① 근무시간은 회사에서 결정하여 변경할 수 없다 ➡ Q36-1로
② 회사가 정해 놓은 근무 일정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 Q36-1로
③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지키면 근무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예: 유연근무제 ➡ Q37로
④ 전적으로 내가 근무시간을 결정한다 ➡ Q37로
⑧ 모름/무응답 ➡ Q37로

Q30. 다음의 장소를 봐 주십시오. 지난 12개월 동안 아래의 장소에서 주된 일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현재의 직장에서 일한 지 12개월이 되지 않았다면(Q16=⑨), 주된 일을 시작한 때부터)

보기 카드 Q30 – 읽어 주기 'A'~'F' – 한 줄에서 답변을 한 개만 선택

문 항	매일	한 주에 여러번	한 달에 여러번	드물게	없음	모름/무응답	거절
A. 고용주의(귀하의) 사업장 (사무실, 공장, 점포, 학교 등)	①	②	③	④	⑤	⑧	⑨
B. 고객의 사업장(사무실, 공장, 점포, 학교 등)	①	②	③	④	⑤	⑧	⑨
C. 자동차 등 교통수단 내	①	②	③	④	⑤	⑧	⑨
D. 실외 (건설 현장 논/밭/과수원/비닐하우스/축사, 길거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⑧	⑨
E. 내 집	①	②	③	④	⑤	⑧	⑨
F. 커피숍, 대합실,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	①	②	③	④	⑤	⑧	⑨
G. 기타(_____)	①	②	③	④	⑤	⑧	⑨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0). 근로환경조사 설문지

5) LMF2.5 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LMF2.5는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1999-2012/2013), 돌봄시간(Time dedicated to care activities, 1999-2010), 자녀 수별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dedicated to care work, by number of children under school age, 1999-2010), 막내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spent on care work by women, by age of youngest child, 1999-2010) 등 네 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의 24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어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된 행동(primary activity)과 부차적인 행동(secondary activity)로 구분된다. 주된 행동은 크게 6개 범주로 나뉜다. 먼저, '일과 관련된 행동(work-related activities)'으로 유급 노동(전일제 혹은 시간제)에 들인 시간과 공부한 시간 및 직업을 구하는데 들인 시간이 포함된다. 취업자에게는 주된 직장과 두 번째 직장에서의 일한 시간이 모두 합쳐지며, 일하다가 쉬는 시간, 통근시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 밖에도 '무급 노동(unpaid work)', '돌봄 노동(care work)', '개인유지(personal care)', '여가(leisure)', '기타(unspecified time)' 등의 분류가 존재한다(OECD Family Database, 2023[28]).

(1) LMF2.5.1.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1999-2012/2013)

한국의 지표는 National Time Use surveys(2010)를 활용하여 보고되어,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LMF2.5.2. 돌봄시간(Time dedicated to care activities, 1999-2010)

돌봄시간(Time dedicated to care activities, 1999-2010) 지표 역시 National Time Use surveys(2010)를 활용하여 보고되어, 모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LMF2.5.3. 자녀 수별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dedicated to care work, by number of children under school age, 1999-2010)

자녀 수별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dedicated to care work, by number of children under school age, 1999-2010) 지표도 National Time Use surveys(2010)를 활용하여 보고되어, 모두 적절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

28) OECD Family Database(LMF2.5)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4) LMF2.5.4. 막내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spent on care work by women, by age of youngest child, 1999-2010)

막내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spent on care work by women, by age of youngest child, 1999-2010) 지표도 National Time Use surveys(2010)를 활용하여 보고되어,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LMF2.6 출퇴근에 보낸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LMF2.6은 통근 시간(Averag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1999-2014),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 - 2010),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에 대해 보고한 비율(Proportion of survey respondents reporting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2010) 등 세 지표로 구성된다. 유급 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은 근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출·퇴근 하는데에도 들이게 된다.

(1) LMF2.6.1. 통근 시간(Averag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1999-2014)

통근 시간(Averag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1999-2014) 지표는 OECD gender data portal(2009)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되고 있는데, 모두 OECD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LMF2.6.2.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2010)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2010) 지표는 National Time Use surveys(2010)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되고 있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LMF2.6.3.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에 대해 보고한 비율(Proportion of survey respondents reporting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2010)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에 대해 보고한 비율(Proportion of survey respondents reporting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2010) 지표는 National Time Use surveys(2010)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되고 있는데, 모두 OECD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LMF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LMF2.7은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aged 15 and ov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아동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aged 11 to 15, 2010), 성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gend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고용지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employment status, 2012), 일생활균형 만족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satisfaction in work-life balance, 2012) 등 5개 지표로 구성된다. 성인과 아동의 주관적인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자기 보고(self-reported)된 만족 수준에 의해 측정되었다.

성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문항은 각 국가별 15세 이상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갤럽 설문 서베이(Gallup World Poll survey)에서 수행되었으며, "귀하의 삶의 질은 어떠합니까?(What is the quality of your life today?)"라는 질문에 0~10점 사이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 자료는 11~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취학 아동 건강행동 설문조사(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의 결과에서 추출되었다. 삶의 만족도 문항은 Cantril의 척도를 차용했으며(Cantril, 1965), 0점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10점은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균형의 관계에 대한 자료는 유럽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15세 이상 응답자에게 "요즘 귀하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All things considered, how satisfied would you say you are with your life these days?)"라는 질문에 10점 척도로 응답을 받았다(OECD Family Database, 2023[29]).

(1) LMF2.7.1.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aged 15 and ov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한국의 경우,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aged 15 and ov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지표는 World Gallup Survey(2015)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히 지표가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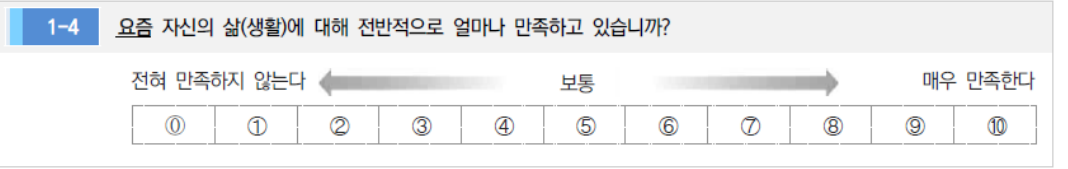
29) OECD Family Database(LMF2.7)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2) LMF2.7.2. 아동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aged 11 to 15, 2010)

아동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aged 11 to 15, 2010) 지표는 누락된 상황이나, 청소년종합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종합 실태조사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조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매 3년마다 수행되는 통계청 승인조사이며, 만 9세에서 만 24세의 아동과 주양육자를 모두 응답 대상으로 한다. 하단 그림과 같이 삶의 전반적 만족도 10점 척도 문항을 통해 해당 연령의 응답값 평균을 도출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 평균 지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림 Ⅱ-10]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설문지



출처: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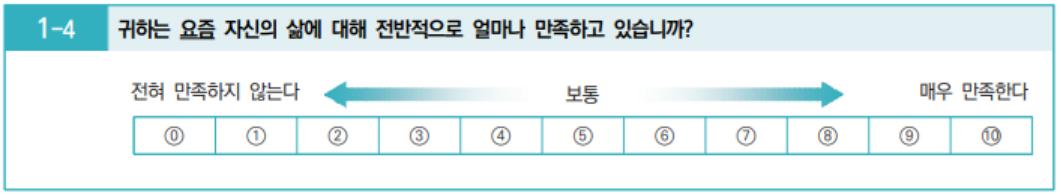
(3) LMF2.7.3. 성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gend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성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gend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는 World Gallup Survey(2015)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히 지표가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4) LMF2.7.4. 고용 지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employment status, 2012)

고용 지위별 삶의 만족도 점수 평균(Life satisfaction by employment status, 2012) 지표는 현재 누락되어 있으나, 사회통합실태조사로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국제사회 가치관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 제공하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영역별로 파악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대통합에 기여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 제공하는 것을 조사의 목적으로 둔다. 매년 1회씩 조사되는 통계청 승인 통계이며, 10점 척도를 기준으로 응답을 받고 있어, OECD 기준과 가장 근접한 자료로 생산이 가능하다.

[그림 Ⅱ-11]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21).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5) LMF2.7.5. 일생활균형 만족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satisfaction in work-life balance, 2012)

일생활균형 여부별 삶의 만족도 점수 평균(Life satisfaction by satisfaction in work-life balance1, 2012) 지표는 현재 누락되어 있으나,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사회조사의 가구원용 설문지에는 하단과 같이 전반적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만족감 지표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일생활균형의 긍정적인 응답자와 부정적인 응답자별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OECD 해당 지표는 European Quality of Life 설문지를 기반으로 자료를 추출하였는데, 이는 10점 척도 기반의 응답값이어, 다소 차이는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이 두 문항을 포괄하면서, 10점 척도로 응답을 받고 있는 통계청 승인 조사는 발견할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응답값의 변량이 축소된 부분은 존재하나, 5점 척도의 평균값을 10점 척도로 변환하였을 때의 값을 활용하면, 전반적인 평균 수준을 비교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Ⅱ-12] 사회조사 설문지

64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근로 여건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 표를 해 주시고, 근로 여건을 고려한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종사상의 지위가 '임금 근로자'인 분만 써넣어 주십시오.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⑥ 모르겠다	⑦ 해당 없다
1. 하는 일							
2.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							
3. 임금(일에 비해)							
4. 복리 후생							
5. 장래성							
6. 근무 환경(안전, 위생상태 등)							
7. 인간관계(상하, 동료간)							
8. 근로 시간							
9. 일 · 가정 양립 직장 문화							
10. 직장 내 폭력(언어 폭력, 성희롱 등) 방지 노력							
11.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							
12.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6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출처: 통계청(2022). 사회조사 설문지

〈표 Ⅱ-18〉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사회통합 실태조사, 사회조사 비교

구분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사회통합 실태조사	사회조사
조사 목적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우리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국제사회 가치관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 제공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조사 대상	- 전국 5,078가구 - 청소년(9~24세) 7,676명 - 주양육자 5,078명	만 19세 이상 가구원	약 27,336 표본가구의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1,548개 조사구, 조사구당 19~27가구)
표본수	조사대상: 5,000가구 - 청소년: 만9세~24세 가구내 청소년 전원 7,500명(예상) - 성 인: 5,000가구의 주 양육자 5,000명	개인 약 8,000명 (약 4,000가구)	개인 - 전국 1,548개 조사구의 27,336 가구 (목표가구: 약 18,576가구)
제공되는 시계열	2011, 2014, 2017, 2020년	2011년 이후부터 매년	1977년 이후부터 매년

출처: 각 실태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8)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지표 요약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지표 중 OECD Employment Database, National Time Use survey, OECD gender data portal 등을 활용한 지표들은 적절히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지표들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선이 필요하거나 누락되어 있는 지표 중 대부분은 통계청 승인 조사(지역별고용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근로환경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조사 등)를 통해 보완이 가능한 상황으로 검토되었다.

〈표 Ⅱ-19〉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LMF2.1	성별 주당 근로시간 (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Distribution of the employed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and gender, 2021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취업자 중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변화(Percentage point change in the proportion of the employed working 40 hours or more, by gender, 2005 to 2021)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LMF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9 or nearest year available)	X	누락: 지역별 고용조사 활용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 변화(Changes in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0 to 2019)	X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X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자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adults in couples with children, by gender, 2019)	X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X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X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X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X	
LMF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한부모 가구의 고용 지위(Employment status of single parent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지역별 고용조사 혹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활용
		취업 한부모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single parents, 2019)	X	
LMF2.4	가족친화제도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보급률(Incidence of employer-provided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3)	X	누락: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활용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X	누락: 근로환경 조사 활용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X	
		재택근무 근로자(Employees working from home, 2015)	X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LMF2.5	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1999-2012/2013)	O	적절
		돌봄시간(Time dedicated to care activities, 1999-2010)	O	적절
		자녀 수별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dedicated to care work, by number of children under school age, 1999-2010)	O	적절
		막내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spent on care work by women, by age of youngest child, 1999-2010)	O	적절
LMF2.6	출퇴근에 보낸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통근 시간(Averag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1999-2014)	O	적절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 - 2010)	O	적절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에 대해 보고한 비율(Proportion of survey respondents reporting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 - 2010)	O	적절
LMF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aged 15 and ov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O	적절
		아동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aged 11 to 15, 2010)	X	누락: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성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gend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O	적절
		고용 지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employment status, 2012)	X	누락: 사회통합 실태조사
		일생활균형 만족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satisfaction in work-life balance, 2012)	X	누락: 사회조사

3. 소결: 한국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생산 방안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서 두 번째 영역인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지표는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의 형태 및 고용 형태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표로, 근로시간과 돌봄시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는 아동 및 가족 유형별 고용상태(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등

두 파트로 구성된다. 본 파트에서 LMF1.4생애주기별 고용률 중 성별 연령별 고용률,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중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젠더 격차 및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의 7개 지표 등은 모두 적절히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LMF2.1성별 주당 근로시간의 두 지표, LMF2.5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의 네 지표, LMF2.6출퇴근에 보낸 시간의 세 지표, LMF2.7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 중 삶의 만족도 및 성별 삶의 만족도 지표도 OECD 기준에 부합하게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LMF1.5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중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젠더 격차 추이 지표에 대한 자료는 구득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인데, OECD 해당 지표에서도 이와 같이 장기 시계열이 확보 가능한 국가는 6개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한국 지표 생산의 필요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해당없음)으로 분류되었다.

가. 개선필요

한편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지표들도 존재하였다. 한국은 LMF1.2 지표 중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막내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자녀 수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등 세 개 지표를 지역별 고용조사(Korean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2019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비교 가능성은 존재하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되었다. 가령, OECD 기준에서 아동의 연령은 0~14세로 정의되고, 모의 연령은 15~64세로 한정하여 파악하고 있지만, 한국은 0~17세의 아동과 15~54세 여성의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국제 기준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추출할 수 있다. 단, 현재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는 근로시간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일함-정보없음'의 분류로 보고될 수 밖에 없는 한계는 존재한다.

〈표 Ⅱ-20〉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개선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LMF 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모의 연령 및 자녀 연령 수정
		막내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자녀 수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나. 누락

다음으로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중 누락된 사례를 정리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통해 업데이트 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통계청 승인 조사를 활용하여 지표를 생산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LMF1.1부모 고용 형태에 따른 아동 현황의 세 지표, LMF1.2모성 고용률 중 유자녀 여부별 모의 고용률 추이, LMF1.3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의 네 지표 등이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면 자료 생산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지표는 LMF1.2모성 고용률 중 학력별 모의 고용률, LMF1.4생애주기별 고용률 중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 LMF2.2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의 8개 지표, LMF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의 두 지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밖의 조사로는,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근로환경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조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 가능한 지표는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표 Ⅱ-21〉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누락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LMF 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활용
		부부가구 부모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couple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한부모가구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LMF 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유자녀 여부별 모의 고용률 추이(Trends in maternal employment rates, 2006 to 2019)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활용
		학력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지역별 고용조사 활용
LMF 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 (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19 or latest available)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활용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변화(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05, 2012 and 2019 or latest available)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학력별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활용
		파트너 취업여부별 유배우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by partner's employment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활용
LMF 1.4	생애주기별 고용률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and education,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혹은 지역별고용조사 활용
LMF 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9 or nearest year available)	지역별고용조사 활용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 변화(Changes in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0 to 2019)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자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adults in couples with children, by gender, 2019)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LMF 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한부모 가구의 고용 지위(Employment status of single parent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지역별 고용조사 혹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활용
		취업 한부모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single parents, 2019)	
LMF 2.4	가족친화제도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보급률(Incidence of employer-provided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3)	일가정양립실태조사 활용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근로환경조사 활용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재택근무 근로자(Employees working from home, 2015)	
LMF 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 (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아동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aged 11 to 15, 201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활용
		고용 지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employment status, 2012)	사회통합실태조사 활용
		일생활균형 만족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satisfaction in work-life balance, 2012)	사회조사 활용

다. 자료없음

마지막으로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중 자료가 없는 경우는 두 지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LMF1.1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중 모든 성인이 미취업인 가구의 자녀지표와 LMF1.2 모성 고용률 중 0-2세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 지표가 이에 해당된다. 모성 고용률의 대부분의 지표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통해 추출이 가능하였으나, 이 자료에서는 동거하는 모든 성인의 취업 상태와 부모의 학력 정보 및 출산휴가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자료도 함께 연계가 된다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파트를 종합하면, 아동가구통계등록부의 개선이 가장 주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2개의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첫 번째로는 부모의 학력 정보 추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모의 고용 관련 정보(근로시간, 전일제/시간제 여부, 출산휴가 등) 등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다.

〈표 Ⅱ-22〉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자료없음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LMF 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모든 성인이 미취업인 가구의 자녀(Children in jobless households, 2008, 2013 and 2018)	아동가구통계등록부의 개선
LMF 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0-2세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women with children aged 0-2, by maternity/parental leave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아동가구통계등록부의 개선

제3절 가족·아동정책 지표(1):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지표

1.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지표의 구성

가족·아동 정책 지표(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는 유자녀(미성년)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제도적 구조, 공적 지원의 내용 및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OECD의 가족·아동정책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과 관련된 현금, 서비스, 조세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가족(아동)정책은 가족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에 대한 정책, 예컨대 연금, 의료, 장기요양 정책 등을 제외하며, 가족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의료나 주거 영역을 제외하며, 유자녀(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책은 포함하지 않는다.[30]

가족·아동 정책 지표는 중분류 지표인 가족·아동정책 총괄(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자녀관련 휴가(Child-related Leave), 영유아 공보육·교육(Formal Care and Education of Very Young Children), 아동돌봄체계(Typology of Childcare Systems)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중분류지표는 다시 소분류지표들로 구분되는데 가족·아동정책 총괄 9개, 자녀관련 휴가 6개, 영유아 공보육·교육 4개, 아동돌봄체계 3개, 총 22개의 소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절에서는 가족·아동 정책에 대해 일반적, 총괄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PF.1)와 자녀관련 휴가정책지표(PF.2)에 관한 것을 살펴보고 영유아 공보육·교육과 관련된 것은 제4절에서 다룬다.

〈표 II-23〉 가족·아동정책(PF ,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지표: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표
가족·아동 정책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가족·아동 정책총괄 (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1.1 공적 가족급여 지출(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1.2 공교육 지출(Public spending on education) 1.3 가족 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1.4 조세-복지급여 체계의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체계(Child support(maintenance) systems)

30) https://www.oecd.org/els/soc/PF1_1_Public_spending_on_family_benefits.xlsx(검색일, 2023.03.01.)

대분류	중분류	지표
children)	with children)	1.6 아동 연령별 공적 지출(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1.7 세대간 연대(Intergenerational solidarity) 1.8 법적 성년 연령(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1.9 아동보호 특성(Aspects of child protection)
	자녀관련 휴가 (Child-related leave)	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 특징(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2.2 자녀관련 휴가 사용 현황(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2.3 취업 부모 추가휴가(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parents) 2.4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2.5 자녀관련 휴가 급여 추이(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2.6 동성부모와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Same-sex and adoptive parental leave entitlements)

2. 한국의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휴가 지표

가.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는 국가별 가족정책의 구조와 발달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하위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지표는 공적 가족급여 지출, 공교육 지출, 가족 현금급여, 조세-복지급여 체계의 형평성,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아동연령별 공적 지출, 세대간 연대, 법적 성년, 아동보호이다.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는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초기단계에 6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나(고경환 외, 2009) 현재까지 유지되는 지표는 1.1 공적 가족급여 지출, 1.2 공교육 지출, 1.3 가족 현금급여, 1.4 조세-복지급여 체계의 형평성, 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체계이며, 초기에 포함되었던 1.6 부모지원(Parenting Support)은 제외되었다. 추가된 4개의 지표는 1.6 아동 연령별 공적 지출, 1.7 세대간 연대, 1.8 법적 성년 연령, 1.9 아동보호이다.

자녀관련 휴가는 가족 데이터베이스 초기부터 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 특징, 2.2 자녀관련 휴가 사용 현황, 2.3 취업 부모 추가 휴가 지표를 발표해오고 있었으며, 2.4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2.5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추이, 2.6 동성부모와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이 추가되었다.

가족·아동정책과 관련된 주요 자료원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OECD Education Database, OECD tax-benefit data portal 인데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고된 사회보장 공적 지출 자료, 교육통계 자료, 조세 및 복지급여 자료를 기반으로 가족·아동정책 지표의 주요 정량 지표가 생산되고 있다. 정성 지표들은 주로 OECD 국가들의 주요 가족관련 제도의 구조와 법률적 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1) PF.1.1 공적 가족급여 지출(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공적 가족급여 지출은 해당 국가의 가족·아동정책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GDP대비 공적 가족급여 지출 규모로 표현된다. 이 지표는 총 지출 지표 뿐 아니라 급여 형태에 따라 현금(cash), 서비스(services), 조세지출(tax breaks for families)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 제공되는데, 범주별 지출 규모를 통해 해당국가의 가족정책 노력의 크기와 중점 영역을 알 수 있다.

이 지표의 작성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위탁산출기관으로 지표생산 및 보고에 참여하고 있다. 공적 가족급여 지출에서 현금 및 현물급여 지출은 정부 및 지자체의 결산자료를 이용하고, 조세지출은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행정안정부 지방세통계연감을 통해 작성된다.[31]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 가족급여에 포함된 한국의 현금, 현물, 조세지출 프로그램 목록은 〈표Ⅱ-24〉에 제시되어 있다.

공적 가족급여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데 있어 무엇을 가족아동정책 프로그램으로 볼 것인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족 서비스인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인가(현재는 ALMP로 분류), 자녀장려금은 가족정책인가 기타 사회정책인가, 성폭력 피해자 시설지원이 가족 현물급여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가, 조세지출 중 가족관련 영역을 무엇으로 확정할 것인가 등의 쟁점이 있다.[32] 현재의 지표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SOCX에 보고된 가족급여의 분류와 산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향후 지표생산의 연속성을 고려하되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한 재분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PF.1.1.1. 가족급여 공적 지출 총계(Total)

가족급여 공적지출은 현금, 현물, 조세지출을 총합한 지출로 GDP대비 지출규모로 표시된다. 2018년 한국의 공적 가족급여 지출은 GDP 대비 1.4%이다.

(2) PF.1.1.2. 현금급여(Cash)

현금급여는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로 구성된다. 2018년 GDP대비 가족 현금급여 지출은 0.2%이다.

---

31) SOCX 자료원과 수집방법은 고제이 외(2020: 91-93)에 제시되어 있다.

32) 고제이 외(2020)에서도 가족을 포함한 분류체계의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일부 프로그램의 분류체계를 조정했다. 예를 들어 2018년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ALMP로 구분되어 있으나 2020년부터는 가족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자녀장려금은 현재의 분류를 유지하기로 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연구위원 자문회의 확인 사항, 2023.03.23)

(3) PF.1.1.3. 현물급여(Services)

현물급여는 영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가사지원 및 시설지원(Home Help and Accomodation), 기타 현물급여(Other benefits in kind)로 구성된다. 2018년 GDP대비 가족현물급여 지출은 1.0%로 우리나라는 현금, 현물, 조세지출 중 현물급여의 지출 규모가 가장 크다.

(4) PF.1.1.4. 조세지출(Tax breaks for families)

OECD는 공적 가족급여 지출을 측정하는데 있어 현금,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 형태의 비과세, 감면을 포함하여 "사회적 목적의 조세지출(TBSP: 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도 측정한다. TBSP는 "세금 감면, 면제, 공제 또는 유예로 a) 사회복지지출로 분류되었을 이전급여와 동일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b)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OECD(2019:33)으로 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가족과 관련된 대표적인 TBSP는 자녀세액공제이다. 우리나라 가족 조세지출에는 국세에서 부양가족과 관련된 세금감면, 자녀세액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등과 지방세특례법과 지방조례에서 가족과 관련된 감면 등이 포함된다.[33] 2018년 현재 GDP대비 조세지출은 0.2%이다.

〈표 Ⅱ-24〉 SOCX 가족급여에 포함된 한국 급여 목록

SOCX 가족급여 분류	가족급여 중분류	제도 명칭
현금	가족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보훈연금등, 양육수당(아동수당포함),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고용보험), 육아휴직(고용보험)
	기타현금급여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기타
현물	영유아교육 및 보육	아동복지서비스, 영유아보육, 유아교육(3-5세)
	가사지원/시설지원	가족주간돌봄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거주시설, 여성가족거주시설
	기타현물급여	아동복지센터, 고아특수지원, 가족복지, 아동청소년보호, 가족요금감면, 성폭력가정 폭력피해자지원, 여성인력개발, 기타

33) 조세지출과 관련된 내용은 https://www.oecd.org/els/soc/OECD-Social-Expenditure-Update-Tax-Data-by-Country.xlsx 한국편을 참조할 수 있음. 가족과 관련된 TBSP에서 교육비 공제(국세)는 OECD 교육지출과 사회지출을 분리 작성하는 매뉴얼에 따라 2018년부터 제외되었다. 교육비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자녀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출한 금액,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교재구입에 지출한 비용 등을 대상으로 한조세감면제도이다. 한편, 지방세에서 사회복지성 조세감면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취득세 감면) 22조 2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18세미만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다자녀양육자) 등이 있다.

SOCX 가족급여 분류	가족급여 중분류	제도 명칭
조세지출 (Tax breaks for families)	국세	부양가족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부녀자추가공제, 한부모추가공제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 지방조례상 감면(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감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등)

출처: 고제이 외(2020: 138-139), 조세지출 OECD Social Expenditure Update Tax data by Country(https://www.oecd.org/els/soc/OECD-Social-Expenditure-Update-Tax-Data-by-Country.xlsx 검색일 2023.03.23.)

2) PF.1.2 공교육 지출(Public spending on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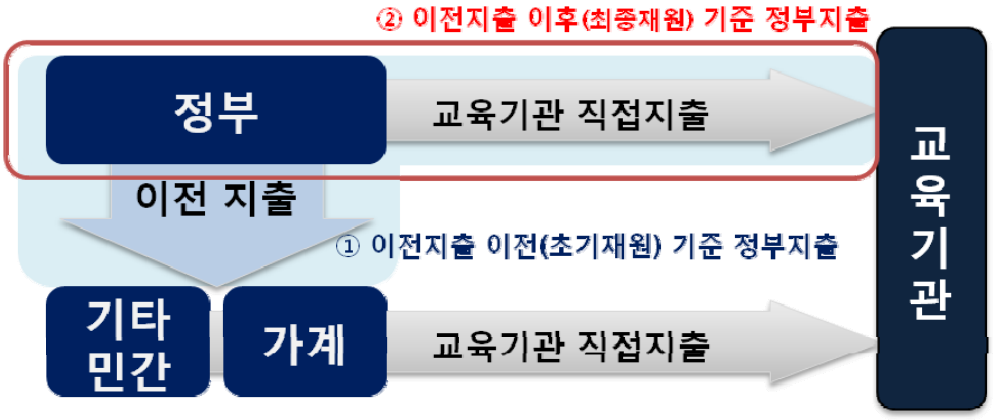
PF1.2(공교육 지출)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지표로 구성된다.

(1) PF.1.2.1. 교육단계별, 재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 by level of education and source of funds)

이 지표는 교육단계별(초등, 중등, 중등후비고등교육 단계 및 고등교육 단계), 재원별(정부, 민간, 해외 재원) GDP 중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공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학교와 대학과 같은 직접교육기관(teaching institutions)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장학재단 등 교육행정기관(non-teaching institutions)에 대한 지출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OECD 교육지표(EAG)에서는 이전지출(transfer)[34] 개념을 도입하여 이전지출 이전(초기재원)기준 및 이전지출 이후(최종재원) 기준의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지표를 산출한다. 우선, 초기재원(initial source)은 이전지출이 일어나기 전의 정부, 민간, 해외부문[35]에서 발생한 최초 재원을 의미하며,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한 학생 등록금 보조금, 학자금대출, 기타 민간이전금 등을 정부재원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한편, 최종재원(final source)은 이전지출이 일어난 후의 재원을 의미하며,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한 학생 등록금 보조금, 학자금대출 등을 민간재원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가계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학생이 고등교육기관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자금 대출 지원금은 '초기재원' 기준에 따르면 '정부재원' 공교육비에 포함되며, '최종재원' 기준에 따르면 '민간재원' 공교육비에 해당된다. 초기재원과 최종재원 공교육비 산출 개념도를 나타내면 [그림 Ⅱ-13]과 같다.

34)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자금 이동을 의미한다.
35) 한국의 경우, 해외재원 공교육비 지출을 기타 민간재원 공교육비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그림 Ⅱ-13] OECD 초기재원 및 최종재원 산출 개념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자료

해당 기준에 따라 재원별 공교육비가 다르게 산출되며, 구체적인 산출식은 [그림 Ⅱ-14]와 같다.

[그림 Ⅱ-14] 초기재원 및 최종재원 공교육비 비율 산출식

[초기재원]
- 정부재원 = {(정부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36] + 정부재원 중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등록금 보조금 + 정부재원 중 등록금에 대한 학자금대출 지원금 + 정부재원 중 기타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금[37] – 해외재원 중 정부지원금*)} / GDP
- 민간재원 = {(가계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기타 민간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정부재원으로 가계/학생에게 등록금 지원금 + 정부재원으로 지원된 등록금에 대한 학자금대출금 + 정부재원으로 지원한 기타민간부문에 대한 지원금)} / GDP
- 해외재원 = (해외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해외재원 정부지원금*)/GDP

[최종재원]
- 정부재원 = (정부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GDP
- 민간재원 = (가계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기타 민간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GDP
- 해외재원 = (해외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GDP

* 한국의 해외재원 지출은 민간재원에 포함되어 있음.

36) 회계별 결산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육부'의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대학교육 역량강화, 산학연 협력 활성화, 학술연구 역량 강화, 학교교육 활성화, 학교교육 내실화 등 교육 유관 프로그램 결산액, 교육행정지원,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기타 산하 및 출연기관 지원 등 교육 행정 관련 결산액), '사학진흥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운영비 등 교육 및 교육 행정 관련 사업비 지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세 차입금 등),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보증금회수 등), '국립학교'의 '일반·학교회계'(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등 중앙정부 사업 결산액 등), '발전기금회계'(당기 수입 중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유관 기관에서 발전기금으로 지원한 금액), '국·공립고등교육기관'의 '법인회계'(정부출연금 수입,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수입,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보조금 등), '대학회계'(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 '발전기금회계'(정부 전입금, 정부 보조금 등), '산학협력단회계'(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발전기금으로 지원한 금액) 및 '기숙사회계',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교비회계'(국고보조금 수입) 및 '산학협력단회계'(정부연구수익, 지원금수익(산업체연구수익 제외),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수익) 등이 포함된다(한국교육개발원 내부자료).

(2) PF.1.2.2.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Annual expenditure per student by educational institutions)

이 지표는 학생들이 얼마나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학생 1인당 교육핵심서비스, 부가서비스, 연구개발에 쓰인 비용으로 정의된다. 해당 지표는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정부재원, 민간재원, 해외재원 공교육비)를 '재적 학생수'(재학생, 휴학생 등)로 나눈 값으로 산출되며, 해당 지표의 국제비교를 위해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환산액을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PF1.2 지표들은 매년 산출되는 OECD 교육지표(2021)의 'C2.1. 교육단계별 GDP 대비 전체 공교육비 비율(Total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as a percentage of GDP)'과 'C1.1.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Total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per full-time equivalent student)' 지표를 각각 활용한 것으로, 해당 한국 자료[38]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PF.1.3 가족 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가족 현금급여는 복지제도와 조세제도를 통해 아동이 있는 가족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급여의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여기에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같은 "환급가능한"(refundable) 조세크레딧이 포함된다.[39] 가족 현금급여 지표는 Table PF1.3.1.가족급여 유형및 이용가능성 , PF1.3,2. 가족유형과 소득수준별 가족급여의 가치 PF1.3. 막내자녀 연령별 가족급여의 가치 PF1.3.4 자녀수별 가족급여의 가치로 구성된다.

(1) PF.1.3.1. 가족현금급여 유형 및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family benefits, by type,2018)

이 지표는 가족현금급여의 유형과 각국별 제도 이용가능성(및 자산조사여부)에 관한 것으로 제도구조를 보여주는 정성지표이다. 가족현금급여의 유형은 먼저 조건없이[40] 수급할 수 있는

37) '교육부'의 교육 유관 프로그램 결산액 중 민간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등)으로 이전된 금액, '시·도 교육청'의 위탁사업비, 민간보조, 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 '국립학교'의 기업이나 민간 연구기관,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이전금, '국·공립고등교육기관'의 산학협력프로그램 제공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한국교육개발원 내부자료).

38) 해당 지표들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 조사·지표연구실의 국제교육통계팀에서 매년 OECD 교육재정조사를 통해 원자료 수집, 결과검증 및 조사장표(FIN) 입력 작업을 거쳐 OECD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침.

39) https://www.oecd.org/els/soc/PF1_3_Family_Cash_Benefits.pdf(검색일 2023.03.01).

40) 이 때 조건(condition)은 자녀연령, 다자녀, 한부모 등의 조건을 의미하며 소득,자산조사 여부는 아니다. 자산조사여부는 별도의 범주로 있다.

일반적 가족급여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인 조건별 급여로 구분되며, 각 급여유형별 제도유무와 자산조사여부를 검토한다. 이 지표의 자료원은 OECD 조세와 급여체계(http://www.oecd.org/social/benefits-and-wages/)인데, 현재 OECD 지표에서 국가별 개별 제도의 명칭 정보는 제시되지 않고 제도유무와 자산조사여부만 체크되어 있다.

OECD tax-benefit 한국 보고자료(Korea country note)를 참고했을 때,[41] 2018년 현재 한국의 가족 현금급여는 공공부조성 한부모가족지원제도와 가정양육수당 제도이다. 이 경우 한부모가족급여를 일반적 가족급여로 보고한 현재 내용은 부정확하다. 일반적 가족급여는 제도 없음으로, 조건적 가족급여중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산조사 급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인 자녀장려금 제도는 보고에서 누락되어 있다. 2018년 현재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소득 최대 4,000만원이하,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가구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으므로 부모의 노동시장 특성별 급여와 관련하여 제도 있음, 자산조사 있음으로 표시하고 가정양육수당은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자산조사 없음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 지표의 현재 보고년도는 2018년인데, 2018년 이후 아동수당(보편급여 2019년), 영아수당(2022년), 부모급여(2023년) 등 주요 현금급여가 도입되었으므로 향후 보고시 이 제도들을 어떤 성격의 제도로 분류할지 논의가 필요하다.[42]

〈표 Ⅱ-25〉 가족현금급여 유형 및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family benefits, by type, 2018)

지표구성	가족현금급여 유형	제도특성	한국(2018)	
			보고내용	수정 필요사항
일반적 가족급여 (General family benefits or tax credit)	일반적 가족급여 (세금크레딧 포함)	제도유무	있음 (한부모 가족지원)	제도없음. 한부모가족지원은 지원대상이 제한되므로 조건별 급여로 이동필요.
		자산조사여부	자산조사함	제도없음.
	판매/소비 서비스에 대한 세금크레딧	제도유무	없음	
		자산조사여부	없음	

41) https://www.oecd.org/social/benefits-and-wages/benefits-and-wages-country-specific-information.htm (검색일 2023.03.01.).

42)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인정액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9년부터 보편주의적으로 확대되었다. 아동수당은 비기여, 비자산조사, 비과세 급여로 7세미만(2022년 현재 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과 부모급여(2023년부터 실시, 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35만원)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 보육바우처 제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현금급여 포함시 제도특성과 관련된 부연설명, 단서조항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표구성		가족현금급여 유형	제도특성	한국(2018)	
				보고내용	수정 필요사항
조건별 급여 (Benefits conditional on)	가족 특성	한부모가족급여	제도유무	없음	있음
			자산조사여부	없음	있음
		대지급수당 (alimony advance)	제도유무	없음	
			자산조사여부	없음	
		대가족(large family)수당 *자녀3명이상	제도유무	없음	
			자산조사여부	없음	
	아동 특성	영유아수당 (young child benefit)	제도유무	없음	
			자산조사여부	없음	
		교육지원급여	제도유무	있음 (한부모 아동교육지원비)	
			자산조사여부	자산조사함	
	부모 노동 시장 특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유무	없음	있음
			자산조사여부	없음	있음
		양육수당	제도유무	있음 (가정양육수당)	한국의 양육수당은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음을 부연할 필요있음
			자산조사여부	자산조사 함	자산조사없음

출처: https://www.oecd.org/els/soc/PF1_3_Family_Cash_Benefits.xlsx(검색일 2023.03.01.)

(2) PF1.3.2. 가족특성 및 소득수준별 가족현금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family type and earnings,2018)

PF1.3 가족현금급여 지표에서 급여 수준은 세가지 지표를 통해 비교한다. 먼저 PF1.3.2는 가족특성,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며 PF1.3.3은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 PF1.3.4 는 자녀수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자료원은 OECD 조세급여체계(Tax-Ben system)이며, 가족유형별 소득, 조세, 현금급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Tax-Benefit Model을 이용한다. Tax-Benefit Model은 가족특성, 아동특성, 부모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대표적인 가족유형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세부담, 복지급여, 총소득 등을 마이크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다.

PF1.3.1 가족특성 및 소득수준에 따른 가족유형은 한부모가족(시간제 소득P50분위), 양부모 맞벌이 가족(전일제근로자 소득P50분위+시간제 근로자 소득P50분위), 양부모 홑벌이가족(전일제 소득 P90분위)이다. 자녀의 연령은 9세, 12세이다. 현재 지표년도는 2018년인데 우리나라 지표값은 2018년 9월부터 실시된 아동수당 효과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AW근로자 소득

100%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저소득 한부모만 급여혜택(한부모가족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이 경우 시간제근로 P50 소득수준의 한부모는 AW(평균근로자) 소득의 4.4%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다른 가족 유형에서 가족현금급여는 0이다. OECD 국가 가족급여 소득대체율 평균은 한부모(시간제 P50) 13.7%, 홑벌이(시간제 P90) 4.2%, 맞벌이(전일제 P50+시간제 P50) 5.0%이다.

(3) PF.1.3.3. 막내자녀 연령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8)

이 지표는 자녀 연령별 가족현금 급여의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기준가족은 두 자녀 맞벌이가구이며 부모는 각각 전일제 P50 소득자, 시간제 P50 소득자이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세가지 비교 가족 유형이 설정되어 있는데, 막내(youngest child, 여기서는 둘째)는 각각 3세, 9세, 15세로 세팅되어 있으며 첫째는 세 살 터울로 각각 6세, 12세, 18세이다. 우리나라 보고값은 막내가 3세인 경우 AW 근로자 평균소득의 5.1%이다. 3세, 6세아의 가정양육수당 급여가 현금급여액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실제 3세 아동, 6세아동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수급자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 가족현금급여 수준을 과장할 수 있으므로 보육서비스 미사용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급여를 산식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4) PF.1.3.4. 자녀수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number of children,2018)

이 지표는 자녀수별 가족현금급여의 차이를 통해 다자녀 혜택을 비교한다. 자녀수는 4명까지 비교하며, 기준가족은 맞벌이 부모이고 부모중 한 사람은 전일제 노동자로서 AW50%, 다른 사람은 시간제 근로자로서 AW50% 소득자이다. 막내자녀 연령은 6세이며 자녀간 터울은 3세 간격이다.

2018년 보고기준 우리나라 가족급여는 자녀수(다자녀)에 따른 차등이 없기 때문에 양부모 맞벌이(전일제 P50+시간제 50)가족이 받는 급여규모는 동일하다. 6세아동의 가정양육수당 급여 10만원(2018년)이 포함되어 가족현금급여는 AW100% 소득의 2.5%로 나타났다. 이 지표 역시 6세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수급율을 고려하여 급여액 반영여부, 적어도 각주 사항 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43]

43)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8년 72개월~취학전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수급율은 4.5%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19).

〈표 Ⅱ-26〉 가족 현금급여 하위지표(PF1.3 B, PF1.3 C)의 비교기준 모델가족과 급여수준

PF1.3가족 현금급여 하위지표	분류기준	가족유형	한국(2018)
가족특성별 급여수준 (PF1.3.2)	자녀수는 2명(9세 12세)으로 동일 노동시간과 소득수준은 아래와 같음 ①전일제 P50: 전일제근로자(주당 40시간근로)중위소득 ②시간제 p50: 주당20시간, 전일제중위소득 ③전일제 P90: 전일제 소득분포에서 90% 소득값 ※소득수준은 세전소득 전일제근로자 소득분포 기준	한부모+홑벌이+ 시간제근로(P50)	보고값=4.4%, 한부모가족 지원금 반영됨
		양부모+홑벌이+ 전일제(P90)	급여액없음. 자녀연령 9세 이상일 경우 양부모지원 가족급여없음
		양부모+맞벌이+ (전일제 P50+시간제 P50)	
막내자녀 연령별 급여수준 (PF1.3.3)	기준가족: 양부모+맞벌이(전일제P50 + 시간제P50) 2명의 자녀 터울은 3세간격	막내 3세	보고값= 5.1% , 막내자녀 3세 가정양육수당 반영됨
		막내 9세	급여액 없음, 자녀연령상 가정양육수당 해당없음.
		막내 15세	
자녀수별 급여수준 (PF 1.3. 4)	4명까지 각각 보고. 기준가족: 양부모+맞벌이(전일제P50+시간제P50)+막내 자녀연령 6세, 2명의 자녀터울은 3세간격.	1명, 2명, 3명, 4명	보고값=2.5%로 동일, 막내자녀6세 가정양육수당 반영됨.

자료원: OECD Tax-Benefit Models

4) PF1.4 조세-복지급여체계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PF1.4는 국가의 조세-복지급여체계가 혜택을 배분한 결과를 가족유형별로 비교하여 중립성, 혹은 형평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조세체계에서 “분리과세” “결합과세” “가족중심” 과세체계는 가구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 조세체계는 가족과 관련된 각종 세금공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독신으로 생활할 때보다 가족을 형성할 경우 유리하게 작동하기도 한다. 또, 배우자(또는 2차소득자)의 소득활동에 의해 정부의 복지급여와 조세납부액이 변동하여 순가구소득이 영향을 받는 경우 조세-복지급여체계의 영향은 “중립적”(neutral) 이지 않고 특정가구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동하기도 한다. PF1.4 지표는 여러 모델가족을 설정하여 각국의 조세-복지급여 체계의 “중립성” 정도를 비교한다. 이 지표 역시 PF1.3 지표와 마찬가지로 OECD Tax-benefit model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조세-복지급여 체계 형평성의 하위지표는 ① 가구소득수준별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순이전소득(net transfer) ② 가구소득수준별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순가구소득(net household income) ③가구소득수준별 2차소득자 세율(participation tax rate)이다.

(1) PF.1.4.1. 가구유형별 조세-급여혜택의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for couples at different household earnings levels, 2014)

이 지표는 정부의 순이전급여(net transfer)가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한다. 가구유형은 먼저 홑벌이, 맞벌이를 구분하고 1차소득자와 2차소득자의 소득수준 조합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기준가구는 4세, 6세 두 자녀를 둔 부부가구로 가구소득은 AW소득 133%와 200%이다.

현재 지표 기준연도는 2014년인데. 우리나라는 가구소득 AW 133% 수준에서는 홑벌이 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순이전소득(net transfer)에서 유리한 것(46.9%)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OECD 국가중 이스라엘(48.8%) 다음으로 높다. 가구소득 AW 200% 수준에서도 홑벌이가구가 맞벌이보다 30.8% 유리하다. 반면 순가구소득(net household income)에서는 가구소득 AW 200% 수준에서 남녀가 동일한 소득을 버는 맞벌이가구(100%-100%)가 홑벌이 가구(200-0)보다 유리한(5.0%) 것으로 나타났다.

(2) PF.1.4.2. 2차소득자세율(Participation tax rates for second earner parents entering employment at varying gross earnings levels, 2014)

2차소득자세율 또는 "참여세율(participation tax rate)"이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2차 소득자(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총가구소득에서 직접세(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에 의한 소득감소와 기존의 비경제활동과 관련된 소득조사 급여가 감소되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부부중 첫 번째 소득자가 AW 67%이고 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두 번째 AW 67%의 소득을 벌었을 때 조세와 복지급여에 변동에 의해 감소한 소득분은 총가구소득 증가의 24.6%를 차지한다. 2차소득자 세율의 비교기준은 전일제 AW 67%소득 자녀2명(4세, 6세) 부부가구로 비경활 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AW50%, AW67%,AW100% 수준에서 세율을 비교한다.[44] 참여세율 산식은 아래와 같다.[45]

참여세율(PTR)

$$=1-\frac{Na-Nb}{Ga-Gb}=1-\frac{(Ga+Ba-Ta)-(Gb+Bb-Tb)}{Ga-Gb}=\frac{(Ta-Tb)}{(Ga-Gb)}-\frac{(Ba-Bb)}{(Ga-Gb)}$$

N: 순(net)가족소득 G: 총(gross)가족근로소득 B: 복지급여 T:전반적인 조세액 a: 근로참여이후 b: 근로참여이전

44) 여기서 자녀보육비용(4세 ,6세)은 고려되지 않는다.

45) https://www.oecd.org/social/benefits-and-wages/OECD-TaxBEN-methodology-and-manual.pdf(검색일 2023.03.01.).

2차소득자 세율에서는 한국이 AW 50% 소득수준에서 9%, AW 67%에서 9.94%, AW 100%에서 12.73%에 불과하다. 반면, 덴마크의 경우 2차소득자는 AW 50% 소득에서 57.7%, AW 67% 53.2%, AW 100% 49.1%로 참여세율이 매우 높다. 덴마크의 경우 2차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과세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슬로바키아, 한국, 그리스 등은 2차소득자가 일을 할 경우 참여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서 2차소득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페널티가 적다.

자료원은 OECD Tax- benefit models이며 2001년부터 2014년까지 2차소득자의 참여세율이 DB로 제시되어 있다. Tax-benefit model에서 한국의 가족관련 급여는 2014년 기준 자녀장려금(Child care tax credit)과 한부모가족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조세급여분류표(TaxBen benefit classification table)에는 한부모가족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어떤 급여가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Family support calculator, Tax-Ben calculator, Taxing wages(2014) 자료를 검토한 결과 4세 6세 2자녀 모두 연간 1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한부모가족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PF1.1 공적 가족급여지출 지표부터 언급한 바인데, 가정양육수당과 자녀장려금 사이에 용어의 일관성, 통일성이 필요하다.

〈표 Ⅱ-27〉 가족유형별 조세-복지급여체계의 형평성(neutrality) 지표의 비교준거 및 산식

PF1.4 조세-급여효과	분류기준	가구유형별 소득기준과 산식
가구유형별 조세-급여혜택의 형평성	가족특성 및 소득수준별 순이전소득(net transfer) 효과(가구소득대비 %) *기준가구: 2자녀(4세 6세) 부부가구 가구소득은 AW소득의 133%와 200%.	①홑벌이부부 133-0
		②홑벌이부부 200-0
		③맞벌이(부부차등소득)100-33
		④맞벌이(부부차등소득)150-50
		⑤맞벌이(부부동일소득) 67-67
		⑥맞벌이(부부동일소득)100-100
	홑벌이가구와 동일소득맞벌이가구 순이전소득차이	(⑤-①)/①*100
		(⑥-②)/②*100
	홑벌이가구와 동일소득맞벌이가구 순가구소득차이	(⑤net income - ①net income)/net income①*100
		(⑥net income-②net income)/②net income*100
2차소득자 세율	기준가구: 전일제 AW 67%소득, 자녀2명(4세, 6세) 부부가구. 비경활 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각 소득구간별 세율(PTR:participation tax rates)	(2차소득자소득) AW 의 50%
		AW의 67%
		AW의 100%

주: 참여세율(participation tax rate): 2차소득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직접세(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로 과세되고 비근로소득연계급여에서 감액되는 (기대 prospective) 소득비율

출처: OECD Tax-Benefit Models
Immervoll, H., H.J. Kleven, C.T. Kreiner and N. Verdelin(2008), "An Evaluation of the Tax-Transfer Treatment of Married Couples in European Countrie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76, OECD, Paris

5)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체계(Child support (maintenance) systems)

PF1.5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와 관련된 정책 지표이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비양육부/모는 법적으로 자녀의 양육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식적인 양육비 지원 체계(formal child support system)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더 나아가서 대지급수당(advance maintenance payments)을 제공하고 있다. PF1.5는 OECD 국가의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제도의 주요특징,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자녀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의 비율, 그리고 자녀양육비 수준에 관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는 양육비 결정시 관련당사자, 결정의 주체, 금액결정방식, 집행책임, 비혼부모일 때 별도적용규정여부, 양육비 종료시점, 대지급 제도 여부 등 양육비 지원제도 전반의 특징에 대한 질적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비는 부모, 법원, 행정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 당국은 일반적으로 양육비 금액을 부모에게 맡기며, 부모가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때 개입한다. 양육비 의무를 결정하는 원칙은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행정 기관 체계(agency system)을 갖추고 있는 국가(예: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에서는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반면, 법원이 결정을 주도하는 국가(예: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비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금액은 양육/비양육부모의 경제적 자원, 다른 자녀들과 전 파트너에 대한 의무, 양육권 설정(연락하는 시간, 자녀의 양육 공유), 자녀의 욕구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OECD Family Database, 2023[46]).

(1) PF.1.5.1. 아동양육비제도 주요 특징(Key characteristics of Child Support Regimes)

표 1.5A에서 한국은 자녀양육비 결정시 부모와 법원이 관여를 한다고 표시되어 있고, 기관은 부재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14년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개설하였다. 비록 아직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만, 기관이 없다고 표시된 부분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대개 공식적인 양육비 지원은 자녀의 연령이 18세가 되면 중단된다. 하지만 지원 기간은 자녀가 전일제 교육을 완수할 때까지(예: 호주, 아일랜드, 멕시코, 폴란드, 영국, 미국), 혹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예: 체코, 뉴질랜드) 연장되기도 한다. 한국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6) OECD Family Database(PF1.5)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대지급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유럽국가들 다수에서(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라트비아,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II-28〉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제도 특징(Key characteristics of Child Support Regimes)

PF1.5.1 양육비 지원 제도 특징	한국(2010)
자녀양육비 결정시 관련당사자/기관	부모 ○- 법원결정, 법원 ○ 기관 X (자녀양육비 결정기관이 있으므로 수정 필요함)
양육비지급결정주체	부모 또는 부모비동의시 법원
양육비 금액 결정방식	대부분 재량, 정해진 규칙이나 방법 없음
양육비집행 책임	법원
비혼부모 자녀에 대한 별도 적용	없음
양육비이행 종료 자녀연령	부모합의 혹은 20세
대지급 제도	없음

출처: Skinner, C. Bradshaw, J. and Davidson J.(2007)에 유럽(미국포함) 14개국 정보가 있음. 추가 정보는 각국 담당부처.

(2) PF.1.5.2. 한부모가족 추이, 자녀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추이(Trends of Sole-parents and of Sole-Parents Receiving Child Maintenance Payments in recent years)

이 지표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기반으로 추출되었는데, 자녀양육비용(maintenance payments)에는 양육비(child support), 위자료(alimony), 대지급수당(advance maintenance payments) 등이 포함된다.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약 20% 대로 높은 편인 반면, 지중해 국가들은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4% 대로 낮은 편이다. 또한 자녀양육비를 지급 받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2000년 기준 약 50% 정도이고, 이후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의 한부모가족 비율(Percentage of Sole-parents)은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통해 매년 발표되고 있다. 막내 자녀 연령 기준으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는 2021년 현재 368,548가구로, 총 일반가구(21,448,463가구)의 1.7%를 차지하고 있다[47]. 한국의 자료는 인구총조사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보고할 수 있으나, PF1.5.2의 기준이 2004년 이전이어서, 시기에 맞는 자료를 추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전 시기에 대해서 인구총조사의 '혼인상태별

47)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 2023.01.16,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P1601& conn_path=I2(검색일 2023.04.30.)

가구 수'를 통해 대략적인 수치는 가늠할 수 있다. 즉, 미혼, 이혼, 사별한 가구의 수를 통해 한부모 가구의 비율을 유추할 수 있으나, 자녀 연령 등 세부 사항이 누락되어 OECD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녀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비율(Percentage of Sole-parents Receiving Child Maintenance)은 현재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 최근의 현황은 파악 가능하다. 하지만 위와 동일하게 PF1.5.3의 자료도 2004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어, 시점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2021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양육비를 지급받은 한부모는 약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48].

(3) PF1.5.3. 자녀양육비 수준(Levels of Child Maintenance Payments)

PF1.5.3 자녀양육비 수준은 비양육부모나 정부기관으로부터 받는 현금 금액에 대해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평균금액(Average child maintenance payment per sole-parent family), 자녀1명당 자녀양육비 평균금액(Average child maintenance payment per child), 순가처분소득대비 자녀양육비(Child maintenance as % of net disposable income), 총이전소득 대비 자녀양육비(Child maintenance as % of total income transfers)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추출할 수 있으나, 2012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기에 대한 자료는 집계할 수 없다.

6) PF 1.6 아동 연령별 공적 지출(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PF 1.6 지표는 아동 연령별, 급여유형별 공적 지출 규모에 관한 것이다. 아동연령은 초기아동기(0-5세), 중기아동기(6-11세) 후기 아동기(12-17세)의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며, 급여형태는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 보육, 기타현물급여, 교육(초중등)으로 구분된다. 이 지표를 통해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해당국가의 가족정책이 상대적으로 어떤 연령집단에 우호적인지, 연령집단별 공적 지출에서 주요 급여형태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지표는 Doing Better for Families(OECD, 2011)에 사용된 연령별 지출 프로파일(Age Spending Profile) 개념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프로그램별 지출 내용을 연령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부록(ANNEX 2.A3 Notes for the social expenditure age-spending profiles)에

48) 통계청, 「한부모가족실태조사」, 2021, 2023.03.26, 최근 1년 동안 양육비 받은 경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170&vw_cd=MT_OTITLE&list_id=154_15416_008&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O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국가별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SOCX가족지출로 포함된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연령 지출 배분 기준이 적절한지를 논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지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OECD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2003년부터 연령별(산전9개월~29세) 시계열자료를 모두 보고하고 있으며 자료원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와 OECD Education Databas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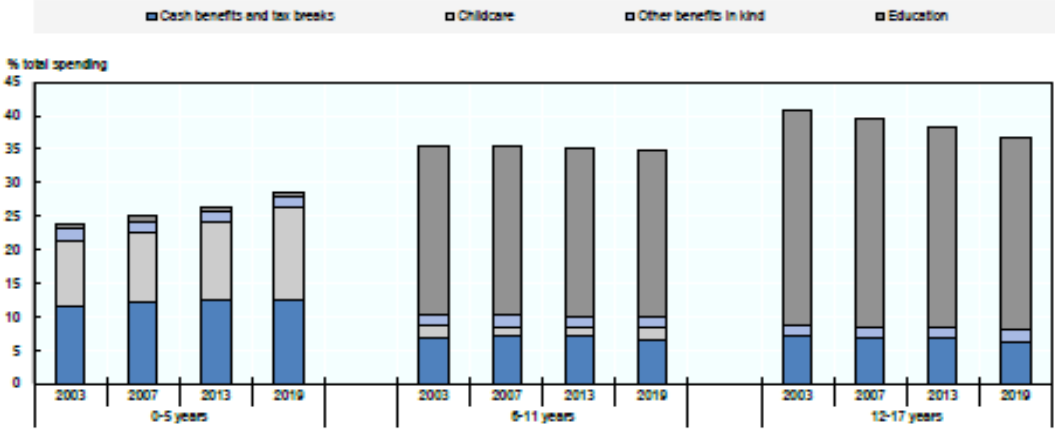
연령별 지출 프로파일(age spending profile)이란?

연령별 지출 프로파일은 아동의 연령별 급여유형별 공적 지출 규모를 보고한 것이다. 집계에 사용된 지출통계는 중앙정부 지출이며, 지방정부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지방분권적, 연방주의 국가와 단순비교 및 통계해석에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령지출 프로파일에 보고하는 연령범위는 27세 이하이다(29세까지 데이터값 제공). UN의 아동 연령 정의에 따라 아동연령범위는 18세까지인데, 많은 국가에서 아동급여를 18세 이후에도 지급하고 있다. 연령별 지출 프로파일은 공적 복지지출 뿐아니라 교육지출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지출수준의 비교는 근로연령 중위소득가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연령별 지출 프로파일은 국가간 비교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총계(aggregate)지출데이터를 통해 산출되었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의 연령별 지출패턴에 대한 근사치만을 제공한다는 한계점도 있다.

(1) PF.1.6.1. 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 2003 to 2019)

이 지표는 가족급여 및 교육에 대한 공적지출을 연령집단별(0-5세, 6-11세, 12-17세) 급여유형별(현금 및 조세혜택, 보육, 기타현물급여, 교육)로 구분하여 각각 전체 공적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현재 지표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추이지표 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개별 국가 지표는 없으며 OECD 평균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Ⅱ-15] 연령집단별 급여유형별 공적 가족급여 및 교육 지출 추이(OECD 평균)



출처: https://www.oecd.org/els/family/PF1_6_Public_spending_by_age_children.xlsx 중 Chart PF1.6.A 시트

(2) PF1.6,2, 연령집단별 공적 가족급여 및 교육 지출 비율(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 2019)

이 지표는 OECD 개별 국가별 공적 가족급여 및 교육 지출중 연령집단별 지출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국가별로 어떤 연령집단에 대한 지출이 많은지 알 수 있다. 이 지표는 PF1,6.A 지표와 동일 자료를 사용하지만 PF1.6.A가 여러 년도에 대해 급여유형별 OECD 평균을 제시한 것과 달리 단일년도(2019년)에 대해 연령집단별 지출이 전체 가족,교육급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한다(연령집단별 지출(row) 합계 100%).

2019년 가족급여와 교육급여를 합한 전체 공적 가족·아동급여에서 우리나라는 12-17세 아동 38%, 6-11세 33% 0-5세 29%로 상대적으로 취학아동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수준과 유사하다(각각 37%, 35%, 28%).

〈표 Ⅱ-29〉 연령집단별 공적 가족급여및교육 지출 비율 보고 방식

Proportion (%) of total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and education for children aged 0-17 years

		0-5 years	6-11 years	12-17 years
Iceland	IS	40	31	29
Estonia	EE	36	32	31
Lithuania	LT	36	31	32
Hungary	HU	35	33	32
Korea	KR	29	33	38
OECD Averag	**OECD**	**28**	**35**	**37**

출처: https://www.oecd.org/els/family/PF1_6_Public_spending_by_age_children.xlsx 중 Chart PF1.6.B 시트, 일부 국가 지표만 제시함.

(3) PF1.6.3. 0-5세 1인당 현금 및 조세급여, 보육, 교육지출(Cash benefits and tax breaks and childcare in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in early childhood(0-5 years), 2019)

이 지표 역시 연령별 지출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0-5세 집단에 대한 지출 규모를 1인당 USD ppp로 계산하여 제시한다. 2019년 한국은 0-5세 아동에 대한 지출에서 보육서비스 지출이 가장 많으며(45,530 usd ppp) OECD 평균(30,800 usd ppp)보다 더 많다.[49]

49) https://www.oecd.org/els/family/PF1_6_Public_spending_by_age_children.xlsx(검색일: 2022.03.01.) 중 Chart PF1.6.C.

(4) PF1.6.4. 6-11세 1인당 현금 및 조세급여, 보육, 교육지출(Cash benefits and tax breaks and childcare in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in early childhood(6-11 years), 2019)

이 지표는 6-11세 집단에 대한 지출 규모를 1인당 USD ppp로 계산하여 제시한다. 2019년 한국은 이 연령집단에서 다른 급여에 비해 교육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다. 6-11세 전체 지출 81,830달러 중 75,290달러를 교육에 지출하며, 현금급여는 3,260달러에 불과하다.[50]

(5) PF1.6.5. 12-17세 1인당 현금 및 조세급여, 보육, 교육지출(Cash benefits and tax breaks and childcare in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in early childhood(12-17 years), 2019)

이 지표는 12-17세 집단에 대한 지출 규모를 1인당 USD ppp로 계산하여 제시한다. 2019년 한국은 이 연령집단에서도 다른 급여에 비해 교육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다. 12-17세 전체 지출 92,620달러 중 86,080달러를 교육에 지출하며, 현금급여는 3,260달러에 불과하다. [51]

〈표 Ⅱ-30〉 아동연령별 공적 지출(PF1.6) 하위지표

PF1.6 아동연령별 공적 사회지출	지표설명	한국(2019)
연령구간별 공적 사회지출(%) (연령구간: 0-5세, 6-11세 12-17세)	연령구간별 가족급여 및 (초중등)교육관련 공적 지출이 0-17세 아동 공적 가족급여 및 교육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2019년)	OECD 평균수준 지출, 연령이 높을수록 지출규모 커짐 2019년 0-5세 29% 6-11세 33% 12-17세 38%
연령별(산전(prenatal)~29세까지) 1세구간 지출액(1인당 PPP, US$)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 지출	개별국가별 연령별 프로파일을 시계열 자료(2003년~2019년까지 격년자료)의 형태로 제공함
	보육 지출	
	기타 현물급여 지출	
	교육 지출	
0-5세 가족 급여유형별 자녀 1인당 공적지출규모 (US $ PPP)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 지출	총지출은 70,360$, OECD 평균 63,950$보다 많음. 보육지출이 가장 많고 현금지출의 2배규모. ※단위는 USD PPP임..
	보육 지출	
	기타 현물급여 지출	
	교육 지출	
6-11세 가족 급여유형별 자녀 1인당 공적지출규모 (US $ PPP)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 지출	총지출은 81,830$, OECD평균 78,080$와 유사함. 교육지출 92.0%, 현금급여가 미발달됨.
	보육 지출	
	기타 현물급여 지출	
	교육 지출	

50) https://www.oecd.org/els/family/PF1_6_Public_spending_by_age_children.xlsx(검색일: 2022.03.01.) 중
51) https://www.oecd.org/els/family/PF1_6_Public_spending_by_age_children.xlsx(검색일: 2022.03.01.) 중 Chart PF1.6.D.

PF1.6 아동연령별 공적 사회지출	지표설명	한국(2019)
12-17세 가족 급여유형별 자녀 1인당 공적지출규모 (US $ PPP)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 지출	총지출은 92,620$, OECD평균 82,910$와 유사함. 교육지출이 92.9%, 현금급여가 미발달됨.
	보육 지출	
	기타 현물급여 지출	
	교육 지출	

자료원: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preliminary) and OECD Education Database

7) PF1.7 세대간 연대(Intergenerational solidarity)

PF1.7 세대간 연대 지표는 생애주기별 이전소득의 방향과 수준을 보여주는 신규 지표이다. PF1.7은 네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PF 1.7.1은 연령별 순이전소득비율으로, 생애주기를 0-19세, 20-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세대간" 이전소득의 규모를 보여준다. PF 1.7.2는 50세이상 인구의 현금(money) 및 시간(time) 자원의 이전흐름에 관한 것이며. PF 1.7.3은 현금과 소득이전의 내용을 가족관계별로(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로 좀더 자세히 지표화한 것이다. PF 1.7.4는 (50세이상 인구중) 손자녀돌봄자의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PF1.7 지표는 모두 보고하고 있지 않다. 하위지표별 OECD 자료원은 〈표 Ⅱ-31〉과 같다.

〈표 Ⅱ-31〉 세대간 연대(PF1.7) 하위지표

PF1.7 세대간 연대 하위지표	지표설명	자료원
연령별 순이전 소득	(이전유입-이전유출)/1인당 평균소비 *100, 공공 이전, 민간이전, 자산재배분으로 구분하여 측정 연령집단: 0-19세, 20-64세, 65+ ※ 250유로 이상의 이전소득만 계산. 대출과 생필품 공유는 포함하지 않음	OECD 자료원인 National Account Transfer 웹사이트(http://www.ntaccounts.org)에 자료있음
50+인구의 현금이전 및 시간 이전	50+ 인구집단중 현금이전 제공자 비율	SHARE 조사 2004년, 2006-7년) OECD 13개국
	50+ 인구집단중 시간이전 제공자 비율	
	50+ 인구집단중 현금이전 수혜자 비율	
	50+ 인구집단중 시간이전 수혜자 비율	
50+ 인구에 대한 현금, 시간 이전 (OECD 13개국 평균지표, 국가별 지표 아님)	가족관계별 현금이전 유입	
	가족관계별 현금이전 유출	
	가족관계별 시간이전 유입	
	가족관계별 현금이전 유출	
손자녀 돌봄자 비율	1명이상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비율	SHARE 조사 2006-7년 OECD 15개국

주: SHARE(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는 유럽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사회경제, 환경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별 격년조사자료
출처: National Account Transfers(http://www.ntaccounts.org/), SHARE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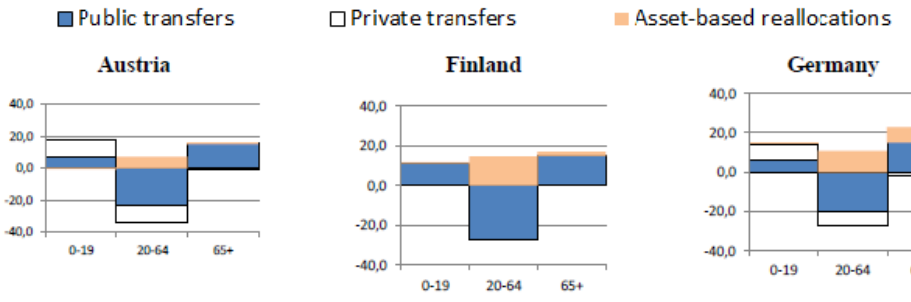
(1) PF.1.7.1. 연령집단별 순이전비율(Age profile of net transfers)

연령별 순이전비율은 연령구간별 유입이전소득에서 유출이전소득을 빼고 이를 1인당 평균 소비(average consumption per capita)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전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공적 이전(public transfer),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 자산재분배(asset-baset reallocation)이다. 공적 이전은 다시 현금이전(financial transfer)와 현물(in-kind)이전으로 구분되는데, 공적 현금이전은 정부가 가구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현금 또는 조세이전으로 연금, 가족급여, 장애급여 등 다양한 소득지원을 포함한다. 공적 현물이전은 정부가 지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로서 바우처 형태를 포함한다. 사적이전은 현금이전, 시간이전, 자산재분배로 구성된다. 사적 현금이전은 특정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이전은 물론 의료비나 의료보험, 교육비, 주택보증금과 같은 특정 항목의 지출에 사용된 현금을 포함하지만, 대출이나 기부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적 시간이전(time transfer)은 가족구성원간 자녀나 노인을 돌보기 위해 이전되는 시간의 양을 측정한다. 시간이전은 주로 돌봄 관련 시간과 관련되지만 여기에는 가사관리나 수선, 정원손질, 쇼핑과 같은 가사노동과 가사관리(서류처리, 금융 및 법률 처리) 시간도 포함된다. 자산재분배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의 세대간 이전규모를 측정하는데 노후를 위한 저축, 자녀교육을 위한 대출 등이 포함된다.

OECD가 지표를 보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이 차트를 이용한 방식이며, 9개국만 보고했다. 이 지표에서 한국은 보고내용이 없지만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을 통해 집계, 보고가능하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의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집단(세대)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통계인데, 개인의 생애기간 동안 노동소득과 소비의 차이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적자/흑자 분포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자원의 세대간 배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통계청, 2022). OECD 지표의 연령집단 범주는 0-19세, 20-64세, 65+인데, 우리나라 국민이전계정 자료의 연령구간은 0-14세, 15-64세. 65+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현재 1세구간별로 생애주기적자가 집계되고 있으므로 OECD가 요청하는 연령구간별(1인당평균소비 대비) 순이전 소득비율 지표가 생산가능하다. 따라서 이 지표는 자료가 있으나 보고되지 않은 누락지표로 판단하였다.[52)]

52) 연령별 생애주기 적자계정(2020년자료)은 통계청에서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tblId=DT_1NTA02&orgId=101&language=kor&conn_path=&vw_cd=&list_id=

[그림 Ⅱ-16] 연령별 순이전비율



Austria

	0-19	20-64	65+
Public transfers	7.3	-23.5	15.0
Private transfers	10.4	-10.3	-0.3
Asset-based reallocations	-0.2	7.0	1.3

Finland

	0-19	20-64	65+
Public transfers	11.0	-27.2	14.8
Private transfers	..	..	..
Asset-based reallocations	0.0	14.6	2.3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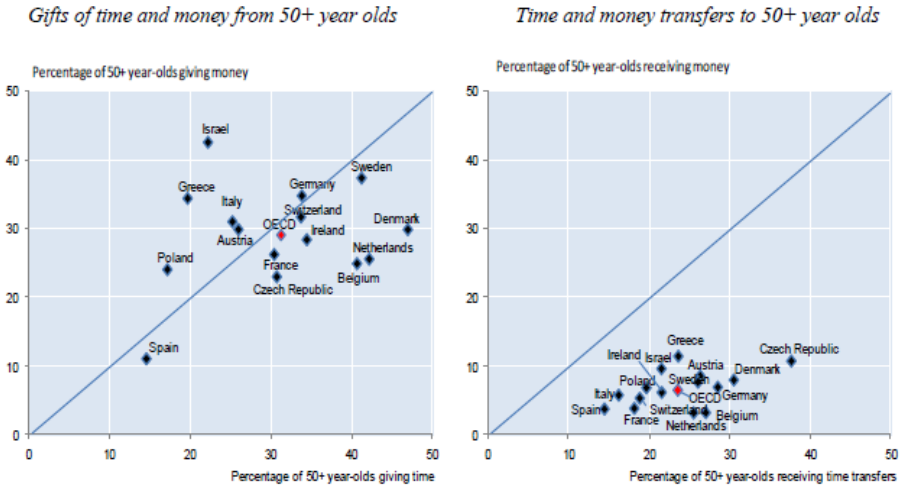
	0-19	20-64	65+
Public transfers	6.0	-20.0	15.2
Private transfers	8.5	-7.5	-1.5
Asset-based reallocations	0.2	10.5	7.6

출처: https://www.oecd.org/els/family/PF1.7%20Intergenerational%20solidaritiy%20FINAL.xls(검색일 2023.03.30.)

(2) PF1.7.2. 50세이상 인구에 대한 현금이전 및 시간 이전(Time and money transfers to 50+ year olds, 2004, 2006-2007)

이 지표는 50세 이상 인구의 현금(money) 및 시간(time) 자원의 이전흐름을 측정한 것이다. 지표구성에 필요한 통계치는 ① 50+ 인구집단중 현금이전 제공자 비율 ②50+ 인구집단중 시간이전 제공자 비율 ③ 50+ 인구 집단 중 현금이전 수혜자 비율 ④50+ 인구집단중 시간이전 수혜자 비율이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서 현재 지표는 ① ② 통계를 교차하여 50대이상 인구집단중 현금및 시간을 이전한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③ ④ 통계를 교차하여 50대이상 인구집단중 현금 및 시간을 이전받은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있다([그림 Ⅱ-14]).

[그림 Ⅱ-17] PF1.7 "노인들은 사적 세대간 이전에서 "받는자(taker)"이기보다 "주는자(giver)"일 가능성이 높다"



주: 세대간 이전에서 250유로 미만의 현금 또는 현물가치 이전, 대출금, 공동생활비는 이전액에 포함지 않음(National Account Transfers ,http://www.ntaccounts.org/(검색일: 2022.03.01). 위 자료는 SHARE 1차 2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13개국의 평균임. SHARE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이스라엘 데이터는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별도로 제공받아 작성되었음.

(3) PF1.7.3.50대이상 인구에 대한 현금과 시간이전의 가족구성원별 분포(A.Transfers of money,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 B.Transfers of time,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2004, 2006-2007)

이 지표는 현금이전과 시간 이전에서 제공(give)과 수혜(receive)에 관여하는 가족구성원의 분포를 보여준다. 현재 지표를 구성하는 자료는 OECD(2011) Paying for the past, providing for the Futur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인데, 원자료 SHARE(Surver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waves 1 and 2를 분석한 자료이다. 이 지표는 개별국가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고 SHARE(1차(2004년)와 2차 자료(2006-7년) 15개국의 평균값만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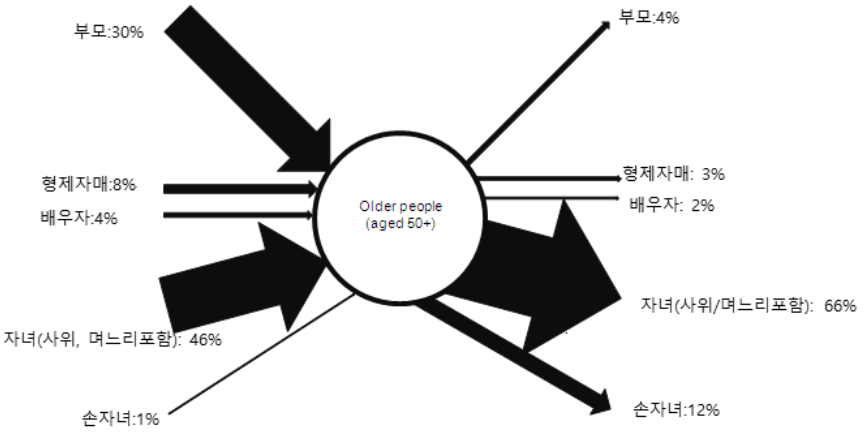
[그림 Ⅱ-15]에서 OECD 평균 가장 많은 이전을 제공하는 가족관계는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이며 전체 이전금액의 46%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이전을 하는 대상도 자녀(사위/며느리 포함)이며 전체 이전의 66%를 차지한다. [그림 Ⅱ-16]은 시간이전에 관한 것인데, 가장 많은 이전을 받는 관계는 역시 자녀이며, 가장 많은 이전을 하는 대상은 부모로 전체 이전의 30%를 차지한다. 50대 이상의 중고령집단은 자녀돌봄보다 부모돌봄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모에 대한 시간이전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53]

50+인구의 현금 및 시간이전에 대해서는 유럽은 SHARE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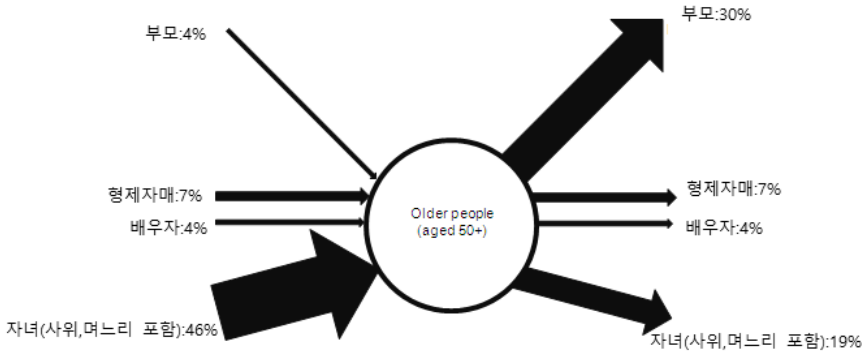
53) https://www.oecd.org/els/family/PF1%207%20Intergenerational%20solidarity%20FINAL.pdf(검색일 2023. 03.01.).

나라는 SHARE 조사 참여 국가가 아니다. 이전(transfer)을 측정할 수 있는 유사 변수가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에 있는데, 패널 자료이긴 하나 향후 자료요청시 해당 자료 검토를 통해 지표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Ⅱ-18] 현금이전, (가족관계별) 이전한 현금과 이전받은 현금의 비율(Transfers of money,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54]



[그림 Ⅱ-19] 시간이전, (가족관계별) 이전한 시간과 이전받은 시간의 비율(Transfers of time, per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55]



주: 시간이전에서 기타친족은 이전한 시간의 8%, 이전받은 시간의 8%를 차지함. 현금이전의 경우 기타친족은 이전한 금액의 5%, 이전받은 금액의 4%를 차지함. 비친족(non-relatives)은 시간이전의 32%, 현금이전의 7-8%를 차지함. 비친족 범주는 그림에 포함되지 않음(OECD, 2011).

54) https://www.oecd.org/els/family/PF1%207%20Intergenerational%20solidarity%20FINAL.pdf(검색일 2023. 03.01.).
55) https://www.oecd.org/els/family/PF1%207%20Intergenerational%20solidarity%20FINAL.pdf(검색일 2023. 03.01.).

(4) PF1.7.4. 손자녀 돌봄자 비율(Percentage of grandparents taking care of at least one grandchild, 2006-2007)

이 지표는 50세이상인구중 손자녀를 돌보는 인구의 비율을 측정한다. 이 지표 역시 SHARE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의 문항을 이용한 것으로 현재 지표값은 wave2(2006-2007년)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측정에 이용된 문항은 "지난 12개월동안 부모가 없을 때 손자녀를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돌본 적이 있는가"이다. 통계값은 SHARE 조사에 참여한 유럽 15개국만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SHARE조사 참여국가가 아니며 따라서 보고내용도 없는 상태이다. 향후 손자녀 돌봄자 비율을 요청받을 경우 지표생산과 관련하여 몇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표 Ⅱ-32〉). 먼저, 신윤정 외(2021)는 노인실태조사(3년주기 법정조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지난 1년간 직접 돌본 10세미만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측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조사년도 당시 만 65세이상의 노인이므로 모집단이 다르고 따라서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이슈가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전체 응답자 10,097명)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직접 돌봐준 10세미만의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우리나라 노인 비율은 9.0%인데, SHARE(2006-2007년조사)에서 50대 이상 집단에서 손자녀 돌봄자의 비율은 조사대상 39~64% 수준이다. 15개국중 아일랜드가 64%로 가장 높고, 체코가 39%로 가장 낮다. 노인실태조사에서 손자녀돌봄의 비율이 낮은 것은 조사대상이 65세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10세미만"의 어린 손자녀를 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경혜, 2019: 75).

다음으로 고령화연구 패널조사를 고려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이 45세 이상이기 때문에 연령요건은 충족하지만 동일대상을 시계열적으로 반복조사한 패널조사라는 점에서 OECD에 제공하는 다른 자료들과 성격이 다르다. 고령화패널 자료에서 2020년 손자녀 돌봄자의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이는 패널조사에 참여한 중고령자와 손자녀의 연령 증가 효과로 설명될 수 있는데, 2006년 50세이상 중고령자중 10세미만 손자녀를 돌본 비율은 9.0%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0.5%만이 돌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로서는 고령화연구 패널조사를 대안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 노인실태조사와 고령화연구패널 모두 10세미만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SHARE 의 손자녀(grandchild/grandchildren) 연령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영국은 16세미만). 또 SHARE는 부모가 부재할 경우 돌봄을 측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SHARE 조사와 차이가 있다. 현재로서는 노인실태조사의 문항 중 손자녀 나이와 관련된 문항을 보완하거나 문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자료 생산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OECD 보고시 연령사항을 각주 등을 통해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표 Ⅱ-32〉 OECD 손자녀 돌봄자 비율 측정 문항 및 한국 대안 문항

	조사	문항
OECD	SHARE조사 (격년주기)	[sp014] During the last twelve months, have you regularly or occasionally looked after[your grandchild/ your grandchildren] without the presence of the parents? 1. Yes 5. No
한국	노인실태조사 (3년주기)	지난 1년간 귀하께서 직접 돌봐주신 10세미만의 (친/외)손자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함께 살거나 따로사는 것에 관계없이 응답해주십시오 1) 있다 (□□명) 2) 없다
	고령화연구 패널조사[56] (격년주기)	지난 1년중에 [응답자 성명]께서 직접 돌봐주신 10세미만의 손자녀가 있습니까? ① 예 ⑤ 아니오

8) PF 1.8 법적 성년 연령(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PF1.8은 법적 성년 연령에 관한 것이다. 가족·아동정책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 보호해야할 아동의 범위와 관련해 성년연령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로 또 정책 영역별로 차이가 있다. PF1.8 지표가 검토하고 있는 성년연령은 〈 표 Ⅱ-33〉과 같으며, OECD는 관련 국제기구나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직이나 비영리기구의 DB 자료를 근거로 성년 연령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표 Ⅱ-33〉 법적 성년 연령(PF 1.8) 하위지표 지표설명 및 자료원

PF1.8 법적 성년 연령 하위지표	지표설명	OECD 자료원
성년(adults)연령	성년연령 Age of Majority	https://www.youthpolicy.org/factsheets/
	형사책임연령	https://www.crin.org/en/home/ages 현재 웹사이트 https://archive.crin.org/en/home/ages.html
	최소혼인연령	https://www.worldpolicycenter.org/policies/is-there-a-gender-disparity-in-the-minimum-legal-age-of-marriage
학업종료 및 근로연령	의무교육 종료 연령	https://www.right-to-education.org/page/comparative-table-minimum-age-legislation
	최소근로연령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1300:0::NO:11300:P11300_INSTRUMENT_ID:312283:NO

56)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대상자는 대한민국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중고령자 개인을 대상으로 표본수 10,254명이 패널로 시작하여. 2014년에는 1962~1963년생을 중심으로 한 920명을 추가함.

PF1.8 법적 성년 연령 하위지표	지표설명	OECD 자료원
위험행동 및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연령	알콜 구매 (또는) 소비 최소연령	https://iard.org/science-resources/detail/minimum-legal-age-limits/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	EU countries: http://www.protection-of-minors.eu, 한국은 형법 305조(www.law.go.kr)

출처: https://www.oecd.org/els/soc/PF2_3_Additional_leave_entitlements_of_working_parents.pdf

(1) PF.1.8.1. 성년연령(Age of majority, 2016)

성년연령은 법률상 성인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연령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상 성년은 19세이며, OECD 보고는 이에 부합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2) PF.1.8.2. 형사책임연령(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2016)

형사책임연령은 호주, 스위스, 영국(스코틀랜드제외)이 10세로 가장 낮게 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14세 또는15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상 형사책임연령은 14세이며 OECD 보고도 이에 부합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3) PF.1.8.3. 최소혼인연령(Minimum age for marriage, 2016)

최소혼인연령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독립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인이 되는 나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19세, 일본은 20세이다. 한국은 민법상 부모(또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혼인적령) 18세부터 혼인이 가능하다. 최소혼인연령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19세 보고는 적절하다.

(4) PF.1.8.4. 의무교육종료 및 최소근로연령(School leaving age and Employment age, 2016)

의무교육 종료연령과 최소근로연령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 관련되는 지표로 이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많은 국가들이 두 연령을 동일한 나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호주,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등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있으면서 파트타임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의무교육 종료연령이 최소근로연령보다 한 두 살 더 많다. 우리나라 의무교육 종료연령은 교육기본법에 15세로 명시되어 있으며, 최소근로연령은 근로기준법에 15세로 명시되어 있다.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며, 의무교육 종료연령과 최소근로연령은 여전히 15세로 유지되고 있다.

(5) PF.1.8.5. 알콜구매및소비 최소연령(Minimum age to consume and purchase alcohol, 2016)

알콜 구매(소비) 최소연령은 합법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구매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한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알콜 소비연령과 구매연령은 18세로 동일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알콜 농도에 따라 허용 연령에 차이가 있는데, 스웨덴은 알콜농도 3.5% 이하이면 18세, 그 이상일 경우는 20세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주류구매연령이 연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19세로 명시되어 있다. OECD 보고는 이에 부합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6) PF.1.8.6.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Minimum age for sexual consent, 2016)

성행위 동의연령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타인과 합의하에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최소연령은 14세~16세이다. 일본과 한국이 13세로 가장 낮고, 호주, 아일랜드가 17세, 미국은 주에 따라 17세 또는 18세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2020년 5월 형법(305조 2항) 개정을 통해 19세 이상 성인이 13~16세미만과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되게 되었다. 즉,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은 13세이지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성교 상대방이 13세~16세미만일 경우 연소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 향후 보고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코멘트 등을 통해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다. 보고시점인 2016년 현재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은 13세로 해당 법령규정에 따라 적절히 보고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34〉 한국의 법적 성년연령의 법적 근거

법적 성년	법령	조문	연령
성년연령	민법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9세
형사책임연령	형법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14세
최소혼인연령	민법807조(혼인적령)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807조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808조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세 (18세는 부모동의 필요)
의무교육 종료 연령	교육기본법 8조(의무교육) 초중등교육법13조(취학의무)	교육기본법8조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13조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15세

법적 성년	법령	조문	연령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최소근로연령	근로기준법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미만인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15세
알콜 구매 소비 최소연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1항,4항	① 청소년이란 만19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④ 가목.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등	연나이 19세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	형법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②13세이상 16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	13세

자료: 법제처 https://www.moleg.go.kr/ 관련법령(민법, 형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검색일: 2022.03.01)

9) PF1.9. 아동보호 특성(Aspects of child protection)

PF1.9. 아동보호 특성(Aspects of child protection) 지표는 아동사망(학대사망, 사고사망)율(Child mortality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 아동사망율 추이(Child mortality rates declined in almost all OECD countries since the 1970s),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아동체벌규제(Bann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보호아동비율(Proportion of children under state care)과 같은 총 5 개의 세부지표도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지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PF1.9.1. 의도적,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Child mortality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

PF1.9.1. 의도적,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Child mortality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은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ICD) 프로토콜에 따라 의도적 및 우발적 상해로 인한 아동 사망률을 의미한다[57]. 고의적 상해로 인한 사망은 학대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57) https://www.oecd.org/els/family/PF_1_9_Aspects_of_child_protection_Dec2013.pdf

있으며, 우발적 상해로 인한 사망은 방치의 결과일 수 있다. 의도적, 우발적 상해로 인한 아동 사망율 사망률은 각각 가장 최근 년도의 0~14세 아동 100,000명당 사망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2003년~2008년의 통계치를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도 기준, 각각 1.2명과 6.6명을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사망신고서 및 의료기관 기반 조사자료에 기반하여 1997년도부터 매년 연령별 통계를 산출, 사망원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어 이에 기초한 통계 값으로 추측된다. 사망원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100,000명당 사망률을 집계하고 있어[58] 적절하게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PF1.9.2. 의도적,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 추이(Changes in child deaths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 early 1980s to latest figures)

PF1.9.1.2 의도적,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 추이(Changes in child deaths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 early 1980s to latest figures)는 PF1.9.1.에 해당하는 사망률의 연도별 평균 사망률의 변화를 지표화 한 것이다. 따라서 사망원인통계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표는 적절하게 산출, 보고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1983년~1996년까지의 자료는 10년간의 지연신고 누적분이 포함된 결과로 1980년대 초에 해당하는 지표는 제시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1996년도 이후 부터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적절하게 산출되고 있다.[59]

(3) PF1.9.3.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PF1.9.3.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지표는 두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체벌 실태로 우리나라는 아동체벌 실태(2001)만을 보고하고 있다[60].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는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사 문항이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문 문항의 차이, 아동의 연령 차이, 어른 또는 부모 응답자의 차이 등으로 각 국가를 대표하는 통계 값의 국가간 절대적 비교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 관련 통계값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2013년도와 2018년도 두 차례에 결쳐 관련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2018년도 조사에서는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4첨 척도로 조사하여 해당 지표에 대한 통계값(필요하다 35%, 꼭 필요하다 1.5%)을 보고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보고 가능한 자료가 있으나 누락, 보고하지 않은

58)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orgId=101&confmNo=101054&kosisYn=Y
59)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orgId=101&confmNo=101054&kosisYn=Y
60) https://www.oecd.org/els/family/PF_1_9_Aspects_of_child_protection_Dec2013.pdf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빈곤실태조사와 병행 수행되기 때문에 빈곤가구 아동이 과대표집 되는 제한점이 있어(2019, 류정희 외), 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체벌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2001년 기준, 45%의 부모가 자녀를 치거나 발로차거나 때린적이 있다(45% of parents reported that they had hit, kicked or beaten their children)고 보고하고 있다. 해당 지표에 대한 우리나라 출처는 WHO 보고서로 제시되어 있으나[61], WHO 보고서에 사용된 조사의 출처는 명확하지 않아, 통계 지표 산출의 기반이 되는 조사명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체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조사 환경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보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 제시한 45%의 실태는 체벌보다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자녀를 훈육할 때 다음의 방법들을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를 묻고 있고, 여러 방법 중 "신체적 체벌"에 대해 4점 척도(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주 사용한다, 매우 자주 사용한다")로 측정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아동 체벌 실태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PF1.9.4. 아동체벌규제(Bann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은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법적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 국가 내에서 학대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제공한다[62]. 아동체벌 금지에 관한 법률은 OECD 전체에 보편적이지 않으며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지표는 2013년 기준으로, 아동체벌 금지 법률의 존재 여부 및 도입 년도(year of introduction)로 우리나라는 해당 법률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3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31조 8항)."라고 명시함으로써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63]. 또한, 「아동복지법 제 3조의 7」이 "아동학대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64]으로 정의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1월 8일 민법상 징계권 조항(구 제 915조,

61) https://www.oecd.org/els/family/PF_1_9_Aspects_of_child_protection_Dec2013.pdf
62) https://www.oecd.org/els/family/PF_1_9_Aspects_of_child_protection_Dec2013.pdf
63)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15(2023년 5월 8일 인출)
64)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9252657&chrClsCd=010202&ancYnChk=(2023년 5월 8일 인출).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을 삭제하여 체벌금지를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는 체벌금지국가로 변화를 공식화하였다[65]. 한편, 신체적 징계권을 삭제하는 것과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아동 체벌금지법을 제정하여 지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5) PF1.9.5.보호아동비율(Proportion of children under state care)

PF1.9.5. 보호아동비율(Proportion of children under state care)은 취학 연령 아동의 건강 행동설문조사(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2010)에 기반하고 있다[66]. 따라서 우리나라는 HSBC 조사 참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아동비율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동복지시설 현황, 공동생활가정 현황,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을 통해 보호아동 수에 대한 행정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연령별, 성별, 학령기별 보호아동 수를 보고하고 있어 HSBC 조사 기준이 되는 취학아동 대상 보호아동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한편, HBSC조사가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호아동 수를 과소 추정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67] 18세 이하와 같은 연령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조사대상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10)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 요약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는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다양한 급여와 가족유형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OECD 각국의 가족정책의 발전수준과 가족정책의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최근 “법적 성년연령” “아동보호특성”와 같은 규제적, 보호적 지표들이 추가 되어 아동보호적 성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대간 연대”지표에서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이전으로도 지표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세대간 연대 지표는 아동,청장년, 노인세대간 이전의 비율을 파악하는 지표와 50세이상에서 현금이전과 시간이전, 손자녀 돌봄자의 비율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가족정책 지표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대간 연대 지표를 모두 보고하고 있지 않은데,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통해 일부 통계보고가 가능하며, 다른 지표들은 관련 법정조사 문항에 포함시켜 생산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체계 역시 누락, 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표인데, 인구총조사 및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관련 항목을 통해 집계 가능하므로 추후 지표 생산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공적 가족급여지출과 관련하여 가족급여의 범위, 분류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OECD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

65)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3543(2023년 5월 8일 인출).
66) https://www.oecd.org/els/family/PF_1_9_Aspects_of_child_protection_Dec2013.pdf
67) https://www.oecd.org/els/family/PF_1_9_Aspects_of_child_protection_Dec2013.pdf

(SOCX)의 한국 지표 보고는 오랫동안 시계열 지표체계를 정비, 체계화하여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왔으므로 통계의 안정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가족급여의 지표범위와 내용을 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II-35〉 가족·아동 정책총괄(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결과
PF1.1	공적 가족급여지출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가족급여 유형별 공적 지출 총계(total)	O	개선필요: 아이돌봄 서비스, 자녀장려금 등이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으로 분류 되는 등 분류체계 검토필요
		현금급여(cash)	O	
		현물급여(services)	O	
		조세지출(tax breaks for families)	O	
PF1.2	공교육 지출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교육단계별, 재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 by level of education and source of funds)	O	적절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Annual expenditure per student by educational institutions)	O	적절
PF1.3	가족 현금급여 (Family cash benefits)	가족현금급여 유형 및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family benefits, by type,2018)	O	개선필요, 가족급여 제도유형 분류 재검토 필요
		가족특성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family type and earnings, 2018)	O	적절
		막내자녀 연령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8)	O	개선필요: 가정양육 수당 관련 급여액 처리 검토필요
		자녀수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number of children, 2018)	O	
PF1.4	조세-복지급여 체계의 형평성 (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가구유형별 조세-급여혜택의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for couples at different household earnings levels, 2014)	O	개선필요: 가정양육 수당 관련 급여액 처리 검토필요
		2차소득자세율(Participation tax rates for second earner parents entering employment at varying gross earnings levels, 2014)	O	적절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체계 (Child support (maintenance) systems)	아동양육비제도 주요 특징(Key characteristics of Child Support Regimes)	O	개선필요: 2015년 이후 아동양육비 결정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존재함 *보고자료는 2010년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결과
				기준임. 당시는 양육비이행원이 없었음.
		한부모가족 추이, 자녀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추이(Trends of Sole-parents1 and of Sole-Parents Receiving Child Maintenance Payments in recent years)	X	누락: 인구주택 총조사(2015년 이후 가능) 및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2년 이후 가능)로 추출 가능
		자녀양육비 수준(Social expenditure per child increases with children age)	X	누락: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로 추출 가능(2012년 이후 가능)
PF1.6	아동 연령별 공적 지출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의 규모(연령구간별, 급여유형별 시계열 자료) (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 2003 to 2019)	O	적절: 산전9개월부터~29세까지 자료 보고, 현금, 보육, 기타현물급여, 교육으로 나누어 제출. 아동연령은 0-17세 까지 계산. 가족급여유형의 구체적 분류기준은 추후검토필요
		연령구간별 공적 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2019)	O	
		0-5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 사회지출(Spending in USD PPP on children aged 0-5, 2019)	O	
		6-11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사회지출 (Spending in USD PPP on children aged 6-11, 2019)	O	
		12-17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지출 (Spending in USD PPP on children aged 12-17, 2019)	O	
PF1.7	세대간 연대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연령집단별 순이전비율(Age profile of net transfers)	X	누락: OECD 자료원인 NTS웹사이트에 자료 있음
		50+인구의 현금이전 및 시간이전 (A. Transfers of money,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B. Transfers of time,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X	자료없음: OECD는 SHARE (2006-2007)조사 값을 보고
		손자녀 돌봄자 비율(Percentage of grandparents taking care of at least one grandchild)	X	
PF1.8	법적 성년 연령 (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성년연령(Age of majority, 2016)	O	적절
		형사책임연령(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2016)	O	적절
		최소혼인연령(Minimum age for marriage, 2016)	O	적절
		의무교육종료 및 최소근로연령(School leaving age and Employment age, 2016)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결과
		알콜구매및소비 최소연령(Minimum age to consume and purchase alcohol, 2016)	O	적절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Minimum age for sexual consent, 2016)	O	적절: 기준년도 2016년, 추후 2020년 형법개정 사항 반영필요
PF1.9	아동보호 특성 (Aspects of child protection)	의도적, 우발적 사고 아동 사망율(Child mortality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	O	적절
		의도적, 우발적 사고 아동 사망율 추이(Changes in child deaths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 early 1980s to latest figures)	O	적절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X	누락: '태도'는 아동종합실태조사 기반 보고 가능
			O	적절: '실태'는 적절
		아동체벌규제(Bann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X	누락: 2021년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공식화
		보호아동비율(Proportion of children under state care)	X	누락: 보호유형별 행정통계 기반 보고 가능

나. 자녀관련 휴가정책

자녀관련 휴가(child-related leave)정책은 일가족 양립 정책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제도중의 하나로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양육과 직업생활, 가정에서의 돌봄책임과 직장에서의 소득활동과 경력추구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녀관련 휴가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고용보장 휴가(또는 휴직)로 임신 출산기의 여성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출산전후 휴가(maternity leave), 배우자나 파트너가 출산을 했을 때 남성에게 제공되는 배우자출산휴가(paternity leave), 임신중 여성근로자나 초기 양육기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휴직을 제공하는 육아휴직(parental leave)이 있다. 또 육아휴직 종료후 연장 휴가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정양육휴가(home-care leave)가 있는데, 가정양육휴가는 공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함께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번역상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하자면, OECD 지표는 자녀관련휴가와 관련하여

child-related leave, parental leave, childbirth-related leave, leave around childbirth 를 호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childbirth- related leave는 출산전후에 국한된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정양육휴가 등을 포함한 자녀관련 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parental leave의 일반적 용례는 육아휴직 제도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초기 양육과 관련해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양육휴가와 함께 쓸 때는 육아휴직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표에 따라 구분해서 번역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parental leave가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육아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외 child-related leave, parental leave, childbirth-related leave, leave around childbirth, parental leave 는 모두 자녀관련 휴가로 번역하였다.

자녀관련 휴가지표에서 주요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은 자녀출산 및 초기 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 아버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기간, 급여대체율, 이용자수, 공적 지출 규모이다. 자녀관련 휴가의 하위지표는 ①자녀관련 부모휴가제도의 주요특징(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②자녀관련 휴가 사용현황(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③취업부모를 위한 추가휴가(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parents), ④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⑤자녀관련 휴가급여 추이(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⑥동성부모와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Same-sex and adoptive parental leave entitlements)으로 이루어져 있다.

1) PF 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 특징(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PF 2.1 지표는 4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 개요(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available to mothers) ②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개요(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available to fathers) ③ 자녀관련 휴가 할당 및 공유기간(reserved and shareable family leave entitlements)④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② 지표, 즉 어머니, 아버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개요는 어머니, 아버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종류별로 제시하고 유급 휴가기간, 평균급여대체율, 완전소득균등화기간을 보고한다. 이 두 지표의 특징은 휴가주체(어머니, 아버지)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를 망라하여 보여준다는 것이다. ③은 휴가기간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할당기간과 공유기간에 관한 것이며, ④은 휴가급여의 지출규모에 관한 것이다.

(1) PF2.1.1.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available to mothers, 2022)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출산전후휴가(maternity leave), (아버지에게 할당되지 않은) 육아휴직과 양육휴가(parental leave and home care leave)이며, 개요 지표에는 이를 합한 총 휴가기간 및 대체율도 제시되어 있다. 휴가의 관대성을 비교하기 위해 완전소득균등화 기간(full-rate equivalent) 산식[68]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통계치는 휴가기간이 길더라도 급여 대체율이 낮거나 급여 상한이 정해져있는 경우 실질적인 급여혜택이 감소되는 것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가간 급여 관대성 비교에 용이하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급휴가를 국가간 비교하기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69] ①단태아이고 가구의 첫째 아동일 것 ② 출산전 부모 모두 민간부문에 고용된 총소득 평균 100% 소득자일 것 ③부모 모두 휴가자격 및 지급기준을 충족할 것 ④ 출산관련 질환이 없이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일 것 ⑤ 무급과 유급휴가 옵션이 있을 경우, 무급휴가보다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함 ⑥ 휴가기간과 급여율에서 옵션이 있을 경우(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평균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당 최고급여를 선택할 것 ⑦사용한도 내에서 유급휴가 기간을 최대한 사용할 것. 육아휴직중 공유가능한(shareable) 기간은 어머니가 최대한 사용함 ⑧ 개별사용 또는 부부결합 사용시 휴가기간을 하나의 연속적 블록으로 사용할 것 ⑨아버지/파트너의 참여시 휴가기간이 연장되거나 보너스 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이 기간은 아버지의 기간으로 “할당”할 것 ⑩고용주의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함 ⑪ 휴가기간 단위는 주(weeks)로 표기됨 ⑫ 어머니는 출산전 산전휴가를 최대한 사용할 것 등이다. 유급휴가기간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 시점은 각년도 4월이다.

2022년 현재 한국에서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산전후휴가 12.9주(90일), 평균 급여율 83.7%(2개월 통상임금 100%, 마지막달 200만원) , 완전소득균등화기간은 10.8주(12.9주 *0.837)이다.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기간은 52주, 급여대체율은 44.6%, 완전소득균등화율은 23.2주이다. 이로써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유급휴가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포함해 64.9주, 52.4% 소득대체율, 완전소득균등화기간은 34주이다.

(2) PF2.1.2.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for fathers.2022)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지표는 앞의 지표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휴가(paternity leave), 육아휴직과 양육휴가에 대해 휴가기간 및 대체율, 완전소득

68) FRE 산식은 휴가기간(주)*수급자가 받는 지급액(평균임금 대비 %)이며 단위는 기간(주)이다.
69) https://www.oecd.org/els/soc/PF2_1_Parental_leave_systems.xlsx(검색일 2023.03.01).

균등화 기간을 계산한 것이다.

2022년 현재 한국에서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배우자출산휴가 2주(10일), 소득대체율 100% , 완전소득균등화기간은 2주이다.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 기간은 52주, 급여대체율은 44.6%, 완전소득균등화율은 23.2주이다. 육아휴직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용기간 및 급여대체율은 동일하다.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유급휴가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포함해 54주, 46.7% 소득대체율, 완전소득균등화기간은 25.2주이다.[70]

(3) PF2.1.3. 자녀관련 유급휴가 할당 및 공유기간(Reserved and shareable paid family leave entitlements, 2022)

자녀관련 유급휴가 할당 및 공유기간 지표는 자녀관련 휴가중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할당된(reserved) 기간과 두 사람 중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공유(shareable)기간의 길이에 관한 것이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육아휴직 급여가 가족단위 급여로 제공되는 국가들에서는 공유기간이 있지만 급여자격이 개인에 기반한 한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공유기간이 없으며 어머니, 아버지 각자에게 할당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2022년 현재 한국은 어머니 할당기간 64.9주, 아버지 할당기간 54주, 공유기간 0주이다.

(4) PF2.1.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적 지출 규모(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2019)

이 지표는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자녀관련휴가의 공적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표값은 공적 지출 규모 총액을 당해연도 출생아 수(per live birth)로 나눈 1인당 지출규모로 제시되며 단위는 미달러 구매력지수(USD PPP)이다. 기준연도 2019년 현재 한국의 자녀관련휴가 공적 지출은 출생아 1인당 3,301 USD PPP인데 OECD 27개국 평균 16,579 USD PPP의 1/5 수준이며 27개국중 26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지표는 아니지만 제도구조를 설명하는 부가자료로 각국의 법정 출산전후휴가제도, 법정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법정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표가 있다(Table PF2.1 C, Table PF2.1D, Table PF2.1E). 이 표들의 자료원은 자녀관련 휴가의 국제적 동향을 알 수 있도록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Leavenetwork의 2022년 자료(Koslowski, A., Blum, S., Dobrotić, I., Kaufman, G. and Moss, P.(eds.)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22. Available at: http://www.leavenetwork.org/lp_and_r_reports)와 미국사회보장청의

70) Chart PF2.1A, Chart PF2.1.B, Chart PF2.1.C는 Table PF2.1.A와 Table PF2.1.B의 내용을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므로 반복 소개하지 않고 별도의 지표로 분리하지 않음.

SSPTW(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Database, https://www.ssa.gov/policy/docs/progdesc/ssptw), 유럽사회복지제도 DB인 MISSOC(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MISSOC) Database, https://www.missoc.org), 세계은행의 WBL 데이터베이스(World Bank, Women, Business and the Law Database, https://wbl.worldbank.org/national correspondents)이다. 국제휴가정책 및 연구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Research)의 한국 국가보고서는 2016년부터 보고되었으며, 2022년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작성, 보고되었다.[71]

2) PF 2.2 자녀관련 휴가 사용 현황(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이 지표는 6개의 정량적 하위지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4개는 이용자수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2개는 휴가기간에 관한 것이다. 이용자수 지표는 ① 유급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 ②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자수 ③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 ④ 유급 육아휴직 성별 이용자수(이용자 비율) 이며 휴가기간 지표는 ⑤ 휴가급여(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포함) 성별 평균 이용기간 ⑥ 유급 육아휴직 이용기간 성별 분포이다.

(1) PF2.2.1. 유급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Users of paid maternity leave, 2021 or latest year available)

이 지표는 공적으로 관리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이용자수(수급자수)에 관한 것으로 출생아 100명당 이용자수로 표시된다. 공적 유급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 통계는 각국의 제도차이에 의해 비교가능성 이슈가 있다.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는 별도의 출산휴가 제도가 없고 육아휴직 제도에 통합되어 있으면서 쿼터나 개별 권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체코, 영국, 튀르키에와 같은 국가들은 이용자격이 있는 어머니 대다수가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별도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21년 현재 핀란드, 덴마크, 헝가리, 스위스는 출생아 100명당 이용자수가 100이 넘는 값(핀란드 119.9명, 덴마크 106.6, 헝가리 105.1명, 스위스 100.3명)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출생아수는 해당년도(2021년)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용자수는 이용 시작일 기준이 아니라 해당년도에 이용한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집계가 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에 자녀를 출생한 어머니가 (자녀가 2021년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2021년 1월에도 출산휴가를 이용하고 있다면 2021년 출산휴가 이용자로 중복집계 된다.

---

71)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 보고내용은 Kim, H., E. Shin and S. Lee(2022)에 나와있다.

한국 통계는 고용보험DB에서 당해연도 출산휴가급여 초회(신규)수급 여성근로자의 수/당해년도 출생아수*100 로 집계되고 있어 중복집계 문제가 없다(2005년부터 계속 지표). 한국의 이용자수는 2020년 출생아 100명당 26.1명으로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한국 통계는 공무원, 교직원 등 출산휴가를 이용하지만 고용보험 DB에 포함되지 않는 이용자수가 반영되지 않은 숫자이므로 통계보고시 이러한 한계를 부연설명할 필요가 있다.[72]

(2) PF2.2.2.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자수(Users of paid paternity leave, 2021 or latest year available)

이 지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공적으로 관리되는 유급출산휴가를 이용하는 배우자 수에 관한 것으로 다른 이용자수 지표와 마찬가지로 출생아 100명당 이용자 수로 산출한다. 2021년 현재 한국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자 수는 미보고 상태이다. 최근 통계청은 〈육아휴직통계〉에서 고용보험 DB를 이용해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자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고용보험의 고용행정통계를 이용한 것으로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것이다.[73] 즉 현재 발표된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 수는 고용보험에서 급여재원이 지원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휴가 이용자 수와 차이가 있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급여이용자 통계는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법정복지를 제외하고 있어 이 경우 단협, 취업규칙을 통해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제외된다. 따라서 OECD 보고시 고용보험이 재원을 부담하는 이용자 수로 보고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74] 만을 대상으로 한 지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제도적 특성을 해당지표 각주나 부가설명표 등에 표기할 필요가 있겠다.

(3) PF2.2.3.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Users of paid parental leave, 2021 or latest year available)

PF 2.2.3 유급육아휴직 이용자수 지표는 출생아 100명당 성별 이용자수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72) 2020년부터 통계청은 〈육아휴직 통계〉를 생산, 발표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건강보험 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해 고용보험 가입자, 공무원 교직원까지 포함한 육아휴직 통계를 발표하였으며 2022년에는 출산휴가자 통계(남녀)도 추가하였다. 출산휴가자 통계는 육아휴직통계와 달리 고용보험자료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수 해석에 유의를 요한다. 출산전후휴가(모) 통계에는 공무원, 교직원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배우자출산휴가(부) 통계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자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공무원, 교직원, 대기업 근로자가 제외된 수치이다. 고용보험 DB에 기반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https://eis.work.go.kr/eisps/rpt/reptDtl.do?menuId=030010040(검색일, 2023.06.01.)에서 찾아볼 수 있다.

73) 2019년 10월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중 5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74)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시행령 12조 1항의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시행령 12조 2항에 명시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규정된 기업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수, 출생아수 통계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이용자수는 해당년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사람의 수로 측정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집계된다. 2020년 육아휴직자 169,345명중 아버지는 38,511명, 어머니는 130,834명이며, 2020년 출생아수는 272,337명이다. 이로써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어머니 이용자수는 48명, 아버지 이용자수는 14.1명이다.

육아휴직 통계는 고용보험DB, 건강보험 DB 등을 결합한 통계청의 육아휴직 통계로 교체되어 보고되고 있으며,[75] 출생아 100명당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출생아수 의 자료원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이다.

(4) PF2.2.4. 육아휴직이용자중 남성비중 추이(Trends in men's share of recipients/users of publicly administered parental leave/benefits, 2021 and 2010)

이 지표는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중 남성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관한 추이 지표이다. 한국지표는 위 PF2.2.3과 동일하게 통계청의 〈육아휴직통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2010년 2.7%에서 2020년 22.7%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5) PF2.2.5. 성별 자녀관련휴가 이용기간 Duration of paid leave for men and women, 2021 or latest year available)

이 지표는 성별(어머니, 아버지의) 자녀관련 휴가 이용기간을 측정한다. 지표값은 자녀1인당 남녀의 휴가 사용일수, 그리고 이를 다시 성비(gender distribution)로 전환한 값으로 측정되고 있다. OECD 자녀1인당 유급휴가 사용일수 통계가 제시되고 있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와 같은 북유럽국가들과 독일, 포르투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11개국에 불과하며 성별통계와 성비도 이 11개국만 보고되어 있다.

자녀관련 휴가기간과 관련된 한국 통계는 미보고 상태이다. 통계청이 새로 발표한 〈육아휴직통계〉에도 휴가기간과 관련된 지표가 없다. 다만, 자료원인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의 항목 구성표에 따르면, 부, 모 각각 육아휴직 사용시작일과 사용종료일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부, 모 각각 사용기간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OECD 통계는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포함한 총 유급휴가기간에 대한 성별 데이터를 요구하므로 육아휴직 기간만으로는 자녀관련휴가 전반의 성별 이용기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

75) OECD 육아휴직 사용자수 통계의 각주(Note)에 한국 자료는 고용보험 자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통계를 생산하는 자료원은 통계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2010년이후 통계는 모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 행정자료를 결합한 〈육아휴직통계〉로 교체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자수 정보가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전체 휴가기간을 산출하는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가기간과 관련된 지표는 현재 상태로는 자료없음으로 처리하였다.

〈표 Ⅱ-36〉 PF2.2 자녀관련 휴가제도 이용 현황 하위지표별 자료원

PF2.2 자녀관련 휴가제도 이용현황 하위지표	한국	
	보고 여부	자료원
유급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출생아100명당, 2021)	O	고용보험DB, 공무원 교직원 제외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출생아 100명당, 2021)	X	고용보험 DB를 이용해 〈육아휴직 통계〉에 생성되어 있음, 고용보험에서 재원이 지출되지 않는 공무원 교직원 대기업근로자 제외. 현재 누락지표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출생아 100명당, 성별 이용자수, 2021)	O	통계청〈육아휴직통계〉, 고용보험DB, 행정자료를 이용해 공무원 교직원포함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비중 추이(시계열, 2010년 2021년 비교)	O	통계청〈육아휴직통계〉, 고용보험DB, 행정자료를 이용해 공무원 교직원포함
성별 유급휴가 이용기간 및 성비(2021년, 일, %) *성비=성별사용일수/총사용일수*100	X	현재 통계미생산, 자료없음 지표. 아동가구통계 등록부의 관련 변수를 통해 육아휴직 이용기간 지표 생산 가능성 검토 필요.

3) PF 2.3 취업 부모 추가휴가(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parents)

이 지표는 자녀관련 휴가 이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한 것이다. 지표명에는 취업부모(working parents)를 위한 추가 휴가 기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자에게 보장된 휴가 일수를 측정하고 있다. 하위지표는 ①연차휴가(annual leave)일수와 ②가족돌봄휴가 및 휴직(Leave entitlements to care for sick or ill family members)이다. 연차휴가는 법정유급연차휴가(statutory paid annual leave)와 공휴일(public holiday)로 구분되며, 일부 EU국가들(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자에게 보장된 약정 휴가 일수에 대한 정보(2014년)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1) PF2.3.1. 법정 및 단협 휴가일수(Statutory and collectively agreed annual leave)

우리나라는 단협 약정 휴가를 제외하고 연차휴가와 공휴일을 보고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현재 법정연차휴가 15일, 공휴일 15일로 보고되어 있으며 각주에는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에 차이가 있으며 공휴일은 법률적으로 유급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고 표기되어 있다. 먼저 OECD가 국가 비교를 위해 설정하고 있는 기준 노동자는 민간부문 전일제 1년 근속 노동자이므로 이 조건에서 우리나라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이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을 통해 2020년부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상시 30명이상 300명 미만,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주석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보고에는 유급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비교 대상 노동자 기준으로 본다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이 날을 포함해 16일로 보고하고 국가별 각주사항에 표기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ECD 휴가 및 공휴일에 대한 자료원은 World Bank "Doing Business: Measuring Business Regulation" Database, ILO Travail Database, EURES, The European Job Mobility Portal이며 한국의 법정휴가 및 공휴일에 관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표기되어 있다. 단협에 의한 연차휴가의 자료원은 Observatory EurWORK(2014) Developments in collectively agreed working time이다.

〈표 Ⅱ-37〉 PF2.3 취업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휴가 관련 한국의 법령 및 휴가일수

휴가 유형	관련법령	관련 조문	휴일(휴가)수
법정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5일**(우리나라는 연공에 따라 달라짐[1)]
법정 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1일**
법정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으로 보장**(2022년 1월1일부터)

휴가 유형	관련법령	관련 조문	휴일(휴가)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최소) 유급공휴일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출처: 법제처 www.law.go.kr 각 법령 및 시행령

(2) PF2.3.2. 가족돌봄휴가(휴직)개요(Summary of leave entitlements to care for sick or ill family members)

가족돌봄휴가(휴직) 개요(PF2.3.2. Summary of leave entitlements to care for sick or ill family members)는 OECD 각국의 가족돌봄 휴가, 휴직제도를 요약 소개하는 내용으로 급여내용(Entitlement), 이용자격(Eligibility criteria), 기간(duration), 급여액(및 조건)(payment (and condition))으로 이루어져있다. 한국의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보고 사항은 〈표 Ⅱ-38〉과 같다.

〈표 Ⅱ-38〉 한국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2020년 1월 기준)

	급여내용	자격기준	기간	급여수준(및 조건)
가족돌봄 휴직	(사고, 질병, 노령의) 확대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무급휴가	(공란)	연간 90일, 일회사용기간 30일 이상.	무급
가족돌봄 휴가	(사고, 질병, 노령, 보육관련)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공란)	연간 10일, 일단위로 사용가능,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	무급 단체협상에 따라 유급

한국의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2조 2항(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다.[76]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

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이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 휴직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대상은 근로자의 "가족"이며,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다. 가족돌봄휴직의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족돌봄휴가에는 질병, 사고, 노령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이 포함되어 휴가와 휴직의 사유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또,OECD 보고에는 돌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가 가족돌봄휴직은 확대가족(a extended family),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가족(a family)로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고 되어 있는데, "가족"의 범위가 같으므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격기준은 시행령 제16조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가족돌봄휴직은 돌봄휴직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사업장 근속 6개월한 근로자 표시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가족돌봄휴가는 공란으로 둘 필요가 있다.[77]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에 대한 자료원은 ILO Working Condition Laws Database, Koslowski, A., Blum S.et al.(2019)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19, European Commission(2012)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Provisions and Providers in 33 European Countries"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MISSOC(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2015) Comparative tables 와 각국의 담당부처 또는 전문위원이 제출한 자료이다. 우리나라 자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나, 급여내용(entitlement)과 자격기준을 보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4) PF 2.4 자녀관련 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PF 2.4 자녀관련 휴가의 소득대체율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양육휴가 등 자녀의 출산 및 초기 양육기에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급여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급여를 비교하는 기준인 "급여율"(payment rate)은 유급휴가기간동안 수급한 급여가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평균노동자 소득대비(AW 50%, 100%, 150%) 소득대체율과 순가구 균등화소득(net equivalised income)대비 소득대체율로 계산된다. [78]

---

76) 법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20일·가정양립지원에%20관한%20법률)(검색일 2023.03.01.).

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875#0000, 검색일 2023.03.01.) 은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허용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9년 12월4일부터 종전 1년 규정을 6개월로 변경하였다

국가간 비교를 위해 비교대상 기준소득은 세전소득(gross earnings)인데 오스트리아, 칠레, 독일은 세후 순소득(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비교를 위해 모델 가족이 설정되고 있는데, 급여수급 가구는 맞벌이가구이며 배우자(파트너)는 100% 평균임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며 다른 피부양자는 없고 첫 자녀가 태어난 경우를 가정한다.

하위 지표는 ①(어머니가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의 소득대체율 ②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의 소득대체율 ③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소득대체율 ④출산후 첫째달의 소득의 출산전 소득대체율 ⑤산후 1개월, 6개월, 1년, 2년 소득의 출산전 소득대체율이다(〈표 Ⅱ-3-〉). ①-③ 의 소득대체율 기준은 AW(평균노동자 소득) 50%, 100%, 150%이며, ④ ⑤는 출산 1년전 소득(순가구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정의는 PF2.1과 동일하다.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는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아버지 쿼터"처럼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고 어머니에게 이전할 수 없는 휴가(기간)이며 육아휴직 "보너스"제도가 있는 경우 보너스주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공유(shareable) 기간 중 아버지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AW 소득대체율은 배우자의 소득이 AW 100%이고 첫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를 가정한 값이며, (순)가구소득대체율[79]은 부부의 소득은 동일하고 소득수준만 다른 세 개의 구간을 가정하였으며 자녀수는 2명 첫째자녀는 2살 둘째자녀는 신생아라는 점은 공통으로 적용된다.

OECD는 조세급여체계(Tax-ben system)와 연동하여 가구유형별 조세 및 복지급여의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가족지원계산기(Family Support Calculator)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2014년까지 업데이트되어 있다.[80] 가족지원계산기는 연간 조세 및 복지급여액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계산기 시스템을 통해 월별 급여의 변동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 우리나라 가정양육수당이 모두 가족수당 급여로 계산되고 있어 소득대체율 계산에 한계가 있다. 국가간 비교시 주석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1) PF2.4.1. 출산전후휴가 급여 소득대체율(Maternity leave payment rates, 2014)

이 지표는 어머니(여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의 (세전)소득대체율 수준을 근로자의 소득수준별로 산출한다. 2014년 현재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을 비롯한 OECD 13개국의 출산

78)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처럼 시기별로 다른 급여율이 적용될 경우 기간 가중을 두어 급여율을 계산한다.
79) 기준이 되는 순가구소득의 산식은 순가구소득=세전소득+가족급여+공공부조+실업급여+주거급여+근로촉진급여-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이다.
80) Tax-Ben web calculator는 막녀자녀의 연령이 2세로 고정되어 있어 휴가관련 지표가 기준으로 하는 조건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전후 휴가의 소득대체율은 100%이다. 우리나라는 AW50% 소득의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소득대체율은 92.7%, AW100% 소득은 79.7%, AW150% 소득은 75.4%로 보고되었는데 계산결과 현재 보고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2014년 AW100% 41,398,692원).[81]

(2) PF.2.4.2.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의 소득대체율(Parental leave payment rates, 2014)

이 지표는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소득기준은 세전소득이며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AW50%, AW100%, AW150% 소득수준별로 계산한다. 2014년 한국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40%이지만 상한액(100만원)이 적용되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체율이 낮아진다. 계산결과 AW50%일 때 40.0%, AW100%일 때 29.0%, AW150%일 때 19.3%로 현재 보고내용과 일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PF.2.4.3.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소득대체율(Father-specific leave payment rates, 2014)

이 지표는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 즉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중(어머니는 사용할 수 없고)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비교 제시하는데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하는데 있어 각국의 노력 정도와 급여의 관대성 수준을 알 수 있다. 표준화를 위해 휴가이용자인 아버지의 가구는 배우자(아내) 임금이 AW100%인 맞벌이 가구이며 첫째 자녀를 출산해 휴가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우리나라는 아버지에게 할당된 육아휴직 기간이 52주로 OECD 국가중 가장 길지만, 소득대체율이 40%(2014년)로 낮아 전체 휴가기간의 소득대체율은 낮다.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소득대체율은 유급휴가 3일 100% 소득대체율을 포함하여 계산했을 때 결과는 AW50% 일 때 40.7%, AW100% 일 때 29.8%, AW150%일 때 20.2%이다. 현재 보고내용과 일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PF.2.4.4. 출산후 첫째달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Net equivalised household income in the first month after birth, 2014)

이 지표는 출산전 대비 출산후 가구소득의 변화를 소득수준별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측정에 사용되는 통계값은 출산후 첫째달 순가구균등화소득, 출산1년전 순가구균등화소득이다. 출산후 소득대체율 값은 보고되어 있으나 출산 1년전 순가구소득(균등화)등의 준거값이 제시되지 않아 지표 산출 근거값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81) 2014년 기준 출산전후 휴가(90일)는 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 3개월차는 고용보험 재원으로 135만원이 지급되었다,

(5) PF.2.4.5. 출산후 시기별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Net equivalised income over the period of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2014)

이 지표는 출산전후 소득변화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PF2.4.4 지표와 유사하지만 가구소득을 고정한 상태에서 출산후 기간을 산후 1개월, 6개월, 1년, 2년으로 구분해 소득변화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표 자료에는 기준가구소득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산후 1개월 값이 PF2.4.4와 동일하기 때문에 AW100%-AW100%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나 산후6개월, 산후1년, 산후2년의 가구소득수준과 출산 1년전 순가구균등화소득 값이 제시되지 않아 지표산출의 근거가 되는 통계값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표 Ⅱ-39〉 PF2.4 자녀관련 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

하위 지표	소득기준	한국(2014) (%)
출산전후휴가 급여 소득대체율(Maternity leave payment rate)	AW 50%	92.7
	AW100%	79.7
	AW150%	75.4
모,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	AW 50%	40.0
	AW100%	29.0
	AW150%	19.3
부(father-specific),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AW 50%	40.7
	AW100%	29.8
	AW150%	20.2
출산후 첫째달 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가구소득은 순가구균등화 소득이용)	AW50%-AW50%	95,2
	AW100%-AW100%	96.6
	AW150%-AW150%	97.2
출산후 1개월, 6개월, 1년, 2년으로 구분. 출산후 시기별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가구소득은 순가구균등화 소득 이용)	산후 1개월	96.6
	산후 6개월	66.8
	산후 1년	66.8
	산후 2년	65.9

출처: https://www.oecd.org/els/family/PF2_4_Parental_leave_replacement_rates.xlsx(검색일 2023.03.01.)

5) PF 2.5 자녀관련 휴가 급여 추이(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이 지표는 자녀출산 전후 초기 양육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의 도입시기와 기간에 관한

것이다. 지표 명칭에서 ”추이“(trend)라고 표기되었듯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휴가이용자 성별(어머니, 아버지) 휴가유형별(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양육휴가) 휴가기간을 보여주는 시계열 지표이다. 지표에 대한 간략 설명은 1970년, 1995년, 2022년 세 시점을 대표로 보여준다.[82] 하위 지표는 ①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 ②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고용보장(유급 무급 포함)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 기간과 최초도입년도 ③아버지에게 할당된(reserved) 유급 휴가 기간이다. 세세 분류 지표와 한국 값은 〈표 Ⅱ-40〉에 제시되어 있다.

(1) PF2.5.1.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 추이(Length of paid maternity,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 1970, 1995, and 2022)

이 지표는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출산휴가, 육아휴직, 양육휴가)의 추이를 보고하는 지표이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전체기간, 산전기간, 산후기간으로 구분되어 보고되었다. 한국의 1970년 보고값 0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는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유급 산전후 휴가기간 60일 보장이 명시되어 있었고 1961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후 30일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명시되었다는 점이 표시될 필요가 있다. 비록 1970년 당시 근로기준법이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83] 데이터베이스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현실화”된 시점은 1988년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60일의 휴가기간이 8.55주, 산후 30일은 4.25주로 표시되어 있어 일(days)수를 주(week)로 환산한 값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PF2.5.2.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고용보장(무급포함)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기간, 최초도입년도 (Length of job-protecte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paid and unpaid) available to mothers by year of introduction, 2022)

이 지표는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고용보장 급여로 처음 도입된 시점과 유급화된 시점을 파악하고, 또 육아휴직, 양육휴가, 총 유급휴가 등에 대해 각각 고용보장 휴가기간(무급포함)과 유급휴가기간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된 추이지표이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제도가 (무급) 고용보장급여로 처음 실시된 것은 1988년이며 유급화 된 것은 2002년이다. 각각의 지표값에 대해서는 〈표 Ⅱ-40〉에 제시되어 있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어머니가 사용할 수

82) https://www.oecd.org/els/family/PF2_5_Trends_in_leave_entitlements_around_childbirth.pdf(검색일 2023. 03.01.)

83) 1953년 근로기준법 제60조(산전후휴가)는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녀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1961년 근로기준법 제60조(산전후휴가)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녀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법제처, 근로기준법. http://www.law.go.kr

있는 휴가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기옵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여가 후하고 기간이 짧은 휴가와 급여가 낮고 기간이 긴 휴가를 선택할 수 있다.[84]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중 “장기옵션” 사항은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PF2.5.3.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휴가기간(Length of paid paternity leave and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reserved for fathers, 1970, 1995 and 2022)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휴가 지표는 휴가기간을 배우자출산휴가, 유급배우자휴가기간,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양육휴가기간, 유급 육아휴직과 양육휴가기간, 총휴가기간, 총 유급휴가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8년, 3일 무급 방식이었으며, 유급휴가는 2012년 3일(무급포함 5일)로 도입되었다. [85] 아버지에게 할당된 육아휴직은 52주이며 2008년 유급으로 도입되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해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기간은 총 54주이다.

〈표 Ⅱ-40〉 자녀관련 휴가유형별 휴가기간(시계열 자료 1970년~2022년)

	지표명칭	휴가기간(단위:주)	한국		
			1970	1995	2022
출산휴가 (어머니만)	Maternity_weeks	출산전후휴가기간	0	**8.55**	12.86
	Maternity_prebirth	출산전후휴가 산전기간	0	**4.25**	6.43
	Maternity_postbirth	출산전후휴가 산후기간	0	**4.25**	6.43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휴가	Parental_protected	모, 고용보장육아휴직기간	0	47.75	52.00
	Parental_paid	모, 유급육아휴직기간	0	0	52.00
	Parental_paid_long	모, 육아휴직시 “장기옵션”기간	없음	없음	없음
	Homecare_protected	모, 고용보장 양육휴가기간(무급포함)	없음	없음	없음
	Homecare_paid	유급 양육휴가기간	없음	없음	없음
	Total_protected	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양육휴가 포함 총 고용보장 최대이용기간	0	56.23	64.86
	Total_paid	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양육휴가 포함 총 유급휴가기간	0	8.55	64.86
	Total_paid_long	모, “장기옵션”있을 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양육휴가, “장기옵션”포함 총 유급휴가기간	없음	없음	없음

84) https://www.oecd.org/els/family/PF2_5_Trends_in_leave_entitlements_around_childbirth_annex.pdf
85) https://www.oecd.org/els/family/PF2_5_Trends_in_leave_entitlements_around_childbirth_annex.pdf

	지표명칭	휴가기간(단위:주)	한국		
			1970	1995	2022
아버지에게 할당된 (exclusive use) 휴가	Patleave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휴가기간	0	0	2.00
	Patleave_paid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유급배우자휴가기간	0	0	2.00
	Father_specific_Parleave	아버지에게 할당된 육아휴직과 양육휴가기간	0	0	52.00
	Father_specific_Parleave_paid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 육아휴직과 양육휴가기간	0	0	52.00
	Total_Father_specific	아버지에게 할당된 총 휴가기간	0	0	54.00
	Total_Father_specific_paid	아버지에게 할당된 총 유급휴가기간	0	0	54.00

출처: https://www.oecd.org/els/family/PF2_5_Trends_in_leave_entitlements_around_childbirth.xlsx(검색일 2023.03.01.)

6) PF2.6 동성부모과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Same-sex and adoptive parental leave entitlements)

이 지표는 동성 부모와 입양부모가 자녀관련 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접근성과 자격에 관한 것이다. OECD 국가들에서 가족은 소위 '정상가족'의 범위를 넘어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성간 법률혼의 범위를 넘어 어느 정도까지 가족형성권과 부모의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이다.

PF 2.6 지표에 대한 정의 및 방법론(definitions and methodology)에 따르면[86], 동성 부모(same sex parents)란 현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동성관계의 부모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동성 부모는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으며 이성 부모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동성혼이 불법인 일부 국가에서도 동성 부모는 시민결합(civil unions) 또는 계약 형태로 등록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 영국은 법률혼은 물론이고 사실혼, 동성관계까지 포함해 다양한 파트너 관계를 인정하고 자녀관련 휴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을 비롯해 헝가리와 튀르키에 등에서 동성혼은 불법이며 동성 부모는 어떤 형태의 법률적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자녀관련 휴가의 권리도 누릴 수 없다.

(1) PF2.6.1. 남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2022)

이 지표는 남성 동성부모가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입양휴가 등의 자녀관련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지 자격여부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전체 휴가에 대해 자격없음으로 표시

86) https://www.oecd.org/els/family/PF2-6-same-sex-parents-leave-entitlements.pdf(검색일 2023.03.05.).

되어 있고, 코멘트로 “Same-sex marriage is not legal, meaning parental/paternity leave is not extended to same-sex couples” 즉, 동성혼이 불법이기 때문에 자녀관련 휴가자격이 없음이 부연되어 있다.

(2) PF2.6.2. 여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Fe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2022)

이 지표는 여성 동성부모가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입양휴가 등의 자녀관련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지 자격여부에 관한 것이다. 동성혼과 동성파트너쉽을 인정하는 많은 국가들이 이성혼과 동등한 휴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므로 여성동성부모 역시 남성 동성부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한국 보고사항에서 여성 동성부모는 출산전후휴가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혼인관계에 상관없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자격있음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3) PF2.6.3.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Adoption leave entitlements)

이 지표는 입양부모의 휴가 이용자격에 관한 것이다. 이 때 입양 부모(adoptive parents)는 아동을 입양한 사람 또는 커플을 의미하는데, 입양부모는 개인자격 또는 파트너와 공동자격으로 자녀를 입양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입양시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헝가리에서 독신인 개인은 입양 자격이 없으며, 일본과 한국에서도 입양을 위해서는 부모가 반드시 혼인 상태여야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입양부모의 육아휴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입양부모는 친부모와 동일한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표 Ⅱ-41〉 동성(same-sex) 부모,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2022년 4월 기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양육휴가	입양 특별휴가	한국 코멘트 내용
남성 동성부모					동성혼은 법률혼으로 인정하지 않음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는 동성혼 커플에게는 확대되지 않음.
여성 동성부모	x (자격있음)				동성혼은 범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는 동성혼 커플에게는 확대되지 않음.
입양부모			x		법적으로 혼인중의 부부만 입양할 수 있음

주: 자격이 있는 경우만 x 로 표시, 자격이 없는 경우 공란임.

(4) PF2.6.4. 대리모 허용(Access to surrogacy,2022)

PF 2.6.4는 대리모 접근성에 관한 것이다. 지표 정의에서 대리모(surrogacy)란 여성이 동의하에 아이의 법률적 부모가 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OECD가 비교하는 것은 직접적 성관계가 아닌 의학적 보조생식기술을 이용하여 아이를 인공수태하여 임신, 출산하는 자궁대리모의 경우에 관한 것이다.[87]

OECD 국가들은 대리모가 금지된 국가, 이타적 대리모만 허용하는 국가, 이타적 상업적 대리모 모두 허용하는 국가,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는 국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명확한 법률이나 규제가 없는(Neither statues no regulations address surrogacy)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리모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은 없지만 법원 판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는 대리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2018브15 결정 2018. 5. 18. 선고에 따르면 "고전적 대리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이 '자궁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김현진, 2019)라고 판시하고 있다. 관련 판례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를 대리모 금지국가로 표시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자녀관련 휴가 요약

자녀관련 휴가제도는 종류가 다양하고 국가별 제도의 조합도 다양해서 지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어려운 정책영역이다. 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내용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량지표 산출시 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주석(note)와 부록(annex)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특징"은 적절하게 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녀관련휴가 공적 지출 규모는 고용보험 지출만 포함하고 있는데, 사용자 통계가 공무원, 교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출통계 역시 범위를 확대, 포괄적인 집계방식을 시도할 필요도 있겠다. 또,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OECD의 Family Support Calculator의 한국 자료가 부정확하고 웹을 통해서는 연간자료 형태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거값을 확인하여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87) https://www.oecd.org/els/family/PF2-6-same-sex-parents-leave-entitlements.pdf(검색일 2023.03.05.).

〈표 Ⅱ-42〉 자녀관련 휴가(Child-related leave)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결과
PF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특징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available to mothers)	O	적절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for fathers)	O	적절
		자녀관련 유급휴가 할당 및 공유기간	O	적절
		자녀관련휴가 공적 지출규모 (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O	적절
PF2.2	자녀관련 휴가 사용현황 (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유급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 (Users of paid maternity leave)	O	적절: 고용보험 DB, 공무원 교직원 포함 검토필요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 (Users of paid paternity leave)	X	누락: 고용행정통계 2019년부터 값 있음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 (Users of paid parental leave)	O	적절: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로 시계열 모두 교체됨
		육아휴직이용자중 남성비중 추이 (Trends in men's share of recipients/users of publicly administered parental leave/ benefits)	O	적절: 통계청의 육아휴직통계로 시계열 모두 교체됨
		성별 자녀관련휴가 이용기간(Duration of paid leave for men and women)	X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관련변수 있으므로 생산 검토필요
PF2.3	취업부모 추가휴가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arents)	법정 및 단협 휴가일수(Statutory and collectively agreed annual leave)	O	개선필요: 근로자의 날 포함
		가족돌봄휴가(휴직)개요(Summary of leave entitlements to care for sick or ill family members)	O	개선필요: 휴가자격기준 검토필요
PF2.4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산전후휴가 소득대체율 (Maternity leave payment rates, 2014)	O	적절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의 소득대체율 (Parental leave payment rates, 2014)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결과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소득대체율 (Father-specific leave payment rates, 2014)	O	적절
		출산후 첫째달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Net equivalised household income in the first month after birth, 2014)	O	개선필요: 가족지원계산기 산전 순가구소득 보고 금액이 불명확함. 근거값 확인필요.
		출산후 시기별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Net equivalised income over the period of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2014)	O	
PF2.5	자녀관련 휴가급여 추이(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 추이 (Length of paid maternity,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 1970, 1995, and 2022)	O	개선필요: 출산휴가기간 주별환산값 검토필요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고용보장(무급포함)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기간, 최초도입년도 (Length of job-protecte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paid and unpaid) available to mothers by year of introduction)	O	개선필요: 한국 52주로 보고. 시계열 자료는 출산휴가를 제외한 47.75주로 불일치함(1988년 시행당시 출산휴가 포함 1년)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휴가기간 (Length of paid paternity leave and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reserved for fathers, 1970, 1995 and 2022)	O	적절
PF2.6	동성부모와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Same-sex and adoptive parental leave entitlements)	남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O	적절(동성혼은 불법이므로 해당없음)
		여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Fe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O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 Adoption leave entitlements	O	적절
		대리모 허용Access to surrogacy	O	개선필요: 대리모관련 법적 규정 있음.

3. 소결: 한국의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지표 생산 방안

이 절에서는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PF1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PF2 자녀관련 휴가 지표는 OECD 사회지출(SOCX), 교육지출, 조세급여체계(Tax-Ben system) 등 장기 시계열 자료가 확보된 기존 DB를 이용하고 있어 보고의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관련 지표의 일부, 세대간 연대 지표 전체, 자녀관련휴가지표중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에 대해 보고가 완료된 상황이다.

가. 개선필요

지표값 보고여부와 별도로 기존 분류체계의 범주를 명확히 하거나 다시 검토,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서비스와 자녀장려금등은 가족급여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분류되어 가족정책과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 또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수당과 유사하게 집계되어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현금급여를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 이 경우 “개선필요”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산식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연령별 공적 사회지출의 경우 하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보를 보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배우자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특성 및 이용자수와 관련된 통계가 모두 생산되고 있지만 지표의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이용자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등이 포함되어 통계가 산출, 보고되지만, 사회지출(SOCX) 통계에는 고용보험 수급자 중심으로 집계가 되고 있으며, 육아휴직 통계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행정자료를 연계한 DB가 사용되지만 출산휴가는 여전히 고용보험 통계만 이용하는 등 자료원이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향후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표 Ⅱ-43〉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총괄 및 휴가 부문 개선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지표 생산 방안
PF1.1	공적 가족급여지출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가족급여 유형별 공적 지출 총계(total)	아이돌봄서비스, 자녀장려금 등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되는 등 분류체계 검토필요, 시계열 연속성을 고려하되 합리적 재편이 필요함.
		현금급여(cash)지출	
		현물급여(services)지출	
		조세지출(tax breaks for families)	
PF1.3	가족 현금급여 (Family cash benefits)	가족현금급여 유형 및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family benefits, by type, 2018)	가족급여 제도유형 류체계 재검토 필요
		막내자녀 연령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8)	가정양육수당 관련 급여액 처리 논의필요
		자녀수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number of children, 2018)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지표 생산 방안
PF1.4	조세-복지급여 체계의 형평성 (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가구유형별 조세-급여혜택의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for couples at different household earnings levels, 2014)	Family Support Calculator 사항 검토필요. 가정양육 수당 관련 급여액 처리 검토필요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체계 (Child support systems)	아동양육비제도 주요 특징(Key characteristics of Child Support Regimes)	2015년 이후 자녀양육비 결정기관 존재함(Agency No=>Yes) *OECD보고연도는 2010년. 당시는 없음
PF2.3	취업부모 추가휴가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arents)	법정 공휴일 및 단협 휴가일수 Statutory and collectively agreed annual leave	근로자의 날 포함 16일로 변경
		가족돌봄휴가(휴직)개요 Summary of leave entitlements to care for sick or ill family members	휴가자격기준 추가
PF2.4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출산후 첫째달 순가구소득대체율 (Net equivalised household income in the first month after birth, 2014)	가족지원계산기 산전 순가구소득 보고 금액이 불명확함. 근거값 확인필요.
		출산후 시기별 순가구소득대체율 (Net equivalised income over the period of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2014)	
PF2.5	자녀관련 휴가급여 추이 (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 추이 (Length of paid maternity,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 1970, 1995, and 2022)	출산휴가기간 주별 환산값 검토필요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고용보장(무급포함)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기간, 최초도입년도 Length of job-protecte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paid and unpaid) available to mothers by year of introduction, 2022	1988년 육아휴직 산전휴휴가 포함한 기간은 52주. 육아휴직만은 52주에서 산전후휴가 30일을 뺀 값 47.85주임. 시계열 값은 47.75주로 불일치,
PF2.6	동성부모와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Same-sex and adoptive parental leave entitlements)	대리모 허용Access to surrogacy	한국 대리모관련 법적 규정 있음. 금지로 표시할지 여부 검토필요

나. 누락

누락 지표는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체계 지표중 한부모가족비율(추이지표), 자녀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비율(추이지표), 자녀양육비 수준이며, PF1.7세대간 연대 지표 중 연령집단별 순이전비율, PF1.9 아동보호 특성 지표중 보호아동비율, 그리고 PF.2.2 자녀관련 휴가의 사용현황 지표 중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이다.

한부모가족의 비율, 자녀양육비와 관련된 지표들은 현재 OECD의 비교시점에는 자료가 없지만 현재 통계청과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생산가능한 상태이므로 누락지표로 분류하였다. 한부모가족추이는 인구총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지만 자료의 정확성을 고려할 때 2015년 이후부터 시계열 구성이 가능하다. 자녀양육비와 관련된 지표는 2012년 이후 한부모가족실태 조사의 결과를 반영한 지표 생산 및 보고가 필요할 것이다. PF.17의 연령집단별 순이전 비율은 국민이전계정에서 관련 지표가 생산되고 있고 OECD 자료원인 National Transfer Accounts에도 보고되어 있다. 현재 OECD 9개 "대표"국가에 대해 차트 형태로 지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누락으로 판단했다. PF1.9의 보호아동비율은 행정통계로 연령별 통계생산이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누락으로 분류하였다. PF2.2의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는 고용보험DB에 원자료가 있고 고용행정통계를 통해 2019년부터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보고가능한 누락 지표로 분류하였다.

〈표 Ⅱ-44〉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총괄 및 휴가 부문 누락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지표 생산 방안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체계 (Child support systems)	한부모가족 추이, 자녀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추이(Trends of Sole-parents1 and of Sole-Parents Receiving Child Maintenance Payments in recent years)	인구총조사(2015년 이후)및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2년 이후)로 추출 가능
		자녀양육비 수준(Social expenditure per child increases with children age)	한부모가족실태조사로 추출가능(2012년이후)
PF1.7	세대간 연대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연령집단별 순이전비율(Age profile of net transfers)	OECD 자료원인 NAT웹사이트에 자료있음
PF1.9	아동보호 특성 (Aspects of child protection)	아동체벌규제(Bann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2021년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공식화
		보호아동비율(Proportion of children under state care)	보호유형별 행정통계 기반 보고 가능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지표 생산 방안
PF2.2	자녀관련 휴가 사용현황 (Use of childbirh – related leave benefits)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 (Users of paid paternity leave)	고용행정통계 2019년부터 값 있음

다. 자료없음

PF1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PF2 자녀관련 휴가급여에서 자료없음으로 인해 보고가 되지 않은 지표는 세대간 연대중 50+인구의 현금이전 및 시간이전, 손자녀 돌봄자 비율이며, 자녀관련 휴가 사용현황에서 성별 이용기간이다. 세대간 연대 지표의 OECD 자료원이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SHARE 자료이기 때문에 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 국가들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손자녀 돌봄자 비율 역시 동일자료로 생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표가 포함되지 못했다. 지표 보고를 요청받을 시 노인실태조사의 관련문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녀관련 휴가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이용자수,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지표를 생산, 보고하고 있지만 기간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육아휴직 시작과 종료 시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으므로 지표 생산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45〉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총괄 및 휴가 부문 자료없음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지표 생산 방안
PF1.7	세대간 연대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50+인구의 현금이전 및 시간이전 (A. Transfers of money,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B. Transfers of time,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OECD는 Share(2006-2007) 조사 값을 보고,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에 유사문항이 있으나 패널자료라는 한계가 있음. 노인실태조사 등에 신규문항을 통한 생산방안
		손자녀돌봄자 비율(Percentage of grandparents taking care of at least one grandchild)	
PF1.9	아동보호 특성 (Aspects of child protection)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아동체벌 만연성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이후 자료생산 가능.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는 관련 법정조사등에 문항 포함필요. *아동종합실태조사 기반 보고 가능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지표 생산 방안
PF2.2	자녀관련 휴가 사용현황 (Use of childbirth –related leave benefits)	자녀관련휴가 성별 이용기간(Duration of paid leave for men and women)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관련변수 있으므로 지표생산 검토필요

제4절 가족·아동정책 지표(2): 아동돌봄서비스

1. 아동돌봄서비스 정책 지표의 구성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아동돌봄서비스 부문 지표는 '영유아(0~5세) 공보육·교육(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과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포괄하는 '아동돌봄체계(Typology of childcare systems)'로 구성된다. 각 지표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유아 공보육·교육'(PF3.1~3.4) 에는 (1) '영유아 보육·교육 부문의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3)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4) '보육료 지원(Childcare support)'이 포함된다. 0~5세아의 보육 및 교육 부문의 국가별 재정투자 수준을 통해 국가별 개별가구의 보육비 부담 수준과 비용지원 체계의 적절성을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지표를 통해서는 서비스의 실제 이용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의 경우 영아(0~2세)와 유아(3~5세)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한 것은 아동 연령별로 정부 지원의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영아 대상의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의 측면에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아의 교육서비스 접근성은 생애초기 아동의 출발선 평등이 강조 된다. 이에 따라 영아보육의 접근성 관련 지표에는 서비스 이용률 이외에 가구소득과 모(母)의 교육수준별 하위 지표를 추가하고 있다. OECD에서 '비공식 돌봄 부문'은 무급 노동에 한정하여 산출하고 있으므로 공공 부문의 돌봄 인프라의 공급 수준이 수요를 충족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돌봄체계'(PF4.1~4.3)는 (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3)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Out-of-school-hours care)' 지표로 구성된다. 이들 지표를 통해 0~5세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체계의 국가별 차별성을 이해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아동돌봄체계' 항목에서는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포함하는 데, 이는 학교나 청소년 센터 등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가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OECD, PF4.3, 2022: 1). 따라서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형평성을 진단하기 위해 영아보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과 모(母)의 교육수준별 이용률을 보고하고 있다.

〈표 Ⅱ-46〉 가족·아동정책 지표(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아동돌봄서비스

대분류	중분류	지표
가족·아동정책 (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영유아 공보육·교육 (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3.3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3.4 보육료 지원(Childcare support)
	아동보육체계 (Typology of childcare systems)	4.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4.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4.3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Out-of-school-hours care)

2. 한국의 아동돌봄서비스 지표

가. 영유아 공보육·교육

'영유아 공보육·교육' 부문의 지표는 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3)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4) '보육료 지원(Childcare support)'으로 구성된다.

1) PF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OECD의 '영유아 보육·교육 부문의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지표는 0~2세 대상 정규 보육시설과 3~5세 대상 유치원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현금 급여와 현물 지원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 지출을 의미한다(OECD, PF3.1, 2021: 1).

'영유아 보육·교육 부문에 대한 공공 지출' 지표의 두 가지 세부 지표는 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과 ② '아동 1인당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er child)'로 구성된다(OECD, PF3.1, 2021: 1).

(1) PF.3.1.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지표는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되며, 해당 지표는 영유아 보육·교육 전체 단계(ISCED 0), 보육 단계(ISCED 01), 유아교육 단계(ISCED 02)로 각각 구분한 비율을 제공한다(OECD, PF3.1, 2021: 1).

한국은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을 보고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지표의 한국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한국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출한 SOCX 통계에 기초한다. 그런데 SOCX 통계의 영유아 교육·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부문에는 유아교육비(3~5세, Pre-primary education)[88]와 보육료 지원(0~5세, Childcare sudsidy) 이외에도 아동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고제이 외, 2020: 138). 현재 SOCX 자료에서 유아교육비 지출은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 교육재정 조사 결과 값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단, 아동복지서비스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같이 영유아 이외에도 초등자녀를 포괄하는 돌봄지원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한국 자료는 아동복지서비스 중에서 초등자녀에게 지출되는 재정을 제외하고, 0~5세아에 한정된 지출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SOCX 통계의 산출이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연령을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보고하는 한국 자료에 초등자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해석에 유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2) PF.3.1.2.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er child)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공공 지출' 지표는 영유아 보육·교육 단계의 재정 지출의 총액을 0~5세 아동수로 나눈 후, 이를 미화 기준 구매력 평가지수(PPP)로 환산하여 산출된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지표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보육·교육 전체 단계(ISCED 0), 보육 단계(ISCED 01), 유아교육 단계(ISCED 02)로 각각 구분한 비율을 함께 제공한다(OECD, PF3.1, 2021: 1).

한국은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공공 지출'을 보고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다룬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자녀의 돌봄서비스 재정 지출을 제외하고 산출되어야 한다.

88) 교육부에서 별도로 제출하는 값을 활용하여 산출함.

2) PF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지표는 OECD 국가의 영유아 대상 보육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만 3세를 기준으로 보육과 교육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지표는 0~2세와 3~5세를 구분하여 보육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OECD, PF3.2, 2021: 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지표의 0~2세 관련 세부 지표는 네 가지이며, ①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② '0~2세(영아) 가구소득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income, 0- to 2-year-olds)', ③ '0~2(영아)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mother's education, 0- to 2-year-olds)', ④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Average usual weekly hou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이 여기에 해당한다(OECD, PF3.2, 2021: 1).

3~5세 관련 세부 지표는 ⑤ '3~5세(유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year-olds)', ⑥ '3~5세(유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by year of age, 3- to 5-year-olds)'로 구성된다(OECD, PF3.2, 2021: 1).

(1) PF.3.2.1.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영아 보육·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0~2세 아동의 비율을 의미한다. 각국의 자료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에 등록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율을 근거로 산출된다(OECD, PF3.2, 2021: 1). 일반적으로 ISCED[89] 2011 level 0으로 인정받는 보육·교육서비스 통계를 기본으로 하며, ISCED 2011 level 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육적 요소를 지닌 공식적으로 등록된 서비스도 포함하여 산출한다.

한국은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을 보고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지표는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에서 제공하는 '보육통계

89)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국제표준교육분류 즉, 국제적으로 교육과정의 단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영유아 교육 단계부터 박사학위 과정 단계까지를 0단계(ISCED 0) 부터 8단계(ISCED 8) 까지 구분하고 있음.

(Statistics of Childcare)'를 바탕으로 작성된다(OECD, 2021: 71).[90] 그런데 '보육통계'의 0~2세 어린이집 이용률은 주민등록상의 실제 연령이 아니라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보고되어 OECD 기준에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0~5세아 보육서비스 현황 자료인 '보육통계(통계명: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승인번호 154007)'의 생산 및 관리 체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2006년(10. 25)에 승인된 일반 통계로서, 전국 시·군·구 및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한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에서 작성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1).

통계 작성의 과정 및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통계 조사 기획은 1~2월에 이루어지고, 이때 정책 변화에 따른 추이 통계표의 작성과 통계 작성기준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게 된다. 통계 조사 시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이고, 통계 결과표는 4월 말에 공표된다. '보육통계'에는 I.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_I-3.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보육연령 기준으로 각 세별(만 0, 1, 2, 3, 4, 5, 6세 이상)로 구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0~2세와 3~5세로 구분하여 이용률을 산출하는 OECD 지표의 산출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PF 3.2)'은 I.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_I-3.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보육연령 기준으로 각 세별(만 0, 1, 2, 3, 4, 5, 6세 이상)로 구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0~2세와 3~5세로 구분하여 이용률의 산출이 가능하다.

〈표 II-47〉 '2021 보육통계' 보고 항목 및 OECD 지표 관련 자료

분류 체계	중분류	세부 항목	OECD 지표 관련성	세부내용
I.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	현황(시·도/시군구)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현황		
		정원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현황		
		현원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현황		
		어린이집 설치 및 미설치지역		
		미설치지역 상세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현황			

90) OECD.(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Annex 3 Sources, methods and technical notes. https://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EAG2021_Annex3.pdf(검색일: 2023. 1. 5.)

분류 체계	중분류	세부 항목	OECD 지표 관련성	세부내용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PF. 3. 2_ ①, ⑤, ⑥	보육연령 기준, 아동연령별 (만 0, 1, 2, 3, 4, 5, 6세 이상) 어린이집 보육아동수
	다문화 아동 어린이집 이용 현황			
	일반 어린이집 특수보육 현황			

주: 1) 음영 표기는 OECD 지표와 일치하는 자료임.
2) OECD 지표 관련성 부문의 하위지표 번호 표기는 해당 지표의 그림 또는 표의 순이며, PF 3.2_①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PF 3.2)_⑤는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PF 3.2-⑥은 3~5세 연령별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의미함.
출처: 보건복지부(2022a). 2021 보육통계. 목차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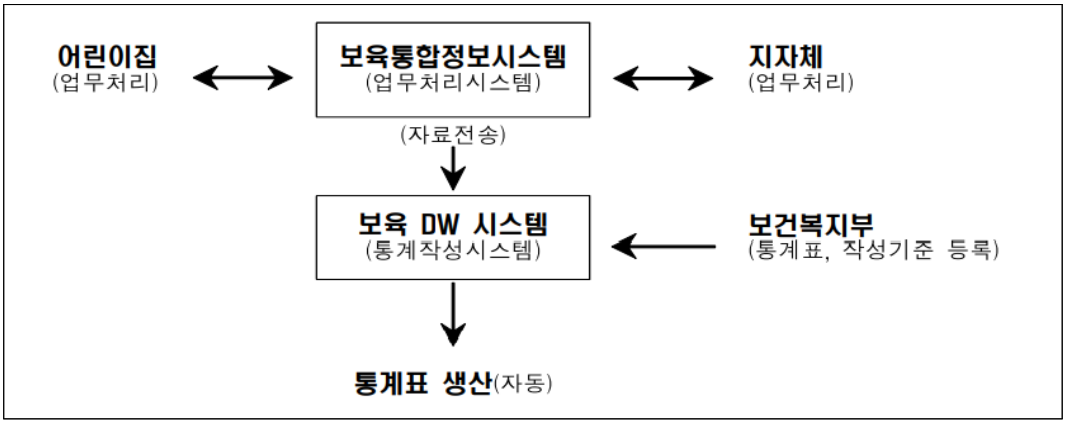
이들 통계에서 어린이집 수는 기준 시점에 보육통합시스템 상 정상운영 상태로 등록된 어린이집이고, 아동 수는 현원 기준이며, 보육교직원 수는 정상시설의 임용(육아휴직 상태 포함) 종사자수이고, 보육아동 연령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년도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19: 9).[91]

한편 이상의 영유아 보육 관련 통계표는 어린이집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활용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통계표와 작성기준 등을 '보육 DW 시스템'에 등록하여 생산하며, 이들 절차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9: 9).

91) 보육아동 연령 주민등록번호 년도 기준(2022년 기준)

반 편성	출생일 기준
만 0세반	'21. 1. 1일 이후 출생
만 1세반	'20. 1. 1~'20. 12. 31
만 2세반	'19. 1. 1~'19. 12. 31
만 3세반	'18. 1. 1~'18. 12. 31
만 4세반	'17. 1. 1~'17. 12. 31
만 5세반	'16. 1. 1~'16. 12. 31

[그림 Ⅱ-20] 보육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출처: 보건복지부(2019).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통계정보보고서. p. 9.

'보육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정보 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면정보 등 보육 업무 관련 모든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그 밖에도 이들 보육통계의 생산을 위해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다른 행정자료가 활용되는 데, '연도별 유치원 원아수 추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가 그것이다(보건복지부, 2019: 11). 이들 자료를 통해 유치원 원아와 어린이집 원아 수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치원 원아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도별/성별 유치원 아동수를 활용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의 지역별 및 연령별 아동 수(6세 이하)를 활용하여 보육 수요와 전체 아동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 11). 즉, 보육통계에는 교육통계연보의 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유치원 원아수'를 부록에 담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3세, 4세, 5세, 6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으므로 OECD 지표인 '3~5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F3.2_⑤) 과 '3~5세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F3.2_⑥)을 산출할 수 있다.

(2) PF.3.2.2. 0~2세(영아) 가구소득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income, 0- to 2-year-olds), PF.3.2.3. 0~2세(영아)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mother's education, 0- to 2-year-olds)

'0~2세 가구소득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과 '0~2세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지표는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을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집단별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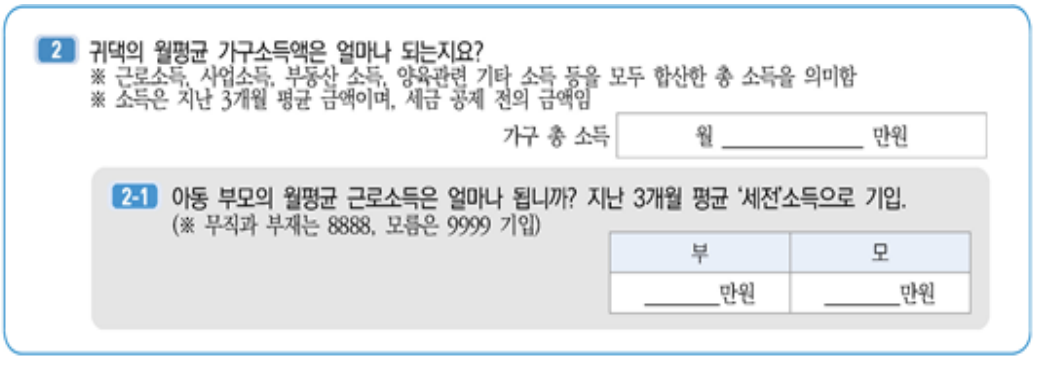
하는 지표로서, EU-SILC 정보를 바탕으로 OECD에서 추정 값을 산출한다.

두 지표는 기관 서비스(공립,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가정 내 보육시설, 아이돌보미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앞서 다룬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에 비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포함하는 데이터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가처분소득 평균을 이용하는 데,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소득분포를 바탕으로 세후 및 이전 소득(post tax and transfer income)을 제곱근 척도를 사용하여 균등화된 값을 이용한다. 즉,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1st tertile), 중간 집단(2nd tertile), 가장 높은 집단(3rd tertile)으로 구분하여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을 제시한다. 또한 모(母)의 교육수준은 대학과 직업 교육 과정(고등교육, ISCED 2011 level 5-8) 이수 여부를 기준으로 두 집단(이수 집단 vs. 비이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을 산출한다(OECD, PF3.2, 2021: 1).

한국은 이상의 2개 지표를 모두 보고하고 있지 않으며, '0~2세 가구소득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지표는 적합한 한국 자료는 없는 반면, '0~2세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지표는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산출이 가능하므로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0~2세 가구소득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지표는 산출이 불가한데,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소득기준이 OECD 자료의 산출 기준과 상이하여 활용에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즉,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에서는 [그림 Ⅱ-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평균 가구소득을 조사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육관련 기타 소득을 포함하되, 지난 3개월 기준 평균 금액이고(김은설 외, 2021: 603),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세후 및 이전소득 기준의 OECD 지표와는 산출 방식이 다르다.

[그림 Ⅱ-21]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2021)의 월평균 가구소득액 질문 문항


2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양육관련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총 소득을 의미함
※ 소득은 지난 3개월 평균 금액이며, 세금 공제 전의 금액임

가구 총 소득 월 _____ 만원

2-1 아동 부모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 3개월 평균 '세전'소득으로 기입.
(※ 무직과 부재는 8888, 모름은 9999 기입)

부	모
_____만원	_____만원

출처: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p. 603.

다음으로 보고가 누락된 '0~2세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산출할 수 있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전수조사에 기반한 '보육통계'에서는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등)과 지역(시·도/시·군·구), 아동 연령별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고 있으나, 부모 특성에 따른 이용 현황을 보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특성으로 모(母)의 교육수준을 질문하고 있으므로 '0~2세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을 산출할 수 있다. 즉,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에서는 가구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와 모를 표기하고, 이들의 학력을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3년제 이하)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이상 그리고 무학으로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다(김은설 외, 2021: 586). 따라서 이 지표의 정의에 맞추어 이수 집단과 비이수집단을 3년제 대학 이하 이수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PF.3.2.4.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Average usual weekly hou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 지표는 주당 최소 1시간 이상 기관 서비스(공립,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가정내 보육시설, 아이돌보미 등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0~2세 아동의 일상적 주중 평균 서비스 이용시간을 의미한다. '0~2세 가구소득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과 '0~2세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과 마찬가지로 EU-SILC 자료를 바탕으로 OECD 추정치를 산출한다(OECD, PF3.2, 2021: 1).

한국은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 지표를 보고하고 있지 않으나,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표 Ⅱ-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 연령별로 평균 이용시간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보고가 누락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Ⅱ-48〉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시간(2021)

(단위: %, (명), 시간:분)

구분	영유아 구분		연령						전체	2018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5시간까지	3.2	0.8	10.6	1.8	2.6	1.3	-	1.0	2.1	2.6
5~6시간	21.0	17.3	20.0	23.6	19.1	14.5	18.3	19.4	19.3	15.5
6~7시간	38.5	40.0	35.3	36.3	40.9	38.8	40.5	41.0	39.2	33.6
7~8시간	19.2	19.7	18.9	19.2	19.2	20.2	16.5	22.5	19.4	25.8
8~9시간	10.2	12.3	5.9	11.5	10.2	13.5	14.9	8.1	11.2	13.4
9~10시간	5.4	7.5	6.8	4.3	5.8	8.7	7.4	6.2	6.4	6.1
10시간 이상	2.6	2.4	2.6	3.3	2.1	3.0	2.4	1.7	2.5	3.1

구분	영유아 구분		연령						전체	2018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47)	(617)	(140)	(330)	(377)	(238)	(195)	(184)	(1,464)	(1,753)
$x^2(df)$	26.0(6)***		108.5(30)***							
평균 (시간:분)	7:07	7:19	6:46	7:09	7:11	7:27	7:22	7:06	7:12	7:24
표준편차 (시간:분)	1:25	1:18	1:48	1:24	1:18	1:19	1:20	1:12	1:22	1:18
F	2.6*		1.8							
2018년 평균(시간:분)	7:12	7:30	7:30	7:06	7:16	7:24	7:42	7:24	7:24	
표준편차 (시간:분)	1:16	1:16	1:42	1:18	1:18	1:12	1:24	1:18	1:18	

출처: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pp. 259-260.
원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자료: 이정원 외(2018). p. 286. 〈표 Ⅵ-1-15〉.
* p < .05, *** p < .001.

(4) PF.3.2.5. 3~5세(유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year-olds) /PF.3.2.6. 3~5세(유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by year of age, 3- to 5-year-olds)

3~5세 대상 하위지표인 '3~5세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과 '3~5세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은 보육 및 교육서비스(ISCED 2011 level 0)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의무교육, ISCED 2011 level 1)에 등록한 3~5세아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들 지표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3~5세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은 3~5세아의 데이터를 모두 합한 이용률이며, '3~5세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은 3세, 4세, 5세아의 이용률을 각각 구분하여 보고한다(OECD, PF3.2, 2021: 2).

한국은 '3~5세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과 '3~5세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을 보고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에서 제공하는 '교육기본통계(Basic Statistics of Education)'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에서

제공하는 '보육통계(Statistics of Childcare)'를 바탕으로 작성된다(OECD, 2021: 71).[92] 그런데 '보육통계'의 3~5세 어린이집 이용률은 주민등록상 아동의 실제 연령이 아니라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보고되므로 OECD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하에서 유아교육 부문의 이용 현황 정보를 담고 있는 '교육기본통계(승인번호 334001)'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통계'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98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이어받아 2017년에는 국가통계센터로 지정받았으며, OECD 교육지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도 참여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

통계 작성의 과정 및 절차를 살펴보면, 통계 조사 기획은 1월에 이루어지며, 이전 년도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도출된 조사항목 개선 요구사항, 작성기준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게 된다. 교육기본통계는 현재 상반기 조사(4월)와 하반기 조사(10월)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상반기 조사), 10월 1일(하반기 조사)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항목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조사 기준일이 상이하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 3). 학생에 관한 변동사항은 이전 연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2월 28일까지에 대한 사항을, 교직원 변동 상황은 이전 연도 4월 2일부터 당해 연도 4월 1일까지에 대한 상황을 조사한다. 통계 결과는 매년 8월말(상반기 조사), 12월말(하반기 조사)에 공표되며, OECD 교육지표 등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주로 상반기 조사를 통해 산출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 3).

OECD 교육 지표 중에서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PF 3.2)'의 세부 지표인 '3~5세 교육서비스 이용률'과 '3~5세 연령별 교육서비스 이용률'은 Ⅰ. '학교 기본 현황_2. 유치원 현황'에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별로 만 3세 이하, 만 4세, 만 5세, 만 6세로 구분되어 유치원 원아수가 보고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 44-45).

교육기본통계 조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교육통계 조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행정정보들을 연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육통계 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통계정보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로 연계되어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https://kess.kedi.re.kr)에서 제공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

92) OECD.(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Annex 3 Sources, methods and technical notes. https://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EAG2021_Annex3.pdf(검색일: 2023. 1. 5.)

〈표 Ⅱ-49〉 '2022 교육통계' 보고 항목 및 OECD 지표 관련 세부 항목

분류 체계	중분류	세부 항목	OECD 지표 관련성	세부내용
Ⅰ. 학교 기본 현황	1. 각급 학교 개황	학제 구분	PF. 4. 1	
	2. 유치원 현황	설립별(2-2)/원아수별(2-3) 유치원수		
		연령별 원아수(2-4)	PF. 3. 2_⑤, ⑥	아동 연령별 (만3세 이하, 4세, 5세, 6세 이상) 유치원 원아 수
		직위별 교원수(2-5)	PF. 4. 2_①	세부 직위 및 자격별 교원수
		자격별 교원수(2-6)		
		경력연수별(2-7)/소지자격 취득후 경과연수별/소지자격별 연수이수/연령별/호봉별 교원수(2-11)		
		학교용지(2-13)~컴퓨터 보유 현황(2-19)		
	3. 초등학교 현황~27. 사설학원 현황			

주: 1) 음영 표기는 OECD 교육 지표와 일치하는 자료임.
2) 세부 항목 란의 괄호는 보고서의 목차 번호임.
3) OECD 지표 관련성 부문의 하위지표 번호 표기는 해당 지표의 그림 또는 표의 순이며, PF 3.2_⑤는 3~5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PF 3.2_⑥은 3~5세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 PF 4.2_①은 유치원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을 의미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2022 교육통계연보. 목차 재구성.

3) PF3.3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OECD의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지표에서 '비공식 돌봄'이란 조부모, 친인척, 부모의 지인 또는 이웃이 제공하는 무급 돌봄을 의미한다. 본 지표는 돌봄을 누가 제공하는지 보다는 돌봄에 대한 대가 유무에 더 초점을 두어 유급 돌봄을 제외하고 산출된다(OECD, PF3.3, 2021: 2).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 지표는 크게 비공식 돌봄 이용률과 서비스 이용시간을 파악한다. 세부적으로는 ①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② '아동 연령과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③ '아동 연령과 모(母)의 교육 수준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mother's education level)', ④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평균 이용시간(Average hours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의 네 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된다(OECD, PF3.3, 2021: 2). 이상의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 의 하위 지표는 모두 EU-SILC 자료를 기반으로 추출된다.

(1) PF.3.3.1.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 지표에서는 아동 연령을 0~2세, 3~5세, 6~12세로 구분하여 일상적인 주중에 비공식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산출한다(OECD, PF3.3, 2021: 2).

한국은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 지표를 보고하지 않으며, 적합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지표에 한국 자료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OECD의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 지표가 호주, 미국 등과 함께 비공식 돌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OECD, PF3.3, 2021: 5).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비공식 돌봄에는 무급노동 이외에 민간 육아도우미 등 유급 노동을 포함하고 있다.

비공식 돌봄 현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자료는 “전국보육실태조사”가 유일한 상황이나, 활용에는 제약이 따른다.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이하 〈표 Ⅱ-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공식 돌봄을 혈연과 비혈연을 구분하여 조사하는 데, 비혈연 양육지원자에는 비공식 부문의 민간 육아도우미 뿐만 아니라 공공 아이돌보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김은설 외, 2021: 471), 무급노동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OECD 지표(PF3.3_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조사는 〈표 Ⅱ-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취학아동에 한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서(김은설 외, 2021: 130-131), 6~12세 아동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표 Ⅱ-50〉 제 특성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2021)

(단위: %(명))

구분	부	모	부모 형제 자매	친조 부모	외조 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육아 전문 인력	기관에 맡김	없음	계(수)	$x^2(df)$
전체	0.9	41.4	0.3	1.6	3.4	0.1	0.6	0.6	51.0	0.1	100.0(3,471)	-
2018년	0.7	41.6	0.1	2.2	3.3	0.1	0.3	1.7	50.0	-	100.0(3,775)	
영유아구분												
영아	1.4	52.6	0.3	1.6	3.8	0.2	0.5	0.5	39.0	-	100.0(1,679)	308.6 (9)***
유아	0.6	32.1	0.3	1.6	3.1	-	0.6	0.6	60.9	0.1	100.0(1,792)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0.4	48.3	0.3	1.4	2.6	-	-	0.2	46.7	-	100.0(196)	
250~299만원	1.8	56.7	-	0.9	0.9	-	0.5	-	39.2	-	100.0(198)	299.5 (72)***
300~349만원	0.7	54.4	-	0.6	1.7	-	0.3	0.8	41.5	-	100.0(480)	
350~399만원	1.0	49.8	-	0.6	1.0	-	0.2	1.5	45.5	0.3	100.0(311)	
400~499만원	1.0	46.7	0.2	1.2	1.8	-	0.1	0.1	48.6	0.1	100.0(675)	

구분	부	모	부모 형제 자매	친조 부모	외조 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육아 전문 인력	기관에 맡김	없음	계(수)	$x^2(df)$
500~599만원	0.9	39.0	0.3	1.9	2.5	0.1	0.5	0.1	54.5	0.2	100.0(655)	
600~699만원	1.5	30.2	0.6	1.1	4.1	0.4	0.5	1.9	59.8	-	100.0(349)	
700만원이상	0.6	23.5	0.9	3.7	9.3	0.2	1.9	0.4	59.6	-	100.0(560)	
모름/무응답	-	51.7	-	-	3.6	-	-	1.5	43.2	-	100.0(47)	

출처: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pp. 130-131. 일부내용 발췌
원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128-129. 〈표 Ⅳ-1-1〉.
*** p < .001.

〈표 Ⅱ-51〉 혈연 양육지원자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2021)

(단위: %(명))

구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x^2(df)$
전체	39.6	10.1	3.9	46.4	100.0(361)	
영유아구분						
영아	34.4	10.1	4.8	50.8	100.0(140)	2.6(3)
유아	42.5	10.1	3.4	43.9	100.0(221)	
2018년	38.5	9.5	3.1	48.9	100.0(545)	
2015년	30.7	5.8	2.2	61.4	100.0(373)	
2012년	24.2	8.9	3.7	63.2	100.0(1,133)	
2009년	25.5	4.5	2.0	68.0	100.0(1,44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기준임.
출처: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pp. 484-485.
원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33. 〈표 Ⅸ-2-8〉. 재구성

한편 2022년 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가 법정 조사로 실시되어 OECD 지표의 아동 연령(0~2세, 3~5세, 6~12세)별 비공식 돌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나, 동 조사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공식 자료로서 한계를 지닌다.

(2) PF.3.3.2. 아동 연령과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아동 연령과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 지표에서 가처분소득 평균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소득 분포를 바탕으로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가처분소득(post tax and transfer income)으로 산출된다. 본 지표는 아동 연령(0~2세, 3~5세, 6~12세)과 가구 소득(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에 따른 비공식 돌봄 이용률을 구분하여 제공한다(OECD, PF3.3, 2021: 2).

한국은 '아동 연령과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 지표를 보고하지 않으며, 적합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유아에 한정하고 있는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에서 가구소득은 249만원 이하~700만원 이상을 50만원 단위로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월 평균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양육관련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 소득으로 조사 시점 기준으로 3개월 평균 금액이며, 세금 공제 이전의 금액으로 수집되어 OECD의 소득별 지표(PF3.3_아동 연령과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의 산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PF.3.3.3. 아동 연령과 모의 교육수준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mother's education level)

'아동 연령과 모(母)의 교육수준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 지표에서 모(母)의 교육수준은 대학 및 직업 교육 과정(고등교육, ISCED 2011 level 5-8) 이수 여부를 기준으로 두 집단(이수 집단 vs. 비이수 집단)으로 구분한다. 앞의 지표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 연령(0~2세, 3~5세, 6~12세)과 모 교육수준(이수집단, 비이수 집단)에 따른 비공식 돌봄 이용률을 나누어 보고한다(OECD, PF3.3, 2021: 2).

한국은 '아동 연령과 모(母)의 교육수준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 지표를 보고하지 않으며, 3개 그룹의 연령을 구분하여 현황을 보고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PF.3.3.4.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평균 이용시간(Average hours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평균 이용시간' 지표는 일상적인 주중에 최소 1시간 이상 비공식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적 주중 평균 비공식 돌봄 이용 시간을 조사하며, 0~2세, 3~5세, 6~12세와 같이 세 가지 연령대로 나누어 제시한다(OECD, PF3.3, 2021: 1).

한국은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평균 이용시간' 지표를 보고하지 않으며, 적합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유아에 한하여 혈연(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인척)에 의한 양육에 대해서는 비용 지불 여부를 추가로 질문하고, 지불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김은설 외, 2021: 485). 그러나 혈연에 의한 양육인 경우

이용시간의 경우는 총 이용시간이 아니라, 이용 빈도(하루 종일/출근 후~등원 전/하원 후~퇴근 전, 출근후~등원 전+하원 후~퇴근 전, 불규칙 등)에 대한 응답률을 보고하나, 해당 수치는 OECD 지표인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평균 이용시간'(PF3.3.4))과 불일치하여 활용에 제약이 따른다.

이상에서 살펴본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에서 영유아에 한정하여 비공식 돌봄 현황에 관련 조사 항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52〉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보고' 조사 항목 및 OECD 지표 관련 세부 항목

조사 영역	중분류	세부 항목	OECD 지표 관련성	세부내용(결과표)
Ⅲ. 아동 및 가구 특성				
Ⅳ. 영유아 양육 특성	1. 하루 중 돌보는 사람 및 이용기관	가.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PF3.3_①, ②	〈표 Ⅳ-1-1〉 제 특성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p. 130)
		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PF3.3_④	〈표 Ⅳ-1-2〉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P. 132)
Ⅴ.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2. 연령대별 보육·교육 이용 실태	가. 연령대별 보육·교육 이용		〈표 Ⅴ-2-1〉 자녀 연령별 이용한 보육·교육서비스 및 개인돌봄서비스(p. 186)
Ⅵ.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1. 어린이집 이용 특성	라. 어린이집 이용 일수 및 이용 시간		〈표 Ⅵ-1-12〉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시간(p. 259)
Ⅶ. 유치원 이용 및 요구				
Ⅷ.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				
Ⅸ.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2. 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나. 이용비용	PF3.3_④	〈표 Ⅸ-2-7〉 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p. 483)

주: 1) 조사 영역 및 항목은 보고서(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보고) 목차의 일부이며, OECD 지표 관련 항목 위주 재구성
2) OECD 지표 관련성 부문의 하위지표 번호 표기는 해당 지표의 그림 또는 표의 순이며, PF 3.3_①은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 PF 3.3_②는 아동 연령과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 PF 3.3_④는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이용시간을 의미함.

출처: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4) PF3.4 보육료 지원(Childcare Support)

OECD의 '보육료 지원(Childcare Support)' 지표는 기관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료 지원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보육료 지원'의 세부 지표는 ① '총 보육비(Gross childcare

fees)', ② '맞벌이 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two-earner couple family)', ③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single-parent family)'로 OECD의 세제 혜택 모델(Tax and Benefit models)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다(OECD, PF3.4, 2021: 1).

(1) PF.3.4.1. 총 보육비(Gross childcare fees)

'총 보육비' 지표는 세금 혜택 또는 환급 적용 전 부모가 보육시설에서 전일 돌봄서비스(주 40시간)를 이용할 시에 지급해야 하는 총비용을 의미한다. 가구소득, 가족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비용은 최대 지원 가능 금액으로 적용하며, 휴일과 방학을 제외한 일상적인 이용 시 발생하는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OECD, PF3.4, 2021: 1).

한국은 '보육료 지원(Childcare Support)' 지표를 보고하고 있으며, 국가별 비교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을 감안하면 비교적 적절하다고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총 보육비'는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데,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기준이 달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OECD에서는 본 지표의 한계점으로 각 국별로 상이한 보육서비스 기관의 이용 특성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아동 연령, 가구 형태, 부모의 지불 비용, 보육서비스 이용 빈도 등을 고정하여 전일제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육료의 지역적 격차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을 들고 있으므로(OECD, F3.4, 2021: 4), 이를 감안하면 국가별 비교를 위한 한국 자료로는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PF.3.4.2. 맞벌이 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two-earner couple family)/ PF.3.4.3.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single-parent family)

'맞벌이 가구의 순 보육비'와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 지표에서 '순 보육비'는 기관보육 서비스를 실제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와 이용하지 않는 가구 간 '세후 가구소득'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세후 가구소득'은 가족 구성원의 총 세전 소득과 현금 지원금의 합에 소득세와 사회 기여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처럼 '순 보육비'를 계산하고 비교함으로써 아동 보육과 관련된 세금 혜택 또는 보육 지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보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주거 혜택 등의 기타 지원 역시 고려하고 있다(OECD, PF3.4, 2021: 1).

'맞벌이 가구의 순 보육비' 지표는 2세, 3세인 두 자녀를 위해 최소 주 40시간 동안 보육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면서 부모 모두가 전일제로 근무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모 중 한 사람의 세전

소득을 평균 소득의 100%로 설정하고, 나머지 부모의 세전 소득을 평균 소득의 67%로 책정하여 보육비를 계산한다. 또한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 지표는 2세, 3세인 두 자녀를 위해 최소 주 40시간 보육 기관을 이용하면서 부 또는 모가 전일제로 근무하는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 한부모의 세전 소득을 전체 평균 소득의 67%로 책정하여 값을 구한다. 두 지표의 값은 평균 소득(세전 소득) 대비 비율(%)과 보육비 공제 전 세후 가구소득 대비 비율(%)로 계산된다(OECD, PF3.4, 2021: 1-2).

한국은 이상의 2개 지표를 보고하고 있으며, 국가별 비교의 어려움이 내포된 데이터의 특성을 감안하면 비교적 적절하다고 파악되었다. 단 '맞벌이 가구의 순 보육비'와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 지표의 생산 및 보고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명문화된 보고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아동돌봄서비스 부문의 한국자료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표 Ⅱ-53〉 아동돌봄서비스 분야 한국 자료의 생산 및 관리 현황_개요

부문	통계명 (기본통계/실태조사)	법적 근거	통계 작성 기관	작성 및 공포 주기	조사 기준일자
영유아 보육 (0~5세)	보육통계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 국가승인통계	「통계법」	보건복지부	매년	12월 31일
	전국보육실태조사 (2021년) ※ 국가승인통계	「영유아보육법」 제9조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매 3년	실사 시작 시점
유아교육 (3~5세)	교육기본통계 ※ 국가승인통계	「통계법」 「유아교육법」 제6조의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매년	4월 1일 (상반기) 10월1일 (하반기)
	유아교육실태조사 (2022년) ※ 국가승인통계	「유아교육법」 제6조의2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매 5년	실사 시작 시점
비공식 돌봄 (0~12세)	전국보육실태조사 (2021년) ※ 국가승인통계	「영유아보육법」 제9조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매 3년	실사 시작 시점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2022년)	「아이돌봄지원법」 제28조의2			

주: 일부 자료는 통계설명자료 홈페이지에 통계명을 검색하여 작성함.
출처: 통계설명자료.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2023. 2. 1. 인출)

5) 영유아 공보육·교육 지표 요약

'영유아 공보육·교육' 부문의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영유아의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을 보고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0~2세 보육·교육서비스 부문의 경우 한국 자료가 보고되지 않은 하위 지표 중에서 '모(母)의 교육수준별 이용률'과 '주중 이용시간' 지표는 적합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누락되었으며, '가구소득별 이용률' 지표에 적합한 한국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현재 한국 자료가 보고된 지표 중에서 보육료 지원 지표의 경우는 자료의 생산 및 보고의 주체가 불문명하고, 산출 방식이 모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아동돌봄서비스 부문 지표의 한국 자료에 대한 생산 및 보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업무 협력 사항 등도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II-54〉 영유아 공보육·교육(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PF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ducation)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	개선필요: 초등자녀 돌봄지원 재정 제외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er child)	O	개선필요: 초등자녀 돌봄지원 재정 제외
FP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O	개선필요: 전국보육실태 조사 활용 또는 보육통계 보완
		0~2세(영아) 가구소득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income, 0- to 2-year-olds)	X	자료없음
		0~2세(영아)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mother's education, 0- to 2-year-olds)	X	누락: 전국보육실태 조사 활용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Average usual weekly hou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X	누락: 전국보육실태 조사 활용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3~5세(유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year-olds)	O	개선필요: 전국보육실태 조사 활용 또는 보육통계 보완
		3~5세(유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by year of age, 3- to 5-year-olds)	O	개선필요: 전국보육실태 조사 활용 또는 보육통계 보완
PF3.3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 (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X	자료없음
		아동 연령과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X	자료없음
		아동 연령과 모의 교육수준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mother's education level)	X	자료없음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평균 이용시간(Average hours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X	자료없음
PF3.4	보육료 지원 (Childcare support)	총 보육비(Gross childcare fees)	O	적절
		맞벌이 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two-earner couple family)	O	적절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single-parent family)	O	적절

주: PF3.4_보육료 지원 지표는 한국 자료의 생산 및 보고 주체의 확인 필요

나. 아동돌봄체계

'아동돌봄체계' 부문은 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3)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Out-of-school-hours care)' 지표로 구성된다.

1) PF4.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OECD '아동돌봄체계(Typology of childcare systems)' 중 첫 번째 지표인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는 크게 '기관보육(center-based daycare)', '가정내 보육(Family daycare)', '학령전 교육 프로그램(pre-school

early education programmes)'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기관보육'은 가정 밖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공식 인가 보육 기관을 의미한다. 전일제나 시간제로 운영되고,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돌봄센터, 탁아소, 놀이학교, 부모 운영 그룹 등으로 불린다. OECD 국가에서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이전, 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기관 보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별로 일부 예외도 있다(OECD, PF4.1, 2016: 1).

둘째, '가정내 보육'은 전통적으로 가정환경 내에서 제공하는 보육으로 아이돌보미 집에서 보육을 제공하거나 아동의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가정 보육은 3세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며, 기관보육의 정원이 제한적이어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것을 선호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OECD, PF4.1, 2016: 1).

셋째, '학령전 교육 프로그램'은 3~5세 아동에게 제공되는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의무교육) 입학 전 학습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전일제 또는 반일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방과후돌봄이 추가로 제공되기도 한다. 호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에서는 초등 입학 전 1~2년 동안 초등 준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OECD, PF4.1, 2016: 1).

한국은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 지표를 보고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보고된 한국 자료에서 어린이집의 적용대상 연령 범위와 3~5세에 적용되는 기관 유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OECD 지표에는 어린이집 이용 연령이 만 4세까지로 보고되어 있으나, 2023년 기준으로 어린이집은 만 0~5세를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표 Ⅱ-56〉 참조), 어린이집 이용 연령은 5세 까지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보고된 한국 자료에는 '학원'이 3~5세 돌봄의 한 종류로 제시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자료 상황과 비슷한 맥락에서 '공식적인 돌봄 기관'으로 '학원'이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016년 OECD 자료에서 '민간/사립(private)' 기관은 영리와 비영리 민간 이해관계자가 관리하고 공적 및 사적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하나(OECD, PF4.1, 2016: 3),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표 Ⅱ-55〉 아동돌봄체계 부문_'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체계' 지표의 한국 자료(2016)

<table>
<tr><th>구분</th><th colspan="5">기관/가정 보육</th><th colspan="2">유아학교</th><th colspan="2">의무학교</th></tr>
<tr><td>연령</td><td>0</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r>
<tr><td rowspan="3">기관
유형</td><td colspan="5">어린이집</td><td></td><td colspan="2" rowspan="3">초등학교</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유치원</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학원</td></tr>
</table>

출처: OECD.(2016). PF4.1: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p. 3, https://www.oecd.org/els/family/PF4-1-Typology-childcare-early-education-services.pdf(2022. 11. 20. 인출)

〈표 Ⅱ-56〉 한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체계(2023)

유형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교육부
이용연령	0~5세	3~5세	6세~
법적 성격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교육기관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설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직장/민간/가정/협동	국공립/사립	국립/공립/사립
교육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2019 개정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초등교육과정 (2022년 개정 교육과정-2024년부터 적용)

자료: 최은영·문무경·김은영·최윤경·양미선·강은진·김동훈·김아름·김문정(2022).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148-150,

2) PF4.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은 안전, 위생, 교직원 수, 학급 크기, 교사 자격기준, 부모참여 등과 같이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국가 비교를 위해 이러한 모든 요인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측정하고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OECD, PF4.2, 2020: 1). 따라서 OECD에서는 정보의 수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아동 대 교직원 비율'과 '교직원 최소자격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1) PF.4.2.1. 유아교육(3~5세)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Child-to-staff ratios in pre-primary education services, 2018)/ PF.4.2.2. 영아보육(0~2세)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 (Child-to-staff ratio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services, 2018)

'아동 대 교직원 비율' 지표에서 ① '유아교육(3~5세)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Child-to-staff ratios in pre-primary education services, 2018)'과 ② '영아보육(0~2세)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Child-to-staff ratio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services, 2018)' 하위 지표는 전일제 교직원 대비 유아교육 또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수를 계산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직원은 아동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이며, 담임교사만 포함했을 때의 비율과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모두 포함한 경우를 구분하여 값을 제시하고 있다(OECD, PF4.2, 2020: 1).

한국은 '아동 대 교직원 비율' 지표를 보고하고 있으며(OECD, PF4.2, 2020: 2), 해당 자료는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데이터는 공통적으로 Education at a Glance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93]

(2) PF.4.2.3.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Minimum qualifications for ECEC professionals)

'교직원 최소자격 기준' 지표는 국제표준교육 분류(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기준으로 'ISCED 0, 유아교육과 보육(0~5세) 교직원'의 최소자격 기준(최소 교육 수준)을 정리한 것이다. 본 지표에서는 각 국가별로 유아교육과 보육(0~5세)의 교사 유형별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최소 자격 기준을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OECD, PF4.2, 2020: 1).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자격' 지표는 'ISCED 0, 유아교육과 보육(0~5세)'을 하나의 범주로 두고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ISCED 01, 보육교사(발달 프로그램, 0~2세)'과 'ISCED 02, 유치원 교육(취학전 교육 프로그램, 3~5세)'의 교직원 최소 기준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반영되어 있다(OECD, PF4.2, 2020: 1).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육(ISCED 01)과 교육 부문(ISCED 02) 교직원의 자격요건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예: 스페인)에는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기도 하였다(OECD, PF4.2, 2020: 4).

한국은 '교직원 최소자격 기준' 지표를 보고하고 있으나(OECD, PF4.2, 2020: 2), 일부 개선이 요구되나, 전반적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 최소자격'은 담임교사 기준으로 ISCED 5(전문대, 단기 대학 교육)로 보고되며, 보조교사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93) Education at a Glance 2020. 부록 참조.
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20_69096873-en(검색일: 2023. 1. 11.)

제시되지 않았다(OECD, PF4.2, 2020: 4). 보조교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점은 한국의 보조교사 최소 자격이 담임교사와 동일하여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면밀하게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한국의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최소 자격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 최소자격' 지표의 한국 자료는 유아교육 부문에 한정된 자료 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은 1, 2, 3급으로 구분되며, 보육교사 3급의 경우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된다(보건복지부, 2023: 162).

〈표 Ⅱ-57〉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제도 비교(2022)

구분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근거법	「유아교육법」 제22조 (교원의 자격)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소관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자격구분	[준교사] -2급-1급-(수석교사)-원감-원장	3급-2급-1급-원장
이수연한	2~4년	별도 이수 연한 없음
최소학력	전문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양성기관	2~3년, 4년 대학(2급)	2~4년제(사이버 학점은행제 포함) 대학(2급), 보육교사교육원(3급)

자료: 최은영·문무경·김은영·최윤경·양미선·강은진·김동훈·김아름·김문정(2022).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 76-77. 일부 발췌

한편 OECD에서는 예외적으로 보육(ISCED 01)과 교육 부문(ISCED 02) 교직원의 자격요건이 스페인 등과 같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기도 한다(OECD, PF4.2, 2020: 1). 그러나 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3~5세 누리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임교사의 최소자격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 교직원의 최소자격을 현행 양성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면, 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은 기존의 ISCED 5(전문대, 단기 대학교육)가 아니라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포함하는 'ISCED 3(고등교육)+교육훈련'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재기된다.

그러나 보육교사 3급 보육교사는 그 비중이 매우 낮고, 자격체계의 개편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국제비교를 위한 정보로는 무방할 수 있다. 즉, 3급 보육교사의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에서도 1.7%에 그친다(양미선 외, 2021: 198).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의 추진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의 개편안이 2024년 말에 마련되고, 2026년부터는 개편된 양성과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교육부·보건복지부, 2023: 14), 이를 감안하여 전반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PF4.2)'을 진단하는 하위 지표는 OECD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한계를 지니므로 산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 데이터와 관련된 첫 번째 쟁점은 '유아교육 기관'과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 통합기관'이 구분되어 있거나 혼재된 국가들이 공존하여 현재처럼 연령으로 제시된 결과에서 누락되거나 과대 추정될 소지가 있다. 또한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Minimum qualifications for ECEC professionals)' 지표만으로는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현황을 실제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점이다. 교직원의 최소 자격뿐만 아니라 이외 다양한 자격을 지닌 인력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수집되어야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질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비교 및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OECD, PF4.2, 2020: 1). 그러므로 OECD에서 실시되는 국제 유아교원 조사(TALIS: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Starting Strong Survey)에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전담인력을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OECD는 2015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개선에 관심을 두고 2015년부터 교사의 역량과 질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기획하고 추진해왔으며, 2018년에 1주기(first cycle)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동 조사는 OECD ECEC 사무국에서 주관하며, 한국은 2018년 1주기 조사에 참여한 바 있으나(김은설·박진아·이솔미, 2019: 17), 이후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3) PF4.3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Out-of-school-hours care)

OECDD에서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Out-of-school-hours care)'는 학교 정규 수업 전후, 방학 중 6~11세 아동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OECD, PF4.3, 2022: 1).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지표는 ①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②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Average hour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during a usual week)', ③ '균등화 가처분소득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④ '모(母)의 교육수준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mother's education level)' 의 네 가지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OECD, PF4.3, 2022).

(1) PF.4.3.1.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일상적 주중에 초등방과후 돌봄을 최소 1시간 이상 이용하는 6~11세 아동의 비율을 의미한다.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지표는 6~8세, 9~11세, 6~11세와 같이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값을 산출한다.

한국의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지표는 보고되지 않으며, 적합한 한국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지표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EU Sta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에 기초하는데, 한국은 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자료가 보고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기관 인프라를 기준으로 다 부처에서 추진되어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오후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저녁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2021년 6월 신규사업),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돌봄 인프라가 매우 다양하다. 이들 돌봄 인프라에 관한 정보는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3481, 2023. 1. 6. 인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별 운영 현황으로, 학교명 또는 시설명, 소재지, 교실 수, 이용 정원 또는 현원, 운영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 자료의 기준 일자는 기관 마다 다른 실정이다. 즉, 최신자료 기준(2022년 2학기)으로 '초등돌봄교실'은 2021년 4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2022년 6월, 학교돌봄터는 2022년 8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22년 7월에 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상의 돌봄서비스 기관의 현원을 모두 합산하여 이용률을 산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용 아동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에서 학년 별로 수집되고 있으므로 아동 연령별로 그 규모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그 밖에도 일부 기관은 중복 이용이 가능하므로 동일기간 내 이용 아동수를 단순 합산할 경우 소폭으로 예상되나 이용 아동수가 중복하여 산출될 여지가 있다.

(2) PF.4.3.2.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Average hour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during a usual week)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 지표는 일상적 주중에 초등방과후 돌봄을

최소 1시간 이상 이용하는 6~11세 아동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을 의미한다. 이들 지표는 공통적으로 방학과 휴일의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과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으며, 학교 정규과정 전후에 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만을 포함하여 산출하였다(OECD, PF4.3, 2022: 1).

한국의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 지표는 보고되지 않으며, 적합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PF.4.3.3.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지표는 일상적 주중에 초등방과후돌봄을 최소 1시간 이상 이용하는 6~11세 아동의 비율을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 평균으로 환산한다.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소득 분포를 바탕으로 세후 및 이전 소득(post tax and transfer income)을 제곱근 척도를 사용하여 균등화된 값을 이용하여 가족 수가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였다.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1st tertile), 중간 집단(2nd tertile), 가장 높은 집단(3rd tertile)으로 구분하여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을 제시한다(OECD, PF4.3, 2022: 1).

한국의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 지표는 보고되지 않으며, 적합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PF.4.3.4. 모(母)의 교육수준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mother's education level)

'모(母)의 교육수준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지표는 일상적 주중에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최소 1시간 이상 이용하는 6~11세아의 비율을 어머니의 교육수준별로 산출한다. 즉, 모의 교육수준을 대학과 직업 교육 과정(고등교육, ISCED 2011 level 5-8) 이수 여부를 기준으로 두 집단(이수 집단 vs. 비이수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을 산출한다(OECD, PF4.3, 2022: 1).

한국의 '모(母)의 교육수준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지표는 보고되지 않으며, 적합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PF4.3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지표와 관련하여 현재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한국의 통계자료 현황 및 한계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중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자료로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를 들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2b). 해당 조사는 연 1회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산출되며, 조사 기간은 2022년 자료의 경우는 당해 연도 6월 13일~8월 26일 이다. 조사는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신고·운영 중인 전국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종사자 현황의 경우는 한 센터 당 시설장 1인과 최대 3인 까지만 조사되며, 관련 재정 현황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총 수입 및 지출에서 급식비는 제외하고 산출된다. 보고 항목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Ⅱ-4)' 이외에도 종사자와 급식 등 운영 현황이 포함된다. 이들 중에서 OECD 지표와 관련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의 조사내용은 1) 학년별, 가정 형태별, 양육자 경제활동별 이용 아동 현황, 2) 특별관리 아동 현황, 3) 지역아동센터 외 타 기관 이용 현황 이다(보건복지부, 2022b: 3). 그러나 동 조사에서도 OECD 지표(PF4.3_③, ④)인 가구소득별/모(母)의 교육수준별 서비스 이용률과 주중 평균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있지 않다. 동 조사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기관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이 각각 17시~23시와 6시30분~2시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수와 해당 비율만을 보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b: 22). 이처럼 지역아동센터에 한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 및 이용 현황이 포함된 자료가 생산되고 있으므로 매년 보고되는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V.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한정하여 보고된다(보건복지부, 2022c: 621).

다음으로는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작성하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 및 현황 조사(승인번호 제450001호)를 들 수 있다. 동 조사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3에 근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2: 14), 2018년에 최초로 수행되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2: 1). 조사대상은 만 6~14세 이며(초등학교 1~3학년,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2021년 조사에는 총 8,750명이 참여하였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2: 14). 이 조사에서는 귀가 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또는 다니는 학원을 조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시간대별로 수업을 마치고 가장 많이 있는 장소에 학교(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서비스 이용 현황은 학년별(초등1년~3년/초등4년~6년/중등 1년~3년)로 구분되어 실제 연령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산출하는 OECD 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게다가 동 조사는 응답 가구의 소득이나 모(母)의 교육수준을 조사하고 있지 않아서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및 모(母)의 교육수준별 서비스 이용률'을 산출할 수 없다. 또한 시간대별로(오후 2시~8시 이후)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질문하고 있어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총 시간을 명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자료의 생산 현황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58〉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유형별 자료 수집 및 보고 현황(2022)

주무부처	서비스 유형 (또는 기관명)	대상연령	OECD 지표 자료 유무				자료 수집 및 관리 기관	생산 주기
			4.3_① 이용 아동수 (연령별)	4.3_② 이용 시간	4.3_③ 소득 수준	4.3_④ 부모 학력		
교육부[1]	초등돌봄교실 -오후돌봄	초1~6	O (연령별X)	X	X	X	교육부 (방과후돌봄 정책과)	매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초1~6	O (연령별X)	X	X	X	교육부 (방과후돌봄 정책과)	매년
	초등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17시 이후)	초1~6	O (연령별X)	X	X	X	교육부 (방과후돌봄 정책과)	매년
보건 복지부	다함께 돌봄센터[2]	만6~12세	O (연령별O)	O	X	X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돌봄 사업부)	반기별
	지역아동센터[3]	18세 미만	O (연령별O)	X	X	X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연 1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입력 자료 추출	매년
	학교돌봄터	초1~6	X	X	X	X	-	-
여성 가족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초4~ 중등3	O (연령별X)	X	X	X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지원과)	매년

주: 1) 자료 현황은 통계조사 여부 및 실제 통계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함.
2) OECD 지표 자료 유무 항목에서 교육부 관할 사업(3개)의 경우 학년별 참여 학생수, 이용시간대별 퇴실 학생수, 교육비 지원 대상 등이 조사되고 있음.
3) 서비스 유형 및 기관명에 '방과후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는 제외하였음.

출처: 1) 교육부(2022. 12. 23). 2022학년 2학기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3481(2023. 1. 6. 인출)
2)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 통계조사 설문지 자료.
3) 보건복지부(2022b).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www.youth.go.kr/yaca/index.do(2023. 5. 4. 인출)

4) 아동돌봄체계 지표 요약

'아동돌봄체계' 부문의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 지표를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으나, '아동돌봄서비스 유형' 지표는 적용대상 아동의 연령과 기관

유형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부문의 4개 세부 지표 모두에서 적합한 한국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Ⅱ-59〉 아동돌봄서비스 부문 아동돌봄체계(Typology of childcare systems)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PF4.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아동돌봄서비스 체계(Typology of Childcare)	O	개선필요: 어린이집 범위 5세 추가, 학원 제외
PF4.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유아교육(3~5세)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Child-to-staff ratios in pre-primary education services, 2018)	O	적절
		영아보육(0~2세)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Child-to-staff ratio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services, 2018)	O	적절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Minimum qualifications for ECEC professionals)	O	적절
PF4.3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Out-of-school-hours care)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X	자료없음: 통합통계 생산 필요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Average hour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during a usual week)	X	자료없음: 통합통계 생산 필요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X	자료없음: 통합통계 생산 필요
		모(母)의 교육수준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mother's education level)	X	자료없음: 통합통계 생산 필요

주: PF 4.2의 하위 지표 중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선필요'이나 전반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적절"로 표기함.

3. 소결: 한국의 아동돌봄서비스 지표 생산 방안

아동돌봄서비스 부문에서 한국 자료가 보고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지표로는 '영유아 공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0~2세와 3~5세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아동돌봄체계 '로 파악

되었다. 한국 자료가 보고되지 않는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하위 지표 중에서 모(母)의 교육수준별 이용률과 주중 평균 이용시간은 자료가 누락되어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0~2세(영아) 가구소득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비공식 돌봄' 및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부문의 지표는 적합한 한국의 보고 자료가 없는 실정이어서 새롭게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보고 자료에 대한 보완사항과 보고가 누락된 한국 자료와 자료가 없는 지표의 생산 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개선필요

한국 자료가 보고되고 있으나, OECD 지표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지표 중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에는 초등자녀의 방과후돌봄서비스에 투자된 재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취학 아동만을 선별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또한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3~5세(유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 3~5세(유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 지표는 모두 보육통계의 보육연령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가 활용되어 합산되었으므로 실제 아동 연령을 반영한 한국 자료가 보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보고되는 "보육통계"에서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은 아동의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이용률' 자료는 '보육통계'와 '교육통계'를 통해 집계되고 있으나, 이들 통계의 조사 시점이 각각 상이하므로(보육통계: 당해 연도 12월 31일, 교육통계: 차년도 4월 1일/10월 1일) 보다 정확한 자료의 생산을 위해서는 기준 시점을 통일하여 산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유보(유아교육과 보육)통합의 추진과 유아의 의무교육 도입 등의 정책 변화들을 고려하여 조사 기준 시점을 통일함은 물론이고, 지표의 산출에 포함되는 항목을 표준화 하는 등 통합적으로 생산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돌봄서비스 유형'(PF4.1)' 지표는 현행 한국의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반영하여 일부 개선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2016년 OECD 지표에는 어린이집 이용 연령이 4세까지로 보고되어 있으나(〈표 Ⅱ-55〉 참조), 2023년 기준으로 어린이집은 0~5세를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므로(〈표 Ⅱ-56〉 참조)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이용 연령을 5세까지 확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치원과 함께 3~5세아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된 학원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 준비 프로그램으로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상을 반영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표의 보완 과제를 제시하면 〈표 Ⅱ-61〉과 같다.

〈표 Ⅱ-60〉 아동돌봄체계 부문_'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체계' 지표의 한국 자료 개선(안)

구분	기관/가정 보육				유아학교		의무학교	
연령	0	1	2	3	4	5	6	7
기관 유형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자료: 이 연구에서 도출한 수정(안)

〈표 Ⅱ-61〉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아동돌봄서비스 부문 개선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방안
PF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ducation)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OCX 자료 산출시 초등자녀 돌봄지원 재정 지출 제외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er child)	SOCX 자료 산출시 초등자녀 돌봄지원 재정 지출 제외
FP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보육통계" 보완: 실제 아동연령 기준 산출
		3~5세(유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year-olds)	"보육통계" 보완: 실제 아동연령 기준 산출
		3~5세(유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by year of age, 3- to 5-year-olds)	"보육통계" 보완: 실제 아동연령 기준 산출
PF4.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아동돌봄서비스 유형(Typology of Childcare)	1) 어린이집 적용연령 범위 수정: 4세 → 5세) 2) 3~5세아 기관유형: 학원 제외

나. 누락

OECD 지표의 정의에 부합하는 한국 자료가 있으나 보고가 누락된 지표인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F 3.2)' 부문의 '0~2세(영아)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과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은 모두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에서

산출할 수 있다. 동 조사에서는 응답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부(父)의 학력수준과 모(母)의 학력수준을 구분하여 묻고 있으므로 '0~2세(영아)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지표의 한국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 단, 이때 OECD 지표 기준에 부합하도록 모(母)의 교육수준을 대학과 직업교육 과정(고등교육, ISCED 2011 level 5-8) 이수 여부에 따라(OECD, PF3.2, 2021: 1) 분석한 결과표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아와 유아, 그리고 각 세별로 구분하여 시간대별 서비스 이용률과 총 이용시간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OECD 지표인 '0~2세 보육서비스 주중 이용시간'(PF3.2.4)에 부합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김은설 외, 2021: 259-260). 단, OECD 지표 기준에 보다 부합하는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최소 1시간 이상 이용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이용시간을 응답하도록 조사 문항을 정교화해야 한다.

〈표 Ⅱ-62〉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아동돌봄서비스 부문 누락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방안
FP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0~2세(영아)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mother's education, 0- to 2-year-olds)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결과 활용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 (Average usual weekly hou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결과 활용

다. 자료없음

OECD 지표의 정의에 부합하는 한국 자료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F 3.2)' 부문의 '0~2세(영아) 가구소득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PF3.3)'과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PF4.3)' 지표의 생산 방안으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 지표에서 친인척 등에 의해 영유아와 초등자녀를 대상으로 무급으로 제공되는 비공식 돌봄의 이용률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러나 동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승인 절차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일반가구 대상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의 조사비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동 조사에서 비공식 돌봄에 관한 문항은 1시간 이상 이용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비용 지불 여부를 구분하여 무급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한정하여 이용률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응답가구 특성에 관한 질문에는 부모의 학력수준을 포함하고, 가구소득은 세후 및 이전 소득(post tax and transfer income)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지표는 단기적으로는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유관 조사의 질문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산출하고, 중기적으로는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우선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2021. 12. 21 일부개정, 동법 제11조)으로 실시 주기가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_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2023. 5. 4. 인출). 동 조사에서는 6~17세 아동에게 평일 기준으로 방과후 함께 지내는 사람과 방과후 집에서 맞이하는 사람을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고, 방과후 기관의 비율을 산출하고 있어서 OECD 지표에 부합하도록 6~11세 아동의 이용률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류정희 외, 2019: 296-300). 그러나 동 조사에서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OECD 지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활용에 제약이 따른다. 즉, 동 조사에서 학령기 아동의 주중 보호자로서 방과후 기관은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별다른 조건 없이 응답한 결과로서 OECD 지표에서와 같이 최소 1시간 이상 이용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 문항을 정교화 하여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의 이용 여부와 이용시간을 파악하고, 응답자의 가구소득은 OECD 지표와 동일하게 세후 및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표본설계의 특성으로 인해 공식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단적으로 말해서 동 조사는 빈곤아동의 특성 및 욕구를 일반아동과 비교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1,500가구)를 과대표집하였기 때문이다(류정희 외, 2019: 9). 2023년 조사도 아동빈곤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하므로 빈곤아동에 대한 과대표집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 조사에서 표본수를 대폭 늘린다고 해도 아동 연령별로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우려된다.

다른 한편으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 및 현황 조사"의 조사항목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동 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응답자 조사 항목에 현재 기준 학년과 더불어 연령을 추가로 질문하고, 1)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2) 모의 교육수준을 조사항목에 추가해야 한다. 또한 평일 기준 시간대별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와 더불어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총 이용시간을 별도로 조사하고, 이때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추가된 조사항목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년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표집설계에서 아동 연령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부처의 다양한 돌봄서비스 기관을 포괄하는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지표는 다양한 서비스 기관을 포괄하는 이용률 이외에도 주중 서비스 평균 이용시간과 가구소득 및 모(母)의 학력에 따른 서비스 이용률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각 부처의 행정자료가 연계된다고 해도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된다. 즉, 부처별로 수집되는 돌봄서비스 기관별 이용 실적을 연계한 행정 데이터를 통해서는 PF4.3(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하위 지표인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아동 연령을 기준으로 통일하여 산출해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현재 매년 생산되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의 경우 이용 아동 수는 연령별로 구분되어 산출되나, 실제 연령이 아니라 학년을 기준으로 보고되며, 초등학생의 경우는 각 연령별로 보고되지 않고,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OECD 지표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방과후돌봄서비스 기관을 중복하여 이용하는 아동을 보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 데이터에서는 OECD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소득이나 모(母)의 교육수준별 서비스 이용 현황과 주중 서비스 이용시간의 정보를 얻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주당 최소 이용시간은 별도의 기준이 없이 등록된 아동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OECD 지표에서와 같이 주당 1시간 이용한 아동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지표의 한국 자료는 법정 실태조사(가칭: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법률에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공식 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표 II-63〉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아동돌봄서비스 부문 자료없음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표나 그래프 제목	지표 생산방안
PF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0~2세(영아) 가구소득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income, 0- to 2-year-olds)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 가구소득 문항 기준 변경을 통한 생산
PF3.3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 (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 (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통계 승인 등을 통한 생산
		아동 연령과 균등화 가처분소득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 (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아동 연령과 모의 교육수준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 (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mother's education level)	

지표 번호	지표명	표나 그래프 제목	지표 생산방안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평균 이용시간 (Average hours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PF4.3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Out-of-school-hours care)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단기 방안)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 방과후활동 수요 및 현황 조사" 문항 보완을 통한 생산 (중기 방안) 통합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의 마련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법정 실태조사 근거 마련)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 (Average hour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during a usual week)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모(母)의 교육수준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mother's education level)	

제5절 아동성과 지표

1. 아동성과 지표의 구성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네 번째 영역은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로, 총 22개의 지표가 크게 아동건강(Child Health), 아동빈곤(Child Poverty), 교육/문해력(Education/Literacy), 사회 참여(Social Participation)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건강 영역의 세부 지표에는 영아 사망(Infant mortality),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저체중 출생(Low birth weight), 아동기 예방접종(Vaccination rates), 모유수유율(Breastfeeding rates), 아동의 당뇨병과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11, 13, 15세의 과체중·비만(Overweight and obesity at ages 11, 13, and 15)과 흡연(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장애(Child disability)와 같은 9개의 지표가 있다. 아동빈곤 영역은 가구유형별 소득불평등과 소득지위(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ce household types), 아동빈곤(Child poverty), 유자녀 가구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의 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문해력 영역은 성별에 따른 교육 이수(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 간 학업성취도 차이(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청년 니트(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NEET),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의 6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영역은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지표는 청소년의 자원봉사와 NGO 참여(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생애 첫 투표 참여율(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청소년의 알코올 및 대마초 사용(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십대 자살이다(Teenage suicides). 각 지표들은 최소 2개 이상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각 지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Ⅱ-64〉 아동성과(CO,Child Outcomes) 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표
아동 성과 (CO, Child Outcomes)	아동 건강 (Child Health)	1.1 영아 사망(Infant mortality) 1.2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1.3 저체중 출생(Low birth weight) 1.4 아동기 예방접종(Vaccination rates) 1.5 모유수유율(Breastfeeding rates) 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의 당뇨병과 천식 유병률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1.7 11,13,15세의 성별 과체중과 비만(Overweight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1.8 11,13,15세의 성별 정기적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1.9 아동 장애(Child Disability)
	아동 빈곤 (Child Poverty)	2.1 가구유형별 소득불평등과 소득지위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2.2 아동 빈곤(Child poverty) 2.3 유자녀가구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교육/ 문해력 (Education/ Literacy)	3.1 성별에 따른 교육 이수(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3.2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3.4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3.5 청년 니트(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NEET) 3.6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 (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사회 참여 (Social Particitpation)	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4.2 생애 첫 투표 참여율(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4.3 청소년·청년의 약물 남용 (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4.4 십대 자살(Teenage suicides)

2. 한국의 아동성과 지표

가. 아동건강

아동건강은 1.1 영아사망(Infant mortality), 1.2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1.3 저체중 출생(low birth weight), 1.4 아동기 예방접종(Vaccination rates), 1.5 모유수유율(Breastfeeding rates), 1.6 질병 관련 지표(아동의 당뇨병과 천식 유병률,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1.7 11, 13, 15세의 성별 과체중과 비만(Overweight and obesity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1.8 11,

13, 15세의 성별 정기적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1.9 아동 장애(Child disability)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표는 하위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므로 아동건강의 각 지표별 측정지표(하위지표)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지표들이 보고되고 있는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면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 CO1.1 영아사망(Infant Mortality)[94]

CO1.1 영아사망(Infant Mortality)은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영아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신생아 후기 사망률(Infant mortality, neonatal mortality, and post-neonatal infant mortality rates, 2018 or latest available),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영아사망률 추이(Trends in infant mortality rates, 1970-2018), 1970년, 1990년, 2018년(혹은 가장 최근)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s, 1970, 1990 and 2018 or latest available)의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1) CO1.1.1.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신생아 후기 사망률(Infant mortality, neonatal mortality, and post-neonatal infant mortality rates, 2018 or latest available)

본 지표는 적절하게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당 1년 미만 생존한 아동수로 측정되며, 신생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8일 미만 생존한 아동수로 측정된다. 신생아 후기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8일 이상 생존하고 1년 미만 생존한 아동 수로 측정한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는 지표들의 출처를 OECD 보건통계라고 밝히고 있는데, OECD 보건통계에서 출처는 통계청이고(OECD, 2022) KOSIS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정보가 확인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영아사망률과 신생아사망률은 통계청에서 보고하고 있으며(통계청, 2022a; 신정우 외, 2022, p.29), 신생아 후기 사망률은 영아사망률에서 신생아사망률을 차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던(1993년~2008년 기준) 「영아모성사망조사」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와 통합(2011. 9.)되면서 2009년 이후 자료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사망원인 보완조사, 1년주기)를 활용하여 산출한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23). 최근의 통계는 사망원인통계 등을 이용해 산출되는 지표로 산출방식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993년 전의 통계치의 출처는 불확실하다.

---

94) 본 지표의 정의 및 지표 보고 현황은 https://www.oecd.org/els/family/CO_1_1_Infant_mortality.pdf에 기초하여 작성함.

(2) CO1.1.2.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영아사망률 추이(Trends in infant mortality rates, 1970-2018)

본 지표는 모든 국가들의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는 매해 값이 보고되고 있으나 그 전에는 간헐적으로 보고되어 지표 산출에서 제외되었다.

(3) CO1.1.1. 1970년, 1990년,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s, 1970, 1990 and 2018 or latest available)

우리나라의 1990년 수치는 1989년과 1991년의 평균치로 산출된다. 해당 연도의 자료가 없는 일부 국가들 또한 가까운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2) CO1.2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95]

CO1.2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의 지표는 1960년과 2020년 사이 성별 기대수명의 추이(Trends in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1960-2020), 2020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성별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2019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and Healthy Life Years(HLY) at birth,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과 같이 총 세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 CO1.2.1. 1960년과 2020년 사이 성별 기대수명의 추이(Trends in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1960-2020)

본 지표는 적절하게 산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지표의 출처는 OECD 보건통계이다. OECD 보건통계에서 출처는 통계청 생명표라고 기록되어 있고(OECD, 2022) KOSIS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생명표는 2023년 1월 시점에 1970년부터 2021년까지의 성별 기대수명 측정값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1970년 이후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통계청, 2022b).

(2) CO1.2.2. 2020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성별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본 지표는 적절하게 산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지표들의 출처는 OECD 보건통계

95) 본 지표의 정의 및 지표 보고 현황은 https://www.oecd.org/els/family/CO_1_2_Life_expectancy_at_birth.pdf에 기초하여 작성함

이다. OECD 보건통계에서 출처는 통계청 생명표라고 기록되어 있고(OECD, 2022) KOSIS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생명표는 2023년 1월 시점에 가장 최근 시점인 2021년도의 연령별 기대수명 측정값을 제시하고 있다(통계청, 2022b).

(3) CO1.2.3 2019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Healthy Life Years(HLY) at birth)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대수명은 통계청 생명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수명은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서 사망자료와 자기 보고 장애율을 이용해 산출하는데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는 자기 보고 장애를 지난 6개월간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 생활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96] 심각한 제한, 심각하지 않은 제한, 전혀 제한 없음의 세 단계로 장애 정도를 평가하고 심각한 제한을 불건강, 심각하지 않은 제한과 전혀 제한 없음을 건강으로 구분해 해당 지표를 산출한다(EUROSTAT, 2015).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건강문제로 인한 활동제약 문항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출현율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15). 또한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계십니까?”라는 문항[97]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질병관리청, 2023) 이를 이용해 해당 지표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기준에 맞는 건강수명 지표의 산출을 위해서는 지표 산출 주체 지정이 필요한데 WHO의 기준을 포함해 건강수명의 측정 방식이 다양하고 우리나라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의 법정 계획에서 EU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건강수명을 산출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해당 지표의 산출 필요성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CO1.3 저체중 출생(Low birth weight)[98]

CO1.3 저체중 출생(Low birth weight)은 2018년 또는 최신 저체중아 출생 비율(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2018 or latest available)과 1990년부터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년도까지의 저체중 출생아 비율 변화(Changes in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1990 to 2018 or latest available), 두 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96) EU-SILC에서 질문은 다음과 같다: “For at least the past six months, to what extent have you been limited because of a health problem in activities people usually do? Would you say you have been: severely limited? / limited but not severely? / not limited at all?”

97) EU-SILC와 달리 응답은 예/아니요로 확인함

98) 본 지표의 정의 및 지표 보고 현황은 https://www.oecd.org/els/family/CO_1_3_Low_birth_weight.pdf에 기초하여 작성함

(1) CO1.3.1., 2018년 또는 최신 저체중아 출생 비율(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2018 or latest available)

본 지표는 적절하게 산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체중 출생 지표는 유아의 사망 위험 증가에 관한 역학적 관찰을 기반으로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라 출생 시 영아의 체중이 2500g(5.5파운드) 미만일 때 저체중아로 분류된다. 저체중아 비율은 2500g(5.5파운드) 미만의 정상 출산아수를 총 정상 출산아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부합하게 산출된 저체중아 출산율을 가장 최근인 2020년까지 연차별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현재(2023년 1월) 기준, 가장 최근에 공표된 저체중아 출생 비율은 2021년 5.0%이나(통계청, 2022c) 해당 지표는 아직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보고되지 않았다.

(2) CO1.3.2. 1990년부터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년도까지의 저체중 출생아 비율 변화(Changes in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1990 to 2018 or latest available)

본 지표 또한 적절하게 산출, 보고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활용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부합하게 산출된 저체중아 출산율을 2020년까지 연차별로 보고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초 보고는 1993년도부터로 1990년부터 1992년도까지 해당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2018년(혹은 가장 최근 연도) 사이의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서도 저체중 출생아는 1993년도부터 보고되고 있어(통계청, 2022c) 개선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이 1993년부터 2018년(혹은 가장 최근 연도) 사이의 변화를 보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CO1.4 백신 접종률(Vaccination rates)[99]

CO1.4 백신 접종률(Vaccination rates)은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 및 백일해 발병률(Vaccination rates for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and the incidence of pertussis, 2018 or closest available)과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홍역 예방 접종률 및 홍역 발병률(Vaccination rates for measles and the incidence of measles, 2018 or closest available), 두 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99) 본 지표의 정의 및 지표 보고 현황은 https://www.oecd.org/els/family/CO_1_4_Childhood_vaccination.pdf에 기초하여 작성함

(1) CO1.4.1.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 및 백일해 발병률(Vaccination rates for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and the incidence of pertussis, 2018 or closest available)

본 지표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조합 예방 접종을 3회 이상 접종한 1세의 비율(%)과 10만 명당 백일해 발병 보고건 수로 구성되며, 적절하게 산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는 지표들의 출처를 OECD 보건통계라고 밝히고 있는데 OECD 보건통계에서 출처는 WHO Immunization Portal로 표기되어 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국가별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WHO, n.d.)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대상자 중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을 위해 권장하는 기초접종 3회(생후 2, 4, 6개월) 및 추가접종 2회(생후 15~18개월, 만 4~6세)를 모두 완료한 아동의 비율을 각 연령별로 보고하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에도 공개되어 있다(질병관리청, 2022a). 또한 백일해는 제2군 법정감염병으로[100]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발생보고」에서 발생건수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통계포털에도 보고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1).[101]

(2) CO1.4.2.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홍역 예방 접종률 및 홍역 발병률(Vaccination rates for measles and the incidence of measles, 2018 or closest available)

본 지표는 해당 연도에 홍역 함유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1세 미만 아동의 비율(%) 및 해당 연도에 10만 명당 보고된 홍역 사례 수로 측정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와 동일하게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는 지표들의 출처를 OECD 보건통계로 밝히고 있고 OECD 보건통계에서 출처는 WHO Immunization Portal이다(OECD, n.d.b). 현재 우리나라도 보고하고 있는 지표로 CO1.4.A와 동일하게 질병관리청의 자료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에서 필수예방접종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에 대해 MMR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의 「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에서 해당 예방접종을 받은 1세 아동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질병관리청, 2022a). 홍역은 백일해와 마찬가지로 제2군 법정감염병으로 사례 수는 앞서와 동일하게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발생보고」에서 발생 건수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통계포털에도 공개되어 있다(질병관리청, 2021). OECD 보건통계를 검토한 선행연구는 홍역 발생 건수가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한 지표라고 밝혔다(신정우 외, 2022).

---

100) 제2군 법정 감염병 환자를 발견한 의료기관 등은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가 수집된다.

101) 2023년1월15일 시점에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공개됨.

5) CO1.5 모유 수유율(Breastfeeding rates)[102]

CO1.5 모유 수유율(Breastfeeding rates)는 2005년경 모유를 먹은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ver breastfed”, around 2005)과 2005년경, 생후 3, 4, 6개월에 완전모유수유를 한 아동의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xclusively breastfed at 3, 4 and 6 months, around 2005), 두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 CO1.5.1. 2005년경 모유를 먹은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ver breastfed”, around 2005)

2005년경 한 번이라도 모유를 먹은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ver breastfed”, around 2005)로, 우리나라는 본 지표를 보고하지 않았는데, 대체 가능 지표가 있어 누락,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도 완전 모유 수유율 보고의 출처인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는 1주~12개월의 모유 수유율을 보고하고 있다[103]. 2006년도 조사에는 모유 수유의 최소 기간이 1주일로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나, 2000년도 조사에서는 “ever(한 번이라도)”에 해당하는 조사 결과를 75.2%로 보고하고 있다[104]. 아이슬란드 또한 2000년도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덴마크와 그리스도 2001년도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본 자료를 사용하여, 대체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5년 이후로 보고되지 않은 지표로 지속적으로 보고가 필요한 지표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모유수유 대상 “아동”의 연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2) CO1.5.2. 2005년경, 생후 3, 4, 6개월에 완전모유수유를 한 아동의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xclusively breastfed at 3, 4 and 6 months, around 2005)

본 지표는 2005년경 특정 시점, 생후 3, 4, 6개월에 모유만 먹은 아동의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완전 모유수유율을 보고하고 있다.

---

102) 본 지표의 정의 및 지표 보고 현황은 “https://www.oecd.org/els/family/43136964.pdf(2023년 1월 15일 인출)”에 기초하여 작성함.

103) 대한모유수유의사회. 한국의 모유수유율과 완전모유수유율. http://www.bfmed.co.kr/re/sub/mbi_read.html?cate=1&idx=936(2021년 1월 15일 인출).

104) 대한모유수유의사회. 한국의 모유수유율과 완전모유수유율. http://www.bfmed.co.kr/re/sub/mbi_read.html?cate=1&idx=936(2021년 1월 15일 인출).

6) CO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 당뇨와 천식 유병률(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105]

CO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 당뇨와 천식 유병률(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은 2017년 소아의 제1형 당뇨병 추정 유병률(Estimated prevalence of type 1 diabetes in children, 2017), 2002년 또는 그 전후의 6-7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6-7, 2002 or around), 2002년 13-14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13-14, 2002 or around), 총 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 CO1.6.1 2017년 소아의 제1형 당뇨병 추정 유병률(Estimated prevalence of type 1 diabetes in children, 2017)

본 지표는 1형 당뇨를 가진 0-19세 아동 추정치이다. 한국은 해당 지표를 보고하고 있고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로 그 출처가 제시되고 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국가 설문조사를 이용해 보고한다고 표기되어 있다(IDF, 2022). 자료원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해 산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17년부터 소아·청소년(만1~18세) 이환 영역 문항 중 의사진단 경험률이 낮은 당뇨병을 삭제하였다(질병관리청, 2023). 향후 자료 수집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해당 문항을 다시 포함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1형 당뇨 유병률을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CO1.6.2. 2002년 또는 그 전후의 6-7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6-7, 2002 or around)

본 지표는 6~7세 아동의 천식 유병률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한국의 수치가 보고되고 있지만 국가 수준이 아닌 서울 지역의 수치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표이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청소년의 천식 의사 진단 경험률을 보고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질병관리청, 2022b) 6~7세 아동에 대해서는 지표를 산출할 수 없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천식 진단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활용해 보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질병관리청, 2023). 다만 연령을 6~7세로 제한할 경우 소아청소년 대상자 규모가 통계치 산출에 적절한지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이 지표 또한

105) 본 지표의 정의 및 지표 보고 현황은 https://www.oecd.org/els/family/CO_1_6_Diabetes_Asthma_Children.pdf에 기초하여 작성함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천식 유병률을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CO1.6.3. 2002년 13-14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13-14, 2002)

본 지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수치가 보고되고 있지만 국가 수준이 아닌 서울 지역의 수치라는 점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청소년의 천식 의사 진단 경험률을 보고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천식 진단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활용해 보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질병관리청, 2022b). 다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연령을 13~14세로 제한할 경우 소아청소년 대상자 규모가 통계치 산출에 적절한지는 확인이 필요하다(질병관리청, 2023). 이 지표 또한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천식 유병률을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7) CO1.7 과체중 및 비만(Overweight and obesity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106]

CO1.7 과체중 및 비만(Overweight and obesity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지표는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2013/14(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2013/14년 누락된 BMI 자료 비율(Rates of missing BMI data, 2013/14)총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지표는 OECD 회원국과 EU 회원국에 대해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urvey 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관련 지표들을 모두 보고 하고 있지 않아 국내 자료원을 활용해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관련해서 세부 지표별로 구체적인 지표 정의와 국내 다른 자료원을 활용할 경우 가능한 방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O1.7.1,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본 지표는 WHO 아동 성장 곡선 기준에 따라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분류된 BMI를 가진 11세, 13세 및 15세의 성별 비율(%)로, 아동 비만을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자료원을 살펴보면 교육부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행하는 학생건강검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

106) 본 지표의 정의 및 지표 보고 현황은 https://www.oecd.org/els/family/CO_1_7_Overweight_11_13_15_gender.pdf에 기초하여 작성함

조사, 그리고 청소년건강행태조사가 있으며, 모두 2013/14년의 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건강증진개발원, 2018). 여기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표본추출된 만1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 매년 실측조사를 시행한다. 학생건강검사는 표본추출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측조사를 진행하며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전국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신장과 체중을 조사한다. 즉, 학생건강조사에서 건강검진은 초 1, 4학년, 중·고등 1학년에 대해 실시하므로 연령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무엇보다 현재 원시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건강증진개발원·보건복지부, 2021, pp.14~15). 또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도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학년별 통계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11세의 통계 값 산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실측조사에 기반한 수치가 보다 정확할 수 있지만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자료원인 HBSC 조사는 개인이 응답한 신장과 체중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유사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사용하여 지표를 산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뒤에 나오는 세 번째 지표인 BMI 가결측인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 방식의 조사가 보다 적절할 수 있다.

(2) CO1.7.2.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2013/14
(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본 지표는 11~15세에서 성별, 가족 부유함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인 비율은 WHO 아동 성장곡선 기준에 따라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분류된 BMI를 가진 11~15세의 비율(%)에서 부유층과 하위층 간의 백분율 포인트 차이를 성별로 산출한다. HBSC 조사는 차량 소유, 개인 침실 여부, 지난 1년 간 가족 여행 횟수, 컴퓨터 개수로 가족 풍요도를 평가한다(Currie et al., 2014). 이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을 측정하는 자료원은 없다는 점에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가족 풍요도에 대한 해당 문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가족 풍요도 지표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적절한지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3) CO1.7.3. 2013/14년 누락된 BMI 자료 비율(Rates of missing BMI data, 2013/14)

BMI 수치가 결측인 비율은 BMI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은 11세, 13세 및 15세의 성별 비율(%)로 산출한다. HBSC 가 자기 보고 방식에 기반한 조사라는 점에서 해당 문항이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8) CO1.8 성별 정기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107]

CO1.8 성별 정기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는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정기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두 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지표도 CO1.7 과체중 및 비만 지표 동일하게 OECD 회원국과 EU 회원국에 대해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urvey 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1) CO1.8.1. 성별 11, 13, 15세 정기 흡연자 비율(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본 지표는 주 1회 이상 흡연하는 11세, 13세, 15세의 성별 비율(%)로 측정된다. 앞서와 동일하게 OECD 회원국과 EU 회원국에 대해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urvey 조사를 통해 측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보고되고 있지 않은 지표이다. 청소년 흡연율을 조사하는 국내 자료원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가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최근 1달 동안 담배를 한 대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 주관식으로 응답한다(질병관리청, 2023).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최근 30일 동안, 일반담배(궐련)를 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 월 1~2일, 월 3~5일, 월 6~9일 등의 응답을 제시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2b). 청소년건강행태조사가 11세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앞서 문항들과의 조사 자료 일관성 및 용이성을 고려한다면 흡연율에 대해서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사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월 3~5일 이상으로 주 1회 이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CO1.8.2.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정기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본 지표는 주 1회 이상 흡연하는 11~15세의 비율(%)에서 가족의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백분율 포인트 차이를 성별로 측정된다. 청소년 흡연율의 경우 CO1.8.A.1 과 관련해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측정가능하다. 가족 풍요도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흡연율을 측정하는 자료원은 없다는 점에서 가족 풍요도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가족 풍요도 지표가 우리나라에 적절한지는 향후

107) 본 지표의 정의 및 지표 보고 현황은 https://www.oecd.org/els/family/CO_1_8_Regular_smokers_ages_11_13_15_gender.pdf 에 기초하여 작성함

검토가 필요하다.

9) CO1.9 아동 장애(Child Disability)

CO1.9 아동 장애(Child Disability)는 주로 장애아동의 비율, 교육수준, 취업 및 빈곤 그리고 제도적 지원과 관련된 자료들로 다음의 6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①성별·연령별 아동 장애 출현율(National estimates on the proportion of children with a disability by age and sex), ②청소년의 성별 장애 정도(Young women report higher levels of disability than young men), ③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교육수준(Educational attainment of young people aged 18 - 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④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률(Percentage of employed and unemployed young people aged 18 - 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⑤장애가구원 유무에 따른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by disability status, 2009), ⑥만성질환·장애가 있는 아동 대상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for Children with a Chronic Illness or Disability).

(1) CO1.9.1.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National estimates on the proportion of children with a disability by age and sex)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은 전체 아동 중 장애가 있는 아동의 비율을 성별 및 연령별로 보여주는 지표로 한국은 보고하지 않았다. OECD 중 일부(호주,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등 7개국)만이 이 지표를 보고하였다. 국가별로 장애의 정의와 보고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은 상이하였으나 자료원으로 전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였다.

장애는 주로 일상적 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신체·정신적 손상 및 제약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호주 및 뉴질랜드는 6개월 이상, 스페인은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보고 연령은 대부분 0-1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스페인과 뉴질랜드의 경우 0-15세를, 칠레는 0-17세를 기준으로 보고하였다. 보고자료의 형식은 대부분 성별 출현율과 연령구간별 출현율을 함께 보고하였고, 캐나다의 경우 연령별 자료만을, 칠레는 성별 자료만을 보고하였다.

〈표 Ⅱ-65〉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제시된 장애아동 출현율 보고방식

국가	장애의 정의	보고연령	성별	연령별	보고방식	자료의 출처
호주[1]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일상적 활동을 제한하는 한계, 제약 혹은 손상	0-14세	O	O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출현률)	2009 Survey of Disability, Ageing and Carers(SDAC)
캐나다[2]	일상적 활동의 어려움을 보고하였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상태 또는 건강문제로 일상적 활동의 유형이나 양이 감소한 경우	0-14세	X	O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출현률)	Particilation and Activity Survey(PALS)
칠레[3]	시각, 청각, 언어, 신체, 인지 및 정신 등의 여섯 개 영역의 장애 중 1개 이상이 있는 경우	0-17세	O	X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출현률)	CASEN 2006
멕시코[4]	일상적 활동(보행, 시각, 언어, 청각, 옷입기 등)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한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	0-14세	O	O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출현률)	Censo de Poblacion y Vivienda 2010
뉴질랜드[5]	6개월 이상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제한을 주는 장기적인 손상	0-15세	O	O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출현률)	Disability Survey 2006
스페인[6]	손상으로 인하여 1년 이상 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주거나 제한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태	0-15세	O	O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출현률)	Módulo de Discapacidades y Deficiencias 1999
미국[7]	기능적 활동의 제한, 일상적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도구적 활동의 어려움, 발달장애, 학습장애 및 학습의 어려움 등 아동의 장애상태 등을 포함	0-14세	O	O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출현률) 패널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10 (2008 SIPP 6th Wave, Functional limitation & disability section)

주: 1) 호주: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Previousproducts/4430.0Main%20Features22009?opendocument&tabname=Summary&prodno=4430.0&issue=2009&num=&view=
2) 캐나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disability/arc/disability-2006.html
3) 칠레: Cabieses, Pickett & Tunstall(2012).
4) 멕시코: http://en.www.inegi.org.mx/contenidos/programas/ccpv/2010/doc/cpv2010_cuest_basico_d.pdf
5) 뉴질랜드: https://statsnz.contentdm.oclc.org/digital/collection/p20045coll2/id/1148
6) 스페인: https://www.ine.es/en/prodyser/pubweb/discapa/disctodo_en.pdf
7) 미국: https://www.census.gov/topics/health/disability/guidance/data-collection-sipp.html

한국의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실시되는 장애인실태조사 등에서 산출가능하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장애를 일상적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제약으로 정의한 OECD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나 만 5세 이상만 응답하도록 하여, 0세-5세 아동의 장애를 파악할 수 없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전체 아동연령의 장애여부는 파악할 수 있으나, 장애의 개념을 등록장애인의 기준이 되는 15개 장애유형별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파악하므로 등록장애아동의 비율과 유사하다.

기보고되고 있는 OECD 자료가 활동제약을 기준으로 한 '출현율'로 등록장애아동의 비율은 출현율보다 과소보고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OECD의 장애아동 정의와 유사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를 재분석하여 아동의 성별·연령별 장애출현율을 확인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 단,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만 0-4세 아동의 자료는 파악되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해당 질문 문항의 응답연령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Ⅱ-66〉 한국의 장애아동 출현율 관련 자료

통계명	'장애' 여부에 대한 질문항목	장애문항 응답 연령	성별	연령별	보고방식
인구주택 총조사	건강 문제로 다음의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경을 써도)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스스로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등이 상당히 어려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위의 활동 중 하나 이상이 어렵다면 지속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만5세 이상	O	O	자기보고식 출현율
사회조사	2 귀하는 건강 문제로 다음의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약간이라도 어렵다면,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의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활동 제약 상태: ① 전혀 어렵지 않다 / ② 약간 어렵다 / ③ 상당히 어렵다 / ④ 전혀 할 수 없다 활동 제약 지속 예상 기간: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1. 안경을 써도 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2.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3.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4. 기억하거나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5. 스스로 옷 입기, 목욕하기 등 자기 관리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6.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거나 듣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13세 이상	O	O	자기보고식 출현율
장애인 실태조사	1.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전체 연령	O	O	자기보고식 출현율

통계명	'장애' 여부에 대한 질문항목	장애문항 응답 연령	성별	연령별	보고방식
	9.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심장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호흡기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간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 안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장루·요루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 뇌전증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장애인 현황통계	등록장애인 여부	전체 연령	O	O	주민등록 상 행정통계

자료: 통계청(2020a).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설명자료, 통계청(2020b).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표 p.7; 통계청(2022). 사회조사 통계설명자료·조사표; 통계청(2020c).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표, 각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orgId=101&confmNo=101018&kosisYn=Y 로부터 2023년 4월 23일 인출

(2) CO1.9.2. 청소년의 성별 장애 정도(Young women report higher levels of disability than young men)

성별 장애 정도는 15~19세, 20~24세, 25~29세 등의 연령구간별·성별 장애출현율과 심한 장애출현율로 OECD는 "지난 6개월 간 건강 상의 이유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제약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묻고 이에 대하여 '심하게 제약이 된다', '제약이 되나 심하지는 않다', '전혀 제약이 되지 않는다' 등으로 응답한 EU-SILC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하였다(EUROSTAT, 2010, p.272). 자료형식은 불가리아, 그리스, 라트비아 및 몰타 등을 제외한 EU-SILC 참여국에서 집계된 자료들의 평균치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상 에서는 국가별 측정치를 게시하지 않았다[108]. 한국은 이 지표를 보고하지 않았으나, 통계청 사회조사를 활용하여(원자료 중 활동제약 항목을 성별 및 심한 제약 여부에 따라 재분석) 지표 산출이 가능하다.

(3) CO1.9.3.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교육수준(Educational attainment of young people aged 18-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OECD는 EU-SILC 자료(EU 국가)와 LIS(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미국, 캐나다)를 활용하여 장애유무에 따른 만18세-29세 청년의 교육수준을 낮음(low)-중간(medium)-높음(high)을 기준[109]으로 보고하였다. 이 자료는 아동 연령(18세 미만)을 초과하는 자료로 아동기

108) 다만, EU-SILC Database 에서는 해당 자료의 국가별 수치가 공개되어 있음.

109) '낮음(low)'은 ISCED 0-2(중졸 이하)이며, '중간(medium)'은 ISCED 3/4(중졸~고졸/고등학교 후기교육졸), '높음(high)'은 ISCED 5-6(전문대 이상) 등으로 산출, EU-SILC, LIS 조사에서 교육수준은 ISCED 수준으로 구분하였는데, ISCED 1997은 0: 취학 전 교육(Preprimary), 1: 초등교육(Primary), 2: 중등학교 교육(Lower secondary), 3: 고등학교 교육(Upper secondary), 4: 고등학교 후기 교육(Post-secondary non-tertiary), 5: 전문대학(Short-cycle tertiary), 6: 고등교육(University or professional institute leading to a master's or doctorate degree) 등으로 분류

장애 출현율이 청년기의 성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국은 이 역시 보고하지 않았다. 이 지표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혹은 사회조사의 원자료 중 활동제약, 교육수준, 연령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산출가능하다.

(4) CO1.9.4.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률(Percentage of employed and unemployed young people aged 18 – 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OECD는 EU-SILC 자료(EU 국가)와 LIS(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미국, 캐나다)를 활용하여 장애유무에 따른 만18세-29세 청년의 고용률(employed)과 실업률(unemployed)을 함께 보고하였다. 고용률은 전일제/시간제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인 경우, 고용된 것으로(employed) 정의하였으며, 실업(unemployed)은 전일제/시간제 근로자+자영업자+실업자 중에서 응답자가 '실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다(조윤화 외, 2014).

한국은 이 지표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보고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 대비한 장애인의 고용률과 실업률 자료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승인통계 제 383004호)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가 없는 청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 또한 장애가 없는 청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파악할 수 없으며 등록장애인과 유사한 장애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제약이 있다. 사회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파악하기 어렵다. 향후 이 지표의 보고를 위해서는 사회조사 및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CO1.9.5. 장애가구원 유무에 따른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by disability status, 2009)

OECD는 장애가구원이 있는 아동가구의 상대빈곤율[110], 비장애가구원으로만 이루어진 아동가구의 상대빈곤율 그리고 전체 가구의 상대빈곤율을 보고하였다. 한국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빈곤율은 산출할 수 있으나 장애인을 '등록장애인 여부'로만 파악하여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규모의 과소보고와 빈곤율의 추정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향후 보고를 위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장애인 변수를 OECD와 유사한 방식으로(활동제약) 개선할 필요가 있다.

110)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아동(만0세-만17세)이 1인 이상 포함된 근로연령대(만18세-만64세) 가구주가 있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각 국가 중위소득의 50%보다 낮은 가구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로 산출(OECD Familydatabase, CO.2.2. Child poverty, p.1). 가구 가처분소득은 가구소득(근로, 사업 및 이전소득 등) 중 조세와 사회보험 등을 제외하여 산출하며, 이 때에는 가구원 수의 차이를 감안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 균등화 소득을 적용

(6) CO1.9.6. 만성질환·장애가 있는 아동 대상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for Children with a Chronic Illness or Disability)

본 지표는 OECD 회원국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현금급여 제도를 국가별로 정리한 자료로 우리나라도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애아동수당, 초중고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장애아동보육료 지원 등을 보고하고 있다. 자료에 구성된 항목은 적절하나 자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현금급여액을 해당 시점에 지급되는 수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10) 아동 건강(Child Health) 지표 요약

'아동 건강'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최근 연도 지표는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천식 유병률은 국가 수준이 아닌 지역수준에서 보고되고 있었고 건강수명, 과체중 및 흡연율은 기존 자료원을 활용해 일부 산출 가능하나 누락되었다. 한편 과체중 및 흡연율 산출 시 활용되는 가족 풍요도를 평가한 자료는 없다는 점에서 해당 지표 산출 방안 마련시 해당 변수의 포함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아동장애는 일부 산출 가능하나 누락되었으며,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률 및 빈곤율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 관련 조사 자료에서 해당되는 변수를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표 Ⅱ-67〉 아동 건강(Child Health)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개선 방향
CO1.1	영아사망 (Infant mortality)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신생아 후기 사망률(Infant mortality, neonatal mortality, and post-neonatal infant mortality rates,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영아사망률 추이(Trends in infant mortality rates, 1970-2018)	X	자료없음: 모든 국가 수치, 한국은 일부 연도 누락으로 포함불가
		1970년, 1990년, 2018년(혹은 가장 최근)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s, 1970, 1990 and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CO1.2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1960년과 2020년 사이 성별 기대수명의 추이(Trends in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1960-2020)	O	적절
		2020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성별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개선 방향
		2019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and Healthy Life Years(HLY) at birth,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기대수명'
			X	누락: '건강수명', 인구주택총조사 또는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산출 가능
CO1.3	저체중 출생 (Low birth weight)	2018년 또는 최신 저체중아 출생 비율(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0년부터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년도까지의 저체중 출생아 비율 변화(Changes in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1990 to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0~1992 자료없음)
CO1.4	백신 접종률 (Vaccination rates)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 및 백일해 발병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Vaccination rates for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and the incidence of pertussis, 2018 or closest available)	O	적절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홍역 예방 접종률 및 홍역 발병률 (Vaccination rates for measles and the incidence of measles, 2018 or closest available)	O	적절
CO1.5	모유 수유율 (Breastfeeding rates)	2005년경 모유를 먹은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ver breastfed", around 2005)	X	자료없음 단, 2000년 수치 활용가능
		2005년경, 생후 3, 4, 6개월에 완전모유수유를 한 아동의 비율 (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xclusively breastfed at 3, 4 and 6 months, around 2005)	O	적절
CO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 당뇨와 천식 유병률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2017년 소아의 제1형 당뇨병 추정 유병률(Estimated prevalence of type 1 diabetes in children, 2017)	O	적절
		2002년 또는 그 전후의 6-7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6-7, 2002 or around)	O	개선필요
		2002년 13-14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13-14, 2002)	O	개선필요
CO1.7	11세, 13세, 15세 성별 과체중 (Overweight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X	누락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2013/14(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자료없음: 풍요도 자료없음,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문항 추가 필요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개선 방향
		2013/14년 누락된 BMI 자료 비율(Rates of missing BMI data, 2013/14)	X	누락
CO1.8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X	누락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자료없음: 풍요도 자료없음,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에 문항 추가 필요
CO1.9	아동장애 (Child Disability)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National estimates on the proportion of children with a disability by age and sex)	X	누락: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 5-15세 출현율 산출가능
		청소년의 성별 장애 정도(Young women report higher levels of disability than young men)	X	누락: 사회조사 자료 활용 산출가능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교육수준(Educational attainment of young people aged 18-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X	누락: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활용 산출가능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률(Percentage of employed and unemployed young people aged 18-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X	자료없음: 향후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변수 추가 필요
		장애가구원 유무에 따른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by disability status, 2009)	X	자료없음: 가계금융복지 조사 변수 보완 필요
		만성질환·장애가 있는 아동 대상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for Children with a Chronic Illness or Disability)	O	적절

나. 아동빈곤

아동빈곤은 CO2.1 가구유형별 소득 불평등과 소득지위(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CO2.2 아동빈곤(Child poverty), CO.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의 3개 지표로 구성된다.

1) CO2.1 가구유형별 소득 불평등 및 소득지위(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CO2.1 가구유형별 소득 불평등 및 소득지위(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는 소득 불평등 측정(Measure of income inequality, 2007, 2017 or nearest available year)과 가구유형에 따른 상대가처분소득(Relative disposable income by household type,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의 두 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 CO2.1. 소득 불평등 측정(Measure of income inequality, 2007, 2017 or nearest available year)

소득 불평등 측정지표는 지니계수[111]와 소득 5분위 배율[112]을 사용하여 OECD 기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산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료산출을 위하여 EU 국가들의 경우 일부는 EU-SILC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일부 국가[113]의 경우 자국에서 생산한 소득 관련 조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근의 OECD 소득 작성기준(Wave 7)에 따라 보고되고 있다.

〈표 II-68〉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제시된 아동빈곤 지표 산출용 국가별 소득자료 출처

국가	국가별 소득자료 출처
호주	Survey of Income and Housing
오스트리아	EU SILC
벨기에	EU SILC
캐나다	Canada Income Survey
칠레	CASEN
코스타리카	Encuesta Nacional de Hogares
체코	EU SILC
덴마크	Danish Law Model System
에스토니아	EU SILC
핀란드	Income Distribution Statistics
프랑스	Enquête Revenus Fiscaux et Sociaux

111) 지니계수는 소득이 전체 국민에게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특정 소득계층 이하인 국민들의 누적 소득비율인 로렌츠곡선과 소득이 전체 국민에게 완전히 평등하게 분배되었다고 가정할 때 나타나는 완전평등선의 면적을 비교하여 산출

112)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상위층이 하위층 소득의 몇 배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 전체 국민 소득의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

113)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등

국가	국가별 소득자료 출처
독일	German Socio Economic Pane
그리스	EU SILC
헝가리	EU SILC
아이슬란드	EU SILC
아일랜드	EU SILC
이스라엘	CBS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이탈리아	EU SILC
일본	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 of the People on Health and Welfare
한국	가계금융복지조사
라트비아	EU SILC
리투아니아	EU SILC
룩셈부르크	EU SILC
멕시코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네덜란드	Integral Income and Wealth Survey
뉴질랜드	Household Economic Survey
노르웨이	Income Statistics for Household
폴란드	EU SILC
포르투갈	EU SILC
슬로바키아	EU SILC
슬로베니아	EU SILC
스페인	EU SILC
스웨덴	Income Distribution Survey(HEK), with integrated register data(TRIF)
스위스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터키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영국	Family Resources Survey
미국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to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브라질	IBGE-PNADC(from LIS)
중국	China Family Panel Studies
인도	India Human Development Survey(from LIS)
러시아	Income Survey
남아프리카공화국	National Income Dynamics Study(from LIS)
불가리아	EU SILC
루마니아	EU SILC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www.oecd.org/els/soc/IDD-Metadata.pdf 로부터 인출한 표를 저자가 재구성, 자료의 출처는 국가별 보고된 가장 최신자료의 출처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힘.

(2) CO2.1.2. 가구유형에 따른 상대 가처분소득(Relative disposable income by household type,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OECD는 아동가구의 가구유형[114]에 따른 가처분소득이 기준가구(가구 내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이 2인 이상, 이 중 1인만이 경제활동을 하며, 아동이 없는 가구일 것)의 가처분소득과 대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다. 한국은 이 지표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지표산출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해당 자료원에 아동가구의 가구유형 변수가 부재하므로 가구정보와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제시된 가구유형에 해당하는 변수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아동가구원 유무', '가구주의 연령', '성인가구원 수', '모든 성인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등의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자료보고의 용이성과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변수의 가공과 산출된 수치의 대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CO2.2 아동빈곤(Child poverty)

CO2.2 아동빈곤(Child poverty)은 아동의 상대빈곤율(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가구유형별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typ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고용상태별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의 3종의 자료로 측정한다.

(1) CO2.2.1. 아동의 상대빈곤율(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균등화 가처분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만0~만17세 아동의 비율로 빈곤선은 국가별 가처분 중위소득의 50%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해당 지표를 적절하게 산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CO2.2.2. 가구유형에 따른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typ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가구균등화 가처분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적어도 1명 이상의 아동(0~17세)과 근로연령대

114) Single adult-working age head – at least one child – one worker: 가구 내 성인 1인이며 성인1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Two or more adults-working age head – at least one child – one worker: 가구 내 성인 2인 이상이며 그 중 1인만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Two or more adults-working age head – at least one child – two or more worker: 가구 내 성인 2인 이상이며 그 중 2인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만18세~64세) 가구주로 구성된 가구의 개인들의 비율을 가구유형별(한부모, 양부모)로 비교한 자료이다. 우리나라는 본 지표를 적절하게 산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CO2.2.3 가구고용상태에 따른 아동가구 빈곤율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가구균등화 가처분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적어도 1명 이상의 아동(0~17세)이 있는 근로연령대 가구주 가구의 개인들의 비율을 가구 내 성인의 근로유무에 따라 비교한 자료이다. 이는 가구유형과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가구 내의 아동이 빈곤하게 성장할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추정해볼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당 지표를 적절하게 산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CO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CO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과 '교육자원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과 '교육자원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의 네 개의 세부지표 구성되어 있다.

(1) CO2.3.1. 가정 내 가정용품·생활편의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본 지표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계치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1) 세탁기, 2) 컬러TV, 3) 전화기, 4) 자가용 등 4종의 필수 가정용품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5) 가정 내에서 보온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없거나, 6) 전기·가스·수도 요금 납부가 어렵거나, 7) 주거비 납부가 어렵거나, 8) 적어도 2일에 1회 고기류(고기, 닭고기, 생선 등)를 먹기 어렵거나, 혹은 9)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지출이 어려울 만큼 재정적 여력을 보유하지 못한 가구의 아동인지를 각 세부 항목별로 측정한다. 물질적 결핍은 이러한 9개 항목 중 항목의 개수(0개~9개)별로 결핍된 아동의 비율을 산출하며 파악하며, 불평등은 물질적 결핍의 중위값 아래에 속하는 항목들이 얼마나 중위값에 근접해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물질적 결핍 중위 수준 이하의 결핍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한다.

우리나라에도 물질적 결핍(박탈)을 측정하는 조사들이 있으나, 물질적 결핍을 측정하는 구성항목이 이 자료의 구성항목과는 상이하여 보고가 어렵다. 대표적으로 물질적 결핍을 측정하고 있는

조사인 국민생활실태조사나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경우 9종의 가정용품과 식생활, 의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저축 및 자녀교육에서의 결핍경험 및 공과금/교육비 등의 지출 어려움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이 세부항목이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물질적 결핍 자료를 산출하기에 충분치 않다. 2015년과 2018년 조사항목이 다소 변경되어 세탁기 및 TV 등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물질적 결핍 상황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하여 일부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자료가 없으며, 자료원의 개선방향과 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표 Ⅱ-69〉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기준 물질적 결핍의 항목별 보유 여부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Family Database) 기준 물질적 결핍 항목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2015년 국민생활실태조사	
	보유여부 (O/X)	비고	보유여부 (O/X)	비고
1) 세탁기	X		O	
2) 컬러 TV	X		△	디지털 TV
3) 전화기	△	휴대폰(스마트폰) 보유 여부만 확인	△	휴대폰(스마트폰) 보유 여부만 확인
4) 자가용	X		O	
5) 가정 내에서 보온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없거나	O		O	
6) 전기·가스·수도 요금 납부가 어렵거나	O		O	
7) 주거비 납부가 어렵거나	△	집세가 밀렸거나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로 확인	△	집세가 밀렸거나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로 확인
8) 적어도 2일에 1회 고기류(고기, 닭고기, 생선 등)를 먹기 어렵거나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 것'으로 확인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 것'으로 확인
9)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지출이 어려울 만큼 재정적 여력을 보유하지 못한 가구의 아동인지	X			

자료: 보건복지부(n.d.) 국민생활실태조사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2018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표,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17097&inputYear=2018 로부터 인출

(2) CO2.3.2. 교육자원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교육자원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은 적절하고 산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자원으로 활용되는 7종의 물품 - 1) 공부할 책상, 2) 공부할 조용한 장소, 3) 학교공부를 위한 컴퓨터, 4) 교육 소프트웨어, 5) 인터넷 연결, 6) 사전 및 7) 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있거나 활용가능한지를 조사하여 물품의 개수별(0개~7개)로 접근성이 결핍된 아동의 비율을 측정한다.

(3) CO2.3.3.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

본 지표에 대한 우리나라 통계치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불평등은 물질적 결핍의 중위값 아래에 속하는 항목들이 얼마나 중위값에 근접해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물질적 결핍 중위 수준 이하의 결핍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한다. 불평등의 값은 수정된 맥룬지수(Modified McLoone Index)로 산출되며, 물질적 결핍이 평등수준(중위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전체 항목의 몇 퍼센트가 평균적으로 증가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U 국가들의 경우 EU-SILC 조사결과를 활용하는데, 국가별 조사 시 물질적 결핍에 해당하는 다수의 문항들을 조사항목에 포함시켜 각각의 결핍여부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앞서 언급한 물질적 결핍 9개 문항의 측정치를 활용하여 이 자료를 산출 및 보고하고 있다(Whelan, et al., 2008).

(4) CO2.3.4. 교육자원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본 지표는 적절하고 산출, 보고되고 있다. 불평등은 수정된 맥룬지수를 활용하여 교육자원의 접근성이 중위수준에 이르기 위해 전체 교육자원 항목 수치의 몇 퍼센트가 평균적으로 증가해야 하는지를 측정한다.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은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수치를 보고하고 있다.

4) 아동 빈곤 지표 요약

'아동 빈곤'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가구유형에 따른 상대가처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산출 가능하나 누락되었다. 또한 물질적 결핍 중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 지표를 OECD 기준으로 보고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 해당 지표 산출 방안을 향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Ⅱ-70〉 아동빈곤(Child Poverty)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CO2.1	가구유형별 소득 불평등 및 소득지위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소득 불평등 측정(Measure of income inequality, 2007, 2017 or nearest available year)	O	적절
		가구유형에 따른 상대가처분소득(Relative disposable income by household type,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가계금융복지 조사 활용 산출 가능
CO2.2	아동빈곤 (Child poverty)	아동의 상대빈곤율(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가구유형별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typ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고용상태별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CO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 (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	X	자료없음: 자료원 개선 및 보고 필요성 별도 검토 필요)
		교육자원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O	적절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	X	자료없음: 자료원 개선 및 보고 필요성 별도 검토 필요)
		교육자원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O	적절

다. 교육·문해력

1) CO3.1. 성별에 따른 교육 이수(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CO3.1 지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후기중등교육 이수율(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율(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Educational

attainment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parents)', '부모의 이주 배경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Educational attainment by parents' migrant status)'의 네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 CO3.1.1. 성별과 연령에 따른 후기중등교육 이수율(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18)

본 지표는 성별(남/여)과 연령(25~64세/ 25~34세/ 45~54세)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ISCED 3) 이상 학력을 지닌 인구 비율로 정의된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후기중등교육 이수율' 지표는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표 A1.1(25~64세 교육단계별 성별 이수율)과 표 A.1.2(성별 25-34세 인구의 교육이수추이)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CO3.1.2.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율(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18)

CO3.1.1.과 같이 본 지표는 성별(남/여)과 연령(25~64세/ 25~34세/ 45~54세)에 따른 전문학사(ISCED 5)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인구 비율로 정의된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율' 지표는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표 A1.1(25~64세 교육단계별 성별 이수율)과 표 A.1.2(성별 25-34세 인구의 교육이수추이)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CO3.1.3.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Educational attainment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parents, 2012 or 2015)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는 25~44세의 학생이 아닌 성인('non-student' adults)과 해당 성인의 부모 중 한명의 최종 학력('고졸 이하', '고졸', '전문학사 이상')으로 정의된다.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 이수' 지표는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적절하게 해당 지표를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CO3.1.4.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Educational attainment by parents' migrant status, 2012 or 2015)

본 지표는 부모의 출생 국가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내국인(native-born)이거나 모두 외국

출생(foreign-born)인 경우로 구분하여 25~44세 학생이 아닌 성인의 최종학력('고졸 이하', '고졸', '전문학사 이상')으로 정의된다. CO3.1.3. 지표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이주 배경에 따른 자녀의 교육 이수' 지표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2, 2015)자료를 기반으로 OECD 교육지표(EAG, 2016)의 표 A4.2. '부모의 이민 배경별 부모의 교육 수준(Parents' educational attainment, by parents' immigrant status)'을 활용한 것으로 한국은 적절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지표는 부모 중 한명이 내국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국은 문화적인 특성상 이주 배경을 지닌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최근 이주노동자 유입이나 국제결혼 등으로 부모 중 한명만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표 산출시 조사대상 확대와 관련한 요청 사항을 OECD 국제교육지표사업(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 INES)의 총괄 네트워크(working party)를 통해 전달하고, 추후 관련 DB 구축시 부모 이주배경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통계자료(disaggregated data)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2) CO3.2.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CO3.2 지표는 특정 전공분야에서의 대학 졸업생 비율의 성별 차이를 의미하는 지표로서, '성별에 따른 예술·인문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arts and humanities subjects)', '성별에 따른 경영·행정·법학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성별에 따른 공학·제조·건설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의 3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해당 지표들을 적절하게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 CO3.2.1. 성별에 따른 예술·인문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arts and humanities subjects)

본 지표는 일반적으로 여학생 비율이 높은 분야인 미술, 공연 예술, 미디어 제작(영화, 비디오 제작, 사진 등), 외국어, 철학, 언어학, 문학, 역사, 고고학 등 인문·예술계열 학위 수여자의 남·녀 비율을 의미한다. OECD 교육지표(2020)의 Table B5.2. '전공별 고등교육 졸업생 분포(Distribution of tertiary graduates by field of study)'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한국 자료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CO3.2.2. 성별에 따른 경영·행정·법학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본 지표는 경영·행정·법학 계열 학위 취득자의 남·여 비율을 의미하며, OECD 교육지표(2020)의 Table B5.2. '전공별 고등교육 졸업생 분포(Distribution of tertiary graduates by field of study)'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한국 자료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CO3.2.3. 성별에 따른 공학·제조·건설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본 지표는 일반적으로 남학생 비율이 높은 분야인 공학·제조·건설 계열 학위 취득자의 성별 간 상대적 비율을 의미하며, CO3.2.1과 CO3.2.2 지표와 마찬가지로, OECD 교육지표(2020)의 Table B5.2. '전공별 고등교육 졸업생 분포(Distribution of tertiary graduates by field of study)'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한국은 적절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OECD 데이터베이스(https://stats.oecd.org/)에서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학·제조·건설, 경영·행정·법학, 예술·인문 계열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과학·언론·정보, 커뮤니케이션, 자연과학·수학·통계, 보건·의료, 농업·임업·어업, 서비스 계열 등으로 전공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다른 전공 계열의 대학 졸업자 간 성별 차이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CO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CO3.3 지표는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성별에 따른 읽기, 과학, 수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student's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performance)', '가정 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cores on reading achievement relative to Home Resources for Learning)'의 세 가지 세부지표로 측정된다.

(1) CO3.3.1.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본 지표는 대체로 적절하게 산출, 보고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만 10세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는 국제읽기능력평가(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이하 PIRLS) 조사결과를 활용하며, 수학 및 과학 성취도는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이하 TIMSS)' 조사 결과를 통해 측정되었다. 우리나라는 TIMSS 1주기(1995) 조사 때부터 매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만 10세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 지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국은 PIRLS 읽기 조사의 참여국이 아니므로 읽기 성취도와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만 10세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의 경우 자료가 없어 해당 지표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CO3.3.2. 성별에 따른 읽기, 과학, 수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boys-girls) in student's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 performance(TIMSS 2011)

본 지표는 앞서 활용된 만 10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PIRLS(읽기)와 TIMSS(수학, 과학)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로 산출되었다. 성별에 따른 수학과 과학 성취도 차이 지표는 적절하게 산출, 보고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성별에 따른 읽기 성취도 차이' 지표는 가용 자료가 없어 해당 지표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3) CO3.3.3. 가정 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cores on reading achievement relative to Home Resources for Learning, PIRLS 2011)

본 지표는 누락,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는 PIRLS의 읽기 성취도 결과와 가정의 학습 자원에 대한 지수(Index for Home Resources for Learning, HRL) 응답 값을 활용하여 가정의 학습 자원 지수(상/중/하)에 따른 국가별 읽기 성취도 평균을 비교하고 있다. PIRLS에서는 부모 교육수준, 가정 도서 보유 수, 학생 도서 수, 컴퓨터 보유 여부 등 가정의 학습 자원에 대한 지수를 개발하여 가정의 경제적 배경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PIRLS 읽기 조사의 참여국이 아니므로 읽기 성취도와 관련된 자료가 없어 해당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하다.

대체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볼 때, 국가수준에서 우리나라 만 10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성취도를 측정하는 조사로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와 맞춤형 자율형 성취도 평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이후부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전수조사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면서 전체 학생의 3%이내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표집 점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를 측정하기에는 표집의 대표성에 대한 이슈가 있으며, 국제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도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 및 교과목 영역을 확대하여 대체지표를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조사 대상을 만 10세가 아닌 다른 학년으로 확대하거나 읽기 역량에서 다른 영역의 역량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만 13세(중 2)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정보 소양을 측정한 국제컴퓨터·정보소양연구(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 ICILS)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읽기 역량이 아닌 수학·

과학 성취도를 측정한 TIMSS 조사 결과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CO3.3.3. 가정 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 지표와 관련하여, 한국은 PIRLS 조사의 참여 대상국이 아니므로 가정의 학습 자원(HRL)에 대한 자료는 부재하나, TIMSS 조사에서는 가정의 도서 보유량, 학습 자원, 부모의 학력을 종합하여 '가정자원'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서민희 외, 2022: 329).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가정 배경에 따른 수학·과학 성취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ICILS에서는 부모 직업, 최종학력, 가정의 도서 보유 정도를 바탕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므로(박상욱 외, 2019: 192), 이를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상위 34% 집단/ 하위 34% 집단)에 따른 만 13세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평균 점수의 차이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CO3.4.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 간 학업성취도 차이(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CO3.4 지표는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 추이(Changes in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부모 최종학력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of parents)',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socio-economic status)'의 5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1) CO3.4.1.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지표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국가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평균 점수로 산출된다. 우리나라는 해당 지표를 적절하게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CO3.4.2.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 지표는 여학생과 남학생 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읽기, 수학, 과학 평균 점수 차이로 산출된다. 우리나라는 해당 지표를 적절하게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CO3.4.3.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 추이(Changes in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 추이' 지표는 2009년과 2018년 수치 비교를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 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해당 지표를 적절하게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CO3.4.4. 부모 최종학력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of parents, 2018)

'부모 최종학력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 지표는 부모의 최종학력이 저학력 집단(중학교 졸업)과 고학력 집단(대학교 졸업 이상) 간 자녀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읽기 성취도 점수 차이로 산출된다, 우리나라는 해당 지표를 적절하게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CO3.4.5.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socio-economic status, 2018)

CO3.4 지표가 활용하고 있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조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지표(HISEI), 부모의 교육 수준 지표(PARED), 가정의 보유 자산 지표(HOMEPOS)를 바탕으로 학생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지표(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ESCS)를 산출하고 있다(조성민 외, 2018).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 읽기 성취도 차이'지표는 이와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 문화적 지위지표(ESCS)를 활용하여 상위 25%와 하위 25%인 학생 집단 간 평균 읽기 성취도 점수의 차이로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PISA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표들은 모두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CO3.5. 청년 니트(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NEET)

CO3.5 지표는 '청년 니트 비율(NEET rate for 15-29 year-olds)', '연령대별 니트 비율(NEET rates across age groups)', '니트 비율에 대한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NEET rates)', '내국인 및 외국인 니트 비율(Native-born and foreign-born NEET rates)'의 네 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현재 청년 니트와 관련된 지표에 대한 우리나라 자료는 모두 누락되거나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CO3.5.1. 청년 니트 비율(NEET rates for 15-29 year-olds)

청년 니트 비율은 15~29세 청년층 인구 중 니트 인구 비율로 산출된다. UOE(UNESCO/OECD/

EUROSTAT) 데이터 수집 매뉴얼에 따르면, '니트(NEET)'는 15~29세 청년층 미취업자 중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UOE 기준상 교육이나 훈련 참여는 형식교육(formal education)만을 의미함에 따라 비형식 교육 형태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예: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 통학자 등)은 제외된다.

(2) CO3.5.2.연령대별 니트 비율(NEET rates across age groups)

연령대별 니트 비율은 15~19세, 20~24세, 25~29세 연령 집단별 니트 비율로 산출된다.

(3) CO3.5.3. 니트 비율에 대한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NEET rates)

니트 비율에 대한 성별 차이 지표는 남·녀 간 니트 인구 비율의 차이로 산출된다.

(4) CO3.5.4. 내국인 및 외국인 니트 비율(Native-born and foreign-born NEET rates)

내국인 및 외국인 니트 비율 지표는 내국인(native-born)과 외국인(foreign-born) 집단별 니트 비율을 각각 산출하여 보여준다.

CO3.5 청년 니트 관련 자료는 모두 OECD 교육지표(EAG)의 'A2.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이동(Transition from education to work)지표'[115]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청년 니트와 관련된 한국 자료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표 정의상 니트 인구는 형식교육과 관련성을 지님에 따라 한국은 형식교육이 아닌 비형식교육 형태를 통한 교육 참여자 또는 취업 준비생 비율이 두드러져 해당 지표 산출시 우리나라 현실에 비해 과다추정(overestimation)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OECD INES 사업단에 해당 지표 정의에 대한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2017년도 이후부터 한국은 청년 니트 관련 지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니트에 대한 정의와는 다르나, 보완지표로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청년 니트 규모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생산가능인구(만 15~29세)'를 '경제활동 인구(취업자 및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116]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OECD의 니트 산정 기준[117]을 적용하여 한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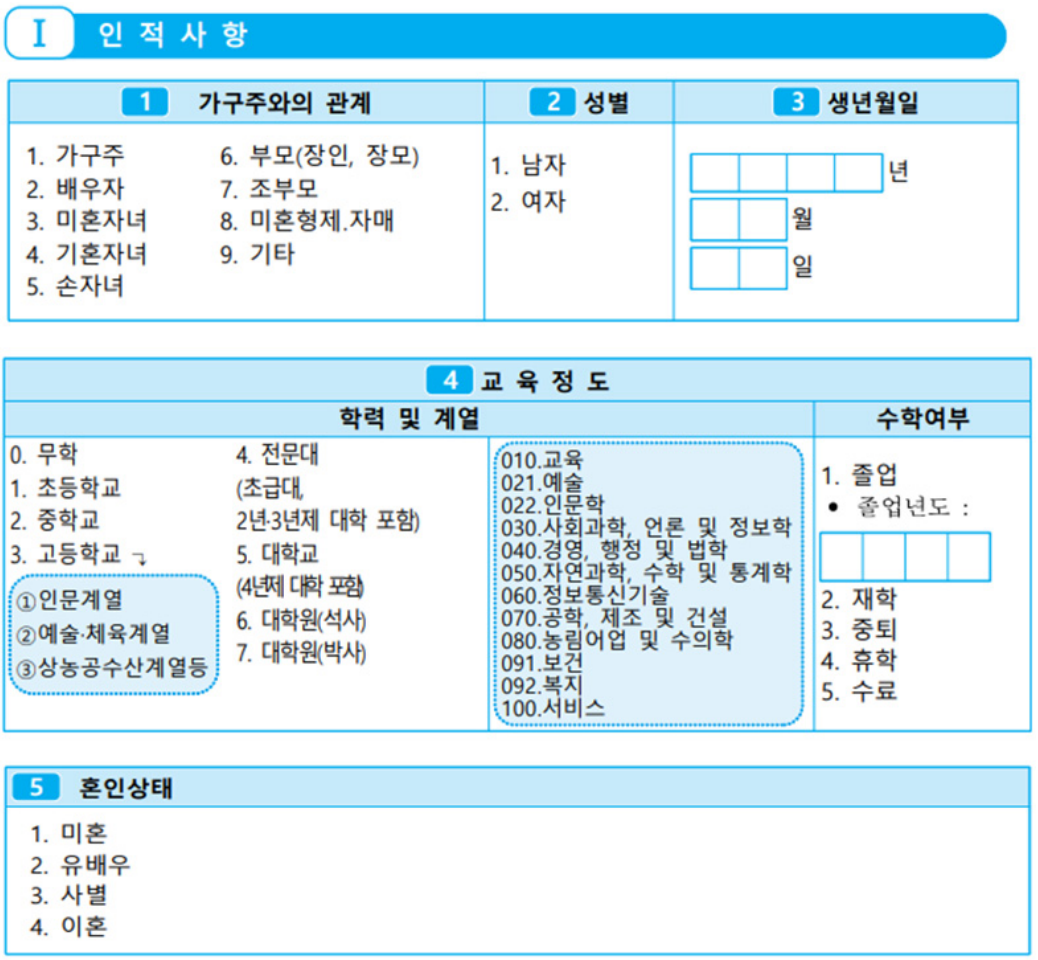
115) 구체적으로 EAG(2020)의 표 A2.2. 연령 및 고용 상태별 교육 및 비교육 청년 비율 추이(Table. A2.2. Trends in the percentage of young adults in education/not in education, by age group and work status)와 EAG(2021)의 표 A.2.3.입국 연령별 15~29세 외국인과 내국인 NEET 비율(Table 2.3. percentage of native-born and foreign-born 15-29 year-old NEETs, by age at arrival in the country)을 활용함.

116) 비경제활동 인구는 '정규 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 육아/가사/취업 준비/진학 준비/군입대 대기/연로/심신 장애/ 쉬었음/기타'로 구분됨.

117) OECD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니트 인구는 15~29세에 해당하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자는 제외되나, 육아, 가사, 취업준비생, 진학준비생,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자, 입시학원 통학자(재수생) 등이 모두 니트 인구로 포함되어 실제보다 한국의 니트 규모가 과다하게 추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됨(윤혜준 외, 2017).

청년층 니트 인구비율을 산출한 다음,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 통학자 및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 통학자를 제외하여 한국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한 청년층 니트 비율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김기헌, 2017; 윤혜준 외, 2017). 즉, 이러한 관점은 학원 및 직업 훈련기관 통학자를 니트 인구가 아닌 '학교 재학 중(in education)'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 청년층 인구 비율 지표를 산출한다면, 두번째와 세 번째 지표인 연령대 및 성별에 따른 니트 비율 차이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CO3.5.4. '내국인과 외국인 집단의 니트 비율'의 경우 현재 가용한 자료가 없어 대체지표 산출이 어려워 보인다. 추후 해당 지표의 개선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조사항목([그림 Ⅱ-19] 이주배경(내국인과 외국인 여부)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Ⅱ-2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인적사항 조사항목(통계청, 2023)



6) CO3.6.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CO3.6.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지표는 이주배경을 지니지 않은 학생(non-immigrant student)과 비교할 때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immigrant students)의 학업성취도와 비율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표는 '이주배경 학생(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on reading scores by immigrant status)',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수학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in mathematics by immigrant status)',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통제 전·후의 내국인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native students and 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ocio-economic background)', '가정에서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Students who speak another language at home)',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통제 전·후의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immigrant and non-immigrant students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language spoken at home)' 의 6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해당 지표는 모두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조사(PISA)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PISA에서는 학생의 이주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비이주배경 학생(non-immigrant students)은 학생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부모 중 한명 또는 둘다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를 의미하며, 이주배경 학생(immigrant students)은 부모 둘다 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를 의미한다. 이주배경 학생은 다시 부모와 자녀 모두 외국 태생인 1세대 이주배경 학생(first-generation immigrant students)과 부모는 둘다 외국태생이나 자녀는 응시 국가에서 태어난 2세대 이주배경 학생(second-generation immigrant students)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CO3.6.1.이주배경 학생(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2006 and 2015)

본 지표는 이주배경 유형에 따른 만 15세 학생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매우 낮아 유형별 구분(1세대 이주배경 학생/ 2세대 이주배경 학생)은 어려우나 PISA 조사의 이주배경 학생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한국 자료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CO3.6.2.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on reading score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본 지표는 학생의 이민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것으로 비이주배경 학생들과 이주배경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를 비교하고 있다.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성취도 지표는 비이주배경 학생들의 읽기성취도 자료는 제공하였으나, 이주배경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3) CO3.6.3.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수학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in mathematic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본 지표 또한 학생의 이주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것으로 비이주배경 학생들과 이주배경 학생들의 수학성취도를 비교하고 있다. 본 지표는 가용자료의 부재로 인해 한국자료는 현재 미제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CO3.6.4.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통제 전·후의 내국인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native students and 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ocio-economic background, 2015)

본 지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지표(HISEI)를 활용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하기 전과 후의 만 15세 이주배경 학생 집단과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 간 PISA 평균 읽기 성취도 점수 차이로 산출된다. 한국은 이주배경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자료가 부재하여 해당 지표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5) CO3.6.5. 가정에서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Students who speak another language at home, 2015)

본 지표는 이주배경에 따라 가정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 비율로 정의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가용자료 부재로 인해 해당 지표를 산출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6) CO3.6.6.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통제 전·후의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immigrant and non-immigrant students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language spoken at home, 2015)

이 지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더불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전과

후의 만 15세 이주배경 학생 집단과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 간 PISA 읽기 평균 점수의 차이로 산출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 차이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된 자료의 부재로 인해 해당 지표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PISA 2015 조사에서는 학생 배경 설문에서 학생과 부모님의 출생지(문항 ST019) 와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문항 ST022)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구자옥 외, 2016). 우리나라는 PISA 2015조사에 참여하였으므로 관련 문항에 대해 응답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CO3.6.1. 지표에서 보듯이 PISA 조사결과,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 비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지표 값을 결측처리하여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은 전체 초·중·고 학생의 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2.06).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편으로, 표집조사인 PISA 데이터 상에서는 관련 수치가 더욱 과소계상(underestimation)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한국 학생들의 이주배경에 따른 학업 성취도 차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또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학생 배경 설문에 이주배경이나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된 조사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은 파악할 수 있으나, 이주배경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비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성과와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CO3.6. 지표와 관련하여 현재 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성과와 관련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통계 수집이나 데이터 연계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조사'에서는 다문화학생(학생 이주배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사는 학생 단위의 조사가 아니라 학교 단위로 전체 다문화 학생 수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학생의 이주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유·초·중등통계조사'의 조사방식을 '고등교육통계조사'[118] 이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119] 와 마찬가지로 '학생 ID'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학생 단위의 조사체계가 구축된다면 한국

118)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통계조사'는 2022년부터 학생의 주민등록번호(해당 ID 익명 처리)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조사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외국학생정보, 입학정보, 재적정보, 학적변동정보, 교류정보, 졸업정보, 수강정보 등 학생의 배경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 등 다양한 통계자료와의 연계가 가능할 것임.

119) 직업계고 졸업생(특성화고, 마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적정보와 졸업 후 상황(진학, 취업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 학생 ID를 기준으로 추적조사하는 방식임. NEIS 직업계고 졸업자 기본 인적 정보, 취업자 및 진학자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다양한 통계 자료와의 매칭이 가능할 것임.

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교육/문해력 지표 요약

'교육/문해력'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니라라는 성별에 따른 교육이수.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와 관련된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가 조사국에 포함되지 않는 PIRLS 자료에 기초한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관련 세부 지표에 대해서는 부분 또는 전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산출이 불가하다. 청년 니트와 관련된 세부 지표들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OECD에서 제시한 니트에 대한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와 관련해서는 PISA 자료에 기반하는 이주배경 학생,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생산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71〉 교육·문해력(Education/Literacy)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CO3.1	성별에 따른 교육이수 (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성별과 연령에 따른 후기중등교육 이수율(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18)	O	적절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율(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18)	O	적절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Educational attainment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parents, 2012 or 2015)	O	적절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Educational attainment by parents' migrant status, 2012 or 2015)	O	적절
CO3.2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성별에 따른 예술·인문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arts and humanities subjects, 2019)	O	적절
		성별에 따른 경영·행정·법학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2019)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성별에 따른 공학·제조·건설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2019)	O	적절
CO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TIMSS2011))	O	적절: 수학, 과학 성취도
			X	자료없음; 읽기 성취도, PIRLS 비참여 국가
		성별에 따른 읽기, 과학, 수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boys-girls) in student's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 performance(TIMSS2011))	O	적절: 수학, 과학 성취도
			X	자료없음; 읽기 성취도, PIRLS 비참여 국가
		가정 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cores on reading achievement relative to Home Resources for Learning, PIRLS 2011)	X	자료없음; 읽기 성취도, PIRLS 비참여 국가
CO3.4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 간 학업성취도 차이(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O	적절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O	적절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 추이(Changes in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O	적절
		부모 최종학력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of parents, 2018)	O	적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socio-economic status, 2018)	O	적절
CO3.5	청년니트(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청년 니트 비율(NEET rates for 15-29 year-olds)	X	누락: 경제활동인구 조사 사용 생산 가능
		연령대별 니트 비율(NEET rates across age groups)	X	누락: 경제활동인구 조사 사용 생산 가능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니트 비율에 대한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NEET rates)	X	누락: 경제활동인구 조사 사용 생산 가능
		내국인 및 외국인 니트 비율(Native-born and foreign-born NEET rates)	X	자료없음: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이주배경 포함 필요
CO3.6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 (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이주배경 학생(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2006 and 2015)	O	적절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on reading score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O	적절: 비이주배경 집단
			X	자료없음: 이주배경 집단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수학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in mathematic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X	자료없음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통제 전·후의 내국인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native students and 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ocio-economic background, 2015)	X	자료없음
		가정에서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Students who speak another language at home, 2015)	X	자료없음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통제 전·후의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 (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immigrant and non-immigrant students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language spoken at home, 2015)	X	자료없음

라. 사회참여

아동 발달 성과(child outcome)의 사회참여(societal participation) 영역은 4개 지표 분류, 14개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지표 분류는 CO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CO4.2 생애 첫 투표 참여율(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CO4.3 청소년·

청년의 약물 남용(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CO4.4 십대 자살(Teenage suicides) 지표이다.

사회참여 지표군은 다른 지표들에 비해 성인 이행기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지표가 청년(young adult)을 포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참여, 정치참여 일부 지표는 15~29세의 연령을 포괄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제상 아동(0세~18세 미만), 청소년(9세~24세 이하), 청년(19세~34세 이하)과 일부 연령만 겹치는 한계가 있다. 우선 지표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15세~29세까지의 청년(young adult)을 포괄하는 지표는 청소년·청년(adolescents and young adults)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향후 지표의 국제비교를 고려할 때 측정 방법, 표집 방법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 연령의 범위까지 검토가 필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지표 분류의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CO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이 지표는 청소년·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보여주기 위하여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에 참여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청소년·청년들의 사회단체 가입률과 참여율,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 정도를 보여준다. 이 지표들은 4가지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World Values Survey Wave(WVS)[120]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고, 일부 지표(CO4.1.3)에서 한국에서 참여하지 않는 European Social Survey(ESS)[121]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지표군은 전반적으로 2010년대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인 자료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태이다.

(1) CO.4.1.1. 사회단체 구성원(활동적 또는 비활동적)인 청소년·청년 비율(Proportion of young people who are members(active or inactive) of organisations by type of group, around 2012, 15-29)

이 지표는 15-29세 청소년·청년들이 각종 사회단체(조직)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 사회단체는 종교단체, 운동 및 레크레이션 단체, 예술/음악/교육 단체, 노동조합, 정치단체, 자원봉사단체, 환경단체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World Values Survey Wave 6(2010-2014)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수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조사에 포함된 국가들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각 국가 수치가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WVS wave 7(2017-2022)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향후 자료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120) World Value Survey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worldvaluessurvey.org/
121) European Social Survey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europeansocialsurvey.org/

(2) CO.4.1.2. 지난달 자원봉사를 한 청소년·청년 비율(Proportion of people who volunteered time to an organization in the past month, 2015 or last year available)

이 지표는 15-29세 청소년·청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를 측정하고 국가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표 역시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수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조사에 포함된 국가들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각 국가 수치가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3) CO.4.1.3. 지난해 자원 봉사 또는 자선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Proportion of people involved in work for voluntary or charitable organisations in the past year)

이 지표는 앞의 지표와 유사한 질문이나 측정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어 청소년·청년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해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앞의 문항이 '지난 달' 동안의 활동을 측정하는 것에 비해 이 문항은 '지난 한 해' 동안의 경험을 묻고 있어 조사기간(reference period)에 차이가 있고 측정 질문도 약간 차이가 있다. 이 지표는 한국 미참여 조사인 European Social Survey 2012를 원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표는 WVS 결과에 대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추가적인 지표생산의 수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자만,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사회조사나 국무조정실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 해당 문항을 추가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CO.4.1.4. 교회, 종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과 적극적·수동적 참여(Active versus passive affiliation to a church, a religious organization or a trade union, around 2012)

이 지표는 사회단체 중 교회, 종교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과 참여정도를 보여준다. 전체 가입률을 측정하고 이 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과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 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 역시 World Values Survey Wave 6(2010-2014)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수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조사에 포함된 국가들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각 국가 수치가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 CO4.2. 생애 첫 투표 참여율(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이 지표는 총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보여주기 위하여 국가의 의회 선거(national parliamentary election) 혹은 대통령 선거(presidential election) 참여 비율을 보여준다. 각 국가의 투표 참여 시작연령은 주로 18세나 그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초기 성인기 청소년·청년들을 대상으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지표 분류는 투표 참여와 관련한 국제 데이터 베이스인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IDEA),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CSES), European Social Survey(ESS)를 주로 활용하여 각 국가별 수치를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수치 역시 국제 데이터 베이스의 자료를 근거로 보고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 CO4.2.1. 의회 선거 투표율(Voter turnout in latest parliamentary election, 2018 or latest year available)

이 지표는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IDEA)의 Voter Turnout Database를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 지표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하고 있다.

(2) CO4.2.2. 성·연령별 투표율(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이 지표는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CSES)(2011-2016), European Social Survey(ESS) 2014를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 지표는 CSES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하고 있다.

(3) CO4.2.3.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Lack of interest in politics, around 2012-2014)

이 지표는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6, European Social Survey 2012, 2014를 활용하고 있으며, 15-29세를 별도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 지표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하고 있다.

3) CO4.3. 청소년·청년의 약물 남용(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본 지표는 총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는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의 2013/14년 자료를 원자료로 하여 보고하고 있다. 한국은 HBSC 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지표를 해당 연령(11세, 13세, 15세)에 맞추어 조사하고 비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자료가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비교할 경우 자료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어 조사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CO4.3.1. 술에 취한 경험(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이 지표는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의 2013/14년 자료를

원자료(11세, 13세, 15세)로 사용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국제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의 지표가 보고되지 않아 추가 지표 생산이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음주율 관련 지표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조사 연령과 취한 경험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서로 상이하여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의 개편을 통해 추가 생산 가능할 것이다.

(2) CO4.3.2. 대마 사용 경험(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2013/14)

이 지표는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의 2013/14년 자료를 원자료(15세)로 사용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국제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의 지표가 보고되고 있지 않아 추가 지표 생산이 요구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대마(cannabis) 흡연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어 조사통계 구축을 위해 해당 문항을 조사하는 것의 타당성과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 정책적, 임상적 검토가 필요하다.

(3) CO4.3.3. 성별·가구 풍요도별 술에 취한 경험(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이 지표는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의 2013/14년 자료를 원자료(11세부터 15세)로 사용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국제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의 지표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 지표는 CO4.3.1의 지표 결과를 가족 배경(가족 풍요도)별 격차를 보여주기 위해 산출된 것이므로 CO4.3.1의 생산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해당 원데이터(raw data)에 HBSC에서 사용하는 가족 풍요도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생산 가능할 것이다.

(4) CO4.3.4. 성별·가구 풍요도별 대마 사용 경험(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이 지표는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의 2013/14년 자료를 원자료(15세)로 사용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국제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의 지표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 지표는 역시 CO4.3.2의 지표 결과를 성별과 가족 배경(가족 풍요도)별 격차를 보여주기 위해 산출된 것이므로 CO4.3.2의 생산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해당 원데이터(raw data)에 HBSC에서 사용하는 가족 풍요도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생산 가능할 것이다.

4) CO4.4. 십대 자살(Teenage suicides)

본 지표는 세 개의 세부지표도 구성되어 있으며, 십대 자살은 15-19세의 '의도된 자해(intentional

self-harm)'로 인한 사망자 수를 해당 연령의 전체 사망자 수로 나누어 10만명 당 자살자 수로 표기한 것이다. 이 지표 분류는 WHO(2017) WHO Mortality Database 자료를 원자료로 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의 지표 역시 적절하게 보고되고 있다. CO4.4.1과 CO4.4.3은 한국 지표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나, 이 지표는 개별 국가의 자료가 아닌 OECD 국가의 평균 추이(trends)를 살펴보는 지표로 특징이 있다.

(1) CO4.4.1. 평균 10대 자살 경향(Average trends in teenage suicides, 1990-2015)

이 지표는 WHO(2017)의 WHO Mortality Database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개별국가가 아닌 34개 국가의 평균을 제시하고 있다. OECD 전체 국가에 대한 평균으로 개별 국가 지표가 불필요하다.

(2) CO4.4.2.10대 자살(Teenage suicides, 1990, 2000 and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이 지표는 WHO(2017)의 WHO Mortality Database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 지표는 해당 국제 데이터베이스의 지표를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 2000, 2015의 자료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5) 사회참여 지표 요약

아동 발달 성과(child outcome)의 사회참여(societal participation) 영역은 4개 지표 분류, 14개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의 지표들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나 WHO의 아동청소년건강행동조사(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같이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에 한국 지표가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지표가 보고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어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아동청소년의 약물 남용의 경우 술에 취한 경험은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는 지표가 있으나 조사 방법 및 대상이 일부 상이하여 동일한 결과로 보고하기에는 결과가 불안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마사용 경험은 일부 유해환경 조사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법적으로 대마사용이 불법이므로 일반조사(general survey)방식으로 해당 문항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지표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분석하여 차이를 보여주는 가구 풍요도(family affluence)는 해당 조사의 배경 모듈로 추가되어 있으나 국내 조사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한 지표 생산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구풍요도는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지표이므로 이를 국내에서 풍요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이 영역의 지표 생산을 위해 한국의 자료가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비교할 경우 자료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어 조사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II-72〉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CO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사회단체 구성원(활동적 또는 비활동적)인 청소년·청년 비율 (Proportion(%) of young people who are members(active or inactive) of organisations by type of group, around 2012)	O	적절
		지난달 자원봉사를 한 청소년·청년 비율(Proportion of people who volunteered time to an organization in the past month, 2015 or last year available)	O	적절
		지난해 자원 봉사 또는 자선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 (Proportion of people involved in work for voluntary or charitable organisations in the past year)	X	자료없음: 자원봉사 지표의 보조지표로 생산 필요성 크지 않음
		교회, 종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과 적극적·수동적 참여 (Active versus passive affiliation to a church, a religious organization or a trade union, around 2012)	O	적절
CO4.2	생애 첫 투표 참여율 (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의회 선거 투표율(Voter turnout in latest parliamentary election, 2018 or latest year available)	O	적절
		성·연령별 투표율(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O	적절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Lack of interest in politics, around 2012-2014)	O	적절
CO4.3	청소년·청년의 약물 남용 (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술에 취한 경험(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X	자료없음: HBSC와 동일 연령, 동일 모듈 측정 필요
		대마 사용 경험(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2013/14)	X	
		성별·가구 풍요도별 술에 취한 경험(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자료없음: 음주, 대마 측정 시 가구풍요도 측정 필요
		성별·가구 풍요도별 대마 사용 경험(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CO4.4	십대 자살 (Teenage suicides)	평균 10대 자살 경향(Average trends in teenage suicides, 1990-2015)	X	해당없음
		10대 자살(Teenage suicides, 1990, 2000 and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3. 소결: 한국의 아동성과 지표 생산방안

가. 개선필요

개선필요 지표는 CO1.6 질병 관련, 아동 당뇨와 천식 유병률의 세부지표 3개로 파악되었다. 우선, CO1.6.1 2017년 소아의 제1형 당뇨병 추정 유병률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해 산출되나 2017년도부터 소아·청소년 문항 중 당뇨병이 삭제되어 향후 자료 수집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해당 문항을 다시 추가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1형당뇨에 대한 소아청소년 유병률을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CO1.6.2. 6~7세와 CO1.6.3. 13~14세 아동의 천식 유병률은 현재 서울지역 지표가 보고되고 있어 국가수준 지표로 보고가 필요하다. 대상자 규모가 통계치 산출에 적절한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천식 진단을 조사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표 Ⅱ-73〉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개선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지표 생산 방안
CO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 당뇨와 천식 유병률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2017년 소아의 제1형 당뇨병 추정 유병률(Estimated prevalence of type 1 diabetes in children, 2017)	건강보험 청구자료 혹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2년 또는 그 전후의 6-7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6-7, 2002 or around)	건강보험 청구자료 혹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2년 13-14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13-14, 2002)	건강보험 청구자료 혹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나. 누락

아동성과 관련 총 7개 지표, 12개 세부지표가 누락,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CO1.2. 기대수명의 2019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Healthy Life Years (HLY) at birth)에서 건강수명은 우리나라에서 보고하고 있지 않지만 사망원인통계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해 산출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O1.5. 모유수유율의 2005년경 한 번이라도 모유를 먹은 영유아(infants)의 비율은 2005년 자료가 없어 현재 보고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들이 2000년 시점의 자료를 보고하였

다는 점에서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하여 2000년의 지표값을 보고할 수 있다.

CO1.7의 비만 및 과체중과 CO1.8의 흡연율 관련 지표는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urvey 로 지표값을 산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보고하지 않고 있다. CO1.7의 세부지표 중 11세, 13세, 15세 성별 과체중/비만 비율과 CO1.8의 세부지표 중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 비율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혹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14년도 자료를 활용해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정기 흡연의 정의와 관련해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는 주 1회 이상 흡연하는 비율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질문이 일치하지 않는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월 3-5일 혹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관식 응답을 주 1회로 환산하거나, 해당 설문조사에 주 1회 이상으로 문항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설문조사들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기존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보다 현실 가능하고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CO1.7 11세, 13세, 15세 성별 과체중의 세부지표 중 누락된 BMI 자료 비율은 실측자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국민영양조사 자료보다는 개인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CO1.9 아동장애의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하여 5-15세의 출현율로 산출 가능하며, 청소년의 성별 장애 정도는 사회조사를 통해 산출 및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교육수준은 인구주택총조사 혹은 사회조사를 통해 산출 및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CO2.1 가구유형에 따른 상대가처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산출 및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CO3.5 청년니트의 3개 세부지표는 모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로 산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학교 재학 중(in education)인 청년을 니트인구에서 제외하여 한국의 니트 규모가 과다하게 추정되는 현재 방식을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표 II-74〉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누락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지표 생산 방안
CO1.2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2019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and Healthy Life Years(HLY) at birth,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통계청 생명표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CO1.5	모유 수유율 (Breastfeeding rates)	2005년경 모유를 먹은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ver breastfed”, around 2005)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지표 생산 방안
CO1.7	11세, 13세, 15세 성별 과체중 (Overweight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혹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14년 누락된 BMI 자료 비율(Rates of missing BMI data, 2013/14)	청소년건강행태조사
CO1.8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혹은 국민건강영양조사
CO1.9	아동장애 (Child Disability)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National estimates on the proportion of children with a disability by age and sex)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 5-15세 출현율 산출가능
		청소년의 성별 장애 정도(Young women report higher levels of disability than young men)	사회조사 자료 활용 산출가능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교육수준(Educational attainment of young people aged 18-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인구주택총조사/사회조사 활용 산출가능
CO2.1	가구유형별 소득 불평등 및 소득지위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가구유형에 따른 상대가처분소득(Relative disposable income by household type,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가계금융복지조사
CO3.5	청년니트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청년 니트 비율(NEET rates for 15-29 year-olds)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대별 니트 비율(NEET rates across age groups)	
		니트 비율에 대한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NEET rates)	

다. 자료없음

근거 자료가 없어 그동안 산출, 보고 되지 않은 우리나라 가족아동 관련 지표는 9개 지표와 관련된 20개의 세부지표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산출방안을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CO1.1 영아사망의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영아사망률 추이(Trends in infant mortality rates, 1970-2018)는 모든 국가들의 수치를 활용해 산추하는 지표이나 전체 연도에 대한 자료가 없는 국가들은 지표 산출 시 제외된다. 한국의 경우 2005년 이전 영아사망률이 매해 수집되지는 않아서 해당 지표 산출에서 제외되었다. 과거 지표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산출 가능하지 않다.

CO1.7의 세부지표 중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율 지표와 CO1.8의 세부지표 중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정기 흡연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족 풍요도 측정이 필요하다. CO1.7 및 CO1.8의 과체중 및 비만율과 흡연율을 산출할 자료원을 결정한 후 가족 풍요도 평가문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O1.9의 세부지표 중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의 고용률 및 실업률을 모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 혹은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고용률과 실업률이 측정될 수 있도록 지표를 추가 및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장애가구원 유무에 따른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변수 중 장애여부 변수를 '활동제약'의 개념을 활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CO2.3의 세부지표 중 물질적 결핍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실태조사 혹은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국내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에서 조사문항의 보완이 필요하다. 국내 물질적 결핍 문항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문항을 변경해 온 점을 감안할 때, OECD 기준의 물질적 결핍 문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자료 산출 및 보고가 필요성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CO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관련, 우리나라는 PIRLS 읽기 조사의 참여국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 성취도와 관련된 2011년도 해당 자료가 없어 보고되지 않았다. 한편, 국가수준에서 우리나라 만 10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성취도를 측정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 국가 간 비교가능성에 제한점이 있어 국제컴퓨터·정보소양연구(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 ICILS) 조사 조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읽기 역량이 아닌 수학·과학 성취도를 측정한 TIMSS 조사 결과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CO3.6.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 관련 지표는 장기적으로 '유·초·중등통계조사' 자료를 다른 조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사방식을 학생 ID를 기준으로 개편하여 학생 단위의 조사체계가 구축된다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지표 산출이 가능해 질 수 있다.

CO4.3 청소년·청년의 약물 남용 관련 4개 세부지표는 모두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의 2013/14년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지표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마(cannabis) 흡연 행위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어 조사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법적, 정책적, 임상적 검토가 필요하다. 술에 취한 경험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나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같은 아동·청소년대상 실태조사애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Ⅱ-75〉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자료없음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지표 생산 방안
CO1.1	영아사망 (Infant mortality)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영아사망률 추이(Trends in infant mortality rates, 1970-2018)	산출불가
CO1.7	11세, 13세, 15세 성별 과체중 (Overweight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2013/14(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혹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문항 추가
CO1.8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혹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문항 추가
CO1.9	아동장애 (Child Disability)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률(Percentage of employed and unemployed young people aged 18 – 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향후 인구주택총조사 혹은 사회조사 변수 추가 필요
		장애가구원 유무에 따른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by disability status, 2009)	가계금융복지조사 변수 보완 필요
CO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 (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	국민생활실태조사 혹은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원 개선 및 보고필요성 검토 필요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	
CO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TIMSS2011))	ICILS 또는 TIMSS 조사
		성별에 따른 읽기, 과학, 수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boys-girls) in student's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 performance(TIMSS2011))	
		가정 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cores on reading achievement relative to Home Resources for Learning, PIRLS 2011)	
CO3.6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 (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on reading score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조사 학생단위로 수행, 학업성취도 평가/기초학력진단 평가 결과와 연계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수학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in mathematic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통제 전·후의 내국인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native students and 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ocio-economic background, 2015)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지표 생산 방안
		가정에서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Students who speak another language at home, 2015)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통제 전·후의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 (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immigrant and non-immigrant students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language spoken at home, 2015)	
CO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지난해 자원 봉사 또는 자선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 (Proportion of people involved in work for voluntary or charitable organisations in the past year)	European Social Survey 미참여: 사회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에 문항 추가 고려 가능
CO4.3	청소년·청년의 약물 남용 (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술에 취한 경험(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HBSC study 미참여: 산출불가,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개편, 산출 가능
		대마 사용 경험(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2013/14)	HBSC study 미참여: 산출불가
		성별·가구 풍요도별 술에 취한 경험(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HBSC study 미참여: 산출불가,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개편, 산출 가능
		성별·가구 풍요도별 대마 사용 경험(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HBSC study 미참여: 산출불가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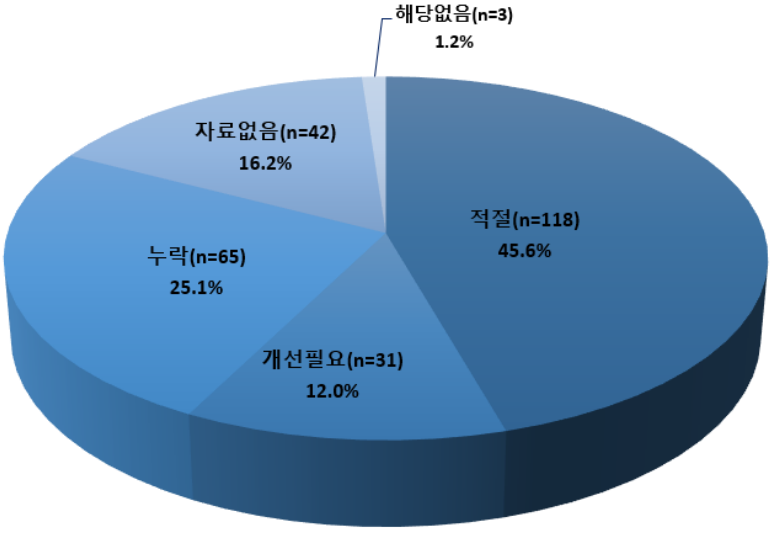
요약 및 지표 생산체계 제안

제1절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요약

1.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총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영역별 한국의 보고 지표는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표 259개 중 중 118개, 약 45.6%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고는 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지표가 31개로 약 12.0%였다. 보고되지 않고 있는 지표 중에서 생산이 가능한 지표는 65개로 약 25.1%였으며, 자료가 전혀 없어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지표는 42개로 약 16.2%였다. 그 외 한국 자료가 해당되지 않는 지표가 3개로 약 1.2%였다.

[그림 Ⅲ-1]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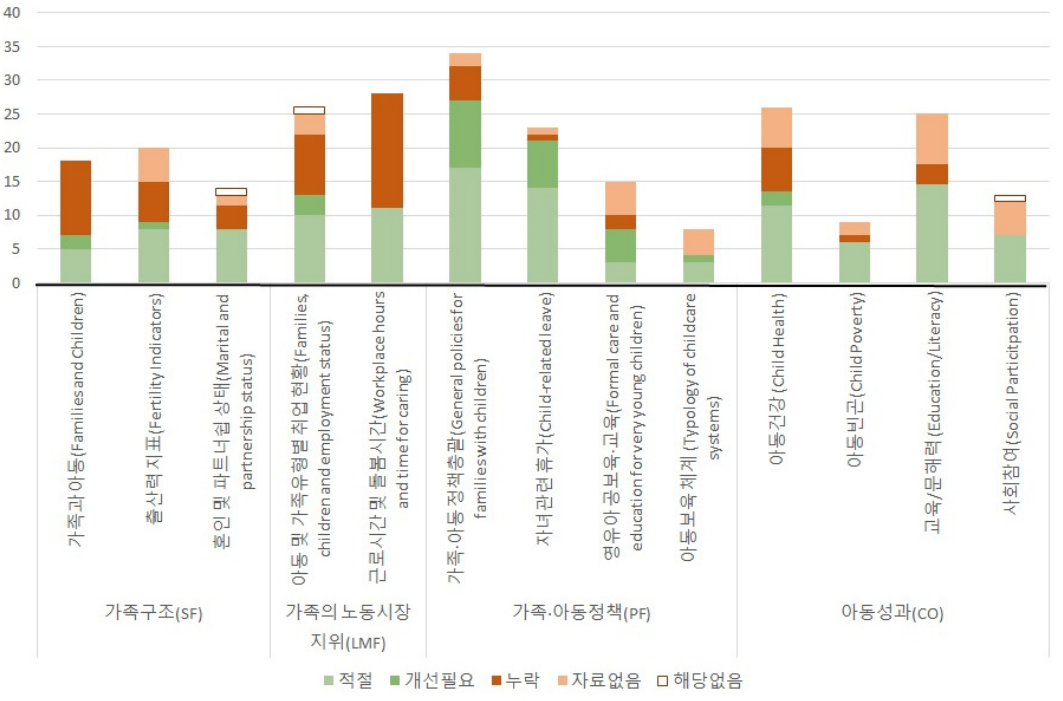
영역별로는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영역과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영역의 지표가 보고되는 비율이 다소 높았고, 특히 자녀관련 휴가 지표(Child-related leave, PF2)와 가족·아동 정책총괄 지표(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PF1)의 보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검토 결과 이 두 지표의 경우 '개선필요' 지표의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지표와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지표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지표 보고 비율이 낮았고 특히 가족과 아동 지표(Families and Children, SF1),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지표(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LMF2)가 보고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검토 결과 이 두 지표는 자료 생산이 가능한 '누락' 지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영역은 '적절'한 지표도 많은 반면, '자료없음'에 해당하는 지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영역의 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를 구성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림 Ⅲ-2]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영역별 지표 총괄



〈표 Ⅲ-1〉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영역별 지표 총괄

	지표명	보고		보고안됨			계
		적절	개선 필요	누락	자료 없음	해당 없음	
가족구조 (SF)	가족과 아동 (Families and Children)	5 (27.8%)	2 (11.1%)	11 (61.1%)	0 (0.0%)	0 (0.0%)	18 (100.0%)
	출산력 지표 (Fertility Indicators)	8 (40.0%)	1 (5.0%)	6 (30.0%)	5 (25.0%)	0 (0.0%)	20 (100.0%)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 (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8 (57.1%)	0 (0.0%)	3.5 (25.0%)	1.5 (10.7%)	1 (7.1%)	14 (100.0%)
	계	21 (40.4%)	3 (5.8%)	20.5 (39.4%)	6.5 (12.5%)	1 (1.9%)	52 (100.0%)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LMF)	아동 및 가족유형별 취업 현황 (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10 (38.5%)	3 (11.5%)	9 (34.6%)	3 (11.5%)	1 (3.8%)	26 (100.0%)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11 (39.3%)	0 (0.0%)	17 (60.7%)	0 (0.0%)	0 (0.0%)	28 (100.0%)
	계	21 (38.9%)	3 (5.6%)	26 (48.1%)	3 (5.6%)	1 (1.9%)	54 (100.0%)
가족·아동 정책 (PF)	가족·아동 정책총괄 (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17 (50.0%)	10 (29.4%)	5 (14.7%)	2 (5.9%)	0 (0.0%)	34 (100.0%)
	자녀관련 휴가 (Child-related leave)	14 (60.9%)	7 (30.4%)	1 (4.3%)	1 (4.3%)	0 (0.0%)	23 (100.0%)
	영유아 공보육·교육 (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3 (20.0%)	5 (33.3%)	2 (13.3%)	5 (33.3%)	0 (0.0%)	15 (100.0%)
	아동돌봄 체계 (Typology of childcare systems)	3 (37.5%)	1 (12.5%)	0 (0.0%)	4 (50.0%)	0 (0.0%)	8 (100.0%)
	계	37 (46.3%)	23 (28.8%)	8 (10.0%)	12 (15.0%)	0 (0.0%)	80 (100.0%)

	지표명	보고		보고안됨			계
		적절	개선 필요	누락	자료 없음	해당 없음	
아동성과 (CO)	아동건강 (Child Health)	11.5 (44.2%)	2 (7.7%)	6.5 (25.0%)	6 (23.1%)	0 (0.0%)	26 (100.0%)
	아동빈곤 (Child Poverty)	6 (66.7%)	0 (0.0%)	1 (11.1%)	2 (22.2%)	0 (0.0%)	9 (100.0%)
	교육/문해력 (Education/Literacy)	14.5 (58.0%)	0 (0.0%)	3 (12.0%)	7.5 (30.0%)	0 (0.0%)	25 (100.0%)
	사회참여 (Social Particitpation)	7 (53.8%)	0 (0.0%)	0 (0.0%)	5 (38.5%)	1 (7.7%)	13 (100.0%)
	계	39 (53.4%)	2 (2.7%)	10.5 (14.4%)	20.5 (28.1%)	1 (1.4%)	73 (100.0%)
전체 계		118 (45.6%)	31 (12.0%)	65 (25.1%)	42 (16.2%)	3 (1.2%)	259 (100.0%)

2. 영역별 지표 검토 결과

가. 가족 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가족과 아동 지표 중 SF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는 적절히 보고되고 있으나, 그 외의 지표들은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 지표 중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 및 가구 유형은 자녀의 연령이 OECD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SF1.2과 SF1.3의 지표들도 대부분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통해 적절히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SF1.5의 지표들은 현재로서는 자료가 부재하지만, 주거실태조사의 일부 문항을 개선하거나, 신규 문항을 추가함으로서 향후 업데이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2〉 가족과 아동(Families and Children)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 (Family size and composition)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2015	O	개선필요: 인구주택 총조사, 자녀연령 25세 이하로 수정
		가구 유형(Types of household), 2011	O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 2015	X	누락: 인구주택 총조사 활용
SF1.2	가족에서의 아동 (Children in Families)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18)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활용
		아동의 거주 형태 변화(Trends i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05 to 2018)	X	
		동거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추이(Trends in children living with cohabiting parents, 2007 and 2018)	X	
SF1.3	아동의 거주 형태 (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age)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활용
		상대소득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relative income poverty status)	X	누락: 가계금융복지 조사 활용
		모의 학력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mother's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활용
		유소년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 2013-14)	X	
SF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Child and young adult population, 2015)	O	적절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Age distribution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2015)	O	적절
		아동 인구 추이(Trends in the child population, selected OECD countries)	O	적절
		유소년 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 1990 and 2015)	O	적절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Estimated(1950-2015) and projected (2016-2050) youth dependency ratios, selected OECD countries)	O	적절
SF1.5	아동의 주거 여건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과밀거주 아동(Children in overcrowded households, 2017)	X	누락: 주거실태조사 활용
		기초생활시설 부족 아동(Children in households that lack basic facilities, 2017)	X	
		환경 문제 있는 지역 거주 아동(Children living in area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2017)	X	

출산력 지표는 전반적으로 행정 통계로 산출되는 출생/출산에 대해서는 적절히 보고되고 있거나 보완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상 자녀 수와 같이 견해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SF2.1 출산율에 관한 지표는 통계청 연령별 출산율과 통계청 출산순위별 출생 자료를 활용해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출산율 자료는 모두 제공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지표에서는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조사를 통해 산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는 조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질문 항목을 추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대상 연령이 19~49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OECD 지표가 15~64세에 대한 자료라는 점에서 연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제적 비교를 위해 OECD 지표에 적절한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조사」 또는 「가족실태조사」 등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사 중 조사 대상 연령 범위가 더욱 포괄적인 조사에서 이상 자녀 수에 대한 문항을 신설하여 조사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표 Ⅲ-3〉 출산력 지표(Fertility indicators)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SF2.1	출산율 (Fertility rates)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20)	O	적절
		코호트완결출산율 (Completed cohort fertility for women born in 1950, 1960 and 1970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통계청 연령별 출산율 활용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첫째아, 셋째아 또는 그 이상 출생 비율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1980 and 2020 -Proportion of births that are first and third or higher births)	X	누락: 통계청 출산순위별 출생 활용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출생순위별 출생 비율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2020 -Proportion of birth by the rank of the birth)	X	누락: 통계청 출산순위별 출생 활용
SF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X	자료없음: 가족과 출산 조사, 연령 확대(19~49 → 15~64) 및 개인적 이상자녀수 문항 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Ideal general number of children, 2011)	X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최종적인 가족 규모 (Mean ultimately intended family size, 2011)	X	자료없음: 2011년 누락: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활용
		교육정도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level of education, 2011)	X	자료없음: 가족과 출산 조사, 연령 확대(19~49 → 15~64) 및 개인적 이상자녀수 문항 추가
		취업여부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working status, 2011)	X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사이 격차 (Differences between general and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X	
SF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Mean age of women at birth, 1970,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2000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Mean age of women at first birth,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OECD 국가의 출산시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율 (Average OECD fertility rate by mother's age at childbirth)	O	적절
		청소년 출산율 (Adolescent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5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연령별 출산 프로파일 (Age-fertility profiles, 1970, 1995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5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SF2.4	혼인 외 출생 비율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혼인 외 출생 비율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	적절
		혼인 외 출생 비율 추이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ver time)	O	적절: 1995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SF2.5	무자녀 (Childlessness)	40-44세 무자녀 여성 (Childless women at age 40-44, mid-1990s and 2010(or latest available year))	O	개선필요: 인구주택 총조사, 미혼과 기혼의 구분 없이 해당 연령 여성의 무자녀 비율 산출
		최종 무자녀 (Definitive childlessness)	X	누락: 인구주택 총조사 활용, 단 기혼에 한정
		최종 무자녀와 완결 출산율 (Definitive childlessness and completed fertility rates)	X	누락: 인구주택 총조사 활용, 단 기혼에 한정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 지표 중 SF3.2 가족 해체와 아동 지표 4개와 SF3.1 혼인율과 이혼율 중 조혼인율,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 조이혼율 등은 적절히 보고되고 있으나, 그 외의 지표들은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SF3.1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 지표는 인구동향조사를 활용하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또한 SF3.4 파트너에 의한 폭력 지표 역시 가정폭력실태조사를 활용하면 한국 자료 생산이 가능하므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Ⅲ-4〉 혼인 및 파트너쉽 상태(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SF3.1	혼인율과 이혼율 (Marriage and divorce rates)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1970, 1995, 2019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1990,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동성혼에 대한 기초 현황(Basic statistics on same-sex marriages in OECD countries)	X	해당없음
		조이혼률(Crude divorce rate, 1970, 1995, 2019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Distribution of marrying persons by previous marital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인구동향조사 활용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SF3.2	가족 해체와 아동(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duration of the marriage, 2017 or latest)	O	적절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number of children involved, 2017 or latest)	O	적절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and non-parents(16+ year-old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16+ year-old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various years)	O	적절
SF3.3	동거율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비율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11)	X	누락(기혼): 인구주택 총조사 활용 제시 가능
			X	자료없음 (동거, 파트너 없음): 인구주택 총조사에 동거 문항 포함 필요
		교육수준별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 and cohabitation by level of education, 2011)	X	누락(기혼): 인구주택 총조사 활용 제시 가능
			X	자료없음 (동거, 파트너 없음): 인구주택 총조사에 동거 문항 포함 필요
		부부(커플) 가구의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 유무 (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for couple households, 2011)	X	누락(기혼): 인구주택 총조사 활용 제시 가능
			X	자료없음 (동거, 파트너 없음): 인구주택 총조사에 동거 문항 포함 필요
SF3.4	가정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파트너에 의한 폭력(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X	누락: 가정폭력실태 조사 활용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Attitudes among women towards partner violence)	O	적절

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아동 및 가족 유형별 고용 상태 지표 중 OECD Employment Database 등을 활용한 지표들은 적절히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지표들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선이 필요하거나 누락되어 있는 지표 중 대부분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거나,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등 통계청 승인 자료를 통해 보완이 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5〉 아동 및 가족 유형별 고용 상태(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활용, 단 근로시간 변수 부재
		모든 성인이 미취업인 가구의 자녀(Children in jobless households, 2008, 2013 and 2018)	X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 등록부에 성인가구원 전체 취업상태 필요
		부부가구 부모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couple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활용, 단 근로시간 변수 부재
		한부모가구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LMF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모의 취업형태별 자녀의 비중(Maternal employment rate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개선필요: 지역별 고용조사, 모의 연령 및 자녀 연령 수정
		유자녀 여부별 모의 고용률 추이(Trends in maternal employment rates, 2006 to 2019)	X	자료없음: 최신 자료만 지역별 고용조사로 파악, 단 모의 연령 및 자녀 연령 수정 필요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막내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개선필요: 지역별 고용조사, 모의 연령 및 자녀 연령 수정
		자녀 수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학력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지역별 고용조사, 모의 연령 및 자녀 연령 수정
		0-2세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women with children aged 0-2, by maternity/parental leave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 또는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모의 출산휴가/육아 휴직 정보 필요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 (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19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활용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변화(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05, 2012 and 2019 or latest available)	X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학력별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활용
		파트너 취업여부별 유배우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by partner's employment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활용
LMF1.4	생애주기별 고용률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성별 연령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2018)	O	적절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and education, 2018)	X	누락: 경활조사 혹은 지역별고용조사 활용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젠더 격차(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O	적절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젠더 격차 추이(Trends in the 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selected countries, 1975-2021)	X	해당없음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Gender gap in earnings by levels of education)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LMF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고용률의 젠더 격차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O	적절
		고용률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젠더 차이 감소 추이(Declining trends on 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O	적절
		시간제 고용에서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part-time employment)	O	적절
		시간제 고용의 변화(Change in part-time employment)	O	적절
		학력별 고용률의 젠더 격차(Gender gap in employment rates by educational attainment)	O	적절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중(Women's share of managerial employment)	O	적절
		임시 고용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emporary employment)	O	적절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지표 중 OECD Employment Database, National Time Use survey, OECD gender data portal 등을 활용한 지표들은 적절히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지표들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선이 필요하거나 누락되어 있는 지표 중 대부분은 통계청 승인 조사(지역별고용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근로환경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조사 등)를 통해 보완이 가능한 상황으로 검토되었다.

〈표 Ⅲ-6〉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LMF2.1	성별 주당 근로시간 (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Distribution of the employed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and gender, 2021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취업자 중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변화(Percentage point change in the proportion of the employed working 40 hours or more, by gender, 2005 to 2021)	O	적절
LMF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9 or nearest year available)	X	누락: 지역별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 변화(Changes in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0 to 2019)	X	고용조사 활용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X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자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adults in couples with children, by gender, 2019)	X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X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X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X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X	
LMF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한부모 가구의 고용 지위(Employment status of single parent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지역별 고용조사 혹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활용
		취업 한부모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single parents, 2019)	X	
LMF2.4	가족친화제도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보급률(Incidence of employer-provided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3)	X	누락: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활용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X	누락: 근로환경조사 활용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X	
		재택근무 근로자(Employees working from home, 2015)	X	
LMF2.5	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1999-2012/2013)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시간 활용 (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돌봄시간(Time dedicated to care activities, 1999-2010)	O	적절
		자녀 수별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dedicated to care work, by number of children under school age, 1999-2010)	O	적절
		막내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spent on care work by women, by age of youngest child, 1999-2010)	O	적절
LMF2.6	출퇴근에 보낸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통근 시간(Averag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1999-2014)	O	적절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 – 2010)	O	적절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에 대해 보고한 비율(Proportion of survey respondents reporting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 – 2010)	O	적절
LMF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aged 15 and ov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O	적절
		아동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aged 11 to 15, 2010)	X	누락: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성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gend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O	적절
		고용 지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employment status, 2012)	X	누락: 사회통합실태 조사
		일생활균형 만족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satisfaction in work-life balance, 2012)	X	누락:사회조사

다.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는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다양한 급여와 가족유형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OECD 각국의 가족정책의 발전수준과 가족정책의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최근 “법적 성년연령” “아동보호특성”와 같은 규제적, 보호적 지표들이 추가 되어 아동보호적 성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대간 연대”지표에서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이전으로도 지표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세대간 연대 지표는 아동,청장년, 노인세대간 이전의 비율을 파악하는 지표와 50세이상에서 현금이전과 시간이전, 손자녀 돌봄자의 비율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가족정책 지표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대간 연대 지표를 모두 보고하고 있지 않은데,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통해 일부 통계보고가 가능하며, 다른 지표들은 관련 법정조사 문항에 포함시켜 생산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체계 역시 누락, 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표인데, 인구총조사 및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관련 항목을 통해 집계 가능하므로 추후 지표 생산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공적 가족급여지출과 관련하여 가족급여의 범위, 분류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OECD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SOCX)의 한국 지표 보고는 오랫동안 시계열 지표체계를 정비, 체계화하여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왔으므로 통계의 안정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가족급여의 지표범위와 내용을 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Ⅲ-7〉 가족·아동정책 총괄(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결과
PF1.1	공적 가족급여지출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가족급여 유형별 공적 지출 총계(total)	O	개선필요: OECD SOCX, 아이돌봄 서비스, 자녀장려금 등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되는 등 분류체계 검토필요
		현금급여(cash)	O	
		현물급여(services)	O	
		조세지출(tax breaks for families)	O	
PF1.2	공교육 지출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교육단계별, 재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 by level of education and source of funds)	O	적절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Annual expenditure per student by educational institutions)	O	적절
PF1.3	가족 현금급여 (Family cash benefits)	가족현금급여 유형 및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family benefits, by type,2018)	O	개선필요: OECD Tax-benefit system, 가족급여 제도유형 분류 재검토 필요
		가족특성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family type and earnings, 2018)	O	적절
		막내자녀 연령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8)	O	개선필요: OECD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결과
		자녀수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number of children, 2018)	O	Tax-benefit system, 가정양육수당 관련 급여액 처리 검토필요
PF1.4	조세-복지급여 체계의 형평성 (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가구유형별 조세-급여혜택의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for couples at different household earnings levels, 2014)	O	개선필요: OECD Tax-benefit system, 가정양육 수당 관련 급여액 처리 검토필요
		2차소득자세율(Participation tax rates for second earner parents entering employment at varying gross earnings levels, 2014)	O	적절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체계 (Child support (maintenance) systems)	아동양육비제도 주요 특징(Key characteristics of Child Support Regimes)	O	개선필요: 2015년 이후 아동양육비 결정 기관 (양육비이행 관리원) 존재하므로 Agency값을 Yes로 변경 필요 *보고자료는 2010년 기준임. 당시는 양육비 이행원이 없었음.
		한부모가족 추이, 자녀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추이(Trends of Sole-parents1 and of Sole-Parents Receiving Child Maintenance Payments in recent years)	X	누락: 인구주택 총조사(2015년 이후 가능) 및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2년 이후 가능)로 추출 가능
		자녀양육비 수준(Social expenditure per child increases with children age)	X	누락: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로 추출 가능 (2012년 이후 가능)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결과
PF1.6	아동 연령별 공적 지출(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의 규모(연령구간별, 급여유형별 시계열 자료) (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 2003 to 2019)	O	적절: 산전9개월부터 ~29세까지 자료 보고, 현금, 보육, 기타현물급여, 교육으로 나누어 제출. 아동연령은 0-17세 까지 계산. 가족급여 유형의 구체적 분류기준은 추후검토필요
		연령구간별 공적 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2019)	O	
		0-5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 사회지출(Spending in USD PPP on children aged 0-5, 2019)	O	
		6-11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사회지출 (Spending in USD PPP on children aged 6-11, 2019)	O	
		12-17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지출 (Spending in USD PPP on children aged 12-17, 2019)	O	
PF1.7	세대간 연대(Intergenerational solidarity)	연령집단별 순이전비율(Age profile of net transfers)	X	누락: OECD 자료원인 NTS웹사이트에 자료있음
		50+인구의 현금이전 및 시간이전 (A. Transfers of money,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B. Transfers of time,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X	자료없음: OECD는 SHARE(2006-2007)조사 값을 보고,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KLoSA)에 유사문항이 있으나 패널자료라는 한계가 있음. 노인실태조사 등에 신규문항을 통한 생산방안
		손자녀 돌봄자 비율(Percentage of grandparents taking care of at least one grandchild)	X	
PF1.8	법적 성년 연령(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성년연령(Age of majority, 2016)	O	적절
		형사책임연령(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2016)	O	적절
		최소혼인연령(Minimum age for marriage, 2016)	O	적절
		의무교육종료 및 최소근로연령(School leaving age and Employment age, 2016)	O	적절
		알콜구매및소비 최소연령(Minimum age to consume and purchase alcohol, 2016)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결과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Minimum age for sexual consent, 2016)	O	적절: 기준년도 2016년, 추후 2020년 형법개정사항 반영필요
PF1.9	아동보호 특성 (Aspects of child protection)	의도적, 우발적 사고 아동 사망율(Child mortality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	O	적절
		의도적, 우발적 사고 아동 사망율 추이(Changes in child deaths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 early 1980s to latest figures)	O	적절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X	누락: '태도'는 아동종합실태 조사 기반 보고 가능
			O	적절: '실태'는 적절
		아동체벌규제(Bann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X	누락: 2021년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공식화
		보호아동비율(Proportion of children under state care)	X	누락: 보호유형별 행정통계 기반 보고 가능

자녀관련 휴가제도는 종류가 다양하고 국가별 제도의 조합도 다양해서 지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어려운 정책영역이다. 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내용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량지표 산출시 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주석(note)와 부록(annex)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특징"은 적절하게 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녀관련휴가 공적 지출 규모는 고용보험 지출만 포함하고 있는데, 사용자 통계가 공무원, 교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출통계 역시 범위를 확대, 포괄적인 집계방식을 시도할 필요도 있겠다. 또,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OECD의 Family Support Calculator의 한국 자료가 부정확하고 웹을 통해서는 연간자료 형태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거값을 확인하여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표 Ⅲ-8〉 자녀관련 휴가(Child-related leave)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결과
PF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특징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available to mothers)	O	적절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for fathers)	O	적절
		자녀관련 유급휴가 할당 및 공유기간	O	적절
		자녀관련휴가 공적 지출규모 (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O	적절
PF2.2	자녀관련 휴가 사용현황 (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유급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 (Users of paid maternity leave)	O	적절: 고용보험 DB, 공무원 교직원 포함 검토필요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 (Users of paid paternity leave)	X	누락: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2019년부터 값 있음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 (Users of paid parental leave)	O	적절: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로 시계열 모두 교체됨
		육아휴직이용자중 남성비중 추이 (Trends in men's share of recipients/users of publicly administered parental leave/ benefits)	O	적절: 통계청의 육아휴직통계로 시계열 모두 교체됨
		성별 자녀관련휴가 이용기간(Duration of paid leave for men and women)	X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 등록부에 출산휴가 정보 등 포함하여 생산 검토필요
PF2.3	취업부모 추가휴가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arents)	법정 및 단협 휴가일수(Statutory and collectively agreed annual leave)	O	개선필요: 근로자의 날 포함
		가족돌봄휴가(휴직)개요(Summary of leave entitlements to care for sick or ill family members)	O	개선필요: 휴가자격기준 검토필요
PF2.4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산전후휴가 소득대체율 (Maternity leave payment rates, 2014)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결과
	소득대체율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의 소득대체율 (Parental leave payment rates, 2014)	O	적절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소득대체율 (Father-specific leave payment rates, 2014)	O	적절
		출산후 첫째달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Net equivalised household income in the first month after birth, 2014)	O	개선필요: OECD Tax-benefit system, 산전 순가구소득 보고 금액이 불명확함. 근거값 확인필요
		출산후 시기별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Net equivalised income over the period of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2014)	O	
PF2.5	자녀관련 휴가급여 추이 (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 추이 (Length of paid maternity,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 1970, 1995, and 2022)	O	개선필요: 출산휴가기간 주별환산값 검토필요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고용보장(무급포함)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 기간, 최초도입년도 (Length of job-protecte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paid and unpaid) available to mothers by year of introduction)	O	개선필요: 한국 52주로 보고. 시계열 자료는 출산휴가를 제외한 47.75 주로 불일치함 (1988년 시행당시 출산휴가 포함 1년)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휴가기간 (Length of paid paternity leave and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reserved for fathers, 1970, 1995 and 2022)	O	적절
PF2.6	동성부모와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Same-sex and adoptive parental leave entitlements)	남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O	적절(동성혼은 불법이므로 해당없음)
		여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Fe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O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 Adoption leave entitlements	O	적절
		대리모 허용Access to surrogacy	O	개선필요: 대리모관련 법적 규정 있음.

‘영유아 공보육·교육’ 부문의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영유아의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을 보고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0~2세 보육·교육서비스 부문의 경우 한국 자료가 보고되지 않은 하위 지표 중에서 ‘모(母)의 교육수준별 이용률’과 ‘주중 이용시간’ 지표는 적합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누락되었으며, ‘가구소득별 이용률’ 지표에 적합한 한국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현재 한국 자료가 보고된 지표 중에서 보육료 지원 지표의 경우는 자료의 생산 및 보고의 주체가 불문명하고, 산출 방식이 모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아동돌봄서비스 부문 지표의 한국 자료에 대한 생산 및 보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업무 협력 사항 등도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Ⅲ-9〉 영유아 공보육·교육(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PF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ducation)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	개선필요: OECD SOCX, 초등자녀 돌봄지원 재정 제외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er child)	O	개선필요: OECD SOCX, 초등자녀 돌봄지원 재정 제외
FP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O	개선필요: 전국보육실태 조사 활용 또는 보육통계 보완 , 실제 아동연령 기준 산출
		0~2세 가구소득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income, 0- to 2-year-olds)	X	자료없음: 전국보육실태 조사 세후소득 필요
		0~2세 모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mother's education, 0- to 2-year-olds)	X	누락: 전국보육실태 조사 활용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Average usual weekly hou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X	누락: 전국보육실태 조사 활용
		3~5세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year-olds)	O	개선필요: 전국보육실태 조사 활용 또는 보육통계 보완, 실제 아동연령 기준 산출
		3~5세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by year of age, 3- to 5-year-olds)	O	개선필요: 전국보육실태 조사 활용 또는 보육통계 보완, 실제 아동연령 기준 산출
PF3.3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 (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X	자료없음: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통계 승인 및 보완을 통한 생산
		아동 연령과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X	
		아동 연령과 모의 교육수준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mother's education level)	X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평균 이용시간(Average hours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X	
PF3.4	보육료 지원 (Childcare support)	총 보육비(Gross childcare fees)	O	적절
		맞벌이 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two-earner couple family)	O	적절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single-parent family)	O	적절

'아동돌봄체계' 부문의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 지표를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으나, '아동돌봄서비스 유형' 지표는 적용대상 아동의 연령과 기관 유형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부문의 4개 세부 지표 모두에서 적합한 한국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Ⅲ-10〉 아동돌봄체계(Typology of childcare systems)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PF4.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아동돌봄서비스 체계(Typology of Childcare)	O	개선필요: 어린이집 범위 5세 추가, 학원 제외
PF4.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유치원(3~5세)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Child-to-staff ratios in pre-primary education services, 2018)	O	적절
		영아보육(0~2세)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Child-to-staff ratio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services, 2018)	O	적절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Minimum qualifications for ECEC professionals)	O	적절
PF4.3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Out-of-school-hours care)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X	자료없음: 통합통계 생산 필요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Average hour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during a usual week)	X	자료없음: 통합통계 생산 필요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X	자료없음: 통합통계 생산 필요
		모의 교육수준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mother's education level)	X	자료없음: 통합통계 생산 필요

라.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아동건강'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최근 연도 지표는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천식 유병률은 국가 수준이 아닌 지역수준에서 보고되고 있었고 건강수명, 과체중 및 흡연율은 기존 자료원을 활용해 일부 산출 가능하나 누락되었다. 한편 과체중 및 흡연율 산출 시 활용되는 가족 풍요도를 평가한 자료는 없다는 점에서 해당 지표 산출 방안 마련시 해당 변수의 포함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아동장애는 일부 산출 가능하나 누락되었으며,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률 및 빈곤율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 관련 조사 자료에서 해당되는 변수를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표 Ⅲ-11〉 아동건강(Child Health)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개선 방향
CO1.1	영아사망 (Infant mortality)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신생아 후기 사망률(Infant mortality, neonatal mortality, and post-neonatal infant mortality rates,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영아사망률 추이(Trends in infant mortality rates, 1970-2018)	X	자료없음: 모든 국가 수치, 한국은 일부 연도 누락으로 포함불가
		1970년, 1990년, 2018년(혹은 가장 최근)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s, 1970, 1990 and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CO1.2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1960년과 2020년 사이 성별 기대수명의 추이(Trends in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1960-2020)	O	적절
		2020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성별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2019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and Healthy Life Years(HLY) at birth,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기대수명'
			X	누락: '건강수명', 인구주택총조사 또는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산출 가능
CO1.3	저체중 출생 (Low birth weight)	2018년 또는 최신 저체중아 출생 비율(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0년부터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년도까지의 저체중 출생아 비율 변화(Changes in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1990 to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0~1992 자료없음)
CO1.4	백신 접종률 (Vaccination rates)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 및 백일해 발병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 (Vaccination rates for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and the incidence of pertussis, 2018 or closest available)	O	적절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홍역 예방 접종률 및 홍역 발병률 (Vaccination rates for measles and the incidence of measles, 2018 or closest available)	O	적절
CO1.5	모유 수유율 (Breastfeeding rates)	2005년경 모유를 먹은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ver breastfed", around 2005)	X	자료없음 단, 2000년 수치 활용가능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개선 방향
		2005년경, 생후 3, 4, 6개월에 완전모유수유를 한 아동의 비율 (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xclusively breastfed at 3, 4 and 6 months, around 2005)	O	적절
CO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 당뇨와 천식 유병률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2017년 소아의 제1형 당뇨병 추정 유병률(Estimated prevalence of type 1 diabetes in children, 2017)	O	적절 (향후 국민건강영양조사 당뇨 문항 중단, 문항 복구 또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활용)
		2002년 또는 그 전후의 6-7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6-7, 2002 or around)	O	개선필요: 서울→전국 수치로 수정, 국민건강영양조사 또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활용
		2002년 13-14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13-14, 2002)	O	개선필요: 서울→전국 수치로 수정, 국민건강영양조사 또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활용
CO1.7	11세, 13세, 15세 성별 과체중 (Overweight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X	누락: 청소년건강행태조사로 산출 가능(단 11세 산출 불가)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2013/14(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자료없음: HBSC 비참여국가로 풍요도 자료없음,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문항 추가 필요
		2013/14년 누락된 BMI 자료 비율(Rates of missing BMI data, 2013/14)	X	누락: 청소년건강행태조사로 산출 가능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개선 방향
CO1.8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X	누락: 청소년건강행태조사로 산출 가능(단 11세 산출 불가)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자료없음: HBSC 비참여국가로 풍요도 자료없음,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문항 추가 필요
CO1.9	아동장애 (Child Disability)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National estimates on the proportion of children with a disability by age and sex)	X	누락: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 5-15세 출현율 산출가능
		청소년의 성별 장애 정도(Young women report higher levels of disability than young men)	X	누락: 사회조사 자료 활용 산출가능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교육수준(Educational attainment of young people aged 18 – 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X	누락: 인구주택총조사/사회조사 활용 산출가능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률(Percentage of employed and unemployed young people aged 18 – 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X	자료없음: 향후 인구주택총조사/사회조사 변수 추가 필요
		장애가구원 유무에 따른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by disability status, 2009)	X	자료없음: 가계금융복지조사 변수 보완 필요
		만성질환·장애가 있는 아동 대상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for Children with a Chronic Illness or Disability)	O	적절

'아동빈곤'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가구유형에 따른 상대가처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산출 가능하나 누락되었다. 또한 물질적 결핍 중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 지표를 OECD 기준으로 보고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 해당 지표 산출 방안을 향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Ⅲ-12〉 아동빈곤(Child Poverty)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CO2.1	가구유형별 소득 불평등 및 소득지위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소득 불평등 측정(Measure of income inequality, 2007, 2017 or nearest available year)	O	적절
		가구유형에 따른 상대가처분소득(Relative disposable income by household type,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가계금융복지 조사 활용 산출 가능
CO2.2	아동빈곤 (Child poverty)	아동의 상대빈곤율(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가구유형별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typ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고용상태별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CO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 (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	X	자료없음: 자료원 개선 및 보고 필요성 별도 검토 필요
		교육자원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O	적절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	X	자료없음: 자료원 개선 및 보고 필요성 별도 검토 필요
		교육자원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O	적절

‘교육·문해력’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니라라는 성별에 따른 교육이수.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와 관련된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가 조사국에 포함되지 않는 PIRLS 자료에 기초한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관련 세부 지표에 대해서는 부분 또는 전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산출이 불가하다. 청년 니트와 관련된 세부 지표들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OECD에서 제시한 니트에 대한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와 관련해서는 PISA 자료에 기반하는 이주배경 학생,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생산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Ⅲ-13〉 교육·문해력(Education/Literacy)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CO3.1	성별에 따른 교육이수 (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성별과 연령에 따른 후기중등교육 이수율(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18)	O	적절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율(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18)	O	적절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Educational attainment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parents, 2012 or 2015)	O	적절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Educational attainment by parents' migrant status, 2012 or 2015)	O	적절
CO3.2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성별에 따른 예술·인문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arts and humanities subjects, 2019)	O	적절
		성별에 따른 경영·행정·법학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2019)	O	적절
		성별에 따른 공학·제조·건설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2019)	O	적절
CO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TIMSS2011))	O	적절: 수학, 과학 성취도
			X	자료없음: 읽기 성취도, PIRLS 비참여 국가
		성별에 따른 읽기, 과학, 수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boys-girls) in student's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 performance(TIMSS2011))	O	적절: 수학, 과학 성취도
			X	자료없음: 읽기 성취도, PIRLS 비참여 국가
		가정 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cores on reading achievement relative to Home Resources for Learning, PIRLS 2011)	X	자료없음: 읽기 성취도, PIRLS 비참여 국가
CO3.4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 간 학업성취도 차이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O	적절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 추이(Changes in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O	적절
		부모 최종학력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of parents, 2018)	O	적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socio-economic status, 2018)	O	적절
CO3.5	청년니트(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청년 니트 비율(NEET rates for 15-29 year-olds)	X	누락: 경제활동인구 조사 사용 생산 가능
		연령대별 니트 비율(NEET rates across age groups)	X	누락: 경제활동인구 조사 사용 생산 가능
		니트 비율에 대한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NEET rates)	X	누락: 경제활동인구 조사 사용 생산 가능
		내국인 및 외국인 니트 비율(Native-born and foreign-born NEET rates)	X	자료없음: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이주배경 포함 필요
CO3.6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 (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이주배경 학생(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2006 and 2015)	O	적절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on reading score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O	적절: 비이주배경 집단
			X	자료없음: 이주배경 집단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수학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in mathematic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X	자료없음: 국가수준학업 성취도 평가에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통제 전·후의 내국인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native students and 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ocio-economic background, 2015)	X	이주배경 문항 추가 또는 연계
		가정에서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Students who speak another language at home, 2015)	X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통제 전·후의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 (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immigrant and non-immigrant students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language spoken at home, 2015)	X	

'아동성과(CO)'의 사회참여(societal participation) 영역은 4개 지표 분류, 14개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의 지표들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나 WHO의 아동청소년 건강행동조사(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같이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에 한국 지표가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지표가 보고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어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아동청소년의 약물 남용의 경우 술에 취한 경험은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는 지표가 있으나 조사 방법 및 대상이 일부 상이하여 동일한 결과로 보고하기에는 결과가 불안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마사용 경험은 일부 유해환경 조사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법적으로 대마사용이 불법이므로 일반조사(general survey)방식으로 해당 문항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지표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분석하여 차이를 보여주는 가구 풍요도(family affluence)는 해당 조사의 배경 모듈로 추가되어 있으나 국내 조사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한 지표 생산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구풍요도는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지표이므로 이를 국내에서 풍요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이 영역의 지표 생산을 위해 한국의 자료가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비교할 경우 자료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어 조사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Ⅲ-14〉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CO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사회단체 구성원(활동적 또는 비활동적)인 청소년·청년 비율 (Proportion(%) of young people who are members(active or inactive) of organisations by type of group, around 2012)	O	적절
		지난달 자원봉사를 한 청소년·청년 비율(Proportion of people who volunteered time to an organization in the past month, 2015 or last year available)	O	적절
		지난해 자원 봉사 또는 자선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 (Proportion of people involved in work for voluntary or charitable organisations in the past year)	X	자료없음: 사회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에 문항 추가 고려 가능
		교회, 종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과 적극적·수동적 참여 (Active versus passive affiliation to a church, a religious organization or a trade union, around 2012)	O	적절
CO4.2	생애 첫 투표 참여율 (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의회 선거 투표율(Voter turnout in latest parliamentary election, 2018 or latest year available)	O	적절
		성·연령별 투표율(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O	적절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Lack of interest in politics, around 2012-2014)	O	적절
CO4.3	청소년·청년의 약물 남용 (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술에 취한 경험(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X	자료없음: HBSC 비참여 국가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등에 문항 추가 필요(대마는 조사 민감성 존재)
		대마 사용 경험(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2013/14)	X	
		성별·가구 풍요도별 술에 취한 경험(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자료없음: HBSC 비참여 국가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등에 풍요도 문하까지 추가 필요(대마는 조사 민감성 존재)
		성별·가구 풍요도별 대마 사용 경험(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CO4.4	십대 자살 (Teenage suicides)	평균 10대 자살 경향(Average trends in teenage suicides, 1990-2015)	X	해당없음
		10대 자살(Teenage suicides, 1990, 2000 and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3. 지표개선 방식별 지표 검토 결과

지표개선 방식별로 보완이 필요한 지표를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절반에 다소 못미치는 지표가 '적절'하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지표들의 목록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보고는 되고 있으나 '개선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인구주택총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 보육실태조사 또는 보육통계 집계시 연령 기준 변경, OECD SOCX와 Tax-benefit 모델의 분류체계 재검토,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한 일부 오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수치 조정 등의 내용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개선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 (Family size and composition)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 (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자녀연령 25세 이하로 수정
		가구 유형(Types of household), 2011	
SF2.5	무자녀 Childlessness	40-44세 무자녀 여성 Childless women at age 40-44, mid-1990s and 2010(or latest available year)	인구주택총조사, 미혼과 기혼의 구분없이 해당 연령 여성의 무자녀 비율 산출
LMF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모의 취업형태별 자녀의 비중(Maternal employment rate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지역별 고용조사, 모의 연령 및 자녀 연령 수정
		막내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자녀 수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PF1.1	공적 가족급여지출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가족급여 유형별 공적 지출 총계(total)	OECD SOCX, 아이돌봄서비스, 자녀장려금 등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되는 등 분류체계 검토필요, 시계열 연속성을 고려하되 합리적 재편이 필요함.
		현금급여(cash)지출	
		현물급여(services)지출	
		조세지출(tax breaks for families)	
PF1.3	가족 현금급여 (Family cash benefits)	가족현금급여 유형 및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family benefits, by type,2018)	OECD Tax-benefit system, 가족급여 제도유형 분류체계 재검토 필요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막내자녀 연령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8)	OECD Tax-benefit system, 가정양육수당 관련 급여액 처리 논의필요
		자녀수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number of children, 2018)	
PF1.4	조세-복지급여 체계의 형평성 (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가구유형별 조세-급여혜택의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for couples at different household earnings levels, 2014)	OECD Tax-benefit system, 가정양육 수당 관련 급여액 처리 검토필요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체계 (Child support systems)	아동양육비제도 주요 특징(Key characteristics of Child Support Regimes)	개선필요: 2015년 이후 아동양육비 결정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존재하므로 Agency값을 Yes로 변경 필요 *보고자료는 2010년 기준임. 당시는 양육비이행원이 없었음.
PF2.3	취업부모 추가휴가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arents)	법정 공휴일 및 단협 휴가일수 Statutory and collectively agreed annual leave	근로자의 날 포함 16일로 변경
		가족돌봄휴가(휴직)개요 Summary of leave entitlements to care for sick or ill family members	휴가자격기준 추가
PF2.4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출산후 첫째달 순가구소득대체율 (Net equivalised household income in the first month after birth, 2014)	OECD Tax-benefit system, 산전 순가구소득 보고 금액이 불명확함. 근거값 확인필요.
		출산후 시기별 순가구소득대체율 (Net equivalised income over the period of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2014)	
PF2.5	자녀관련 휴가급여 추이 (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 추이 (Length of paid maternity,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 1970, 1995, and 2022)	출산휴가기간 주별 환산값 검토필요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고용보장(무급포함)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기간, 최초도입년도 Length of job-protecte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paid and unpaid) available to mothers by year of introduction, 2022	1988년 육아휴직 산전휴휴가 포함한 기간은 52주. 육아휴직만은 52주에서 산전후휴가 30일을 뺀 값 47.85주임. 시계열 값은 47.75주로 불일치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PF2.6	동성부모와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Same-sex and adoptive parental leave entitlements)	대리모 허용 Access to surrogacy	대리모관련 법적 규정 있음.
PF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ducation)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SOCX, 초등자녀 돌봄지원 재정 지출 제외
		아동 당 보육·교육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er child)	OECD SOCX, 초등자녀 돌봄지원 재정 지출 제외
FP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전국보육실태조사 활용 또는 보육통계 보완, 실제 아동연령 기준 산출
		3~5세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year-olds)	전국보육실태조사 활용 또는 보육통계 보완, 실제 아동연령 기준 산출
		3~5세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by year of age, 3- to 5-year-olds)	전국보육실태조사 활용 또는 보육통계 보완, 실제 아동연령 기준 산출
PF4.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아동돌봄서비스 유형(Typology of Childcare)	어린이집 범위 5세 추가, 학원 제외
CO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 당뇨와 천식 유병률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2017년 소아의 제1형 당뇨병 추정 유병률(Estimated prevalence of type 1 diabetes in children, 2017)	향후 국민건강영양조사 당뇨 문항 중단, 문항 복구 또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활용
		2002년 또는 그 전후의 6-7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6-7, 2002 or around)	서울→전국 수치로 수정, 국민건강영양조사 또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활용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2002년 13-14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13-14, 2002)	서울→전국 수치로 수정, 국민건강영양조사 또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활용

자료는 있지만 보고되고 있지 않은 '누락'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인구주택총조사,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통계청 출산통계, 인구동향조사와 같은 보고자료에 기반한 대규모 통계로부터, 지역별 고용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의 통계청이 수행하는 대규모 통계, 그 외 주거실태조사, 여성폭력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일가정양립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 분야별로 담당 부처가 생산하는 통계들까지 다양한 통계에서 누락된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16〉 '누락'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 (Family size and composition)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SF1.2	가족에서의 아동 (Children in Families)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18)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활용
		아동의 거주 형태 변화(Trends i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05 to 2018)	
		동거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추이(Trends in children living with cohabiting parents, 2007 and 2018)	
SF1.3	아동의 거주 형태 (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age)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활용
		상대소득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relative income poverty status)	가계금융복지조사 활용
		모의 학력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mother's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활용
		유소년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 2013-14)	
SF1.5	아동의 주거 여건	과밀거주 아동(Children in overcrowded households, 2017)	주거실태조사 활용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기초생활시설 부족 아동(Children in households that lack basic facilities, 2017)	
		환경 문제 있는 지역 거주 아동(Children living in area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2017)	
SF2.1	출산율 (Fertility rates)	코호트완결출산율(Completed cohort fertility for women born) in 1950, 1960 and 1970 or latest available	통계청 연령별 출산율 활용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1980 and 2020	통계청 출산순위별 출생 활용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2020	통계청 출산순위별 출생 활용
SF2.5	무자녀 Childlessness	최종 무자녀(Definitive childlessness)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단 기혼에 한정
		최종 무자녀와 완결 출산율(Definitive childlessness and completed fertility rates)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단 기혼에 한정
SF3.1	혼인율과 이혼율 (Marriage and divorce rates)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Distribution of marrying persons by previous marital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인구동향조사 활용
SF3.3	동거율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비율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11	기혼만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제시 가능
		교육수준별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 and cohabitation by level of education, 2011	기혼만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제시 가능
		부부(커플) 가구의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 유무 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for couple households, 2011	기혼만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제시 가능
SF3.4	가정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파트너에 의한 폭력(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여성폭력실태조사 활용
LMF 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활용, 단 근로시간 변수 부재
		부부가구 부모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couple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한부모가구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LMF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학력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지역별 고용조사, 모의 연령 및 자녀 연령 수정
LMF 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 (Maternal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19 or latest available)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활용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변화(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05, 2012 and 2019 or latest available)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학력별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활용
		파트너 취업여부별 유배우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by partner's employment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활용
LMF 1.4	생애주기별 고용률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and education, 2018)	경활조사 혹은 지역별고용조사 활용
LMF 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9 or nearest year available)	지역별고용조사 활용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 변화(Changes in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0 to 2019)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자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adults in couples with children, by gender, 2019)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LMF 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한부모 가구의 고용 지위(Employment status of single parent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지역별 고용조사 혹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활용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취업 한부모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single parents, 2019)	
LMF 2.4	가족친화제도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보급률(Incidence of employer-provided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3)	일가정양립실태조사 활용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근로환경조사 활용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재택근무 근로자(Employees working from home, 2015)	
LMF 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아동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aged 11 to 15, 201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활용
		고용 지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employment status, 2012)	사회통합실태조사 활용
		일생활균형 만족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satisfaction in work-life balance, 2012)	사회조사 활용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체계 (Child support systems)	한부모가족 추이, 자녀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추이(Trends of Sole-parents1 and of Sole-Parents Receiving Child Maintenance Payments in recent years)	인구총조사(2015년 이후)및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2년 이후)로 추출 가능
		자녀양육비 수준(Social expenditure per child increases with children age)	한부모가족실태조사로 추출가능(2012년 이후)
PF1.7	세대간 연대(Intergenerational solidarity)	연령집단별 순이전비율(Age profile of net transfers)	OECD 자료원인 NAT웹사이트에 자료있음
PF1.9	아동보호 특성(Aspects of child protection)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태도'는 아동종합실태조사 기반 보고 가능
		아동체벌규제(Bann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2021년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공식화
		보호아동비율(Proportion of children under state care)	보호유형별 행정통계 기반 보고 가능
PF2.2	자녀관련 휴가 사용현황(Use of childbirh - related leave benefits)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 (Users of paid paternity leave)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2019년부터 값 있음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PF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0~2세 모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mother's education, 0- to 2-year-olds)	전국보육실태조사 활용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Average usual weekly hou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전국보육실태조사 활용
CO1.2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2019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and Healthy Life Years(HLY) at birth,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건강수명'은 인구주택총조사 또는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산출 가능
CO1.5	모유 수유율 (Breastfeeding rates)	2005년경 모유를 먹은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ver breastfed", around 2005)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CO1.7	11세, 13세, 15세 성별 과체중 (Overweight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청소년건강행태조사로 산출 가능(단 11세 산출 불가)
		2013/14년 누락된 BMI 자료 비율(Rates of missing BMI data, 2013/14)	청소년건강행태조사로 산출 가능
CO1.8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청소년건강행태조사로 산출 가능(단 11세 산출 불가)
CO1.9	아동장애 (Child Disability)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National estimates on the proportion of children with a disability by age and sex)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 5-15세 출현율 산출가능
		청소년의 성별 장애 정도(Young women report higher levels of disability than young men)	사회조사 자료 활용 산출가능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교육수준(Educational attainment of young people aged 18 – 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인구주택총조사/사회조사 활용 산출가능
CO2.1	가구유형별 소득 불평등 및 소득지위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가구유형에 따른 상대가처분소득(Relative disposable income by household type,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가계금융복지조사 활용 산출 가능
CO3.5	청년니트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청년 니트 비율(NEET rates for 15-29 year-olds)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용 생산 가능
		연령대별 니트 비율(NEET rates across age groups)	
		니트 비율에 대한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NEET rates)	

마지막으로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고가 단기간 내에 불가능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몇가지 공통적으로 자료 부재를 가져오는 항목들이 발견되었다. OECD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너쉽 항목으로서 혼인관계 밖의 '동거' 변수와 '이주배경' 변수가 한국의 자료에서는 부재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짐으로서 많은 지표의 누락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트너쉽의 다양성과 이주배경의 다양성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절대적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곧 가시화될 중요한 측면으로 보인다. 향후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를 구축함에 있어 두 측면에 대한 통계는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한편 통계적 보완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통계지표들이 존재하였다. 고용통계와 가족통계 간의 교차 부재로 인한 문제는 그동안 상당한 통계적 보완으로 많이 진전되었으나, 출산휴가 정보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모성 고용의 일부 지표가 여전히 생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아동돌봄과 관련해서는 영유아에 대한 공식돌봄에 대해서는 상당한 통계가 정비되었으나, 비공식돌봄이나 초등방과후 돌봄 등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여 통합적인 아동돌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의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조사의 모듈이나 문항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지표들도 존재하였다. 예컨대 '이상자녀 수'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 조사는 출산연령대에 집중하고 있는 조사를 통해 질문하고 있어 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아동성과와 관련해 취학 연령 아동의 건강행동설문조사(HBSC), 국제읽기능력평가(PIRLS) 등 중요한 국제비교조사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비교가 어려운 항목이 상당히 존재하였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생산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한국상황에 맞지 않는 지표들 또한 발견되었다. 예컨대 '풍요도'나 '물질적 결핍'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한국의 경제적 환경에 맞지 않아 해당 지표를 생산할 것인지, 대체 지표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여 국제비교 지표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Ⅲ-17〉 '자료없음'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SF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가족과 출산 조사, 연령 확대(19~49 → 15~64) 및 개인적 이상자녀수 문항 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Ideal general number of children, 2011)	
		최종적인 가족 규모 (Mean ultimately intended family size, 2011)	자료없음: 2011년 향후 가능: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활용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교육정도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level of education, 2011)	가족과 출산 조사, 연령 확대(19~49 → 15~64) 및 개인적 이상자녀수 문항 추가
		취업여부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working status, 2011)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사이 격차 (Differences between general and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SF3.3	동거율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비율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11)	인구주택총조사에 동거 문항 포함 필요
		교육수준별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 and cohabitation by level of education, 2011)	인구주택총조사에 동거 문항 포함 필요
		파트너십 상태와 부부가구의 자녀 (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for couple households, 2011)	인구주택총조사에 동거 문항 포함 필요
LMF1.1	부모 고용 형태에 따른 아동 현황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모든 성인이 미취업인 가구의 자녀(Children in jobless households, 2008, 2013 and 2018)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성인가구원 전체 취업상태 필요
LMF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유자녀 여부별 모의 고용률 추이(Trends in maternal employment rates, 2006 to 2019)	최신 자료만 지역별 고용조사로 파악, 단 모의 연령 및 자녀 연령 수정 필요
		0-2세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women with children aged 0-2, by maternity/parental leave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지역별 고용조사 또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모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정보 필요
PF1.7	세대간 연대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50+인구의 현금이전 및 시간이전 (A. Transfers of money,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B. Transfers of time,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OECD는 Share(2006- 2007) 조사 값을 보고,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에 유사문항이 있으나 패널자료라는 한계가 있음. 노인실태조사 등에 신규문항을 통한 생산방안
		손자녀돌봄자 비율(Percentage of grandparents taking care of at least one grandchild)	
PF2.2	자녀관련 휴가 사용현황	성별 자녀관련휴가 이용기간(Duration of paid leave for men and women)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출산휴가 정보 등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Use of childbirth -related leave benefits)		포함하여 생산 검토필요
PF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0~2세 가구소득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income, 0- to 2-year-olds)	전국보육실태조사, 세후소득 필요
PF3.3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 (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통계 승인 및 보완을 통한 생산
		아동 연령과 균등화 가처분소득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아동 연령과 모의 교육수준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mother's education level)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평균 이용시간 (Average hours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PF4.3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Out-of-school-hours care)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단기)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 방과후활동 수요 및 현황 조사" 문항 보완을 통한 생산 (중기) 통합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의 마련 (초등방과후 돌봄서스 법정 실태조사 근거 마련)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 (Average hour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during a usual week)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모의 교육수준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mother's education level)	
CO1.1	영아사망 (Infant mortality)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영아사망률 추이(Trends in infant mortality rates, 1970-2018)	산출불가
CO1.7	11세, 13세, 15세 성별 과체중 (Overweight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2013/14(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HBSC 비참여 국가로, 풍요도 자료없음,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문항 추가 필요
CO1.8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HBSC 비참여 국가로, 풍요도 자료없음,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문항 추가 필요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CO1.9	아동장애 (Child Disability)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률(Percentage of employed and unemployed young people aged 18 – 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향후 인구주택총조사 혹은 사회조사 변수 추가 필요
		장애가구원 유무에 따른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by disability status, 2009)	가계금융복지조사 변수 보완 필요
CO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 (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	국민생활실태조사 혹은 아동종합실태조사, 물질적 결핍 측정 자료원 개선 및 보고필요성 검토 필요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	
CO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TIMSS2011))	읽기 성취도 자료없음, 한국은 국제읽기능력 평가(PIRLS) 비참여 국가로, 국제컴퓨터정보소양 연구(ICILS) 등으로 대체 검토
		성별에 따른 읽기, 과학, 수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boys–girls) in student's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 performance(TIMSS2011))	
		가정 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cores on reading achievement relative to Home Resources for Learning, PIRLS 2011)	
CO3.6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 (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on reading score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이주배경 문항 추가, 또는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조사를 학생단위로 수행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또는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와 연계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수학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in mathematic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통제 전·후의 내국인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native students and 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ocio-economic background, 2015)	
		가정에서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Students who speak another language at home, 2015)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통제 전·후의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 (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immigrant and non-immigrant students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language spoken at home, 2015)	
CO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지난해 자원 봉사 또는 자선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 (Proportion of people involved in work for voluntary or charitable organisations in the past year)	European Social Survey 비참여 국가로, 사회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에 문항 추가 고려 가능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지표 생산 방안
CO4.3	청소년·청년의 약물 남용 (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술에 취한 경험(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HBSC 비참여 국가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문항 추가, 조정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개편, 산출
		대마 사용 경험(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2013/14)	HBSC 비참여 국가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문항 추가, 조정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개편, 산출(대마는 조사 민감성 존재)
		성별·가구 풍요도별 술에 취한 경험(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HBSC 비참여 국가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풍요도 문항까지 추가, 조정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개편, 산출
		성별·가구 풍요도별 대마 사용 경험(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HBSC 비참여 국가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풍요도 문항까지 추가, 조정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개편, 산출(대마는 조사 민감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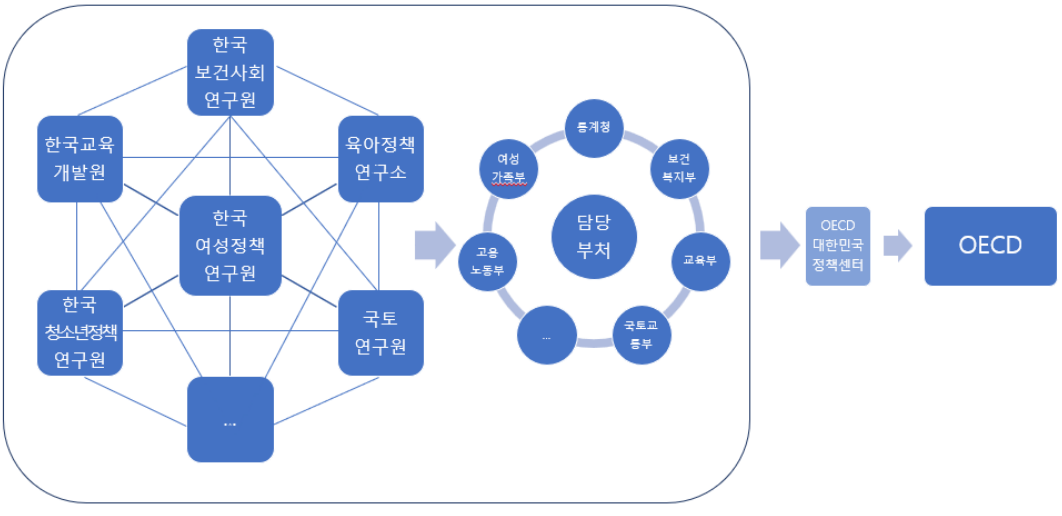
제2절 국제비교지표 산출 거버넌스 체계(안) 및 향후 과제

1.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 거버넌스 체계(안)

본 연구는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의 대표적인 사례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한국 자료의 제공 현황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방향이 실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일회성 연구로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수행이 이루어짐과 함께 안정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할 부처의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체계는 명시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담당 부처는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역할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지속적 통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과 담당부처의 지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Ⅲ-3]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 거버넌스 체계(안)



가. 국책 연구기관 거버넌스

본 연구는 6개 국책 연구기관의 협동 연구로서 연구기관 거버넌스 체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가 기관 단위로 참여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의 연구자가 개인 연구자로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각 기관은 여러차례의 워크샵을 통해 통계 현황과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학계 연구자들이 연구자 또는 자문자로 참여하여 활발하게 통계작성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연구기관 거버넌스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통계를 생산하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그 첫 연구로서 6개 기관이 참여하였다면,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추가하여 더 넓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담당 부처 및 관계부처 담당자 연석회의

안정적인 통계 생산과 개선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담당부처의 지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조직 중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담당부처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정책 총괄기구이지만 저출산 대응정책의 상당 부분이 가족·아동정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부처의 가족·아동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가족·아동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기구이면서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담당 부서로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출발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과제에서 출발하였다는 점도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OECD 공공 사회지출(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통계를 산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의 하나로 사회보장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사회보장통계의 일환으로 OECD 공공 사회지출(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통계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당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OECD 공공 사회지출(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통계 관리 역할을 확장하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까지 담당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사회보장위원회도 OECD 공공 사회지출(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관리 역할을 법령상으로 제도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참고하기는 어렵다.

둘째,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 또는 통계개발원에서 담당하는 방안이다. 통계청의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기구와의 통계협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제비교 가족·아동지표의 담당부서 역할로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통계생산 범위는 많은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가족·아동 관련 통계 생산에 과부하가 걸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통계개발원은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 수행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한 기관으로, 통계개발원으로 해당 역할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통계개발원은 통계 사업보다는 통계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므로 연구 거버넌스에 포함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셋째, 가족정책 또는 인구아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담당하는 방안이다.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관 또는 인구아동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등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업무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반면, 다부처에 걸쳐있는 통계를 조정하는 역할은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가족, 아동, 청소년 정책 및 전달체계 통합의 필요성과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총괄 부서를 운영하여 관련 통계 생산과 지표 또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가족·아동 관련 정책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스웨덴, 영국의 사례와 같이 교육의 개념을 확장하여 아동돌봄을 통합하는 사례, 독일과 같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총괄적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사례, 일본과 같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된다. 특히 일본은 일반 행정부처인 '성'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부조직인 내각부(한국에서는 국무조정실 또는 대통령비서실과 유사)에 '아동가정청'울 설치하여 아동돌봄업무를 격상하여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122]. 독일의 경우 1994년 조직개편 이후 현재까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가족정책의 기조 변화나 아동돌봄 정책이 확대되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업무는 타 조직으로 이동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진미정 외, 2022: 104, 110, 112).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부처의 역할 조정과 업무 통합을 통해 가족·아동 지표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22) 4월 출범한 어린이가정청은 그동안 일본 내각부와 후생노동성이 각각 담당해 온 어린이 정책 업무를 일원화해 내각총리대신 직속 내각부 외청으로 창설된다. 소관 업무는 기존 내각부가 담당했던 저출산대책, 어린이·청년육성지원, 아동빈곤대책 등과 후생노동성이 담당했던 모자보건대책, 한부모가정지원, 아동학대방지대책 등이 어린이가정청으로 이관되고, 미취원아동(미취원아동 한자),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자나 보육원·초등학교에 입원·입학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 방지, 어린이 안전대책, 어린이 정책 관련 디지털기반 정비 등 새로운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다만 문부과학성이 담당하는 의무교육, 유치원, 이지메 방지대책은 어린이가정청으로 통합되지 않으며, 어린이가정청의 권고 하에 양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수행될 예정이다(복지타임즈, 2023.5.11.).

〈표 Ⅲ-18〉 가족·아동정책 담당 부처 해외사례

<table>
<tr><th colspan="2">정책영역 / 국가</th><th>아동수당</th><th>취약가족 요보호아동</th><th>0-2세 돌봄</th><th>3-5세 돌봄</th><th>초등방과후 돌봄</th><th>초등교육</th><th>노인돌봄 (장기요양)</th></tr>
<tr><td colspan="2">스웨덴</td><td colspan="2">보건사회부</td><td colspan="4">교육연구부</td><td>보건사회부</td></tr>
<tr><td colspan="2">영국</td><td>고용연금부</td><td colspan="5">교육부</td><td>보건사회복지부</td></tr>
<tr><td colspan="2">프랑스</td><td colspan="3">보건연대부</td><td colspan="3">교육청소년체육부</td><td>보건연대부</td></tr>
<tr><td rowspan="2">독일</td><td>연방</td><td colspan="5">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td><td>-</td><td>보건부</td></tr>
<tr><td>주</td><td></td><td colspan="4">가족…부(주마다 상이)
청소년…청(주마다 상이)</td><td>교육청</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일본</td><td rowspan="2"></td><td colspan="2">(후생노동성)</td><td>문부과학성</td><td>(후생노동성)</td><td>문부과학성</td><td>후생노동성</td></tr>
<tr><td colspan="4">내각부 아동가정청</td><td></td><td></td></tr>
</table>

출처: 진미정 외(2022: 104)에서 수정

2. 향후 과제

향후 안정정인 통계생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추가연구 수행이 필요해 보인다. 추가 연구에서는 보고되지 않고 있는 지표들의 한국 적용 적절성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보고되고 있지 않은 지표 중 한국 상황에 맞지 않거나 한국적 맥락을 보여주기 어려운 지표들의 경우에는 산출하지 않거나 대체지표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평가와 함께 본 연구에서 '누락'으로 나타난 지표의 실험적 산출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누락' 지표의 경우 이미 자료가 있는 상황으로, 자료 가공을 통해 바로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지표들이다. 한국 상황에 맞는 지표들을 실험적으로 산출하고, 산출된 지표를 해석하여 한국의 현실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료없음'으로 확인된 지표들에 대한 점검과 협의 등이 필요하다. '자료없음' 지표들의 경우 현재 있는 통계자료로는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를 산출하는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지표의 산출이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표는 실제 산출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승인통계가 3년 또는 5년 주기로 수행됨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실제 통계생산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2~3년간의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심도있는 연구 수행 이후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처에서 통계생산 거버넌스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신뢰할만한 통계가 제공될 수 있는 산출 구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2장 1절 참고문헌

[국내 문헌]

장미혜·김효정·정연주·박상민·정다은·정지연·유경희·이다은(2021).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2021.8).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이용자 안내서.

[해외 문헌]

OECD Family Database(SF)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 1. 4.)

[사이트]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자료실 〉 조사관련자료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국문조사표 〉 일반조사표. https://www.census.go.kr/dat/srd/srdDetail.do

[데이터]

국토교통부. 2020.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법령]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최저주거기준

2장 2절 참고문헌

[국내 문헌]

통계청(2021.8).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이용자 안내서.

[해외 문헌]

OECD Family Database(LMF)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검색일: 2023.01.04.)

[사이트]

통계청 홈페이지 〉 통계설명자료 〉 근로환경조사 〉 2020년 조사표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orgId=380&confmNo=380002&kosisYn=Y

통계청 홈페이지 〉 통계설명자료 〉 사회조사 〉 2022년 사회조사 조사표 3종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orgId=101&confmNo=101018&kosisYn=Y

통계청 홈페이지 〉 통계설명자료 〉 사회통합실태조사 〉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표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orgId=417&confmNo=417001&kosisYn=Y

통계청 홈페이지 〉 통계설명자료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2020년 조사표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orgId=154&confmNo=154013&kosisYn=Y

2장 3절 참고문헌

[국내 문헌]

고경환·정경희·김미숙·강지원(2009). OECD 기준에 따른 한국의 Family Database 구축방안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정영철·고경환·노대명·이현주·박세경·신정우·신화연·오욱찬·고혜진·하솔잎·안영·최영준·양미선·원도연(2020).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및 추계: 제1부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진(2019). “대리모 출생아의 친자관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22(3): 493-535.

보건복지부(2019).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신윤정·이지혜·임지혜(2021). 2020-21년도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22). 2020년 국민이전계정. 통계청 경제통계국 소득통계발과.

한경혜(2019). “노인의 가족지원 및 돌봄의 양상”, 통계개발원(2019)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

[사이트]

OECD(2011a). Paying for the past, providing for the Futur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https://www.oecd.org/els/public-pensions/47712019.pdf.(검색일: 2023. 3. 7.)

OECD(2019). The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https://www.oecd.org/social/soc/SOCX_Manuel_2019.pdf(검색일: 2023. 4. 1.)

2장 4절 참고문헌

[국내 문헌]

고제이·정영철·고경환 외(2020).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및 추계_제1부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2022 교육통계연보(STAS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교육부·보건복지부(2023).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 방안.

김은설·박진아·이솔미(2019). OECD TALIS 유아교육 비교연구 2019-Starting Strong Survey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류정희·이상정·전진아·박세경·여유진·이주연·김지민·송현종·유민상·이봉주(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19).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통계정보보고서.

보건복지부(2022a). 2021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2b).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2022c).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부록_지표해설집.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 통계조사 설문지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오미애·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 조사 보고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부(2022).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문무경·김은영· 최윤경· 양미선· 강은진·김동훈·김아름·김문정(2022).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정소년활동진흥원(2022).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 및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_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검색일: 2023. 5. 4.)

교육부(2022. 12. 23.). 2022학년 2학기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3481(검색일: 2023. 1. 6.)

교육통계서비스. https://https://kess.kedi.re.kr/index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www.youth.go.kr/yaca/index.do(검색일: 2023. 5. 4.)

통계설명자료.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검색일: 2023. 2. 1.)

OECD(2011a). Paying for the past, providing for the Futur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https://www.oecd.org/els/public-pensions/47712019.pdf(검색일: 2023. 3. 7.)

OECD(2019). The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https://www.oecd.org/social/soc/SOCX_Manuel_2019.pdf(검색일: 2023. 4. 1.)

OECD(2016). PF4.1: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https://www.oecd.org/els/family/PF4-1-Typology-childcare-early-education-services.pdf(검색일: 2022. 11. 20.)

OECD(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부록. 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20_69096873-en(검색일: 2023. 1. 11.)

OECD(2020). PF4.2.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https://www.oecd.org/els/soc/PF4-2-Quality-childcare-early-education-services.pdf(검색일: 2022. 11. 20.)

OECD(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Annex 3 Sources, methods and technical notes. https://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EAG2021_Annex3.pdf(검색일: 2023. 1. 5.)

OECD(2021). PF3.3: 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https://www.oecd.org/els/family/PF3-3-Informal-childcare-arrangements.pdf(검색일: 2022. 11. 20.)

OECD.(2021). PF3.1: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https://www.oecd.org/els/family/PF4-3-Out-of-school-hours-care.pdf (검색일: 2022. 11. 20.)

OECD(2021). PF3.2: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s. https://www.oecd.org/els/family/PF4-3-Out-of-school-hours-care.pdf(검색일: 2022. 11. 20.)

OECD(2022). PF3.4: Childcare support. https://www.oecd.org/els/soc/PF3-4-Childcare-support.pdf(검색일: 2022. 11. 20.)

OECD.(2022). PF4.3: Out-of-school-hours services. https://www.oecd.org/els/family/PF4-3-Out-of-school-hours-care.pdf (검색일: 2022. 11. 20.)

2장 5절 참고문헌

[국내 문헌]

건강증진개발원(2018).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비만 통계자료집2013-2027. 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개발원·보건복지부(2021).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비만 통계자료집2016-2020. 건강증진개발원.

구자옥·김성숙·이혜원·조성민·박혜영(2016).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5 결과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기헌(2017). 한국 청년 니트 (NEET) 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 패널 워킹페이퍼. 한국노동연구원.

신정우·천미경·진재현·정영철·전예지·안수인(2022). 2022년 OECD 등 국제기구 보건통계 생산 및 관리. 세종: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윤혜준·민숙원·유한구(2017). 우리나라 청년 니트 현황 분석과 시사점. KRIVET Issue Brief, 135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해외 문헌]

Currie C, Inchley J, Molcho M, Lenzi M, Veselska Z & Wild F(eds.)(2014).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 Protocol: Background, Methodology and Mandatory items for the 2013/14 Survey*. St Andrews: CAHRU.

EUROSTAT(2015). *Glossary: Healthy life years(HLY)*.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Healthy_life_years_(HLY)

[사이트]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2023). 영아/모성사망.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검색일: 2023. 1. 5.)

질병관리청(2021). 감염병 군별 발생현황(2017-2019),「법정감염병발생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N_A00401&conn_path=I2(검색일: 2023. 5. 11.)

질병관리청(2023).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제8기(2019-2021). 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3/sub03_02_05.do(검색일: 2022. 12. 20.)

질병관리청(2022a). 지역별/백신별/성별 예방접종률(2021),「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93N_171&conn_path=I2(검색일: 2023. 1. 5.)

질병관리청(2022b).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s://www.kdca.go.kr/yhs/(검색일: 2023. 1. 5.)

통계청(2022a). 영아사망원인(67항목)/성/생존기간별 사망자수, 영아사망률(2021),「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8&conn_path=I2(검색일: 2023. 1. 5.)

통계청(2022b). 완전생명표(1세별, 2021),「생명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2(검색일: 2023. 1. 5.)

통계청(2022c). 시도/성/출산순위/출생시 체중별 출생(2021),「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3&conn_path=I2(검색일: 2023. 1. 5.)

IDF(2022). IDF Diabetes Atlas. https://diabetesatlas.org/(검색일: 2023. 1. 15.)

OECD(2022). OECD health statuistics. https://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검색일: 2023. 1. 10.)

WHO(n.d.). WHO Immunization Portal. https://immunizationdata.who.int/에서 2023.1.10.에 인출(검색일: 2023. 1. 10.)

3장 참고문헌

진미정·김은지·유해미·임아름·최은영(2022). 아동돌봄정책 통합조정/통합기구 설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슈페이퍼,「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59-116. 대한민국 정책 프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184.

[사이트]

복지타임즈(2023.5.11). '어린이가정청'의 출범 의미와 과제.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45(검색일: 2023. 6. 1.)

부록

부록. '적절'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SF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Child and young adult population, 2015)	O	적절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Age distribution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2015)	O	적절
		아동 인구 추이(Trends in the child population, selected OECD countries)	O	적절
		유소년 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 1990 and 2015)	O	적절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Estimated(1950–2015) and projected (2016–2050) youth dependency ratios, selected OECD countries)	O	적절
SF2.1	출산율 (Fertility rates)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20)	O	적절
SF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Mean age of women at birth, 1970,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2000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Mean age of women at first birth,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OECD 국가의 출산시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율 (Average OECD fertility rate by mother's age at childbirth)	O	적절
		청소년 출산율 (Adolescent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5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연령별 출산 프로파일 (Age-fertility profiles, 1970, 1995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5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SF2.4	혼인 외 출생 비율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혼인 외 출생 비율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	적절
		혼인 외 출생 비율 추이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ver time)	O	적절: 1995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SF3.1	혼인율과 이혼율 (Marriage and divorce rates)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1970, 1995, 2019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1990,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조이혼률(Crude divorce rate, 1970, 1995, 2019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SF3.2	가족 해체와 아동 (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duration of the marriage, 2017 or latest)	O	적절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number of children involved, 2017 or latest)	O	적절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and non-parents(16+ year-old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16+ year-old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various years)	O	적절
SF3.4	가정 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Attitudes among women towards partner violence)	O	적절
LMF1.4	생애주기별 고용률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성별 연령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2018)	O	적절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젠더 격차(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O	적절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Gender gap in earnings by levels of education)	O	적절
LMF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고용률의 젠더 격차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고용률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젠더 차이 감소 추이(Declining trends on 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O	적절
		시간제 고용에서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part-time employment)	O	적절
		시간제 고용의 변화(Change in part-time employment)	O	적절
		학력별 고용률의 젠더 격차(Gender gap in employment rates by educational attainment)	O	적절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중(Women's share of managerial employment)	O	적절
		임시 고용의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emporary employment)	O	적절
LMF2.1	성별 주당 근로시간 (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Distribution of the employed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and gender, 2021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취업자 중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변화(Percentage point change in the proportion of the employed working 40 hours or more, by gender, 2005 to 2021)	O	적절
LMF2.5	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 (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1999-2012/2013)	O	적절
		돌봄시간(Time dedicated to care activities, 1999-2010)	O	적절
		자녀 수별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dedicated to care work, by number of children under school age, 1999-2010)	O	적절
		막내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spent on care work by women, by age of youngest child, 1999-2010)	O	적절
LMF2.6	출퇴근에 보낸 시간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통근 시간(Averag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1999-2014)	O	적절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 - 2010)	O	적절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에 대해 보고한 비율(Proportion of survey respondents reporting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 - 2010)	O	적절
LMF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 (Subjective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aged 15 and ov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O	적절
		성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gend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PF1.2	공교육 지출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교육단계별, 재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 by level of education and source of funds)	O	적절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Annual expenditure per student by educational institutions)	O	적절
PF1.3	가족 현금급여 (Family cash benefits)	가족특성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family type and earnings, 2018)	O	적절
PF1.4	조세-복지급여 체계의 형평성 (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2차소득자세율(Participation tax rates for second earner parents entering employment at varying gross earnings levels, 2014)	O	적절
PF1.6	아동 연령별 공적 지출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의 규모(연령구간별, 급여유형별 시계열 자료) (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 2003 to 2019)	O	적절: 산전9개월부터 ~29세까지 자료 보고, 현금, 보육, 기타현물급여, 교육으로 나누어 제출. 아동연령은 0-17세 까지 계산. 가족급여 유형의 구체적 분류기준은 추후검토필요
		연령구간별 공적 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 2019)	O	
		0-5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 사회지출(Spending in USD PPP on children aged 0-5, 2019)	O	
		6-11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사회지출(Spending in USD PPP on children aged 6-11, 2019)	O	
		12-17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지출(Spending in USD PPP on children aged 12-17, 2019)	O	
PF1.8	법적 성년 연령 (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성년연령(Age of majority, 2016)	O	적절
		형사책임연령(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2016)	O	적절
		최소혼인연령(Minimum age for marriage, 2016)	O	적절
		의무교육종료 및 최소근로연령(School leaving age and Employment age, 2016)	O	적절
		알콜구매및소비 최소연령(Minimum age to consume and purchase alcohol, 2016)	O	적절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Minimum age for sexual consent, 2016)	O	적절: 기준년도 2016년, 추후 2020년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형법개정사항 반영필요
PF1.9	아동보호 특성 (Aspects of child protection)	의도적, 우발적 사고 아동 사망율(Child mortality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	O	적절
		의도적, 우발적 사고 아동 사망율 추이(Changes in child deaths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 early 1980s to latest figures)	O	적절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X	누락: '태도'는 아동종합실태 조사 기반 보고 가능
			O	적절: '실태'는 적절
PF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특징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available to mothers)	O	적절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for fathers)	O	적절
		자녀관련 유급휴가 할당 및 공유기간(Reserved and shareable paid family leave entitlements)	O	적절
		자녀관련휴가 공적 지출규모(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O	적절
PF2.2	자녀관련 휴가 사용현황 (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유급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Users of paid maternity leave)	O	적절: 고용보험 DB, 공무원 교직원 포함 검토필요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 (Users of paid parental leave)	O	적절: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로 시계열 모두 교체됨
		육아휴직이용자중 남성비중 추이 (Trends in men's share of recipients/users of publicly administered parental leave/ benefits)	O	적절: 통계청의 육아휴직통계로 시계열 모두 교체됨
PF2.4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산전후휴가 소득대체율 (Maternity leave payment rates, 2014)	O	적절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의 소득대체율 (Parental leave payment rates, 2014)	O	적절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소득대체율 (Father-specific leave payment rates, 2014)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PF2.5	자녀관련 휴가급여 추이 (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휴가기간(Length of paid paternity leave and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reserved for fathers, 1970, 1995 and 2022)	O	적절
PF2.6	동성부모와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Same-sex and adoptive parental leave entitlements)	남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O	적절(동성혼은 불법이므로 해당없음)
		여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Fe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O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 (Adoption leave entitlements)	O	적절
PF3.4	보육료 지원 (Childcare support)	총 보육비(Gross childcare fees)	O	적절
		맞벌이 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two-earner couple family)	O	적절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single-parent family)	O	적절
PF4.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유치원(3~5세)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Child-to-staff ratios in pre-primary education services, 2018)	O	적절
		영아보육(0~2세)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Child-to-staff ratio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services, 2018)	O	적절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Minimum qualifications for ECEC professionals)	O	적절
CO1.1	영아사망 (Infant mortality)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신생아 후기 사망률(Infant mortality, neonatal mortality, and post-neonatal infant mortality rates,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70년, 1990년, 2018년(혹은 가장 최근)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s, 1970, 1990 and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CO1.2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1960년과 2020년 사이 성별 기대수명의 추이(Trends in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1960-2020)	O	적절
		2020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성별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2019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and Healthy Life Years(HLY) at birth,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기대수명'
			X	누락: '건강수명', 인구주택 총조사 또는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산출 가능
CO1.3	저체중 출생 (Low birth weight)	2018년 또는 최신 저체중아 출생 비율(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0년부터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년도까지의 저체중 출생아 비율 변화(Changes in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1990 to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0~1992 자료없음)
CO1.4	백신 접종률 (Vaccination rates)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 및 백일해 발병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 (Vaccination rates for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and the incidence of pertussis, 2018 or closest available)	O	적절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홍역 예방 접종률 및 홍역 발병률 (Vaccination rates for measles and the incidence of measles, 2018 or closest available)	O	적절
CO1.5	모유 수유율 (Breastfeeding rates)	2005년경, 생후 3, 4, 6개월에 완전모유수유를 한 아동의 비율 (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xclusively breastfed at 3, 4 and 6 months, around 2005)	O	적절
CO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 당뇨와 천식 유병률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2017년 소아의 제1형 당뇨병 추정 유병률(Estimated prevalence of type 1 diabetes in children, 2017)	O	적절
CO1.9	아동장애 (Child Disability)	만성질환·장애가 있는 아동 대상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for Children with a Chronic Illness or Disability)	O	적절
CO2.1	가구유형별 소득 불평등 및 소득지위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소득 불평등 측정(Measure of income inequality, 2007, 2017 or nearest available year)	O	적절
CO2.2	아동빈곤 (Child poverty)	아동의 상대빈곤율(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가구유형별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typ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고용상태별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CO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 (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교육자원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O	적절
		교육자원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O	적절
CO3.1	성별에 따른 교육이수 (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성별과 연령에 따른 후기중등교육 이수율(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18)	O	적절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율(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18)	O	적절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Educational attainment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parents, 2012 or 2015)	O	적절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Educational attainment by parents' migrant status, 2012 or 2015)	O	적절
CO3.2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성별에 따른 예술·인문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arts and humanities subjects, 2019)	O	적절
		성별에 따른 경영·행정·법학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2019)	O	적절
		성별에 따른 공학·제조·건설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2019)	O	적절
CO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TIMSS2011))	O	적절: 수학, 과학 성취도
			X	자료없음; 읽기 성취도, PIRLS 비참여 국가
		성별에 따른 읽기, 과학, 수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boys-girls) in student's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 performance(TIMSS2011))	O	적절: 수학, 과학 성취도
			X	자료없음; 읽기 성취도, PIRLS 비참여 국가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검토 결과
CO3.4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 간 학업성취도 차이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O	적절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O	적절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 추이(Changes in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O	적절
		부모 최종학력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of parents, 2018)	O	적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socio-economic status, 2018)	O	적절
CO3.6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 (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이주배경 학생(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2006 and 2015)	O	적절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on reading score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O	적절: 비이주배경 집단
			X	자료없음: 이주배경 집단
CO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사회단체 구성원(활동적 또는 비활동적)인 청소년·청년 비율(Proportion(%) of young people who are members(active or inactive) of organisations by type of group, around 2012)	O	적절
		지난달 자원봉사를 한 청소년·청년 비율(Proportion of people who volunteered time to an organization in the past month, 2015 or last year available)	O	적절
		교회, 종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과 적극적·수동적 참여(Active versus passive affiliation to a church, a religious organization or a trade union, around 2012)	O	적절
CO4.2	생애 첫 투표 참여율 (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의회 선거 투표율(Voter turnout in latest parliamentary election, 2018 or latest year available)	O	적절
		성·연령별 투표율(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O	적절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Lack of interest in politics, around 2012-2014)	O	적절
CO4.4	십대 자살 (Teenage suicides)	10대 자살(Teenage suicides, 1990, 2000 and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협동연구총서 23-24-01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를 중심으로

발 행 2023년 6월
발 행 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전 화 044) 211-1000
홈 페 이 지 www.nrc.re.kr
I S B N 979-11-5567-643-1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Family Database) 지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Indicators for Families and Children: Focusing on OECD Family Database Indicators

비매품/무료
93310
9 791155 676431
ISBN 979-11-5567-643-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